

목차 CONTENTS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5 1
1. 추진배경	15
2. 실시 시기 및 지역	5
3. 단계별 운영 방안	6
I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7 1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7 1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9 1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9 2
III.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 3
<서식 1> 성실 이행협약서	4 1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2
<서식 3> 상담일정 통보서	4 3
<서식 4>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4 4
<서식 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4 5
<서식 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4 6
<서식 7> 사전단계 평가표	4 7

제1장 참여대상자 선정

I.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참여대상자	3 5
1.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저소득층)	3 5
1.1. 생계급여수급자	3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45
1.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5
1.4. 북한이탈주민	5
1.5. 신용회복지원자	5
1.6. 결혼이민자	5
1.7. 위기청소년	5
1.8. 니트족(NEET)	5
1.9. 여성가장	5
1.10. 국가유공자	5
1.11.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 5
1.12. 건설일용직	6
1.13. 장애인	60
1.14. FTA 피해 실직자	6
1.15. 맞춤 특기병	6
1.16. 미혼모 · 한부모	6
2.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청·장년층)	1 6
2.1. 청년층(만18~34세 이하)	16
2.2.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36

II.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56
1. 참여대상자 모집 및 추천	56
1.1. 기본 방향	65
1.2. 모집 및 홍보방법	5
1.3.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절차	7 6
2.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	86
2.1. 개 요	68
2.2. 참가신청서 접수	8
2.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96
2.4. 참여대상자 공통기준 및 제외기준 확인	0 7
2.5. 관련서류 확인	8
2.6.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28
2.7.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8

제2장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I.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7 8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78
1.1. 의 의	87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78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88
2.1. 운영 원칙	88
2.2. 운영 기간	89
2.3. 상담내역 기록	9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09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09
3.2.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39
3.3.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69
3.4. 전문심리상담서비스와의 연계	99
3.5.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12
3.6.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13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8
4. 참여수당 지급	109
4.1. 의 의	109
4.2. 지급대상 및 요건	109
4.3. 지급 금액	109
4.4.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111
4.5. 유의사항	112
5.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1단계 운영 특례	311
5.1. 1단계 운영 기본 원칙	13
5.2. 1단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15
<참고 1> 고용복지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121
<참고 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123
<참고 3> 과제이행 맞춤 상담	139
<참고 4> 롤모델(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144
<참고 5>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158
<참고 6> 강점진단	160
<참고 7> 심리정서상태진단·상담	167
<참고 8> 생활패턴진단·상담	179

II.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51
1. 의 의	185
2. 직업훈련과의 연계	16
2.1. 기본 원칙	186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8
2.3. 폴리텍대학 훈련	16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개정 2013.7.1.)	791
2.5. 청년취업아카데미	17
2.6.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적극 안내	81
3. 청년·장년인턴 등 연계	18
3.1. 청년취업 인턴제	18
3.2. 청년 창직인턴제	19
3.3. 장년 취업 인턴제	19
3.4.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991
4. (일반) 창업 지원 연계	19
4.1. 개 요	199
4.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0
4.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12
5.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21
5.1.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의의	21
5.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21
5.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23
5.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24
5.5.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24
5.6.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25
5.7.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62
5.8.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28

6.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20
6.1. 2015년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지침 적용	22
6.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22
6.3.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22
6.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23

III.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24

1. 3단계 연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4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24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24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24
1.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25
1.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24
1.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25
1.7. 취업알선 기간 중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급	612
1.8.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26
1.9. 청년·장년인턴 제도 연계	26
2.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26
2.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26
2.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27
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7
2.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522
2.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27
2.6. 경영약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822
2.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28

3. 3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20
3.1.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2
3.2. 이월 참여자에 대한 적용	2
3.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20
3.4.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2
3.5.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	2
3.6. 취업성공수당 환수	21
IV. 제4단계: 사후관리	22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2
1.1. 사후관리의 개념	22
1.2. 사후관리의 의의	22
2. 사후관리의 제공	22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	24
1. 취업지원 종료	24
1.1. 취업지원 종료의 의의	24
1.2. 취업지원 종료사유	24
1.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52
1.4. 취업지원 종료의 효과	28
1.5.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732
2. 취업지원 중단	28
2.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28
2.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28

2.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23
2.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24
2.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24
3. 취업지원 유예	241
3.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24
3.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24
3.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24
3.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24
3.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24
4. 취업지원 이관	244
4.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24
4.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24
4.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24
4.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24
4.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24
5. 행정사항	246
V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742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24
1.1. 부정수급의 개념	247
1.2. 부정수급 유형	247
2.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조치	248
2.1. 부정수급액 반환	248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248
2.3.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248

I.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개요	3
1. 추진배경	251
2.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12
3. 참여대상	251
II.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22
<참고 1> 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256
<참고 2> 참여방식에 따른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흐름도	260
III. 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	22

I. 민간위탁사업 기본운영 지침	0
1. 2016년 민간위탁사업 개관	20
1.1. 민간위탁 추진 규모 및 유형	0
1.2. 위탁기관 추가 선정 규모	0
1.3. 추가 선정 원칙	20
1.4. 협업형 위탁기관에 대한 특례	0
1.5. 위탁사업 실시 지역 및 장소 변경	0
1.6.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12
1.7. 이월된 위탁자에 대한 지침 적용	2
2. 위탁대상자 및 지원금	22
2.1. 참여자 모집	272
2.2. 참여자 배정 원칙 및 절차	2
2.3. 고용센터 역할	273
2.4.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 설정	2
2.5. 위탁사업비	274
2.6. 지원금 신청	276
2.7. 지원금 반환 및 회수	277
2.8.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8
II. 위탁업무 처리절차	20
1. 위탁절차 개요	279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
2.1. 기본원칙	279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0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280
3.1. 기본원칙	280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280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281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82
5. 참여자 수당 지급	283
6. 취업지원 종료·이관·중단 등	283
6.1. 기본원칙	283
6.2.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284
6.3. 취업지원 이관	284
6.4. 취업지원 중단	285
7.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285
7.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286
7.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287
7.3. 위탁사업 추진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287
III. 민간위탁기관 관리	287
1. 위탁기관(사업자) 기본 요건	287
1.1. 자격요건	287
1.2. 시설요건	288
1.3. 인적요건	289
1.4. 프로그램 요건	290
1.5.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	290
2.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290
2.1. 추진상황 모니터링	290
2.2. 위탁약정 해지	291

IV.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3

- 1. 추진 개요 293
- 2. 점검 추진계획 수립 294
 - 2.1. 점검 주기 294
 - 2.2. 점검방법 294
 - 2.3. 점검 절차(정기점검) 294
- 3. 중점 점검 사항 295
- 4. 점검결과 조치 및 기준 295

V. 민간위탁사업 평가 27

- 1. '16년 평가계획(안) 27
 - 1.1. 평가대상 기간 27
 - 1.2. 평가그룹 27
- 2. 평가지표 297
 - 2.1. 정량평가(80점) 27
 - 2.2. 정성평가(20점) 27
 - 2.3. 가점지표: 모집률(5점) 3
- 3. 기타사항 298
- 4. 평가 결과의 활용 28

서 식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301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07
<서식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308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309
<서식 5> 이의신청서	310
<서식 6>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311
<서식 7>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312
<서식 8> 상담일정 통보서	313
<서식 9> 내일을 위한 약속	314
<서식 10>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315
<서식 11> 복지서비스 의뢰신청서	316
<서식 12>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318
<서식 1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공통)	319
<서식 14> 훈련과정 탐색표	321
<서식 15> 구직 활동 내역서	323
<서식 16> 자영업 활동 내역서	325
<서식 17> 청년취업 인턴제 참가대상자 신청서	327
<서식 18> 청년 창직 인턴 신청서	329
<서식 19> 창직·창업 계획서	331
<서식 20> 중견인력 인턴신청서	333
<서식 21>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335
<서식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	336
<서식 2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340

<서식 24>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341
<서식 25>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342
<서식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343
<서식 27> 취업성공패키지 재개 신청서	344
<서식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345
<서식 29>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	346
<서식 30>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347
<서식 31>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	348
<서식 32>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통보서	349
<서식 33>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350
<서식 34> 이직 통지서	351
<서식 35> 민간위탁기관 점검 서식	352
<서식 36>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	355
<서식 37>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광역형)	361
<서식 3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	367
<서식 39>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	368
<서식 40> 지원금 지급 총괄표	369
<서식 41>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370
<서식 42>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371
<서식 4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372
<서식 44>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청년층)의 II유형 변경 참여동의서 ..	373
<서식 45>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	374
<서식 46> 3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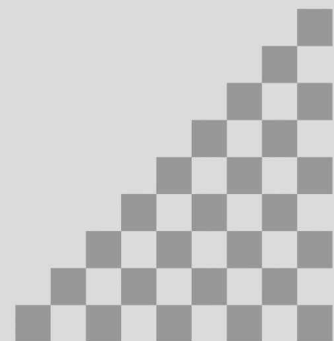
부 록

<부록 1>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379
<부록 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391
<부록 3>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3
<부록 4> 가구원수 변동 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관	399
<부록 5>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41
<부록 6>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01
<부록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403
<부록 8> 서 약 서	405
<부록 9> 출석인정일수	406
<부록 10> 인터넷·무점포 창업	407
<부록 11> ‘1인 창조기업’ 개관	408
<부록 12> 위탁약정서 및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409
<부록 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411
<부록 14>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인적자원개발과, ’15.10.21.)	478
<부록 15>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 지침	502
<부록 16>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	504
<부록 17> 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506
<부록 18> 2016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 지침	511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I '16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목표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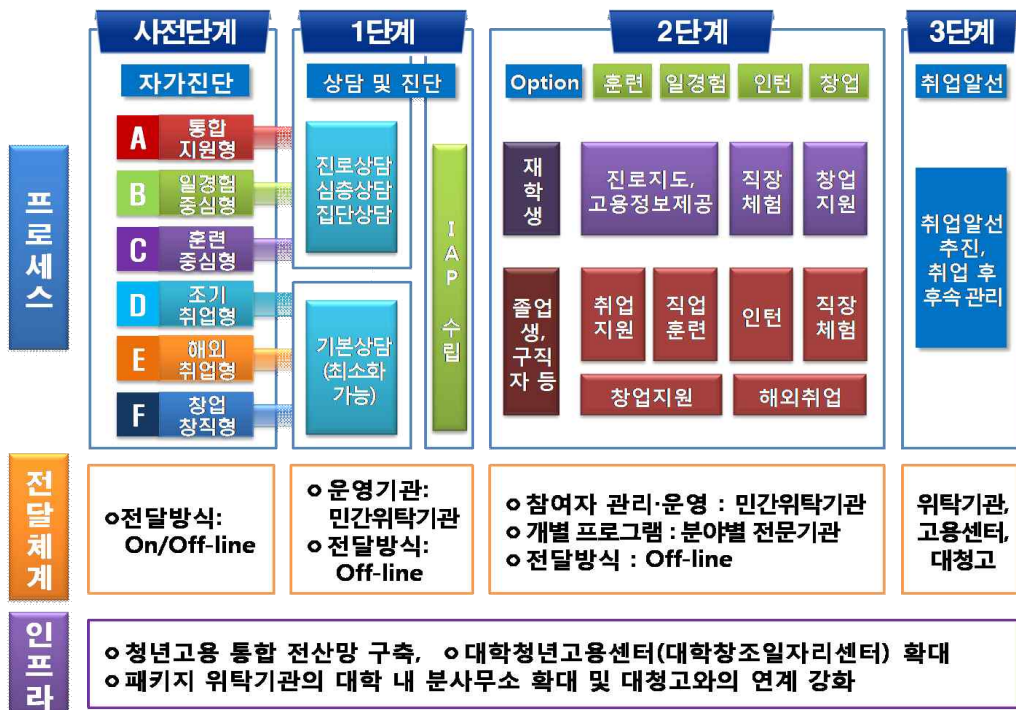
- 패키지 I유형(저소득) : (목표) 130,000명, (예산) 116,871백만원*
 - * 참여자수당 109,745백만원, 위탁사업비 7,126백만원
- 패키지 II유형(중·장년) : (목표) 40,000명, (예산) 45,913백만원*
 - * 참여자수당 24,036백만원, 위탁사업비 21,877백만원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목표) 130,000명, (예산) 147,096백만원*
 - * 참여자수당 78,117백만원, 위탁사업비 68,979백만원

2 I 유형 :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서비스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밀착사례관리 추진
 - 패키지 진행 중 밀착사례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 밀착사례관리' 체계 구축
 - * 現 사전단계에서만 장애요인이 있는지 판단, 밀착사례관리 대상 확정→
改 모든 단계에서 단기 장애요인 발생 시 밀착사례관리 대상으로 분류,
고용복지+센터 지역의 경우 사례관리협의체 적극 활용
 -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필요 시 2단계 훈련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 (상담원 재량사항)
 - * 現 1단계 6주+4주, 2단계 6개월, 3단계 3개월+3개월 →
改 1단계 6주+4주, 2단계 6개월+2개월, 3단계 3개월+3개월
- 급여수급자 중 패키지 탈락자, 반복참여자 등 패키지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밀착 사례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별도 프로그램 운영
 - * 1단계 : 집단상담-취업애로요인 파악 및 이를 반영한 IAP수립(최대 10주)
2단계 : 훈련기간 추가 연장(최대 8개월), 3단계 : 집중취업알선(최대 6개월)
 - * 단, 1회에 한해 패키지 연속 참여 허용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3·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취업 성공수당을 3·6·12개월로 전환하고 수당 인상*
 - * 기재부 협의 중으로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③ II유형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고,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전단계) 능력 및 취업의지를 기준으로 구성된 진단지를 통해 자가진단 실시 후 유형* 분류 → 취업지원경로 시 활용
 - * ①통합지원형, ②인턴중심형, ③훈련중심형, ④조기취업형, ⑤해외취업형, ⑥창업창직형
 - (1단계) 자가진단 및 참여자 상담·진단 결과를 활용한 IAP 수립
 - (2단계) 훈련중심이었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훈련, 인턴, 창업지원, 해외취업) 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개편
 - (3단계) 취업후 또는 취업실패시 사후관리 강화, 위탁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참여자의 조기취업·장기근속 유도
 - * 인문계열 등 졸업자 취업 시 가중치 부여, 취업알선기간 3개월 추가 연장 등



- II유형 중·장년층의 경우 '15년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4 전달체계 : 고용센터·위탁기관의 역량강화

○ (교육체계) 분야별, 직급별 교육체계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운영

- * 現 수준·분야 구분없이 1개 과정만 운영 → 改 분야·수준별 과정 차등
- * 교육과정(안)

수준 \ 분야	기초수급전담반	I 유형 담당	II 유형(위탁기관) 담당
신규담당자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이해, 각 담당 분야 특성파악 등		
경력 2~3년차	사례관리 이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상담·진단역량, 취업지원역량	위탁기관 점검·관리 방안
경력 4~5년차	복합장애 해결법, 홍보 전략, 노동시장 이해, case study 등	노동시장 이해, 홍보 전략, case study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노동시장 이해, 홍보전략, case study 등
패키지팀장	조직관리 등 리더십 과정, 성과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심		

- 교육은 고용센터(노동교육원)·위탁기관(고용정보원)을 구분 실시

○ (위탁기관) 위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내실화 유도

- ‘확대광역형’ 기관 선정 및 시범운영 →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 * 확대 광역형 위탁기관 선정은 본부에서 일괄 심사할 예정으로 별도계획 송부 예정
- 분사무소 설치기준을 강화*
 - * (기존) 전담자+지원자, 취업상담공간 → 改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사업소 요건(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전담자 1명 상주,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준용. 다만, 대학 또는 지자체 건물내 설치한 경우 현행유지
- 장기근속, 나은일자리 취업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개편*
 - * 기재부 협의 중으로 인센티브 확정시 별도 안내예정

⑤ 업무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 **(프로세스 재설계)** 각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를 재분석하고 고용센터, 위탁기관, 유관기관 간 역할, 업무 절차 등을 정비('16년 上)
 - * 본부, 고용센터, 위탁기관 관계자 간 「업무 프로세스 정비 TF」 구성·운영
- **(1단계)** 현재 사용중인 상담·진단 tool을 업그레이드('16년 下)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인원수에 따라 기본금 10만원 추가 지급
- **(2단계)** 훈련직종 체계 및 과정, 훈련기관 등 훈련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부분 직업상담원을 패키지 파트에 배치
 - * 훈련 종료 시점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향후 패키지 절차에 대한 안내강화
- **(3단계)** 알선 취업 시 기관평가(지방관서, 위탁기관) 가점 부여
 -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경우 노발재단, 지자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과 알선 협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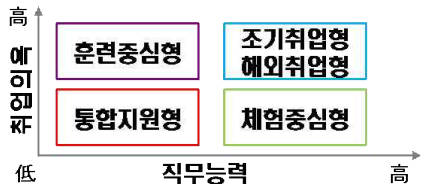
Ⅱ 대상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요

구 분	사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관리		
생 계 급 여 수 급 자 (패키지 I)	고용센터 접근성 높은 지역	2주 취업 가능성 판단	즉시 취업 가능 자	최소 2주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 동행면접 강화 구직기술·이력서 컨설팅 지역일자리센터 연계 구인 발굴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밀착 사례 관리 대상자	6주+예외적 4주 연장 단기문제해결·롤모델상담 직업·심리검사 (자존감·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척도, 일반정신건강척도 등) EAP 연계 강화 취업애로요인 (양육, 돌봄, 주거, 건강 등)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 센터·자치단체 사례관리 회의 - 취업애로요인별 특화 프로 파일링 실시 집단상담프로그램 원칙 취업애로요인 해소방안 포함 IAP 수립	6개월+2개월 내일배움카드 우선 발급 청·장년 인턴 우선 연계 일학습 병행제 지원 확대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3개월 알선 서비스 연장 지원 동행면접 원칙 구직기술·이력서 컨설팅 모의면접 강화 지역일자리센터 연계 구인 발굴 지역내 틈새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 생계급여수급자 전달자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인 1조 밀착관리 → 주1회 대면상담 필수(1단계),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과 MOU 등 지청(센터)별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 민간자원(종교단체, 기타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탐색 및 연계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1단계 기간 연장(4주) 및 참여 유예 활성화					
			근로능력 미약자 → 자치단체 이관(자활근로 배치)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 → 즉시 취업가능자 프로세스 동일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직접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고용센터 접근성 낮은 지역 사전단계 미실시	자치 단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전달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기초훈련 상담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 일자리 인턴지원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알선 동행면접 실시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고용 센터	1단계 서비스 현황 공유 집단상담 지원 수당지급, 행정 업무 지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알선 및 동행면접 지원				
일 저 소득층 및 특정계층 (패키지 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청·장년인턴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동행면접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중·장년 (패키지 I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장년인턴,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청년 (청년내일 찾기 패키지)	자가진단 취업지원 유형에 대해 자가진단 (On-Off line)	1주(상담 2회이상)~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청년인턴, 해외취업, 창업지원	3개월+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Ⅲ

'15년 대비 '16년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분	'15년	'16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물량/ 예산	18만명 / 158,592백만원	13만명 / 116,871백만원																																
참여 대상	▪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기준 소득기준 ·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tr><td>중위 소득(A)</td><td>1,624,831</td><td>2,766,603</td><td>3,579,019</td><td>4,391,434</td><td>5,203,849</td><td>6,016,265</td><td>6,828,680</td></tr><tr><td>소득 인정액 (B=A× 0.29)</td><td>471,201</td><td>802,315</td><td>1,037,916</td><td>1,273,516</td><td>1,509,116</td><td>1,744,717</td><td>1,980,317</td></tr><tr><td>보험료 (B× 0.0306)</td><td>14,419</td><td>24,551</td><td>31,760</td><td>38,970</td><td>46,179</td><td>53,388</td><td>60,598</td></tr></tabl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A× 0.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보험료 (B× 0.0306)	14,419	24,551	31,760	38,970	46,179	53,388	60,598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A× 0.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보험료 (B× 0.0306)	14,419	24,551	31,760	38,970	46,179	53,388	60,59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tr><td>중위소득 (A)</td><td>1,624,831</td><td>2,766,603</td><td>3,579,019</td><td>4,391,434</td><td>5,203,849</td><td>6,016,265</td><td>6,828,680</td></tr><tr><td>소득 인정액 (B=A×0.6)</td><td>974,899</td><td>1,659,962</td><td>2,147,412</td><td>2,634,861</td><td>3,122,310</td><td>3,609,759</td><td>4,097,208</td></tr><tr><td>보험료 (B×0.0306)</td><td>29,832</td><td>50,795</td><td>65,711</td><td>80,627</td><td>95,543</td><td>110,459</td><td>125,375</td></tr></tabl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A×0.6)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08	보험료 (B×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A×0.6)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08																											
보험료 (B×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II유형 니트족을 I 유형으로 전환																																	

구분	'15년	'16년
밀착 사례 관리	▪ 사전단계에서만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2단계 훈련기간 : 6개월	▪ 모든 단계에서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설정 가능 ▪ 2단계 훈련기간 : 8개월(+2개월)
사전 단계	▪ 사전단계 127개소 실시 (시·군통합지역 2곳) ▪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패키지 직접 실시 : 10개소	▪ 사전단계 132개소 실시 (고용복지+센터 설치지역 추가) ▪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패키지 직접 실시 : 52개소(+42개소)
패키지 부적응자 프로그램	▪ 민간위탁으로 실시	▪ 고용센터에서 직접실시 하되, 밀착사례관리 프로세스 적용
취업 성공 수당	▪ 1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	▪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지급 ※ 수당액은 기재부 협의 완료후 별도안내
특정 계층	▪ 유관기관 네트워크 없음	▪ 유관부처, 유관기관과 고용센터간 네트워크 구축(본부차원에서 MOU 추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물량/ 예산	13만명 / 119,673백만원	13만명 / 147,396백만원
시행 시기	-	▪ 자가진단의 경우 시스템이 완성되는 3월 이후 시행하되, 그 외 사항은 15년 매뉴얼 준용
참여 대상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대학·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포함 등	▪ 현행 참여대상 유지 - 단, 니트족은 I 유형으로 전환 - 맞춤형특기병은 육·해·공군으로 확대
사전 단계	-	▪ 유형별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자가진단 실시 ▪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 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 

구분	'15년	'16년
		- Off-line 및 On-line까지 확대 - Off-line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대학 창조일자리센터(現 대학청년고용센터) - On-line 및 모바일 :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접근
1단계 (상담, 진단)	- 청년층 중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 이상인 경우 1단계 운영기간을 탄력적 운영(1주 2회 이상) * 고등학교 마지막학년 재학생의 경우 취업역량평가 점수와 관계 없이 1단계 운영기간을 탄력적 운영 가능	- 현행체계 유지 - 사전단계의 프로파일링 결과 조기취업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으로 진단될 경우 1단계 상담 최소화 가능 * 조기취업형 : 1단계 상담(최소화 가능), IAP 수립 후 바로 취업알선 연계 * 해외취업형 : 해외취업지원 기관(인력공단)으로 연계 ※ 단, 이 경우에도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 이상이어야 함
2단계 (직무 능력 향상 등)	직업훈련, 인턴, 창업지원 연계 가능했으나 주로 훈련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일경험, 인턴,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 청년에게 지원가능한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등도 연계 - 인턴, 해외취업 등 각 사업의 16년 사업 계획 시행시기 및 해당 위탁기관 선정시기에 맞춰 실시 * 각 사업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실시 방안에 대해 별도 송부
3단계 (사후 관리)	- 개인별 IAP, 2단계 프로그램 참여이력 등을 감안하여 취업알선 실시 - 취업알선을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3개월 간 추가 취업알선 실시	- 현재와 같이 집중 취업알선 실시 - 청년의 경우 취업알선을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을 못한 취업알선기간 3개월 추가 연장(3개월 → 6개월)
인프라	Work-net 활용	- 기존 Work-net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청년에 특화된 전산망 구축(「청년고용통합정보망」 구축) * 현재 개발 중

구분	'15년	'16년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물량/ 예산	5만명 / 46,978백만원	4만명 / 45,913백만원																																
참여 대상	만35세~64세이하 미취업자 중 최저 생계비 250%이하	만35세~64세이하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tr><td>중위소득(A)</td><td>1,624,831</td><td>2,766,603</td><td>3,579,019</td><td>4,391,434</td><td>5,203,849</td><td>6,016,265</td><td>6,828,680</td></tr><tr><td>소득인정액 (B=A×1)</td><td>1,624,831</td><td>2,766,603</td><td>3,579,019</td><td>4,391,434</td><td>5,203,849</td><td>6,016,265</td><td>6,828,680</td></tr><tr><td>보험료 (B×0.0306)</td><td>49,720</td><td>84,659</td><td>109,518</td><td>134,378</td><td>159,238</td><td>184,098</td><td>208,958</td></tr></table> ※ 직장가입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 결정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 (B=A×1)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보험료 (B×0.0306)	49,720	84,659	109,518	134,378	159,238	184,098	208,958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 (B=A×1)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보험료 (B×0.0306)	49,720	84,659	109,518	134,378	159,238	184,098	208,958																											
사업 방식		-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연구용역 실시('16년 上)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16년 중, 여성부 공동)																																
전달체계 : 고용센터, 위탁기관																																		
교육 체계	교육체계 없음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상담원을 위한 교육체계 설계('16년 上, 연구용역 실시) - 분야별,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운영(고용정보원 활용)																																
평가 체계	(고용센터)취업률, 모집률, 중단률, 연계율, 밀착사례관리 평가 (위탁기관)상대평가 방식	(고용센터)취업률, 모집률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 (위탁기관)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 * 위탁기관 평가 계획은 별도 송부																																

구분	'15년	'16년
위탁 기관 운영	▪ 광역형 실시 ▪ 분사무소 설치기준 없음 ▪ 1인당 관리인원 150명 ▪ 인센티브 : 나은일자리, 3개월 · 6개월 근속시 지급	▪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광역형 실시 * 확대광역형 기관 선정계획은 별도 공지 ▪ 분사무소 설치기준 강화(직업안정법 상 요건) * '16년도에 신규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적용 * 단, '15. 12. 31일 이전에 설치된 분사무소의 경우 '16. 6. 30일까지 시행 유예 ▪ 1인당 관리인원 120명 ▪ 인센티브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12개월 근속 신설 등
업무간소화 등		
업무 프로 세스		▪ 업무 프로세스 정비 TF 구성 · 운영 ▪ 상담 · 진단 tool 업그레이드 ('16년 上) ▪ 알선취업에 대한 가점 부여
전산 인프라		▪ 워크넷-HRD-net 연계 강화 ▪ 워크넷-DBrain 연계 추진
워크숍, 간담회 등		▪ 워크숍, 간담회, 설명회 등 수시 실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 ◆ '16.1.1 이후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적용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2. 실시 시기 및 지역

- '14.5월부터 전국 85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
-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 중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에도 '15.7월부터 사전단계 적용
- * 고용센터(출장센터 제외)가 설치된 전체 지역(광역시의 경우 관할 '구'를 모두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용센터 소재 시·군에서 시행)

3. 단계별 운영 방안

○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우선 의뢰 대상)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는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대상에서 제외 단, 조건부과제외 사유 및 조건제시 유예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실시

- 개인·가구 여건 등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는 데 있어 예외사유 불인정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 사전단계를 2주(초기상담일 기준)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초기상담,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자활경로 설정

* 참여자의 기초 여건 진단,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자활경로 설정

- ▲ (즉시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1단계 2주 진행

-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단계 특화프로그램 6주 제공, 예외적 4주 연장가능

- ▲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 후 지자체 재의뢰 시 재의뢰사유, 그간의 상담이력, 진단회의 결과 등을 함께 지자체로 송부
 - * 지자체는 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I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자치단체 기초 상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시 서비스 진행 내용, 사전단계 불참 시 제재사항, 사전단계 종료 후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내용(개인·가구여건 파악, 그간 자활사업 참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공유
- **(고용센터 우선 의뢰)**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후 고용센터 의뢰 실시
 - * 우선 의뢰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활역량평가 불필요
 - ** 행복e음 시스템 상에는 자활역량평가란에 “0”점 처리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가급적 고용센터 오리엔테이션 당일 수급자와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고용센터 의뢰자 조건 이행 여부 처리 방안

(Q) 자치단체의 고용센터 의뢰일(전산의뢰)과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일 간의 차이(gap)가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처리 방법은?

* (예시) 4월 25일에 지자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가 5월 6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4월 생계급여 처리 방안

(A) 원칙적으로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조건이행 여부 판단 후 생계급여 지급 처리

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등 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조건이행으로 처리

②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거나, 연락 두절로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용센터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철저히 업무 전산망에 입력·관리

* 오리엔테이션 참여 시점마다 업무 전산망에 입력하되, 매월말(늦어도 익월 5일 까지) 해당 월 참여자에 대한 일제 정리 필수

○ (의뢰 취소) 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였으나, 실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의뢰취소'로 처리

- 고용센터는 2회 이상 사전단계 참석 요청 통보 후, 미참여자에 대해 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산망 상 참여자 '보류'에 등재한 이후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게 의뢰취소 요청자 정보 공유 필수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 토대로 행복e음 전산에서 의뢰취소 처리

- 의뢰취소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의뢰한 것으로 보되, 실제 사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는 '의뢰취소자'의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뢰취소 결과에 따라 조건불이행 처리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① 사전단계 운영 원칙

- **(운영 기간)** 원칙적으로 초기상담일 이후 2주간 운영
 - 초기상담일 이후 2주 내에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 완료
 - * 사전단계 운영 기간 산정에 오리엔테이션일은 포함되지 않음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이후 「초기상담」,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필수
 - * 오리엔테이션 포함 최소 3회 서비스 제공 필수
- ①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을 통해 1차 자활경로 설정
 - i)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ii)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 ② 1차 자활경로 설정 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상담*(직업선호도 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 회의를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 참여자의 개인·가구 여건 등에 따라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선호도 검사(S형)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
- 사전단계 상담·서비스는 3~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는 사전단계 상담내용·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사전단계 진행 상황 등 공유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도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기초상담 내용 및 서비스 진행 관련 의견 제시, 고용센터와 공유

②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결과에 따라 1차 자활경로 설정

-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 의사가 있는 자는 취업 준비도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즉시 취업성공패키지 배치자 판단 기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가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이 미비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되는 자는 기초 여건 진단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참고

기초 여건 진단 평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파악
- 기초 여건 진단표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기초 여건을 진단하여, 평가점수가 18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 기초 여건 진단표 >

항 목	양 호	의 심	부 족
1. 수리능력	3	2	1
2. 인지능력	3	2	1
3. 대인관계	3	2	1
4. 의사소통·표현능력	3	2	1
5. 외모·위생	3	2	1
6. 문해력	3	2	1
7. 일상생활 능력	3	2	1
8. 사회생활 능력	3	2	1
9. 감정·정서표출	3	2	1

기초 여건 진단 평가 점수

점

- **(최종 자활경로 설정)**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 검사 상담(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취업준비도 평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최종 상담을 실시하면서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가 취업준비도 평가 실시
 - * 취업준비도 평가는 ‘구직욕구(45점)’, ‘건강상태(30점)’, ‘가구여건(25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 활용

-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아래의 기준을 적절히 활용
- 평가 점수 활용법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가능자로 평가 가능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3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평가 가능
 - * 다만, ① 건강상태 항목 점수가 12점 이하인 경우 또는 ② 가구여건 항목 점수가 5점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참고

취업준비도 평가 지표

① 구직욕구 : 45점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는 것 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2.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3.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4.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1	2	3	4	5
5. 취업관련 행사나 채용박람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6.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취업하겠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② 건강상태 : 30점

항 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2	4	6	8	10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2	4	6	8	10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2	4	6	8	10

③ 가구여건 : 25점

세부기준	평가점수
1. 취업장애요인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5
2. 취업장애요인이 있으나 개선을 통하여 6개월 내 취업이 가능한 사람	15
3. 취업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5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합계	점

■ 취업준비도 평가 시 유의 사항

- 취업준비도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 경로 설정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파일링 기준 등에 활용되므로 가급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구직욕구 항목) 전담자가 직접 참여자를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상태 항목)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평가 시 알콜(약물) 중독, 우울증, 심리불안, 감정 조절 장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 필요시 기초 여건 진단 평가 도구 활용
- (가구여건 항목)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가구여건이 단기간(6개월)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장애요인 개선 여부 판단
 - * 주요 취업장애요인 :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부양 등으로 인하여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 (진단회의 등을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 진단회의 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도 참석

■ 진단 회의 절차

○ 개최 시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7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구성

- 고용센터소장(취업성공패키지과장)(위원장),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 * 직제상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과장이 없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지, 참여기간 중 제공한 서비스 내용, 상담 내용, 취업장애요인 해소사항, 직업선택도검사 해석결과 등을 진단회의에 제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의견,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센터내 사례관리협의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활경로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진단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같음

- (최종 자활경로 설정 결과) ❶ 즉시 취업가능자, ❷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❸ 자치단체 이관자의 3가지 유형으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❶ (즉시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 사전단계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서비스를 생계급여수급자가 사전단계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③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자치단체 이관자 사유는 ①취업의사 없음, ②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가구여건, ④기타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사유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입력

- (결과 입력) 자활경로 설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영

* 종합의견란에 판정결과, 이관 사유, 필요한 서비스, 기타 의견 등을 상세하게 입력 (고용센터 담당자 및 자치단체 담당자 공동 기재)

** 자활경로 설정 결과 통보 시 판단에 활용된 자료(취업준비도 평가표, 서비스 제공내역 등) 및 그간의 상담이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

3] 사전단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3]-1. 오리엔테이션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자치단체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목적과 참여자 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간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시 '내일을 위한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는 재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도 재작성 불필요)

○ 향후 추진일정,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내용 등 설명

3]-2. '사전단계'서비스 참여 통지

○ 오리엔테이션 당일 최초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

- 오리엔테이션 실시 당일 1차 상담일정 통보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최초 상담(초기상담)은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
- 상담완료 후에는 다음 상담일을 정하고, 상담일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제공
- 지정된 일자에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촉구 통보서를 발송
- 통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환수)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울러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 안내

※ (문자 메시지 예시) 000님 고용센터의 11/15일 상담 불참에 따른 1차 통보서 발송
 - 11/30까지 상담(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홍길동

- 1회차 불참시에는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참여자 방문 또는 면담 실시 요청
- 참여자가 상담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사실을 기록하여 참여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매 상담일에 불출석한 경우 기록)

3-3. 초기상담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가족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장애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3-4.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 초기상담 이후, 2회차 심층상담(1회 60분 이상)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의욕·역량 및 취업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등을 중점 파악
 - 심층상담(2회차 상담)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진단하여 1차 자활경로 설정 가능
 -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 2회차 심층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 사전단계 기간 동안 추가 상담 가능(상담 횟수 및 시간 별도 제한 없음)

3-5.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를 활용한 상담 실시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취업의욕 및 동기 제고를 위한 상담 제공
 - * 직업선호도검사(S형)는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20분 소요)
 - ↳ 직업흥미 육각형의 모형이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흥미육각형 모형의 모양이 일관도와 변별도가 높을수록 안정된 진로선택 및 직무적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가능
 -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강점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상담 진행

4 서비스 중단 및 참여 제한, 수당 지급

4-1. 중단

-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통지 및 자치단체 이관
 - ❶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상담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❷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중단조치 할 수 있음을 통지한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단 처리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됨과 아울러 중단 처리시 수급권 중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중단 처리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건 불이행으로 보아 급여 중지 처리(근거자료는 고용센터 서비스 중단 통지로 같음)
- 중단 처리시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긴밀히 협의
 - * 중단 처리 시 자치단체에 중단 사실 통보와 함께 그 간의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이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단체와 공유

4-2. 취업 종료

- 사전단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종료 처리
- 취업으로 종료된 자는 취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사전단계 재참여 제한

4-3. 참여제한

- 자치단체 이관자·중단자는 이관일·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센터로 재의뢰 금지
 - 다만, 취업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협의 후 참여 조치 가능

④-4.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 사전단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석한 날도 수당지급일수에 포함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자도 참여수당 지급
- 참여수당은 사전단계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단계 서비스 종료 후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중도탈락자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⑤ 사업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부·복지부) 매월 고용센터 의뢰 현황(조건부수급자 규모 대비 의뢰율 현황 등) 및 지자체 재의뢰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및 지자체 자활사업 참여 실적 등을 토대로 정기 점검회의 개최
 -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 지속
- (지자체) 개별 수급자에 대해 고용센터 의뢰현황, 기존 자활사업 참여 유형, 지자체 재의뢰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 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복지부 보고, 복지부는 고용부와 추진실적 공유·공동 관리
- (고용센터)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상담 이력 등 사전단계 진행 현황을 해당 지자체와 공유,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에 대한 집중 취업지원 실시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① 추진배경

-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상황

*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배치지역 중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15.7월): 51개 시군

-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중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직접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 완결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

② '15년 시범운영 현황

- 운영시기 : '15.7월 ~
- 운영지역 : 10개 시·군(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중 자립상담사 배치지역)
 - 강원권(철원군), 경남권(합천군), 경북권(청도군), 전북권(임실군·고창군), 충남권(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충북권(영동군)

③ '16년 운영지역 확대

- 운영시기 : '16. 3월(예정)
- 확대지역(42곳) :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중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배치 시·군
 - ⇒ 총 52개 시·군 (제외: 고용복지+센터 4곳, 제주자치시)

④ 세부 운영방안

- ❖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서비스 제공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우선 전담
 - * 전담 업무량을 감안, 고유업무(자활역량평가 및 자활경로 설정 등) 조정
- ❖ 수당 지급,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행정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지원

- **(대상자 발굴)** 생계급여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취업대상자 발굴 및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 제공
 - * 취업성공패키지 II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계
- (자립지원 상담사) 생계급여수급자 등 해당 참여자의 신청서 접수(관할 고용센터로 Fax 등으로 송부), 구직표 전산등록, 일정안내 등
- (고용센터 담당자) 신청서 접수 → 전산 등록 후 배정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주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단계: 상담)**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전담 제공 및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진행
 - * (고용센터 담당자)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단계별 상담도구 등 운영 노하우 공유(직업 심리검사 결과 접수 및 해석 등), 집단 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취업수당 지급
 - **(2단계: 훈련)** 기초 훈련 상담, 고용센터 직업훈련과 연계 및 자치 단체 실시 훈련·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지원
 - * (고용센터 담당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안내 및 카드 발급, 훈련 성실참여에 대한 월별 과정 관리(유선 및 출석상담) 등
 - **(3단계: 취업알선)**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 (고용센터 담당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만남의 날 등 정보 제공,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 단계별·담당자별 세부 내용 >

구분	근무지원 시·군(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단계 상담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중심	1단계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 집단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2단계 훈련	- 기초적인 훈련 상담은 자치단체에서 수행 후, 고용센터 연계 -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의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실시
3단계 알선	워크넷 및 지역일자리지원센터등과 연계한 취업알선(동행 면접 지원)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지원

○ 기타사항

- 자활대상자 불이행 통보 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중단처리 절차 준수 및 지자체에 불이행 관련 문서 통보는 고용센터에서 수행
- 세부 전산 활용방법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구별 조건부 수급자 수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방안 조정 가능
- 기타 기본적인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매뉴얼** 준용

[5] 행정사항

- 고용센터 담당자는 매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배정된 서비스 대상자의 진행 상황 (패키지 단계별 진행 현황, 특이사항 등)을 문서(또는 전산)로 공유
- 운영실적 등은 분기 단위로 본부에 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운영실적(단위: 명)

고용 센터	운영 지역	참여인원			추진현황				발굴방법	
		계	조건부 수급자	기타	1단계	2단계	3단계	기타	사통망 (직접)	기타**
								중단1 · ·		문의과정 2 · ·

* 기타 구분 : 취업, 창업, 전출, 중단, 취소 등

** 기타 구분 : 고용센터 직접 배정, 지자체 통합사례 발굴, 문의(전화·타업무상담)과정, 유관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센터, 자활센터 등) 협조 등

- 특이사항, 애로·건의사항 등

참고1 취업패 사전단계 실시지역 및 자립상담사 취업패 운영 지역

지역	고용센터(85)	사전단계 실시 (132)	취업패 운영(52)
서울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	서초구	
	서울강남	강남구	
	서울동부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울서부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강서	강서구	
	서울북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북부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부	서구	강화군
경기	부천	부천시	
	김포	김포시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구리	구리시	
	남양주	남양주시	
	동두천	동두천시('15.7)	철원군(시범)
	고양		고양시
	파주	파주시('16년)	
	수원	수원시	
	용인		용인시
	화성	화성시	
	성남		성남시
	경기광주		광주시
	이천		이천시
	안양	안양시	하남시, 양평군
	광명		여주시
	안산		군포시
	시흥		시흥시
	평택(안성출장)		평택시
	오산	오산시('16년)	안성시
강원	춘천	춘천시	
	강릉		강릉시
	속초		속초시
	원주	원주시	
	태백		태백시
	삼척		삼척시
	영월		영월군
부산	부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동부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북부	북구	기장군
		사상구, 강서구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취성패 운영
경남 울산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구.마산시)	함안군, 창녕군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김해		김해시	
	밀양출장		밀양시	
	양산	양산시		
	진주		진주시	하동군, 합천군(시범), 거창군
	통영		통영시	
	거제		거제시	
대구 경북	대구		중구, 수성구	
	대구강북		북구	
	대구동부	동구		
	경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시범)
	대구서부		서구, 달서구, 남구	
	대구달성	달성군('16년)		
	칠곡	칠곡군('15.7)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경주	경주시		
	구미	구미시		
	김천		김천시	
	영주		영주시	
	문경		문경시	상주시
	안동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광주 전북 전남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담양군, 화순군
	광주광산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전주		전주시	임실군(시범), 남원시
	정읍	정읍시		
	익산	익산시		
	김제	김제시('16년)		
	군산	군산시		고창군(시범), 부안군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	해남군('15.7)		강진군, 장흥군
	순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대전 충북 충남	여수		여주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금산군
	공주		공주시	세종시, 계룡시(시범), 논산시
	청주(옥천)	청주시	(구.청원군 포함)	괴산군, 영동군(시범)
	천안	천안시		예산군(시범), 아산시, 당진시
	충주	충주시		
	제천	제천시		단양군
	음성	음성군('16년)		
	보령	보령시		홍성군·청양군(시범), 서천군, 부여군
	서산	서산시		태안군

참고2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통보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활근로 참여기간 기준 통보

1. 2016년 자활지침에 따르면 '1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활근로 참여 기간 기준을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장),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적일자리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보건복지콜센터장, 중앙자활센터원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립지원과장 2015. 11. 3.

협조자

시행 자립지원과-792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3079 팩스번호 044-202-3950 /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 기준

1. (공통) 원칙적으로 최대 36개월, 자활근로 유형 변경 시 최대 60개월 참여 가능

<유형변경 산정 방법>

- ◆ 유형변경은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상호 간 유형이 변경된**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형인 A 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인 B사업단으로 이동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동일한 사업단(A)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단(A)이 매출액 증대로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가 인턴도우미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 **인턴도우미 형 간의 이동은 유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상호 간 이동은 인턴도우미 형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유형변경이 아님

2. (공통)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최대 참여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다만, 최대 참여기간 종료 후 통장 가입기간 미도래로 지속 참여하는 경우에도 통장 종료해지 하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종료

<통장 가입자의 자활근로 참여기간 산정 예시>

- ◆ A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13.10월부터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음. 이 경우 A씨는 '16.10월까지 통장유지와 함께 자활근로 참여 가능하며, 통장 만료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자활근로 종료됨
- ◆ B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내일키움통장 만료기간이 2년이 남아 '16년에도 자활근로 참여. 그러나 '16년 자활근로 참여도중 개인사정으로 통장 해지. 이 경우 B씨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하게 됨

3.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 참여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 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인해 **지자체로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 기간 재산정**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로 취성패 사전단계로 의뢰하게 되는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 의뢰
- * 참여기간 종료된 경우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4.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역량평가 재 실시**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 재배치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참여기간 관리
- (유형 다변화)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기능 다변화) 인천 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Ⅲ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 즉시 취업가능자는 일반 저소득층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한 자 등은 **밀착 사례 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① 생계급여수급자 전담반 운영

- 생계급여수급자 밀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연간 관리인원 상한을 100명(신규참여자 기준)으로 제한
- 사전단계 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본단계까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의 효율성 및 수용성 제고

② 생계급여수급자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특화 서비스 제공

<1> 운 영

- 수급자 1인에 대해 **고용센터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총괄담당은 고용센터)
 - 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 사전단계 → 본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고용분야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원이 제공,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등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서비스는 자치단체 담당자와 역할분담
 -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시군구 사회복지서비스, 자치단체 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계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단계별 서비스

□ 1단계 : 고용·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취업지원계획 수립

- (운영원칙) 1단계는 개인의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단기문제해결상담, 롤모델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상담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 (운영기간) 최소 6주 ~ 최장 10주까지 운영가능
 - 주 1회 이상 대면상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가구여건 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1단계 중 참여 유예 가능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 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 (고용센터+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 그간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 참여 이력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로를 파악하여 복합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상담내역 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전산 입력
- (1단계 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 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2단계 : 직업능력개발 및 직장적응력 증진

- 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우리부 훈련 뿐 아니라 자치단체 및 타부처 훈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청·장년 인턴 연계 활성화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알선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 지원 가능
 - * 취업알선 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청(센터)별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 기관과 MOU 체결 등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
 - * 종교단체, 기타 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민간자원 탐색 및 연계 활성화
-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구인 발굴 및 지역 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 복지 네트워크 예시(부산시)

- (건강)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건강센터,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의료) 이랜드 복지재단, 부산의료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 (아동 양육·학습)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 센터
- (청소년 자녀지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방송통신고 등
- (신용회복 관련) 광역자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사, 생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등

참고

2인1조 밀착관리 서비스 가이드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 의뢰	- 고용센터 우선 의뢰자 기초상담 자료 공유 - 우선의뢰 예외자 사유 및 현황 공동 관리	- 생계급여수급자 초기상담(개인·가구여건 파악 / 자활사업 참여 이력 / 복지서비스 수혜 등) - 즉시 취업가능자 및 애로요인자 등 고용센터 우선 의뢰
	- 고용센터 OT 참여 공동연락 체계 → OT 불참자, 연락두절자 등 공동 관리 (고용센터) OT불참자 참여 통지 → (자치단체) 불성실 참여자 조건 불이행 및 급여중지 조치	
사전 단계	- 초기상담 : 자치단체 초기상담자료 활용 - 심층상담 통해 즉시 취업가능자 및 자치단체 조기 이관자 일차적 판단 - 직업심리-선호도 검사 실시 -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의뢰 현황 등 공유 - 생활문제 파악 및 취업가능성 진단	- 고용센터 상담내용 공유 및 일차적 판단 의견 제시 - 참여자 애로요인별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 이행특례 등 자립지원 제도 안내(영상) - 자치단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및 지속 관리
	2주내 1)즉시 취업가능자 / 2)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 3) 근로미약자(자치단체 이관) 구분 - 고용센터 전담자 및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협의 판정에 기초하여 결정	
패키지 <1단계>	-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EAP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진단(개인 및 가구진단)	- 복지요구 진단 및 설계 -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복지 자원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등 연계 협업)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주1회 이상 대면상담(센터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필수 제공 - 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센터 전담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 EAP 상담사) 및 IAP 수립	
<2단계>	- 카드발급 / 훈련참여 - 월 1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패키지 참여 유예 적용 - 애로요인 해소 관련 자치단체 연계 - 민간사회복지자원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자치단체 및 민간 훈련 발굴·협업 - 고용센터 대면상담 지원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패키지 진행 중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자 및 참여 유예자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적극 연계
<3단계>	- 생계급여수급자 알선강화(동행면접 원칙) - 구직기술 및 이력서 컨설팅 - 구인발굴 - 모의면접 - 지역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 탈수급 현황 관리 확인	- 지역일자리센터 연계한 알선 적극 지원 - 필요시 생계급여수급자 직접 알선 지원 - 구인발굴 - 중단자 등 불성실 참여자 제재 확행 (조건 불이행 및 급여 중지 조치) - 고용복지연계 업무 내역 고용센터 보고 - 탈수급 현황 관리 및 자립지원제도 안내

서식1

성실 이행협약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성 실 이 행 협 약 서

참여자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매회 진행되는 상담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중단조치’될 경우 시·군·구청으로 통보되어 ‘생계 급여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6. 프로그램 참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또는 ‘변경’)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고용센터 상담자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 충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3

상담일정 통보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일정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상담일정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상담'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중단자로 시·군·구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4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상담일정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에도 지정된 상담일에 불참하였기에 참여를 촉구합니다. 2. 위 지정된 상담일시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시·군·구청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최초상담일	20 년 월 일		
중단일	20 년 월 일		
중단사유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지원을 ‘중단’ 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중단일’부터 향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 중단자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며, 생계급여 중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전단계 참여기간	최초 상담일		20 년 월 일		
		출석일수		일		
		진단평가일		20 년 월 일		
	⑥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7

사전단계 평가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평가표					
참여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전단계 참여현황	참여기간	20 . . . ~ 20. . . (일)		
		평가일	20 년 월 일		
최종 평가결과					
☐ 즉시 취업가능자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 자치단체 이관자		자치단체 이관 사유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			
		☐ 취업의사 없음 ☐ 본인의 건강상 이유 ☐ 가구여건 ☐ 기타()			
종합의견					
※ 사전단계를 통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역, 가구상황, 건강, 취업장애 요인, 취업의지, 취업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 자치단체 이관자에 대해서는 이관 사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록 - 관련 상담자료, 평가내용,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 첨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 ○○○에 대해 위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경로를 설정 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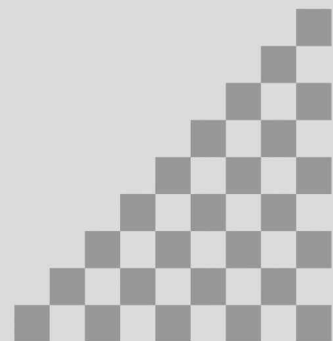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참여대상자 선정



I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참여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저소득층)

-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대상자는 “만 18~64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 1.1. 또는 7.1.부터 참여 가능(최종 2개 학기 재학중인자 참여 가능, 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FTA 피해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1.1. 생계급여수급자

- ①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허용

- * ①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②대학생, ③ 장애인, ④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⑤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조건부과제외자의 조건부수급자 전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1.9.8)으로 월 60만원 미만 소득, 주 22시간 미만 근로 등 불안정 취업으로 인해 조건부과제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가능('12.1.1 시행)
- 따라서, 자치단체(자립 상담사)와 협조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노력할 필요

- ②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불가. 다만,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허용

* 패키지 참여대상자가 아님에도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취업의사와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여 참여여부 결정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제외자, 자활특례자, 취창업수급자 등

- ③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 여성 등 보장시설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 보장시설기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추천을 받아 참여



전산의뢰수급자 이외의 참여자 등록

⇒ 조건부수급자로 전산의뢰 되지 않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전산 등록시 “비의뢰수급자”로 등록 관리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근로무능력자의 참여 제한

⇒ 생계급여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를 의뢰·추천을 받아 참여시 취업의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미참여 조치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A×0.6)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08
보험료 (B×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1.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1.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이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1.5.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1.6.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1 변경내용

28의3. 영주(F-5)

-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1.12.15 시행)으로 기존 “거주(F-2-가)”가 “결혼 이민(F-6)”으로 변경됨.

- 다만,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F-2”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결혼이민자는 “F-6”로 갱신되기 전까지는 “F-2” 체류자격을 결혼 이민자로 간주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 따라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평가기준」에 준하여 ‘자기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기초 대화’를 질문하여 답변할 능력이 있는지 전담자가 질의하여 판단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

- 다만,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패키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어능력 함양 등과 같은 다른 연계 서비스 수료 후 참여하도록 안내 → 유예제도 적극 활용

<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평가기준

등급		평 가 기 준
초급	1급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있는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1.7.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1.8. 니트족(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만 18~34세 이하)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부록 5)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1.9.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만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법상 3급 이내 장애인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1.10.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음의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1.11.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①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저소득층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 임대사업자는 취업의사가 없거나 단순히 직업훈련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작용이 많아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임대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다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의 영세 자영업자 요건(연매출 8,0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함
 - * 사업참여자 유형 등록시 차차상위 이하자로 등록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참여 불가

1.12.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13.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3학년 또는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도 포함

1.14.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1.15.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 '15. 12월부터 해·공군으로 확대

1.16.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2.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 (청·장년층)

2.1. 청년층(만18~34세 이하)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16년 2월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16.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② 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 고등학교·대학(원) 등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 1. 1일 또는 7. 1일 부터 참여 가능(최종 2개 학기 재학중인자 참여 가능, 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 단,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기간만료로 종료처리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 허용
 - * 주간대학 휴학생은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③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하되, '16년 2월말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16.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 기타 사항은 패키지 I의 영세자영업자 유형의 기준을 준용(비영리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I 유형으로만 참여가능)

5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6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 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참고자료 >

맞춤형특기병 제도, 우리부(취업성공패키지) 및 병무청 협업추진 사항

□ 개 요

- 병무청(육군) 맞춤특기병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통해 고졸 이하자를 입영전 기술훈련 후 특기병으로 선발하고, 제대 후 취업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13. 11. 8 이래, 협업 추진 중)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7~24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검사 마친 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의 비진학자
-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제공
 - 직업훈련 이수자는 특기병으로 선발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혜택 제공
 - 당장 취업을 원하는 훈련이수자는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 부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대 후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제대 후 3개월내 취업성공서 저소득층인 I 유형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우리부 역할 및 추진상황

- 취업성공패키지 틀을 활용하여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 12월말 현재 맞춤형기병 지원을 위한 패키지 참여자 총 749명
※ ('13) 22 → ('14) 409 → ('15) 318, 계 749(Ⅰ 유형 248, Ⅱ 유형 521)
- '16. 2월 전역예정자('14년 참여자 3명)에 대해 희망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14년 육군대상 실시 후 '15. 2월부터 전군(해·공군까지) 확대 운영 중

☐ 소요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예산 활용

☐ 기대효과: 취업지원과 병역의무 이행간 협업을 통해 국가기능인력 양성, 소외계층 지원 등 효과 도출

2.2.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 (B=A×1)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보험료 (B×0.0306)	49,720	84,659	109,518	134,378	159,238	184,098	208,95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06(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①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기타 사항은 패키지 I 의 영세자영업자 유형의 기준을 준용

③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Ⅱ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1. 참여대상자 모집 및 추천

1.1. 기본 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I 은 고용센터, II는 민간위탁기관 전담
- 민간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고, 위탁기관이 모집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배정이 원칙
 - * 위탁기관이 모집한 참여자는 위탁기관 담당자가 워크넷에 직접 입력하되, 고용센터에서는 자격요건 등 확인 후 승인하고 해당 위탁기관에 배정
- 자치단체·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자 적극 모집 유도

➡ 고용센터에서는 유관기관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를 적극 모집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위탁기관이 참여자 모집을 조건으로 고교·대학(원), 훈련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약정해지 등 강력 조치(약정서상 약정해지 사유에 명시)

1.2. 모집 및 홍보방법

- 유관기관 추천 활성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 개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자치단체 복지 및 일자리 관련 담당자와 월 1회 정례 간담회 개최

고용센터-자치단체의 유기적 업무 협력 강화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자립 지원 직업상담사 배치·운영 시작
 - 배치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가 증가하고 취업 및 탈수급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
 - * 배치규모 : ('11년) 48개 시군구, 48명 → ('12년) 93개 시군구, 100명 → ('13년) 169개 시군구, 177명 → ('14년) 171개 시군구, 178명
- '16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1유형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자립 지원 직업상담사)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자치단체 자활업무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최소 월 1회 이상 업무 간담회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차상위 계층 이하, 청·장년층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계 강화
- ➡ 고용센터에서는 자치단체(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센터로 의뢰된 기초수급자의 취업지원 강화

-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유관기관과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 유형별 대상자 추천 기관 예시 >

- ▶ 조건부수급자 : 자치단체(복지업무담당)
- ▶ 차차상위계층 이하 : 자치단체(일자리업무담당)
- ▶ 비주택거주자 :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등
- ▶ 북한이탈주민 : 자치단체(거주지보호담당관)
- ▶ 결혼이민자 : 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공사, 한마음금융 등
- ▶ 위기청소년 : 청소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상담센터, 쉼터
- ▶ 여성가장 : 여성단체, 새일센터

○ 지역·참여대상 특성을 고려한 홍보

- 지역·참여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청별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실시
 - ※ 청년층은 온라인 중심, 중장년층은 오프라인 중심 홍보 실시

- 자치단체, 대학, 훈련기관 등 유관기관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추천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포스터 배포
- 지역신문 등에 (지)청장 또는 센터소장 명의로 기고하거나, 취업성공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 예시 >

- ▶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신문기획기사 및 칼럼, 잡지, 무가지 등 활용
- ▶ 다중매체 활용 홍보: 버스, 지하철, 센터홍보전광판, 유선방송 등
- ▶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배너광고(취업포털사이트), SMS·이메일·뉴스레터 발송, 플래시 애니메이션·홍보동영상 제작 활용 등, 실직·구직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
- ▶ 현수막, 공고문 등 홍보물 게재: 다중이용장소, 관공서, 광고물 게시대, 집합건물 게시판 등, 구직자와 취업애로계층이 많은 지역과 공간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집중 홍보 실시
- ▶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다중집합행사 활용 홍보: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집합행사시 안내홍보장 마련 후 직접 홍보 실시

1.3.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절차

①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선별 : 추천기관

- 유형별 요건에 따라 참여대상자를 추천기관 내에서 선별한 후 추천대상자와 유선 등을 통해 근로능력 및 참여의사 등 확인

② 추천서 작성·통보 : 추천기관 → 고용센터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추천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통보 (팩스·우편·전자문서 등 이용)

※ [서식 3]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양식 참고

③ 추천서 접수 및 대상자 연락: 고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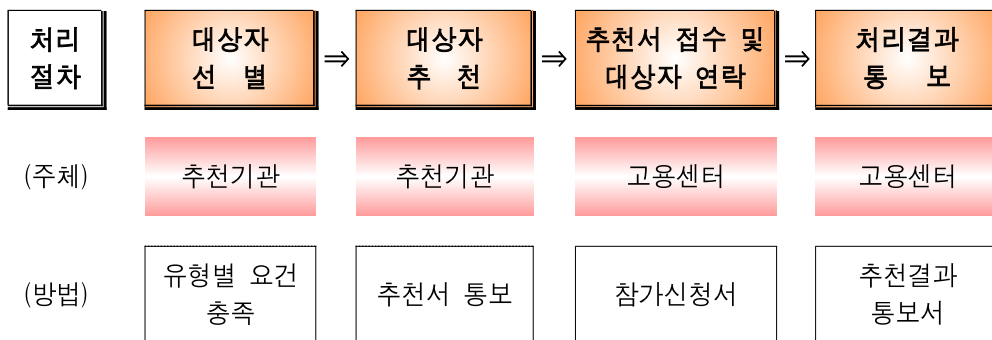
- 추천서 접수 후 추천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자세히 안내하고, 초기 상담일 지정

④ 추천 처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추천기관

- 지정된 초기 상담일 이후 최종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추천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

※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양식 참고

<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 절차 >



2.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

2.1. 개 요

- 참여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내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참가신청서 접수 시, 관련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판단하여 참여대상자에게 7일 이내 통지

2.2. 참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패키지 전산망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On-Line)** 유선으로 참여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 초기상담 일정과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
 - ※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도 초기상담 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처리
- **(Off-Line)** 참가신청서(서식 1)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관련 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기 보다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 받아 신청서를 보완한 후 접수 처리
 - ※ 접수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서류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 기재사항은 즉시 보완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 하기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도 작성토록 안내

2.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 신청인에게 패키지 주요 내용과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취업지원 일정 등을 안내
- **(직업훈련)** 신청자 중 직업훈련 희망자가 많고, 훈련수료 후 다시 패키지에 참여 하는 자가 많으므로 신청서 접수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① 이미 일반 내일배움카드(200만원 한도, 자부담 30~50%)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좌 전환 가능*
 - * HRD-Net에서 처리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시스템 담당) 공문 조치 요청
- 이 경우 기 발급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1년) 내에서 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 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200~300만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용 가능
 - ※ (예시) 먼저 일반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한 A가 패키지에 참여시 잔여 8개월간 250만원 사용 가능

- ② 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훈련이 종료(수강포기 포함)된 경우 전환
- ③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도 추후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계좌중지' 처리됨에 유의 →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적용
- ④ 패키지 사업 대상자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중단,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처리되었을 경우 계좌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일반 계좌로 전환 가능
 - ※ 이 경우 일반 계좌 한도(200만원) 내에서 사용 가능
-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횟수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최대 2년(생계급여수급자) 또는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참여할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
 - ※ 참여횟수별 재참여 제한 기준: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편) 참조

2.4. 참여대상자 공통기준 및 제외기준 확인

□ 참여자 공통기준 확인

- ① (연령)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저소득층 : 만 18세 ~ 64세 이하
 - ※ 위기청소년은 저소득층으로 분류, 만 15세 이상 ~ 24세까지 참여 가능, 맞춤형기병은 17세부터 참여 가능
 - 청년층 : 만 18세 ~ 34세
 -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나이 무관
 - 중장년층 : 만 35세 ~ 64세 이하

② **(소득)** 저소득층·장년층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고, 청년층은 소득요건 확인 불요

- 저소득층(I)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 : 소득요건 없음
- 장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가구원 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포함 또는 제외

포 함	❶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❷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반장 확인서 등) 제출
제 외	❶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❷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❸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❹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❺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❻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기재된 이외의 자

④ **(건강보험료 납입액)**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참여대상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3.06%)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에게도 준용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등 적용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08
	보험료 (B×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보험료 (B×0.0306)	49,720	84,659	109,518	134,378	159,238	184,098	208,95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06(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가구당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동일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참여도 가능



8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812,415원씩을 더하여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상한액 산정

① 패키지 I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641,095(6,828,680+812,415) \times 0.6] \times 0.0306 = 140,291\text{원}$

② 패키지 II 지역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641,095(6,828,680+812,415) \times 1] \times 0.0306 \times 1.2(\text{조정계수}) = 280,581\text{원}$

③ 패키지 II 직장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641,095(6,828,680+812,415) \times 1] \times 0.0306 = 233,818\text{원}$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입상한액 초과여부 결정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 ⇒ **패키지 II 신청자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존재할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참가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 신청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장가입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 ⇒ 당해 가구에 지역가입자 내지 또 다른 직장가입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의 산정기간

- ⇒ 참가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기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확인 기준

- ⇒ 참여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동일 세대의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 *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만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제출
- ⇒ 이혼가정의 부 또는 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가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 자녀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참여 신청시 자녀를 가구원수에는 포함 하되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제외
 - *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의 참여 신청시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 보험료 납부영수증(부과통지서) 제출여부

-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

☞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참조(부록 1)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부록 2)

☞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참조(부록 3)

- ⇒ 무급휴직 중인 자는 재직자의 신분으로 참여 불가
 - 다만, 실업자인 신청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0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로 참여 결정

□ 기관 추천에 의한 참여대상자 선정기준 특례

- 자치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패키지에 참여

- 다만,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해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추천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 (예) 희망근로 참여 종료자, 한부모가정패키지 참여(대상)자 등
- * 자치단체에서 추천자 명단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 전체명단을 무작위로 보낸 경우는 추천이라 할 수 없음

- 기타 기관 추천자는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

□ 참여대상자 제외 기준

①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참여횟수별 참여 유예기간 설정

-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판단은 패키지 신청시점 당시의 신분으로 판단
 - * 1회차 참여시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으로 참여하여 기간만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였고, 2회차에는 차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하려 한다면 2회차 신청시의 신분인 차차상위 계층으로 재참여제한 기간은 1년임
- 직전회차 취업성과의 기준
 - * 1회차 참여시 중도탈락하고 그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중도탈락을 기준으로 재참여 제한기간 산정
- 자치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 생계급여수급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참여횟수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	9월	6월	3월
3회	1년6월	1년	9월	6월
4회 이상	2년	1년6월	1년	9월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생계급여수급자 외 일반 참여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참여횟수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6월	1년	9월	6월
3회	2년	1년6월	1년	9월
4회 이상	2년6월	2년	1년6월	1년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에 한하며, 취업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으로 산정, 퇴사일은 사업 참여를 통한 최초 취·창업의 이직일
-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자(일반 취업자)의 경우 기간만료자로 간주하며 기간만료 산정기준일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로 함
- * 폐업일은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확인

②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시 우리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 제한) <단서 신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92(2012.08.29)>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단,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중단·미수료자는 참여 가능(개정 2012.4.2.)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안내 후 택일하여 참여토록 조치(개정 2013.1.1)
- 참여 신청시 중복참여 제한 사실을 사전 반드시 안내하고 상담,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타 사업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되, 전산상 참여여부가 실시간으로 조회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시 수시 확인

- 패키지 참여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이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③ **(취업자)** 취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되, 다만 사업참여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중 참여자의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처리
 - * 1단계 참여수당은 실비성격이므로 전액 지급하고,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일용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않는 날에 한해서만 지급
-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재참여제한 기준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 '15년 업무매뉴얼(p.18)에 따른 재참여제한 기간 적용을 위한 “직전 회차의 취업성과 여부”에서 취업이란 고용보험 가입일자리에 한정되므로,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취업자의 경우는 기간만료자(미취업)에 준해서 처리
- ④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참여가능
- 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 및 기타 고용센터장이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여부 결정
 - 위원회는 센터 소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팀장, 업무담당자, 직업훈련 업무담당자 등 3~5명 이내로 구성·운영
 -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 후 완치된 것이 확인되면 참여 가능
- ⑥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⑦ (기타)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등 고용센터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2.5. 관련서류 확인

1 취업성공패키지 I

○ 패키지 유형별 참여 대상 요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

- ① (생계급여수급자) 자치단체에서 전산으로 의뢰되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 자는 관련서류 불요

- 다만, 패키지 중단 내지 종료 경력이 있는 자는 재참여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중단, 종료 또는 유예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여부 결정

* 자치단체 의뢰없이 본인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의뢰를 요청

-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기관(자치단체)의 추천서 또는 보장시설기관장(복지시설 등)의 추천서(전산의뢰자 제외)

- ②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한 경우 요청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④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대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②·

③ 자료 제출 불요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중위소득 40 - 50% 이하 가구	•의료급여 1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 2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장애수당 : 4만원 •장애연금 : 4~22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15만) · 경증(10만)
한부모가정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10만) · 고교생 학비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아동 10만원 •장애아동 19만7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 20%, 차상위계층 : 18%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③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관련기관 확인(추천)서(서식 3)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비주택거주자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국토교통부 · 행정자치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비주택거주자 확인(추천)서 ※ 관련기관의 추천이 원칙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비주택 사실을 증명할 경우 참여 가능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또는 추천서

- ④ **(결혼이민자)** ① 외국인등록증(F-2, F-5, F-6로 참여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③ 혼인관계 증명서(필요시)
- ⑤ **(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청소년 상담지원센터·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의 확인(추천)서
- 위기청소년 참여대상자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학교,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필요성을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 참여 가능
 - 개별참여자의 경우 제적 증명서, 자퇴서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
- ⑥ **(니트족)**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부록 5)
- ⑦ **(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 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⑧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서식 4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⑨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
- ⑩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단서, 국가유공자증
- ⑪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신청자가 신청시점에서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매출 상한액(80,000천원)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요건을 판단
 - * 연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세납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⑫ (FTA 피해 실직자) “FTA 신속지원팀”에 확인
- ⑬ (맞춤 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 ⑭ (미혼모·한부모) 미혼모·한부모 시설의 추천서

② 취업성공패키지 II

- ①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 ②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신분증
- ③ (대학(원)생) ① 마지막 학년 재학생 :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졸업생 : 졸업증명서
- ④ (중장년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한 경우 요청
 - ② 건강보험증 사본
 -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 ⑤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 영세자영업자는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신청자가 신청시점에서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매출 상한액(150,000천원)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요건을 판단
 - * 연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⑥ (맞춤 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2.6.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유선 통보하고 상담 참여일정 통지서 송부(서식 8)
 - ※ 참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인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수급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도 문서로 통지

-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는 초기상담 시 관련서류 확인 후 통지
- 신청인이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2.7.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 이의신청서 접수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보완 조치
 -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
- 처리결과 통보시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업무처리지침 >

□ 개요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으로
 - 자치단체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취업에 적합한 자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세부 업무처리지침

- (대상자 의뢰) 생계급여수급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의뢰되며, 취업의욕 있는 수급자가 패키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담당자(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자활업무 담당자 등)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취업지원계획 수립) 의뢰 받은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IAP 수립 후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발송
- (참가 이행상황 등 통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 지원을 실시하되,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진행과정을 입력하여 자치단체에서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건이행 중도 포기 또는 거부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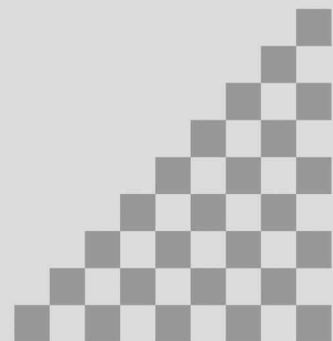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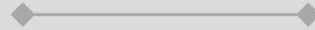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취업지원계획)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I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1.1. 의 의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는 한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는데 목적
- **(취업지원의 출발점)**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는 통합적 「취업지원」의 1단계 과정이며, 전체 패키지 운용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취업지원의 전제조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진행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진행될 취업지원의 기본설계도로서 기능
-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 과정)**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정도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대한 신뢰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여부를 좌우
- **(취업역량 파악)**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프로파일링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
- ①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초기 기초상담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내일을 위한 약속'을 부과하여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구직등록 미등록자는 구직등록을 실시하여 취업(창업)에 대한 목표를 인지하게 함

- ②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1종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심층상담을 제공
 - 참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구직에 대한 의욕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지원
- ③ **(과제 제시 및 맞춤형 상담)**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직업훈련 및 취업분야, 관심 직무와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제를 부과
 - 또한, 과제이행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참여자의 취업취약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직업·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목표를 설정하도록 상담
- ④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여타 구직자 또는 취업애로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를 안내
- ⑤ **(취업역량평가 실시)**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결과 등을 통해 취업 의지, 건강상태, 직업경력 등 개인별 취업역량을 평가
- ⑥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1단계 과정 동안 참여자는 진단과 의욕증진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취업(창업) 희망 분야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상담자는 실행가능한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조언과 상담을 제공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2.1. 운영 원칙

- 1단계는 개인의 취업의욕 및 역량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는 과정
-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 중 1종을 필수적으로 실시

- 또한, 참여자의 취업의욕·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안내
- 고교·대학(원)생 최종학년 재학생 등 청년층이면서 I 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 유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44)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 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함

2.2. 운영 기간

- ① 1단계는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IAP 수립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일부터 IAP 수립일까지 3~5일 간격으로 개별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은 횟수에서 제외) 실시하되 최소 21일간은 운영
 - ※ 1단계 서비스(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해석, 집단상담, IAP 수립상담)는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II 유형 중 청년층 참여자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이상인 자는 최소 1주이상(개별 대면상담 최소 2회이상 실시) 운영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취업역량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참여자와 협의 후 위탁기관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1단계 기간 단축(1주 2회이상 대면상담) 운영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 자격,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취업의지나 역량과 관계없이 역량평가 점수가 낮은 상황을 고려

- 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②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최소 3주 운용가능

- 상담결과 취업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한 경우
- 취업희망직종 등이 명확하고, 희망직종에 대한 취업지원경로 설정이 가능한 경우

③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최소 1주(대면상담 2회) 운용가능

- 패키지 재 참여자(2회 이상)의 직전회차 취업성과가 '6월 이상 취업'인 경우, 1단계 상담기간을 단축(1주 이상) 할 수 있고, 이 경우 IAP수립 후 바로 3단계 연계 (2단계 참여 제한)
- 다만, 직전 취업직종과 상이한 분야로의 직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단계 참여 가능

2.3. 상담내역 기록

-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철저히 전산에 입력 관리
 - * 민간위탁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 미입력시 실적 불인정
- 담당자 변경, 참여자 이관, 재참여 등의 사유 발생시 참여자의 서비스 내역을 충분히 파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의 의

- 참여자의 ① 취업관련 특성과 제반 여건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및 ② IAP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 안내 등을 통해 참여자와 라포 형성

□ 초기상담 실시시기

- 선정된 참여자는 「상담일정 통보서」(서식 8)상의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오프라인 신청자)**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일정통보서」(서식 8)상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접근성, 장애 등으로 센터방문이 곤란한 경우 참여신청서 접수 및 등록 후 곧바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편의 제공

- (온라인 신청자) 접수내용을 토대로 유선으로 연락한 후 대상자 선정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
- 가능한 한 고용센터 최초 방문일에 참여자 확정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편의 제공
 - ※ 참여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등)에게 알려 해당 사실이 전달되도록 조치
- 다만, 참여자가 상담일 3일전*에 상담일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당초 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지정
 - * 따라서, 상담자는 초기상담일 3일 전에 참여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초기상담일시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 *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일시 변경의사를 상담 3일 전 이후 알려진 경우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감안하여 변경·조치
- 만약, 참여대상자가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2차 통지를 하고, 2차 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 조치
 - ※ 참여자에게 2차 통보 시, 2차 상담일시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중단일로부터 1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과 해당 통지됨을 안내
 - ※ 생계급여수급자는 패키지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당 자치 단체에 참여대상자가 상담일을 계속 미루는 등 참여의지가 없어 중단조치 하였음을 통지

□ 초기상담 실시요령

- 초기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실시



초기상담전 확인사항

⇒ HRD-Net(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고용보험 전산망(피보험자격취득), 복지연계전산망(복지사업 참여여부), 일모아시스템(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작성 여부, 선정된 참여자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청년층의 경우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 상담에 활용

- 상담시 참여자의 가정환경, 직업이력과 취업역량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내실 있게 실시
 -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단계(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과정이 갖는 의미와 내용, 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과정 진행에 앞서 상세히 설명*
 - * 과정진행절차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민원(계획 하나 만드는 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는 불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분위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
 - **(상담시간)** 참여자의 취업관련 제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
 - **(참여자 적극적 참여 유도)** 상담이 개인 신상파악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자에게 취업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 희망하는 직업 내지 직종, 희망직종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등등
 - ** 초기상담 중간 또는 말미에 질문을 하거나 다음 상담일까지 생각해 볼 과제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내일을 위한 약속 작성)** 담당자는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상호 약정인 「내일을 위한 약속(서식 9)」을 작성하고, 참여자에게 1부 배부
 - ※ 참여자가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본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각서’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
 - ※ 참여도중 자격 변경(차차상위 등 일반참여자 ⇄ 기초수급자)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토록 안내
- 상담완료 후 상담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 참여자를 앞에 두고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지양

□ 구직등록

- 구직등록은 기본 인적사항과 직업이력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개략적 구직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
- 초기상담과 엄격히 분리하여 실시할 과정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초기상담과 동시에 실시
 - 다만, 담당자의 상담 편의 등을 위해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먼저(先) 또는 나중에(後) 등록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자는 구직등록을 전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직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구직등록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수정 입력
- 구직등록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
- 구직등록은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입력

3.2.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 개 요

- 참여자의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 관련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검사 가운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최소 1종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필수적으로 실시
- 직업심리검사 종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나, 구직준비도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 먼저, 구직준비도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구직의욕과 능력수준을 진단한 후 다음 회차에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통해 구직자가 흥미를 느끼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하여 동기 부여하는 맞춤형 상담 실시
 - ☞ 직업심리검사별 특징과 해석 방법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위한 전담자 역량 가이드> 자료 참조

< 워크넷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종류 >

검 사 명	내 용	방법	소요 시간
구직준비도검사	실직 후 사회적·심리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 평가	지필 · 인터넷	20분
직업가치관검사	직업 및 직장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측정하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20분
직업선호도검사 (S)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20분
직업선호도검사 (L)	성인의 직업 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60분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추천		20분
창업적성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 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 지 판정		20분
직업적성검사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90분

* '구직준비도검사·직업전환검사·창업진단검사'는 일반적 소요시간(제한시간 없음)
 * 기존 구직효율성검사는 2012년 이후 구직준비도검사로 개정됨

□ 실시시기

- 직업심리검사는 초기상담일 이후, 2~3차 상담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실시방법

- (사전 안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의의와 종류, 실시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 다만, 참여자가 직업심리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 취지 및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설득
 -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심리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

- **(검사종류 선택)** 참여자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 및 참여자 수준(인지·정서적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검사의 종류는 대상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검사 중 선택하여 실시
 - 1차적으로 시간, 채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선택하되,
 - 과거 유사 직업심리검사를 받았던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직준비도검사(구직효율성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직업선호도검사 등 대상자에 적합한 직업심리검사 추가 실시
 - ※ 직업선호도검사 L형은 실시에 6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 의사를 사전에 파악,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 실시
- **(검사 실시)** 검사 종류별 검사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수검자 입장에서 판단·조치
 - 직업선호도검사 L형 같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도록 조치

□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 담당자는 직업심리검사 목적과 장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검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
-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
 -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녹음 테이프만 틀어주고 수검자 혼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양
-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할 경우 성실한 응답을 할 확률이 낮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 유의
- 아울러, 대상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검사에 대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검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상담 실시
 -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심리 상담 위탁 고려

□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 검사결과 해석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 내지 다양한 사례경험을 갖춘 상담자가 진행
 - * 각종 검사내용과 하위요인, 검사점수의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
 -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위한 전담자 역량 가이드」의 직업심리검사 부분을 참고하여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이해 제고
-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유경험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
- 검사결과 해석시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만을 해석하지 말고 참여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시

< 직업심리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

- ❶ 스스로 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❷ 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숙지하기
- ❸ 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자를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 ❹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❺ 참여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❻ 참여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❼ 결과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기

3.3.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 개 요

-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는 취업특강 실시
- 참여자가 다른 구직자와의 집단 활동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취약성과 구직스트레스를 극복하고,

-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고용센터 여건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운용 현황 >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적합대상	시간
1	성취프로그램	•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의 가능성 예방,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재취업 능력 제고	장기 구직자	5일 30시간
2	취업희망프로그램	• 자신감 향상 ·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심리적 취약계층	4일 22시간
3	행복내일프로그램	• 취 · 창업의욕 증진 및 대인관계 향상 • 강점 파악 및 생애설계, 구직기술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4일 24시간
4	성실프로그램	• 고령자 취업 자신감 제고 • 고령자 구직기술 향상	50세 이상	4일 24시간
5	주부재취업 설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분야 설정 • 선정된 분야에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경력단절 여성	4일 24시간
6	결혼이민자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취업정보 제공	결혼 이민자	3일 12시간
7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	• 청년층의 합리적 진로직업 선택 지도 •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향상	청년층	4일 24시간
8	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allA)	• 자기이해 심화, 인간관계 확장 • 삶에 대한 적극성 강화	청년 니트	4일 24시간
9	청년취업역량(청취력) 프로그램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청년구직자	4일 24시간
10	Hi프로그램	• 고졸미취업청년을 위한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고졸미취업 청년층	2-3일 12시간
11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 남한의 직업세계 및 기업 이해 • 경력개발계획 수립	북탈이탈 주민	4일 28시간
12	WIN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분야 설정 및 계획 수립	경력단절 여성	1주 20시간
13	WIN+ (경단여성 직장적응 프로그램)	• 취업을 앞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선감 및 직장적응 지원	경력단절 여성	4일 20시간
14	RE-WIN (경단여성 직장 재복귀지원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대상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경력단절 여성	2-3일 12시간

※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매뉴얼)에 따라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용 현황

- (운용단위) 47개 '종합센터'에서 운용 중
 - '일반 센터'는 종합센터에 의뢰 (센터별 자체운용 별론)
- (운용부서) 각 센터의 '직업진로지도팀'에서 운용
- (운용방식) ①센터에서 직접운용, ②인소싱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 중
- (운용횟수) 센터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 2회 정도 실시

□ 기본원칙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의지·능력이 낮은 자에 한하여 참여시키고, 1단계(필요시 2·3단계 중)에서 1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참여자가 2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참여를 허용하되 동일 프로그램 참여는 지양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직업심리검사 결과 취업의욕이 낮은 참여자는 참여 필수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고용센터의 수급자나 그 밖에 도서지역 거주자, 신체부자유 등으로 원활한 참여가 곤란한 자, 최근 1년 이내 집단상담에 참여한 자 등은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참여 여부 결정
-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집단·취업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 설명회, 과제부여 등 고용센터 내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

□ 조치사항

① 참여자에 대한 조치 사항

- 프로그램과 관련한 오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참여 예정 집단상담프로그램 명칭, 일정, 운용 절차 및 방식,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
 -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과정별 신청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됨을 정확히 안내 (참여과정 변경 가능성 포함)
 -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일 내 별도 연락함을 안내

- 참여자에게 1단계 참여수당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짐을 안내
 -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출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을 이수한 후에는 IAP 수립 등을 위해 고용센터에 재방문해야 함을 설명하고, 재방문 일시를 지정·통지

②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참여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전산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토록 조치
- 만약 해당센터에서 직접 운용할 수 없거나, 인소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취업지원집단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다른 센터에 의뢰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 중 가급적 1회 이상 연락
- 무단결석 등 프로그램 참여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되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내지 운용기관 담당자에 대해 사전 요청
- 1단계 운영 중 적절한 구인처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알선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IAP 수립 전이기 때문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

3.4. 전문심리상담서비스와의 연계

□ 시기 및 대상

- 참여자 가운데 전문심리상담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연계 제공
-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 ※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2·3단계 과정 중에도 지원 가능

- 전문심리상담은 참여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
 -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여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②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대인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불안 증세 등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인 과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④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연계 방법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전문심리상담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상담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지양
- 참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심리상담 추천(추천시에는 서식 10 활용)
 - 1단계 상담일정이 남아 있는 참여자는 상담일을 감안하여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심리상담사와 협조)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 시 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 아울러, 참여자에게 단계별 진행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개인당 최대 8회차까지 심리상담 가능

< 전문심리상담 전산 의뢰·실시 개관 >

- **(심리상담 추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는 1단계 참여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EAP 상담사에게 전산으로 대상자 추천
- **(심리상담 실시)** 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하고 매 회기별로 상담내역을 EAP 전산 시스템에 입력
- **(결과 통보)** EAP 상담사는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통보
 - 심리상담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의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에게 전산 통보
 - * 사전단계 참여자는 사전단계에서 전문심리상담 실시 가능
- **(상담결과 활용)** 전문심리상담 결과는 1단계의 IAP 수립에 활용

<취업성공패키지-심리안정프로그램 흐름도>



□ 전문심리상담 제공 전·후의 고려사항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이전에 전문심리상담의 의의 등을 참여자에게 자세히 안내
- 참여자 및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전문심리상담을 통한 참여자의 심경변화 등 파악
- 특히,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간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 심리상담사와 당일 상담내용 및 분위기 외 참여자의 상담기간 중 변화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3.5.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취업촉진

- 복합적인 취업애로사항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취업 촉진
- 복지·보건·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운영
-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정기적 참여를 통한 고용센터-자치단체 연계 강화

- 현재는 자활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고용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참여
 -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해 통합사례회의 연계

□ 관할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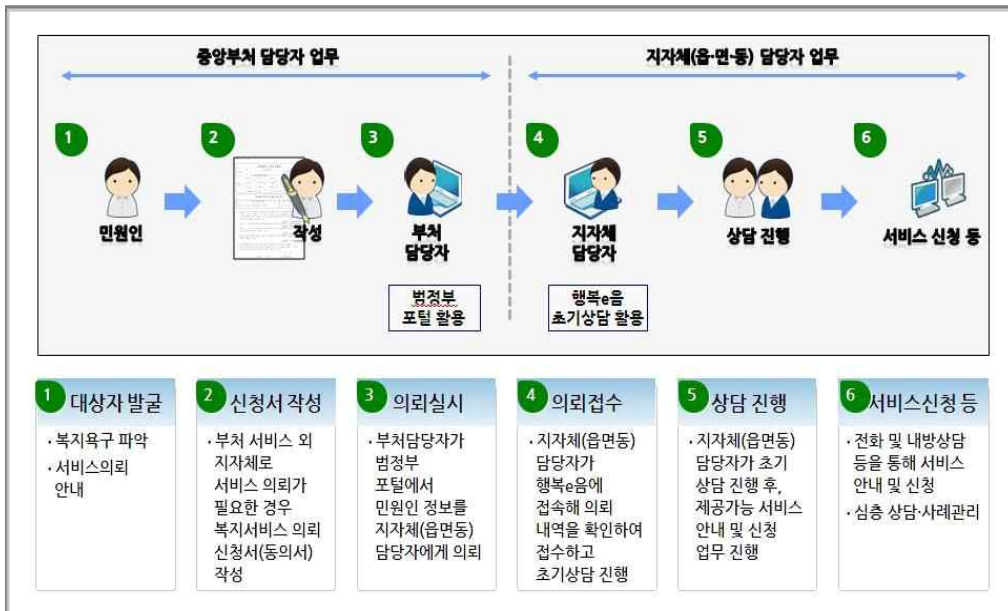
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포털(www.wish.go.kr)에서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 가능한 읍·면·동 복지서비스를 검색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복지알림이*' 맞춤검색을 통해 민원인의 가구형태, 복지욕구 등에 맞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포털 메인화면 → '복지알림이' 선택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집중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 의뢰

- 취업상담(1단계)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통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

【 서비스 의뢰 개념도 】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3.6.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 개 요

- 취업역량평가는 사전에 취업역량을 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단계 IAP 수립 전까지 취업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IAP를 수립하여 참여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시 원칙

- IAP 수립 전까지 취업역량평가 실시
 - 참여자의 정확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활용

- 취업성공패키지 I · II 유형 모두 전담 상담사가 직접 실시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최소 2회의 상담을 실시한 이후 IAP 수립 상담 전까지 전담자(민간위탁기관 포함)가 직접 평가 실시
 - * 인턴, 공익요원, 업무지원자(민간기관) 등 비전문가의 취업역량평가 실시 금지
- ▲구직욕구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증 보유 및 직업훈련 경험 등 취업역량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시
 - ※ ▲구직욕구, ▲건강상태는 가능한 상담사가 직접 질문하여 기입

□ 취업역량평가 실시 및 채점방법

- 실시 방법
 - (1단계) 구직욕구(22) 및 건강상태(19) 설문 항목 질문 및 응답
 - (2단계) 연령대, 학력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48)
 - (3단계) 1단계 진행과정 중 상담결과 취업의지에 대한 **응답 신뢰성(5점)**, 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가능성(5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
- 취업역량평가(사전진단) 채점 방법(판정기준 및 배점 표 참조)
 - ① (구직욕구) $\Sigma[1 \sim 9 \text{ 문항 선택 값}] (\text{합}) / 45(\text{만점}) \times 22(\text{가중치})$
 - ② (건강상태) $\Sigma[1 \sim 3 \text{ 문항 선택 값}] (\text{합}) / 15(\text{만점}) \times 19(\text{가중치})$
 - ③ (기타) ▲연령대(3~12점), 학력수준(1~6점), 미취업 기간(1~6점), 고용보험 가입기간(1~6점),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11점),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7점)은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④ (재량점수) 상담결과 취업의지에 대한 **응답 신뢰성(5점)**, 사업참여를 통한 **취업가능성(5점)**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 (채점 예시) 구직욕구 11점, 건강상태 8점, 연령 25세(12점), 학력 고졸(4점), 미취업 기간 7개월(3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6개월(6점), 취업관련 자격증 없음(0점),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 있음(7점), 상담원 재량(8점) = 59점

□ 취업역량평가 활용

- 취업역량 판정 기준 점수에 따라 4가지 수준의 취업역량 집단으로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패키지 참가자 취업역량평가 등급 구분 >

등급		개선
A등급	매우 낮음	48점 미만
B등급	낮음	48~57점
C등급	보통	58~66점
D등급	높음	67점 이상

- A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필수 제공 원칙
- B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필수 제공 원칙
- C·D 등급 : 가급적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 제한, 직업훈련 관리 강화

< 패키지 참가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 >

연번	판정 기준	세부 기준	배점	기준에 대한 설명
1	구직욕구	설문지	22	•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구직욕구진단(지필)을 통해 평정
2	건강상태	설문지	19	• 취업하기 위한 신체 및 정서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간편 근로능력검사 통해 평정
3	연령대	15세 ~ 19세	3	• 취업연령대를 평정
		20세 ~ 35세	12	
		36세 ~ 49세	8	
		50세 ~ 64세	4	
4	학력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	• 취업에 योग한 학력 수준 평정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이상	6	
5	미취업 기간	1년 이상	1	•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최근의 미취업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	
		6개월 미만	6	
6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없음	1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6	
7	취업 관련 자격증 유무	-	11	• 취업희망 직종과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제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보유 여부
8	취업 관련 직업훈련경험	-	7	• 취업 희망 분야 관련 최근 2년 내 직업훈련 경험 여부
소계			90	
9	상담원 재량	취업의지의 신뢰성	5	• 상담원이 소계 점수를 고려하여 상담 후 종합적으로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가능성	5	
총합			100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구직욕구(22점) >

항 목	전혀 안함	3개월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주에 한번	1주일에 1회 이상
1.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책자 등을 통해서 최근 취업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2.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취업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 검색한다.	1	2	3	4	5
3.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취업센터, 취업소개소를 방문 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4.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에 참석한다.	1	2	3	4	5
5.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한다.	1	2	3	4	5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취업할 수 있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건강상태(19점) >

문1. 다음은 귀하의 근로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	2	3	4	5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1	2	3	4	5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개 요)**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취업역량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수립시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은 상담 완료 후 1단계 최종단계에서 수립
 - **(주요 내용)**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내용 공유)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인적사항 ▲주요 경력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직업훈련 계획
 -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 등
 -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대상자 개인의 희망직종 및 현 직업능력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취업희망직종과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 * 취업희망직종과 관련성이 높은 훈련과정 추천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상세 일정을 수립
 - **(IAP 배부 및 변경)** IAP를 수립한 경우 참여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1부 출력·배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내용을 변경 조치
- ※ 가령, 참여자가 훈련분야 변경을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AP 및 훈련분야를 변경 → 훈련직종(분야) 변경이 2회까지 가능함에 유의

4. 참여수당 지급

4.1. 의 의

- **(개 념)** 참여수당은 패키지 1단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 **(참여 실비보상 기제)** 참여자의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계유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실비 보상적 지원 기제
- **(참여 내실화 기제)** 성실한 1단계 참여를 유인하는기제로서의 의미도 존재

4.2.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 **(지급요건)** 1단계 과정 수료자는 동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를 수립한 자를 말함
 - 따라서,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에는 부지급



4.3. 지급 금액

- **(원 칙)** IAP 수립시까지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이 소속 학교 내에서 상담·진단(1단계 운용)을 받는 경우, 참여수당 부지급

- * 2015년도 추경사업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1일 2만원 지급 관련 지침 폐기(고용지원 실업급여과-4396호)
- * 1단계 상담 전체를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 참여수당 15만원 지급(단, 학교 및 위탁기관 상담이 혼재하는 경우, 위탁기관 방문 상담에 한해 1일 2만원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패키지 참여기간에 대한 참여수당은 부지급하되,
 - *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 부터 만료일까지를 의미(대기기간 포함)
-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한 참여수당은 최소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일할계산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을 최소 소요기간(7일 또는 21일 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기본지급액 15만원을 한도로 지급
- **(추가 지급액)**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5만원
 - *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단기집단, 취업특강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지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1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5만원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지급
 - *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기본 지급액		추가 지급액			계	
패키지 I	패키지 II	구분	패키지 I	패키지 II	패키지 I	패키지 II
15만원	15만원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	5만원	-	20만원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4.4.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지급시기

- 참여수당은 1단계 IAP 수립일(1단계 수료시점)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 허용
- **(일괄 지급)** 1단계 참여수당은 지급취지(실비보상 및 참여유도)를 감안하여 해당 금액(1인당 15·20·25만원)을 일괄 지급

○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 IAP 수립 완료 후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12)」 접수
 - ※ 가급적 IAP 수립 당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
- 타인명의 계좌 지급 후 수령여부 확인

< 계좌명의인 및 동의서 >

- ‘계좌명의인’은 ‘1단계 참여수당’ 지급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1인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명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은 생략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인 가구 포함)에는 통·반장, 추천기관의 장, 지인 등(20세 이상인 자)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 경우,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신청서 내용 확인) 초기상담일,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기간, IAP 수립일, 희망 계좌 등 기재 여부 확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참여수당 지급) 해당 계좌로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 조치
 -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 운영 매뉴얼 참조

4.5. 유의사항

- 2015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 '15년에 초기상담을 하고 '16년으로 이월된 경우 '15년도 지침을 적용
 - 초기상담일이 '16.1.1 이후인 경우 '16년도 지침 적용
- 참여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참여수당 지급기일 준수
 - 참여자가 실업자임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여부 결정·조치
 - ※ 신청서 제출 이후 1단계 참여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

- 초기상담일에 1단계 참여수당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여 IAP 수립일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 13) 등

- 제출서류: ①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민간위탁기관 참여자만)

※ 이외 서류 징구 금지

○ 참여수당 환수

- 참여수당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참여수당 전액 환수

○ 참여수당 지급 소멸시효

- 1단계 참여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

5.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1단계 운영 특례

- ◎ 기초수급자 중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적용하되,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준용함
- ◎ 패키지 참여 중 밀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단계에서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제공 가능한 밀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5.1. 1단계 운영 기본 원칙

- **(운영원칙)** 1단계는 개인의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요구 파악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L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 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계획수립, IAP 수립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또한 단기문제해결 상담, 롤모델 상담 등 참여자에게 맞는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참여자의 특성 진단,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최소 6주 ~ 최장 10주까지 운영 가능
- 주 1회 이상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요구 파악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가구여건 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1단계 중 참여 유예 가능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회의 (고용센터+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 그간 기초수급자의 자활 참여 이력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로를 파악하여 복합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상담내역 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전산 입력
- **(1단계 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은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IAP 수립여부와 무관)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 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기초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기초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 수립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5.2. 1단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필수)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흡연·가족 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장애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 고용복지 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필수)

-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내적 여건 및 환경적 여건을 진단하여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 1단계 IAP 수립전까지 참여자 특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IAP를 수립하여 참여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IAP 수립
 - * <참고1>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 ※ 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담당자와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간 사례관리회의 실시

□ 직업심리검사(필수)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와 성격 및 생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상담 제공
 - * 직업선호도검사(L형)는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 등을 제공
 - ↳ 직업흥미 육각형의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성격과 생활경험 검사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지향, 자존감, 독립심, 야망, 직무만족 등을 파악 가능
- 자신의 직업흥미 영역과 수준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본인의 현재 시점의 성격과 생활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단기문제해결 상담(선택)

- 단기해결적 상담 기법의 적용을 통해 참여자가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코칭 및 상담을 제공
 - 자활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결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 바람직한 변화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
 - ▶ 본인이 지니고 있던 성공경험과 강점 및 자원을 확인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강화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 해결중심적 단기상담 또는 해결중심적 단기코칭은 참여자가 자신의 힘(역량)과 자원을 이용하여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하며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임
 - * 단기해결상담은 참여자의 결함이나 장애는 가능한 다루지 않으며, 참여자가 이미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 지식, 믿음, 행동, 증상, 사회관계, 환경, 개인적 특성, 건강한 특성측면 등을 도출하여 문제(목표)를 해결하고자 함. 또한 문제(목표)를 간략화시켜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도록 여길 수 있게 '협력'적 과정을 통해 면담하는 전략
 - 참여자 특성 및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상담의 횟수와 기간을 융통적으로 설정하여 제공하며, 다른 과제 부과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참고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 집단상담프로그램(필수)

-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 가능성 예방 및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
 - * 집단상담프로그램 기수강자 및 비희망자 등은 담당 상담사의 재량에 따라 참여여부 결정

□ 단기특강 수강 등을 통한 취업준비도 강화(선택)

- 개별 맞춤 상담활동만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취업가능성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고용센터에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 단기특강(2시간 내외) 또는 단기집단상담(3시간 내외)에 참가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여 구직의욕 증진과 구직준비 수준을 강화
 - * 자활대상자가 단기취업특강 및 단기집단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다른 구직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구직의욕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사회적 학습의 효과 발생
- 참여자 특성,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해 적합한 특강 권고
 - * 예를 들어, 스트레스 완화 및 의사소통 방법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담당자는 고용센터에 개설된 '화 다스리기',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의 특강을 수강토록 권고할 수 있음

< 참고 > 고용센터 개설·운영 중인 단기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강좌명	비고
단기 집단 상담 (3시간)	① 행복한 대화 이끌기 ②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③ 나를 이해하기 ④ 취업 목표 정하기 ⑤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⑥ 면접기술 습득하기1 ⑦ 면접기술 습득하기2 ⑧ 취업전략 세우기	▶ 15명 내외의 교육 및 실습 혼합 구성으로 집단상담 형태로 3시간 이상으로 운영
단기 취업 특강 (2시간)	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②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③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④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⑤ 근로기준법 ⑥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⑦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⑧ 중장년층을 위한 비전설계 ⑨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개발	▶ 구직역량 제고 관련 강좌로 2시간 이상으로 운영

* 각 지역 고용센터에 따라 위에 제시된 특강 외에 다양한 강좌 개설 운영

□ 과제이행 맞춤상담(선택)

-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의 가능성과 직업정보 등을 탐색하도록 활동지 형태의 과제를 부여한 뒤 해당 작성내용을 토대로 직업진로 상담을 실시

* <참고 3> 과제이행 맞춤상담 활동지(괜찮은 나 발견하기 활동과제, 일경험 떠올려보기 활동과제, 내 삶의 보물찾기 활동과제, 관심직업 찾기 활동과제,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활동과제, 직업훈련과정 탐색 활동 과제)

□ 취업성공수기(사례)를 활용한 상담(선택)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로 취업 및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읽으며 자활의지를 제고하는 개별 또는 소그룹 상담 실시

* <참고 4>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EAP) 제공(선택)

-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해 자존감 회복 및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완화 등 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그림검사를 통한 심층 상담(선택)

-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림을 토대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문제 등에 대해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취업 의욕을 높임

* <참고 5>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 강점진단을 통한 동기 강화 상담(선택)

- 강점진단도구(VIA)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강점 특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강점을 기반으로 동기부여 상담을 제공

* <참고 6> 강점진단도구

□ 심리정서상태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선택)

-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진단하여 복지연계 및 심층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동기 및 취업의욕을 높이는 상담을 제공

* <참고 7> 심리정서상태진단 도구(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사회정서적 고독감, 우울척도, 우울증진단, 자기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 생활패턴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선택)

- 규칙적인 생활 등 근로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진단지를 토대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실시

* <참고 8> 생활패턴진단 도구(일반건강척도,, 알코올 의존도 진단, 알코올 의존도 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필수)

- (개요)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결과, 참여자 특성 진단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수립시기) 상담완료 후 1단계 최종단계에서 확정 수립

- (주요내용)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수립한 고용복지서비스 계획을 토대로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인적사항 △ 주요경력 △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 직업훈련 계획
△ 참여대상자의 취업지원 경로 △복지서비스 연계실시 내역 및 계획 계획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IAP 변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 내용을 변경 조치

< 밀착사례관리용 1단계 세부프로그램 활용도구 목록 >

no	밀착사례관리 1단계 서비스	활용도구(서식)
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① 내일을 위한 약속(기존서식) ② 구직등록(기존서식)
2	고용복지요구진단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3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7종)
4	단기문제해결상담	동기강화 및 강점발견 중심의 상담기법을 통한 구직의욕 제고
5	집단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15종)
6	과제이행 맞춤상담	① 관찰은 나 발견하기 활동과제 ② 일경험 떠올려보기 활동과제 ③ 내 삶의 보물찾기 활동과제 ④ 관심직업 찾기 활동과제 ⑤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활동과제 ⑥ 직업훈련과정 탐색 활동과제
7	취업성공수기를 활용한 상담	5개의 롤모델(취업성공사례) 활용
8	심리안정전문상담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심리상담 연계
9	그림검사를 통한 심층 상담	빛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10	강점 진단을 통한 동기 강화 상담	강점진단(VIA)
11	심리정서 상태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	①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ANAS) ②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③ 사회정서적 고독감 ④ 우울척도 ⑤ 자기존중감 ⑥ 심리적 행복감(well-being)
12	생활패턴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	① 일반건강척도(GHQ) ② 알코올의존도 진단(NAST) ③ 알코올의존도 평가(AUDIT-K)
13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기존서식)

참고1

고용복지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작성자		작성일자	2016. . .	참여자명	
-----	--	------	-----------	------	--

1. 대상자 특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동기	☐ 비자발적 ☐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어 신청 ☐ 참여비, 직업훈련 등 혜택 ☐ 기타()
대상자 성별, 학력, 연령 등 제반 특성 개요	

2. 대상자 내적 여건

구분			항목별 표시			참고 가능한 도구	의견 등 비교
건강	1	정신건강	☐ 양호	☐ 의심	☐ 나쁨	일반정신건강 진단	
	2	알콜	☐ 무		☐ 유	알콜의존도 진단	
	3	신체건강	☐ 양호	☐ 의심	☐ 나쁨		
	4	비만	☐ 해당없음	☐ 약간	☐ 고도		

3. 대상자 환경적 여건

구분			항목별 표시	참고가능한 도구	의견 등 비교
가 구 환 경 여 건	1	돌봄 대상	☐ 중증장애인 ☐ 환자 ☐ 영유아 ☐ 저학년 ☐ 노부모 ☐ 해당없음		
	2	돌봄필요시간	☐ 상관없음 ☐ 한시적케어 ☐ 24시간 케어		
	3	근무가능시간	☐ 8시간이상 ☐ 8시간 ☐ 파트타임 ☐ 근로불가		
	4	신용불량	☐ 없음 ☐ 변제가능 ☐ 심각		
	5	가정내 폭력	☐ 양호 ☐ 의심 및 관찰요 ☐ 문제있어보임		
	6	가족구성원 중 알콜	☐ 없음 ☐ 있음		
	7	가족갈등	☐ 무 ☐ 유		
	8	가족 지지	☐ 상 ☐ 중 ☐ 하		
	9	주거	☐ 양호 ☐ 지원 필요		
	10	탈수급 필요성	☐ 낮음 ☐ 가능성 있음 ☐ 높음(자녀졸업 등 탈수급해야 할 필요가 높은 경우)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4. 대상자 취업 여건				
구분		항목별표시	의견 등 비고	
근로 여 건	1	학력	상 ☐ 고졸이상 중 ☐ 고퇴~중졸 하 ☐ 중중퇴 이하	
	2	근로경력	상 ☐ 최근3년내 경력 유 중 ☐ 단절(3년~5년이내) 하 ☐ 전무/5년이상 단절, 전무	
	3	기능, 기술	☐ 상 ☐ 중 ☐ 하	
	4	직업교육	☐ 유 ☐ 무	
	5	자격증	상 ☐ 희망직종 관련 자격증 유 중 ☐ 자격증 유 하 ☐ 자격증 무	
	6	전산능력	☐ 상 ☐ 중 ☐ 하	
	7	구직경험	☐ 없음 ☐ 있음	
	8	구직눈높이	☐ 양호 ☐ 조정필요	
	9	일자리긴박성	☐ 긴박하지 않음 ☐ 보통 ☐ 긴박함	

5. 고용복지 서비스 계획		
가. 구직욕구제고		목표: ☐ 방문상담을 통한지지 강화 ☐ 직업심리검사 상담 통한 동기 강화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의욕 제고 ☐ 단기특강/단기상담 통한 동기 강화 ☐ 취업시 장점과 혜택 안내 ☐ 롤모델제시·문제해결 상담을 통한 의욕 제고 ☐ 기타 :
나. 근로여건조성 및 취업장애요소 제거		목표 :
하위목표	실행계획(서비스 내용)	
1	☐ 질병치료 및 신체건강 개선 ☐ 의약품 지원 ☐ 운동프로그램 연계	☐ 병원연계 ☐ 의료비 지원 ☐ 무료진료서비스 ☐ 간병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2	☐ 전문상담·심리 치료 ☐ 전문상담 연계 ☐ 심리검사 치료 연계 ☐ 아동, 청소년 전문 상담 연계 ☐ 아동치료프로그램 연계	☐ EAP ☐ 청소년상담센터
3	☐ 알콜치료 ☐ 알콜상담기관 연계 ☐ 알콜 병의원 연계 ☐ 알콜 치료 지원	☐ 알콜상담센터
4	☐ 장애돌봄조건 개선 ☐ 장애돌봄서비스 연계	☐ 무한돌봄센터 ☐ 장애인복지관
5	☐ 노인돌봄조건 개선 ☐ 보호시설 연계 ☐ 간병서비스 연계	☐ 무한돌봄센터 ☐ 노인복지관
6	☐ 영유아, 아동 돌봄조건개선 ☐ 아동보호시설연계 ☐ 아동치료서비스 ☐ 보육시설연계 ☐ 방과후시설 ☐ 베이비시터	☐ 무한돌봄센터
7	☐ 신용회복 ☐ 채무조정상담연계 ☐ 법률 연계 ☐ 신용교육 ☐ 재무,경제 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8	☐ 주거안정 ☐ 임대주택 ☐ 매입주택 ☐ 월세 지원	
9	☐ 기타 ☐ 긴급 생계비 지원	

참고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1. 단기해결중심 상담의 개요

- 해결중심 단기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경험, 예외상황 등)을 활용하면서 대상자가 가진 문제의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는, 단기간 내에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상담 모델
- 그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바로 내담자 자신임을 강조함으로써 대상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해결방법을 발견하도록 지원함
- 이는 문제를 긍정적 관점으로 재 개념화하거나 문제에 대한 예외 상황 및 성공경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함

2. 해결중심 상담의 원리

- 대상자의 강점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해결중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담의 기본 원리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효과가 있다면 더 하라. 효과가 없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라.
 - 긍정적인 것, 해결책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때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촉진된다.
 - 문제를 정상적인 개념으로 재진술 할 때 문제 해결과 희망과 가능성이 열린다.
 - 상담자와 내담자는 모든 문제에서 예외를 찾아낼 수 있으며 예외를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 내담자의 변화 동기의 이해

- 사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치료의 효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치료자의 태도와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
- 또한, 내담자의 동기 수준,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변화를 가속시킴
- 내담자의 변화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음. 동기의 3가지 요소는 의지, 능력, 준비임
 - **의지(변화의 중요성):** 내담자가 기대하는 이상과 현재의 상태의 부조화가 심할 수록 변화의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함
 - * 예시 : 자식들이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해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봐 두렵기는 하다.
 - **능력(변화에 대한 자신감):**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으나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자신감이 없을 때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함
 - * 취업을 하고 싶지만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생활이 더 불안정해 질 거야.
 - **준비(중요성의 우선순위):** 변화하고자하는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지만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음
 - * 예 : 술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 변화 중요성과 변화 자신감 척도 질문 예

- “당신에게 취업 준비와 시도(취업 성공패키지 참여)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이고 10점은 아주 중요함을 나타낸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만약 당신이 취업 성공 패키지 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정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0점은 전혀 자신없음이고 10점은 자신 있음 일 때 당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변화 중요성과 변화 자신감의 두 차원에서 볼 때 여러 집단이 나올수 있다. 먼저 변화 중요성에 대한 지각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순서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양가감정 : 변화에 대한 딜레마

- “나는 원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가감정의 현상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예를 들면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
- 이러한 양가 감정은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기해결 상담은 이러한 사람들이 양가감정에서 빠져 나오도록 돕는 것
- 이러한 문제 중 두 가지 대안 중 갈등의 양 측면이 모두 다 이득이나 손실에 관련될 경우 한쪽을 택하고 싶다가도 다른 한쪽을 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됨
- 이때 결정의 결과를 저울로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정 저울표 예시 >

계속적인 음주		금주	
이득	손실	이득	손실
기분이 편안해짐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음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자녀에게 나쁜 본보기 건강에 해롭다 돈낭비가 많다 정신력이 흐려진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인생의 낭비	가족갈등이 적어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증가 몸 컨디션이 좋음 돈문제 해결에 도움	짜릿함의 상실 술친구와 같이 어울릴 방법이 없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음

○ 대상자의 변화 단계 이해를 통한 개입

- 대상자들 마다 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요구됨
- 전숙고 단계 :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반추해보거나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단계. 정보가 부족하여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 되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경제적 활동과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할 필요 있음.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수급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취업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숙고 단계 :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반추하고 고민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거나 고심하는 단계. 결정저울표의 활용 등을 통해, 참여자가 바람직한 변화에로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여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피드백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는 점에 대해 설득함
- 준비 단계 : 취업할 의사를 확인하고 첫 발을 내 디는 단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1단계 참여로 연계
- 행동 단계 :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단계.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에의 의지를 높이며 바람직한 실천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
- 유지 단계 : 변화된 마음과 행동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단계.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을 해 나가는 단계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및 관리활동 제공

< 내담자 변화의 단계와 개입활동 >

변화의 단계	내담자의 상황		상담사의 활동
전숙고 (숙고 이전 단계)	변화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	취업할 의도와 의욕 없음	•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동기유발 • 취업서비스에 대해 안내
↓			
숙고	변화에 대해 생각	취업 의사가 있음을 인식함	• 대상자에게 개인 생활의 변화를 강화시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 필요성 강조
↓			
준비	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의욕을 가지고 서비스에 동의	• 서비스 참여에 대한 연결 및 강화와 관리활동 실시
↓			
행동	변화 행동	참가 활동 수행	• 변화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 및 피드백
↓			
유지	변화행동의 유지	자립 및 취업에의 높아진 의지의 유지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구직 활동	• 자립 및 취업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지원 활동 지속 • 구직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제공 • 취업성공 이후에도 독려

○ 대상자와 상담사의 관계 유형 이해를 통한 접근

-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내담자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내담자-상담자 관계 유형은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으로 구분 가능함
- 방문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방문형 내담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함
 - 깊게 생각하여 보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숙고 단계의 내담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
 - 내담자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내담자에게 의미있는 상담 목표를 재협상하는 것이 좋음

📁 방문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데 시간을 내서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00님께서도 현재 취업에 대한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 현재 00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게 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내담자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자신이 변화의 동기가 일어날지 탐색한다.
- 만약 내담자가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가족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당신의 딸에게 당신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물어본다면 딸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 불평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불평형 내담자의 경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문제 해결책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
- 불평형 내담자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의 변화, 사회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김
-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좌절 실망을 토로하면서 상담자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특성이 있음

📁 불평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린다.
- 내담자의 지각을 존중하면서 내담자의 초점을 문제 있는 타인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역할로 전환 시킨다.
- 내담자가 계속 문제 해결적인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상담자인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척도 질문을 사용하여 상담자의 문제 해결능력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내담자의 지각을 탐색한다.
-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하라. “당신이 상담자라면, 취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 고객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고객형(클라이언트형)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내담자임.

📁 고객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잠재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활용하라. 만약 자신이 상담자라면 이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는지 물어보라.
- 상담을 통해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시도해 보았는지 물어본다.

4. 변화 동기유발 상담의 목표설정

○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파악하기

- 장기적인 취업 준비의 목표 아래, 참여자의 변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지어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목표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일 때 내담자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열중하게 됨
- “상담을 통해 당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의 질문을 통해 현재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장기적인 목표(취직 및 탈수급, 경제적 안정 등)와 연결되게 함

○ 상호작용적(관계성) 질문을 사용하기

-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을 언급할 때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을 언급하여 변화동기를 유발함
- 내담자 : “제가 일을 시작해도 적응하는 데에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 할거예요”
상담자 : “당신이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적응한다면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우게 될까요?”

○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환 :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에 관심두기

- 상담목표는 언어 상 긍정적인 형태, 즉 내담자가 무엇을 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거나 생각할 것인지 진술
- 내담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릴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그 대신에”라는 용어를 사용
- 예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뭔가 활력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반복적으로 참여자의 표현을 상담자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주거나, 참여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도록 연습시킴

○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가능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

- 목표가 내담자의 능력, 의지, 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달성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현실적인 목표는 동기를 높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함
- “00님께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00님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00님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00님의 가족이 00님이 일을 하게 되어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 목표수행을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기

- 변화는 한 순간에 쉽게 일어나기 보다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함
- 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내담자가 진전이 없는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 ② 빠른 진전을 보일 때 내담자의 자존심이 고양되고,
- ③ 변화의 책임이 내담자에게 있음을 즉,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담자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5. 변화를 위한 질문 기법

○ 첫 상담 전에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 질문하기

- 해결중심 상담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 상담 약속 후 첫 상담을 오기 전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단서가 됨

📁 첫 상담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질문하기의 예

- “취업 성공 패키지 사전 단계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고 상담 약속을 정하신 뒤 선생님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요?”

○ 기적질문 활용하기

- 기적질문은 내담자의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해 보게 하는 것임. 내담자의 마음상태가 문제 중심의 집착에서 벗어나 해결중심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기적 질문의 예

- “제가 이제는 이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게 되면 가족 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한 밤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고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상담을 받으러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내담자 : 활기차게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상담자 : 어떤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내담자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이가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했으면 해요

○ 예외질문 활용하기

- 예외란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 그리고 문제가 덜 심각했던 상황들을 의미함
- 어떠한 문제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 해결중심 상담의 기본 전제임
- 한 두 번의 중요한 예외를 찾아내어,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성공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줌
- 예외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러한 예외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보통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목함

- 예외에는 우연적인 예외와 의도적인 예외가 있음
- 우연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연적으로 발생했는지 관찰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예시 : 우연히 수영을 깎아 봤더니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던 예외 경험에 대해, 왜 우연히 수영을 깎게 되었는지 생각 및 관찰 해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내어 강화함
- 의도적인 예외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도록 하라는 행동과제를 제시함
 예시 :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는데 돈이 부족하여 좋아하던 술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가족들도 좋아하고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긍정적인 예외 경험을 했다면, 계속하도록 행동과제를 제시
- 예외 질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외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구체적인 예외 경험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현재 또는 과거의 성공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내담자의 미래가 더 희망적 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음

예외 질문의 예

-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든 때 말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의욕이 생겨났거나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지금처럼 계속 아프거나 힘든 때 말고요, 기분이 좋거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생각 드는 때가 있었나요?”

○ 척도 질문 활용하기

- 숫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의 심각도,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 순위, 성공가능성 등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질문하는 것임
- 척도질문을 활용하면,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격려하고 강화해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척도 질문의 예

상담자 : 0점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날이고 10점은 내가 무슨 일든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합시다. 오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내담자 : 오늘은 5점 정도요.

상담자 : 생각보다 높은데요? 0점과 5점의 차이는 뭘까요?

내담자 :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담 약속을 오기 위해 면도도 하고서 깔끔하게 길은 나서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딘가를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 : 0점일 때는 어떤데요?

내담자 : 늦게까지 자고 숙취 때문에 오전을 모두 멍하니 보내죠.

상담자 : 그럼 일단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무언가 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자신감을 주는군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5라고 보면 6으로 나아진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 대처질문 활용하기

- 대처 질문은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지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임

☞ 대처 질문의 예

- “그런 날들을 어떻게 견뎌 내셨나요?”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탱시켜왔던 작은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의 내적 자원과 대처방식을 깨닫게 된다. 이 작은 일을 근거로 앞으로 성공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수 있다.

-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대처해 올 수 있었습니까?”

-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와 끔찍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다. 상담자는 호기심과 진심으로 이 내담자의 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면의 용기와 자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하기

- 상담의 초기에 변화의 동기에 관한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면 내담자가 평상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내담자가 대답하는 동안, 내담자의 행동 패턴, 기분 변화 등의 이야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걱정거리 중 하나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동기를 유도함

○ 극단적 질문 활용하기

- 내담자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변화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
- 자신이나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한 걱정애 대해 말하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
-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

📁 극단적 질문의 예

- “장기적으로 볼 때 취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변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럴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신이 이렇게 지낸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 과거 회상 질문 활용하기

- 내담자에게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을 회상하게 하여,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 보도록 하는 질문 방법
- 현재 상황에 비해 과거 상황이 좋았다면,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기회가 있음을 독려하여 동기 부여함

📁 과거 회상하기 질문의 예

-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 때와 비교해서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 “술에 빠지기 전에 당신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 때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10년 전과 지금의 당신의 모습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 “그 동안의 힘든 일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 미래 예상 질문 활용하기

- 변화된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도록 하는 질문 방법
- 자신이 변화했을 때와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 냄

📁 미래 예상하기 질문의 예

-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어떤 상황과 삶이 00님을 기다리게 하고 싶습니까?”
- “당신이 변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10년 뒤 당신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담의 목적 : 변화동기 유발, 참여자의 강점과 자원 발견

상담과정	예시 질문	비고
참여자 유형 파악 및 관계 조성	- 오시기 힘들었을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나와 주셨으니 00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00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뭔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요?	상담 전 일어난 변화
	00님이 계속 지금처럼 지내시면, 00님 따님(아내, 부모)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 하고 있을 거 같으세요? 따님은 00님이 혹시 취업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 할까요?	방문형
	- 그러면 제가 어떻게 00님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00님이 저라면, 00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불평형
	- 사전단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 전에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보셨어요?	고객형
	00님은 사전단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 사전단계를 통해서 00님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00님이 오늘 여기에 간다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00님의 자녀(부모, 아내)는 00님이 어떻게 지내기를 바랄까요?	초기상담
변화동기 유발을 위한 질문 사용 (예시)	00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걱정하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 요슬램프의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기적질문
	-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든 때 말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의욕이 생겨났거나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지금처럼 계속 아프거나 힘든 때 말고요, 기분이 좋거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나요?	예외질문
	0에서부터 10까지에서 0은 가장 힘들 때이고 10은 문제가 다 해결된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몇 점입니까?” 2에서 5점으로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척도질문
	-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 그렇게 버텨온 방법과 이유가 뭘까요? - 그때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대처질문
	-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3년 이후 즉, 몇 년 뒤를 생각해 보면, 취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건 뭘까요? -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고 쳐봅시다. 만약 그러다가 지금보다 힘든 우리 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떠 올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금처럼 그대로 지내면 00님 자녀가 컸을 때,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는 뭘까요?	극단적 질문
	-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술에 빠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00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힘든 일 있기 전에 00님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지금 00님의 일상적인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회상 질문
	-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어떤 상황과 삶이 펼쳐지면 좋을까요? - 힘들지만 취업도 하고 저축도 하고 조금씩 내 삶을 다시 복구해나갔을 때, 몇 년 뒤쯤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은 00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미래예상 질문
	사전단계를 통해서 00님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 사전단계 동안 00님이 스스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최종상담
마무리		

② [참여자 가이드]에 제시된 예시 질문을 활용한 단기해결중심상담

📁 들려주시겠어요?

-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데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 귀하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겠어요?

📁 궁금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 단계 안내를 받고 약속을 정한 뒤에
귀하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소하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 행복한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 만약,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나의 소원을 하나 들어 주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귀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알고 싶습니다.

- 어려운 상황과 힘든 날들을 어떻게 견뎌 내셨나요?
-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귀하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 행복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 10년 뒤, 어떤 삶이 귀하를 기다리게 하고 싶습니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추구하면, 그 삶이 10년 뒤에
올 수 있을까요?

③ 상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상담질의 응답지

- 다음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귀하가 먼저 생각하여 간단히 메모하여 오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틈틈이 시간 내어 생각하고 간단히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성명 [], 성별[], 연령[], 군필여부[필, 미필, 면제],
휴대폰번호[]

상담을 위한 질문사항	상담을 위한 주요 답변 내용
직장생활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없으시다면 직장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 찾아보셨나요?)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일을 하셨습니까?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어떤 분야로 공부하고 경험을 가지셨나요?)	
현재 직장을 갖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의 습관적 행동 중 바꾸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 흡연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가족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가족생활 중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 무엇인가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참고3 과제이행 맞춤 상담

① “괜찮은 나” 발견하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2.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

3. 나의 인상, 외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4. 나의 마음씀씀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5. 힘들고 지쳐도 지금껏 버티고 살아온 나만의 힘!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② 일 경험 떠올려보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지금까지 해 본 일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2. 지금까지 해 본 일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3.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즐겁고 보람되다	
나와 안맞는다	
4. 일을 할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장점	
단점/아쉬운 점	

③ 내 삶의 보물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왜 나에게 소중한가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것은 나에게 이런 의미	
그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느낌	
3.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④ 관심 직업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지금까지 내가 해 보았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 본 일	
그 일을 통해 갖춘 능력	
2.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도전 가능한 일	
배우고 자격을 따면 도전 가능한 일	

⑤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내가 돈 안 벌고도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서 하는 일은?
내가 평소에 시간을 내어 자주 하는 활동은?
기존에 했던 일 중에서 잘 집중해서 했던 활동은?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참고4 롤모델(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1.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의 의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기집에는 취업을 하여 탈수급한 대상자 들의 성공 사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음
 - 참여자 수기에는 빈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감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과 탈수급에 대한 마음을 먹기까지의 고심의 과정이 담겨 있음
 -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신만 그와 같이 힘들고 끔찍한 과정과 경험을 겪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빈곤의 상황을 극복하고 노력의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여 탈수급하거나 더 나은 삶을 준비하여 가고 있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사례를 제시 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끌어나감
 - 자신의 경험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일수록 상담사가 자신의 경험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상담을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대상자의 관심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
- 자활 대상자가 구직과 탈수급에 대한 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의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과정 등이 담긴 사례를 확인 하도록 하고, 해당 사례의 공유를 통해 참여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함의를 얻도록 코칭 및 상담 제공
 - 수급상황에 있는 참여 대상자의 취업준비 및 취업성공 과정과 어려움 극복 사례 등을 통해 구직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제공

2.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의 진행

- 참여 대상자가 취업성공 수기에 담긴 사례자를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 내용 공유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제적인 준비 등이 수반될 수 상담을 실시

- 사례 내용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생각의 교류와 공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타대상자와 함께 소수 그룹을 형성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 기존에 보급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능
 - 공유하기 위한 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대상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경우이거나, 대상자 보다 어려운 속성을 지닌 대상자의 수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
- 고용센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 수기가 담긴 책자가 배포되어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공식 홈페이지(www.work.go.kr/pkg) 에도 취업성공 수기가 일부 게시되어 있으므로 책자 및 유인물을 활용하여 제시 가능

■ 참가자 수기 1 ■ 이젠 능력 있는 여자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김세영 님

스물한 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월세 단칸방에서 최소한의 살림살이들만 장만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로 맞벌이를 하다가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생각은 않고 집에서 놀기 일쑤였습니다. 불안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물다섯 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그나마 해봤던 사무직 일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질 않아 직장을 구한다는 건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은 밤까지 봐 주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저금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조그만 장난감도 사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내 나이 스물일곱 살, 큰아이의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의사선생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다리의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세상이 자꾸 흐려져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어찌면 울고 있는 시간도 내겐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큰아이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일을 못하는 대신 정부에서 90만 원 정도의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병원비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치료시간, 앞으로 2년만 더 치료 받아 완치된다면 우리 세 식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또 한 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큰아이는 재발 3개월 만에 우리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펴보지도 못한 꽃이었던 아이.... 지켜 주지 못한 미안함에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2~3개월의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젠 2인 가족이고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취업을 빨리 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내게 둘째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큰아이는 내 가슴속에 넣어 두었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보자! 이제는 둘째 아이를 위해 살자.'

아이는 얼마 있으면 초등학생인데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학벌도 경력도 지식도 없는 내게 취업이란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상담도 받고 국비 지원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나중에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손해 볼 건 없겠다는 생각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물어보는 상담사님이 귀찮았지만 몇 번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 금세 편안해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내가 더 상담사님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끝내고 내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지 상담사님들, 같이 교육을 받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던 교육이 왜 그리 아쉽고 짧게만 느껴지던지요. 아쉬운 마음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전산회계 2급을 배우러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다녔을 무렵 취업을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후 모의 면접을 토대로 여러 곳에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꿈만 같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지만 내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건설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나도 이젠 어엿한 직장인!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겐 너무나 소중한 일터입니다.

취업 한 달 후 정부에서 주던 생계유지비가 끊긴다는 게 조금은 아까웠지만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로서 담당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은 취업 1개월이 지나자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벌써 3개월째 수당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직업 상담사님이 전화해 주시면서 안부도 묻고 취업성공수당도 신청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 * 김세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힘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참가자 수기 2 ■ 새로운 기회이자,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정찬호 님

현실은 냉정했고 어디에도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늘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취업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를 융통할 목적으로 아버님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은행에 저당 잡혀 대출을 받는 동안, 집은 자가 주택에서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속에서 저는 무던히도 방황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나이 마흔을 넘겼더군요. 아득해져 왔습니다. 방황하는 동안 친구들도 떨어져 갔고, 의논할 상대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어떤 개그맨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말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동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받았기에 차근차근 받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에게는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 마흔에 저는 그제야 방황을 접고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던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 나서지 않았을 뿐 관심을 갖고 절실하게 찾아보면 의외로 가까이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월수입이 작다는 현실을 파악한 후 국가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실직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워크넷을 통해 주로 장기 구직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일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곳은 기본급 120만 원 이상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은 빨리 되지 않고, 생활비는 매달 들어가고, 빚은 늘어가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국비 지원 이외에 2010년에 새로 시작된 ‘계좌제’를 통해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제 처지와 현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던 직원은 저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자동차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달간 자동차 정비 중 외장관리 과목을 수료했습니다.

외장관리 과목을 수료 후 현재 평택공단에서 수입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곧 10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성공수당 역시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급자 생활에서도 당당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란 경험이었거나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사람에게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체제가 자유와 의지를 구속받는 것 같아서 싫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해보니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 드릴 수 있고, 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난날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술직은 경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도 경력이 쌓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이제 저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경력을 쌓아서 지금보다 나은 수입으로 부모님의 빚도 갚고 작은 전세라도 얻어서 나이드신 부모님을 편히 모시는 일뿐입니다. 이 모두가 취업성공패키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직장이 곧 생활이고 생활은 삶의 바탕이 되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멋지고 폼 나는 직장, 남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직장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위한 직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를 먹는 동안 저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꿈이란 나이 먹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나이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혹은 30대의 회사 동료이며 동생들이기도 한 그들은 이미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저는 일찍부터 그러한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몇 년도부터 생겨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기회였고 힘들 때 나를 이끌어 준 따뜻한 손이었습니니다.

- * 정찬호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 나는 10년 뒤 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 참가자 수기 3 ■ 취업성공으로, 예순부터 신바람 인생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심재영 님

남들은 예순이 넘으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설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의 생기가 되살아난 듯한 열정으로 환갑이 지난 나이에 산업 역군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 전자회사 디지털 센터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신바람 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해 본 일이라 서툴러서 같이 일하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객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동료나 선배, 직원들이 칭찬해 줍니다.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주차 대수가 8시간 기준 500대 이상이라 일할 적에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하루 일을 마감하고 나면 근로의 보람과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뿌듯한 기분과 충만감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 보냅니다. 허나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20대에 들어간 첫 직장에서 그 회사 직업훈련생으로 출발하여 성실한 근무로 중견 관리자까지 진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을 정도였고,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 한파에 허울 좋은 명예퇴직이란 꼬리표를 달고 25년간 다닌 정든 직장을 그만두었지요. 그때가 쉼 살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 요량으로 친구와 어울려 조그마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이 모르는 분야에 달려들었으니 몽땅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망해 버렸습니다. 돈 잃고 건강까지 잃은 저는 노숙자 처지만 안 되었을 뿐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했지요.

혼자 황량한 사막에 내던져진 심정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용센터에 들렀다가 워크넷 활용 방법을 터득했지요. 그러나 젊어서 하는 구직이 아니라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하는 구직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구직의 벽은 것처럼 철옹성 같았습니다.

이렇게 침체 일로에 빠진 저에게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얻듯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어느 날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담당자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선생님의 적성에 맞는 취업 활동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날 당장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취업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를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여러 취업 예비생들과 함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취업 회사 인사담당자와 대화하는 법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비록 나이가 많긴 하지만 제 적성이 뭔지, 저에게 맞는 구직처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잘 짜여진 교육이었습니다.

혼자 워크넷에서 찾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구직처가 프로그램 참여 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후 제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또 취약했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고 취업 지도 담당자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고 나니 답답하던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이때부터 구직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조차 제출해 보지 못하고 거절만 당하던 저에게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지가 온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점과 부족한 부분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저소득 실업자에게 적극 권합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말고는 없습니다. 나이 먹은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자괴감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면허 자격증이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모 전자회사의 주차 관리직 관리원 채용 공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이고 휴일은 쉬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라고 했습니다. 비록 급여는 적지만 나쁘지 않다고 저에게 설명하더군요. 저는 면접 후 곧바로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맞춤형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정 액수의 생활비를 보탬 수 있고, 일이 있어 즐겁고, 저소득층에게 버팀목이 되는 국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습니다.

* 심재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내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 참가자 수기 4 ■ ‘내가 뭘 할 수 있겠어’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이지혁 님

저는 마흔세 살의 가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두 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불황으로 인해 수입물가와 원자재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건설사와 설비회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저도 10년 동안 운영하던 건축설비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건 물론 신용카드 연체에 대출금까지 연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지요. 은행 거래를 비롯해 모든 것이 다 정지되니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한동안 술로 상처를 달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눈물과 분노만으로 살아갈 순 없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의 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 버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회사를 운영할 때 맺은 인연으로 파이프 운반, 도색 등을 시작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에 힘에 부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어 손을 쥌 수 없었고, 허리와 등이 아파 온몸에 도배를 하듯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일당은 6만 원. 기술과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먼지를 들이마시며 일을 한 대가치고 너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일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해도 우리 네 가족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빚은 언제 갚고 이 불안한 신용 불량자의 굴레는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사 분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용접학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용접 학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배관 용접은 한 달에 300만 원, 두 달에 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였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던 중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고용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 결과,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과 취업을 꼭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으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전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을 목표로 하기에 딱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300만 원의 계좌비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 더욱더 힘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남 김해에 있는 용접 학원으로 내려가 두 달 동안 고용센터에서 주신 300만 원 계좌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손을 다치고 가슴 부위에는 심한 화상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나를 믿고 주는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눈물 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배관 용접 두 달 과정을 끝내고 특급 용접사는 아니지만 준기량자는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워크넷 취업 사이트를 보고 평택 소재 산업용 밸브 제조 회사에 들어가 처음으로 용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타던 날, 뜨거운 눈물과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 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신용 불량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모두 추억이고 과거일 뿐이다, 이제 내 앞에는 탄탄한 미래와 희망이 있다, 당장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제 나에게는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좌절과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고용센터에서 거금 100만 원을 보너스로 받기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간만에 행복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옆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보이면 먼저 취업을 하라고, 기술이 없어 취업이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가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알려 줍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에 조금의 거짓 없이 생생하게 알려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길을 알려 주려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더 많은 기술을 배웠고, 더 좋은 조건으로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절망의 신용 불량자에서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니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 이지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 지난 몇 달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참가자 수기 5 ■

- * 가장 최근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수기입니다. 이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50세 윤민의 님, [나를 찾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중에서

저는 여성가장이며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꿈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매월 제가 적금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나라에서도 저축액의 최대 6배까지 일정액을 넣어 주어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미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동안 굴레처럼 따라 다녔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길이였습니다.

몇 년 후 조그마한 반찬가게를 열어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나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 58세 김영자 님, [베이비붐 세대의 고뇌, 우리가족을 실업자의 늪에서 탈출하게 해준 희망취업성공패키지] 중에서

내일배움카드는 내게 큰 꿈을 갖게 해주었다. 우선 컴퓨터 학원에 등록부터 했다. 나이 든 사람을 초보부터 가르쳐 주는 컴퓨터 학원도 흔치는 않았다. “OA컴퓨터 활용, 사무자동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통하여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이 해 내기란 쉬운 과정들이 아니었다. 2시간, 3시간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꼭 해내고 싶어 컴퓨터와 씨름하였다. 어깨가 아파 와서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의 도전은 계속 되었다.

내 돈도 아니고 국비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는 나는 대충할 수가 없었다. 어느 직장이고 이력서를 낼 때 마다 주눅 들었던 컴퓨터도 이젠 당당히 해내고 싶었다. 하루 2~3시간 학원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도 또 복습에 복습을 해보곤 했다.

• 35세 이수지 님, [35세 인생, 비로소 삶에 웃음의 날개를 달다] 중에서

한 번의 자신감이, 아니 가족의 도움이, 더 많은 욕심을 내게 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일지 않았다. 오전엔 회계 배우고 오후엔 운전면허학원도 다니고 밤엔 사무자동화 실기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매일 매일을 보냈다.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내가 쌓고 싶은 쌓아야 할 스펙들은 늘기만 했다. 3월엔 운전면허, 4월엔 회계자격증, 5월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두 취득하였을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아니 나에게도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는 3개월이 짧게만 느껴졌다.

• 19세 성유리 님, [겨울의 시림을 지나 봄을 만나다] 중에서

생각해보면 사고를 치긴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불량청소년', '문제아' 저를 따라붙는 수식어였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뺏고 때리고, 담배도 피며... 제 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가시나요? 하루가 1,440분인데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도 안하던 제가 690분 동안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해봤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지만 두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 더욱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했던 애가 하루 60분도 아닌 690분이라는 수업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오늘은 쉬고 내일 가서 잘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안을 스스로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대면 친구들이 "너 되게 많이 변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훈련을 들어갈 때부터 훈련시간이 길어서 걱정해 주었던 상담사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끝을 본건 제 인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해냈다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게, 가족들 앞에 더이상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는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 48세 한지희 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에서

아직 전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고, 두 딸 시집도

보내야 하고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만일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많은 것들과 친해져야 한다. 인내심은 당신의 소중한 친구로, 경험은 친절함의 상담자로, 신중함은 당신의 형으로, 희망은 늘 곁에서 지켜주는 부모님처럼 친해야 한다"는 글귀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보다 더 삶이 힘든 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 48세 유현진 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구직의 반은 성공이다] 중에서

늘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미래 계획을 저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놀랍고 뿌듯합니다. 이제 입사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전에는 탈수급을 두려워 했지만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제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천직이 생겼으니까요.

참고5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 목표 :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능력을 파악한다. 그림을 통해 자존감이 낮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대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왜 그러한지 이유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며 취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며 상담을 제공한다.

○ 준비물 및 방법 :

- ① A4용지, 연필, 지우개를 제시하고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 * 지시문 :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 ② 내담자의 질문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림 모양이나 크기, 위치, 방법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주어서는 안된다.
- ③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해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 진단 및 해석기준

- 빗속의 사람 그림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보는 것이다.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은 여느 사람 그리기 검사에서처럼 자화상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비는 어떠한 외부적 곤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주제화는 그린 사람의 자기개념을 알아 볼 수 있고,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만큼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그림 속의 인물이 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추측할 수 있다. 그려진 그림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불쾌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방어기제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심적 역량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해석 기준>

- 그림 속에 그림 사람: 자아 (자아 존중감 및 자아개념,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 태도 등)

- 비 : 외부적 곤란이나 스트레스 상황
- 그림 속 사람이 비를 대처하는 방법: 대상자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정도

- 사람을 영성하게 그린 경우 : 자존감이 낮다.(자신에 대해 왜 불만족스러운지 묻는다)

- 빗방울이 굵고 비의 양이 많다 : 스트레스 심하다.(무엇(가족, 돈 등)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 묻는다)



- 우산을 잘 받쳐 들고 있거나 비옷을 입고 있다 :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경우

-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경우

-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가만히 비를 맞고 있다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스트레스에 그냥 노출된 채로 체념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인 채, 혹은 술 등으로 잊으려고만 노력하는 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어떻게 하면 나의 힘든 점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한다)

* 최의선 외(2006)의 자료를 수정보완함

출처 : 최의선 외(2006). 미술치료기법. 서울 : 학지사.

참고6 강점진단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1.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a)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1	2	3	4	5
b) 쉽게 싫증을 낸다.*	1	2	3	4	5
2. 학구열					
a)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율을 느낀다.	1	2	3	4	5
b)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1	2	3	4	5
3.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a)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매우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1	2	3	4	5
b)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창의성, 독창성, 실천성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a)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한다.	1	2	3	4	5
b)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5. 사회성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a)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둔하다.*	1	2	3	4	5
6. 예견력					
a)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1	2	3	4	5
b)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7. 호연지기와 용감함					
a) 강력한 반대로 무릅쓰고 내 주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1	2	3	4	5
b)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1	2	3	4	5
8. 끈기, 성실, 근면					
a)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b) 일을 할 때면 단전을 피운다.*	1	2	3	4	5
9. 지조, 진실, 정직					
a)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	2	3	4	5
b) 친구들은 내게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 없다.*	1	2	3	4	5
10. 친절과 아량					
a)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11.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a) 본인의 기분과 행복 못지않게 내 기분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1	2	3	4	5
12.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 정신, 충성심					
a)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b)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다.	1	2	3	4	5
13. 공정성과 평등 정신					
a)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1	2	3	4	5
b)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14. 지도력					
a)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록 이끌어준다.	1	2	3	4	5
b)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1	2	3	4	5
15. 자기통제력					
a) 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1	2	3	4	5
b) 다이어트를 오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16. 사려, 신중함, 조심성					
a)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b)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7. 겸손과 겸양					
a)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1	2	3	4	5
b) 스스로 한 일을 치켜세우는 편이다.*	1	2	3	4	5
18. 감상력					
a)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스포츠, 과학, 수학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전율한 적이 있다.	1	2	3	4	5
b) 평소에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1	2	3	4	5
19. 감사					
a)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1	2	3	4	5
b)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a)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1	2	3	4	5
b)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21.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a)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1	2	3	4	5
b) 사명감이 없다.*	1	2	3	4	5
22. 용서와 연민					
a)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1	2	3	4	5
b)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23. 명랑함과 유머 감각					
a)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1	2	3	4	5
b)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1	2	3	4	5
24. 신명, 열정, 열광					
a) 무슨 일을 하든 전력투구한다.	1	2	3	4	5
b)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1	2	3	4	5

<강점진단 활용>

1. 목적 : 자존감 및 의욕 강화,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활용
2. 진단 : 각 영역별로 응답한 내용이 모두 회색 부분(4점 또는 5점,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역산척도로 1점 또는 2점에 해당)에 들어가 있는 경우, 참여자의 최상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각 영역별 8~10점이면 그 사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점수가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5~7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 참여자의 강점으로 제시.
3. 활용 :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하며 효능감도 낮은 참여자에게, 강점진단을 실시하여 강점을 발견하여 주고 동기를 강화하는 상담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참여자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시켜주어 자존감을 높여주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원출처 : <https://www.viame.org/survey>

< 참고 : 24가지 대표 강점의 의미와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예시 >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색다른 것들에 끌리는 마음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운다.
2. 학구열		
배움과 탐구에 대한 열의와 정열		새로운 지식에 대해 배운다.
3.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각		자기 성찰(반성)을 통해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배운다.
4. 창의성, 독창성, 실천성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색다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구현하는 풍부한 상상력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
5. 사회성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다른 이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한다.
6. 예견력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통찰력 있게 판단하여 현명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예측과 결과를 비교한다.
7. 호연지기와 용감함		
개인적인 어려움에 당당히 마주하고 도전하는 능력		평소 두려움 때문에 행하진 못했던 일에 도전한다.
8. 끈기, 성실, 근면		
쉽게 단념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성스럽고 참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9. 지조, 진실, 정직		
약속을 지키고 정해진 규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거짓된 표정과 말투를 수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 감정을 표현한다.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0. 친절과 아량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이를 대할 때 항상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 운전을 할 때, 항상 보행자를 생각하고 양보를 생활화 한다.
11.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그 마음을 편지로 표현 한다.
12.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 정신, 충성심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공중도덕(신호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인사 잘하기 등)을 잘 지키고,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
13. 공정성과 평등 정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 공정과 평등에 원칙에 따라 대하는 것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14. 지도력		
조직의 성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힘		사고 모임을 만들고 그 조직을 이끌어 본다.
15. 자기통제력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정해진 목표를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16. 사려, 신중함, 조심성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말이나 행동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고 행동한다.
17. 겸손과 겸양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행동하는 것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에 대해 칭찬한다.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8. 감상력		
사물이나 행위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		여행이나 예술품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느낀다.
19. 감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항상 주변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인사한다.
20. 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미래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찾는다.
21.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매일 생각, 기도하고 명상한다.
22. 용서와 연민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		자신의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길 나누거나 용서 편지를 쓴다.
23. 명랑함과 유머 감각		
유쾌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이에게 웃음을 주는 것		유머 섞인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한다.
24. 신명, 열정, 열광		
매 순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행동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정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자 갈망한다.

참고7 심리정서상태진단·상담

①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지난 1주 동안 자신이 느끼는 각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아주조금/전혀	약간	보통	많음	아주많음	합산
1	재미있다	1	2	3	4	5	PA 1~10번까지의 체크점수 합산
2	민첩하다	1	2	3	4	5	
3	흥분된다	1	2	3	4	5	
4	고무된다	1	2	3	4	5	
5	자신있다	1	2	3	4	5	
6	단호하다	1	2	3	4	5	
7	주의깊다	1	2	3	4	5	
8	의욕이 솟는다	1	2	3	4	5	
9	활기차다	1	2	3	4	5	
10	자랑스럽다	1	2	3	4	5	
11	짜증스럽다	1	2	3	4	5	NA 11~20번까지의 체크점수 합산
12	고통스럽다	1	2	3	4	5	
13	부끄럽다	1	2	3	4	5	
14	혼란스럽다	1	2	3	4	5	
15	초조하다	1	2	3	4	5	
16	죄책감이 든다	1	2	3	4	5	
17	겁난다	1	2	3	4	5	
18	적개심이 든다	1	2	3	4	5	
19	긴장된다	1	2	3	4	5	
20	두렵다	1	2	3	4	5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서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커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부정적 태도가 참여자의 취업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활용하여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부정 정서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입한다.
부정 정서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우울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안정상담 등의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 해석 : PA영역의 합산 점수는 긍정정서 점수이다. (10점~50점 사이)
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
NA영역의 합산 점수는 부정정서 점수이다. (10점~50점 사이)
5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정서가 높은 상황(40점 이상이면 매우 부정적)

원출처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국내출처 : 우문식(2014). 행복 4.0. 물푸레.

②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최근 3개월간 당신의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이다. 잘 읽고 해당번호에 표시(V, O)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간	전혀 그렇지않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확실히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비교적 주저함이 없이 서로 대화하는 편이다	0	1	2	3
2.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잘 푸는 편이다	0	1	2	3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	0	1	2	3
4. 우리 가족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잘 이해하는 편이다	0	1	2	3
5. 가족 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있다	0	1	2	3
6. 가족 간에 물건을 부수는 일이 있다	0	1	2	3
7. 가족 간에 흉기(칼, 송곳, 병)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있다	0	1	2	3
8. 가족 간에 손이나 발, 다리 등으로 때리는 일이 있다	0	1	2	3
9. 가족 간에 심하게 때려 한쪽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한 일이 있다	0	1	2	3
10. 가족의 의식주 등 경제와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0	1	2	3
11. 가족 중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	0	1	2	3
12. 자녀교육비와 양육 등에 있어 부담이 크다	0	1	2	3
13. 가족으로 인해 여가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할 여유가 없다	0	1	2	3
14. 가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0	1	2	3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가족의사소통¹⁾, 가정폭력²⁾, 가족부담³⁾에 대한 기초평가용.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파악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소 중 하나가 가족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가족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0또는 1에 체크한 경우 가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0 또는 1로 체크한 항목에 대해 참여자와 심층상담을 나누어 가족 문제 중 어떤 부분을 해결하도록 지원하여야 취업의 걸림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 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점수합을 해당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 산출(0-3 채점)
→ 0-1미만 : 전혀 아님, 1-1.5미만 : '낮은' 수준
1.5-2.5미만 : '보통' 수준
2.5이상 : '높은' 수준
- ② 가족의사소통 : 1-4번 문항
가정폭력 : 5-9문항
가족부담 : 10-14문항

- 기타 : 진단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 두 문항만 질문하여 상담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의사소통 - 2번문항, 가정폭력 - 8번문항, 가족부담 - 14번문항으로 변별질문 가능

1)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최은영(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용분(1999). 정신분열병환자 가족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③ 사회정서적 고독감

* 아래 문항은 현재 삶에서(지난 2주 동안) 느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느끼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보통 그렇다
1.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이 느낀다.	0	1	2	3
2.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두렵다.	0	1	2	3
3. 나는 배우자가 없는 것 같이 느낀다.	0	1	2	3
4. 내가 나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친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0	1	2	3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	1	2	3
6.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	1	2	3
7. 나는 이해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0	1	2	3
8.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	0	1	2	3
9. 외로움을 느낀다.	0	1	2	3
10.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11. 오늘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12.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0	1	2	3
13.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0	1	2	3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안당할까 봐 두렵게 느껴진다.	0	1	2	3
15. 나는 나를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사회정서적 고독감 척도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사회정서적 고독감의 진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기술 향상,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향상이나 대화법, 사회적응력 향상 등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대인간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문화 스포츠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연계)에 참가하도록 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최대값 45점)
2점과 3점에 주로 체크되어 있어 합산이 30점 이상이면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출처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57-270.

국내출처 : 김미령(2005). 여성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90-111.

④ 우울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7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3	2	1	0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3	2	1	0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3	2	1	0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3	2	1	0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점수 합계	점			

<우울 척도(CES-D)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서적 불안 및 우울증의 판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소 중 하나가 우울증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패턴이나 습관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도록 하며(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운동, 식습관, 절주, 금연, 외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집 밖을 자주 나오는 등의 사회활동을 넓히는 것, 노래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등),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며 심층 상담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참여자가 걱정을 느끼는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생활패턴(취업을 통한 소득형성을 포함한)을 갖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증상 의심(Radloff, 1977)
 - 21점 이상일 경우 우울상태(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학조사, 21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원출처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국내출처 : 배성우, 신원식(2005). CES-D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⑤ 자아존중감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장들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표 하세요.

문항 내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정말 아니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2.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4	3	2	1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3	2	1
5. 나는 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3	2	1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	3	2	1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3	2	1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자아존중감 진단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판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소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 어떤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대해 상담을 통해 경감하거나 해소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강점진단상담의 활용이나, 일상적인 상담시 칭찬 등의 빈번한 활용 등을 통해 자존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 해석 : 29점 이하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고, 15점 이하인 경우 자존감이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출처 : Rosenberg, M. (1965a).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65b). The Self-Esteem Scale.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320-325.

국내출처 : 황미구, 김은주(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 존중감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⑥ 심리적 웰빙(행복감)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이 옳으면 그래도 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내 자신이 판단이 중요하다.	1	2	3	4	5
4.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1	2	3	4	5
5.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만족한다.	1	2	3	4	5
6.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5	4	3	2	1
7.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	1	2	3	4	5
8.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9.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지 않다.*	5	4	3	2	1
10.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1	2	3	4	5
11. 나는 그날그날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5	4	3	2	1
12. 현재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1	2	3	4	5
13. 매일 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5	4	3	2	1
14. 전반적으로 나는 계획성 있게 사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1	2	3	4	5
16.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5	4	3	2	1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가깝거나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다.*	5	4	3	2	1
합산	총점: 점				

<심리적 웰빙 진단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 수준의 판단.
- 활용 : 참여자가 현재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취업을 한다면 행복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며 상담을 나누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범주로 합산 점수가 나올 경우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 상담을 먼저 실시하여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행복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취업을 하여 자립한다면 그 행복이 더욱 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여 취업의욕을 높인다.
- 해석 : 72점 이상인 경우 심리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
 71~54점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
 53점 이하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편
 36점 이하 심리적 행복감이 매우 낮은 편

원출처 : Keyes, C. L. M. & Ryff, C. D.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p. 227-263).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국내출처 : 안정신(2005). 중·노년기 미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 전 생애 발달과정의 부모 자녀 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참고8 생활패턴진단·상담

① 일반건강척도(GHQ)

다음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아래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번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확실히 그렇다	소계
1. 무엇을 하든지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4	3	2	1	A. 1~7번 합산점수 _____점
2. 자신이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3.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할수 있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4. 힘든 일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까?	4	3	2	1	
5.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까?	4	3	2	1	
6.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한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7. 자신이 일을 수행해온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3	2	1	
8. 걱정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까?	1	2	3	4	B. 8~16번 합산점수 _____점
9.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0.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1.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2. 자신감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3.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1	2	3	4	
14. 매사에 한꺼번에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5. 초조감이나 긴장감을 항상 느꼈습니까?	1	2	3	4	
16. 때로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7.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까?	1	2	3	4	-
18. 모든 점에 있어 상당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1	2	3	4	-
합계	C. 총점 _____점				
19. 하루동안 피는 평균 담배개비수는? ()개					
20. 흡연 년수 : ()년					
21. 1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음주하는가? ()번					
22. 평균 음주양은? ()병					
23. 음주년수 : ()년					

<일반건강척도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는 신체생리적 측정이 포함되지 않은 자기보고식 진단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 활용 :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GHQ는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사회생활 부적응, 불안과 우울 등을 평가한다. 참여자 특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해석
 - A영역의 점수(1~7번 합산) : 사회생활 부적응
23이상 : 높은 편, 18~22점 : 보통, 17이하 : 낮은 편
 - B영역의 점수(8~16번 합산) : 불안과 우울
29이상 : 높은 편, 23~28점 : 보통, 18이하 : 낮은 편
 - C영역의 점수(1~18번 합산) :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45이하 : 높은 편, 46~55점 : 보통, 56이상 : 낮은 편
 - 19번 이하의 문항은 GHQ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문항으로, 19~23번 문항을 작성하도록 한 결과, 음주, 우울증 문제가 의심되는 참여자는 알코올 의존도, 우울증 진단 등을 추가 활용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원출처 : D. P. Goldberg and V. F. Hillier(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1), 139-145.

국내출처 : 남정자, 최정수(1993).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1 :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② 알코올의존도 진단(NAST)

평소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 해주세요.

1. 자기 연민(슬픔)에 빠지며 술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그렇다 (), 아니다 ()
2.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 아니다 ()
3. 술 마신 다음날은 해장술을 마신다? 그렇다 (), 아니다 ()
4. 취기가 오르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 아니다 ()
5.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다? 그렇다 (), 아니다 ()
6.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7.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그렇다 (), 아니다 ()
8. 술로 인해 직업기능에 상당한 손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9. 술로 인해 배우자가 나를 떠났거나 떠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 아니다 ()
10. 술이 깨면 진땀, 손 떨림이나 불안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그렇다 (), 아니다 ()
11.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12. 술로 인해 생긴 문제(골절, 창상)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알코올의존도(NAST)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알코올 의존도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알코올 의존인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인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해석 : ‘그렇다’에 체크한 개수를 점수로 산정함
 - 3점 이상 : (그렇다 3개 이상) 알코올 의존일 가능성이 높음.
 - 4점 이상 : (그렇다 4개 이상)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볼 수 있음.
 - 9점 이상 : (그렇다 9개 이상) 알코올 중독 의심. 전문 진단 필요.
- * 특히 불안이나 공포 등 금단증상을 나타내는 10번, 11번 문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문항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함.

출처 : 국립서울정신병원: <http://www.snmh.go.kr/>

③ 알코올의존도 평가(AUDIT-K)

다음은 알코올 의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다음 각 문항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대답에 “O”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나오는 1잔이란 술의 종류와 관계 없이 1잔의 양을 의미합니다.

질문	0점	1점	2점	3점	4점
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전혀 마시지 않는다	☐ 월1회 이하	☐ 월1회	☐ 1주일에 2~3회	☐ 1주일에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잔 정도나 마십니까?	☐ 1~2잔	☐ 3~4잔	☐ 5~6잔	☐ 7~9잔	☐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 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6.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 지난 1년내 있었다
10.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 지난 1년내 있었다

<알코올의존도(AUDIT-K)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알코올 의존도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알코올 의존인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인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AUDIT-K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이 손쉽게 자가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른 대처전략을 제시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석 : 합산 총점을 계산함

구분	남성 점수	여성 점수
정상 음주군	0~9	0~5
위험 음주군	10~19	6~9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20~40	10~40

출처 :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파랑새포럼 www.naam.or.kr

Ⅱ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1. 의 의

- 1단계에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기술을 익힌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 등 IAP 이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 2단계 시작일 : IAP 수립 다음 날
 - 단, 패키지Ⅱ 유형 참여자 중 1단계 후 2~4주간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는 취업알선서비스 2회 제공한 이후 2단계 이동 처리일을 2단계 시작일로 봄
- 2단계는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핵심과정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의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참여자 취업역량 및 취업희망 직종, 참여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청년인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장년인턴), 창업 등의 프로그램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고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③ 청년인턴제 및 청년창직인턴제 운영 지침
 - ④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사업(장년인턴) 운영지침
 - ⑤ 중소기업청 창업 관련 지침
 - ⑥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지침
 - ⑦ 지방자치단체 및 타 부처 직업훈련 관련 지침

2. 직업훈련과의 연계

2.1. 기본 원칙

- **(훈련 상담)** 고용센터 패키지 담당자가 훈련상담을 병행하며,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직업훈련으로 연계
 - 민간위탁 참여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훈련참여 추천서를 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업 훈련 참여 적정성 판단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 ※ 민간위탁 참여자가 훈련을 희망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서식 22)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안내)** 최초상담 또는 직업훈련 상담시 훈련일수 및 결석 일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함을 안내
 -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관련 지침』 내용 참조
- **(훈련 종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다음에 한함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③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④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⑤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 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⑧ 청년취업아카데미 ⑨ 장년 및 청년인턴(해외인턴 포함) ⑩ 고용디딤돌일자리 ⑪ 기타 타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10일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인 훈련에 한함)
 - ※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임에 유의(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등 재직자 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자 카드 발급 가능)
- **(훈련 기간)** 2단계 기간(최장 8개월) 중 최장 6개월

- 훈련기간 산정시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8개월) 기간 산정시 새로운 과정 참여시까지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총 수강과정이 4개(인터넷 원격훈련 1회 추가시 5회) 이하이고, 마지막 훈련과정이 2단계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작하는 과정에 한해서 해당 훈련과정까지 참여 허용(이 경우에도 실제 훈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2단계 훈련가능 기간(6개월)과 훈련참여수당 지급기간(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다름에 유의
 - ※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최장 6개월 간 지급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해당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참여 허용(최초 1개의 훈련과정에 한함)되며 다른 훈련과정은 수강 불가
 - ※ 2단계 기간(8개월) 경과 후에도 훈련을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하고 일반 계좌(자부담 20~50%)로 전환 후 수강 가능
- 다만,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필요시 2단계 훈련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상담원 재량 사항)
- **(훈련 간 중복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타부처·자치단체 훈련과정에 한해 2개 이상 과정 중복수강을 허용하되,
 - 그 외 훈련은 중복참여 불가 단, 선행과정 종료 후 타 훈련 참여 가능(훈련허용 한도 기간내)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중복 참여시 취업과 관련된 유사직종이 아닐 경우 제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취업가능성을 등을 고려 IAP를 변경한 후 참여 허용
- **(위탁기관과 훈련기관 간 MOU)** 패키지 위탁기관과 훈련기관이 본부 담당부서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한 사례발견 시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패키지 위탁기관에 주의 조치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15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계좌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처리하되, 고시·지침 등 개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계좌발급 신청일 현재 유효한 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 **(개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나 전략산업, 그 밖에 산업인력 수요 증가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 [부록 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별표1 참조
 -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은 계좌 잔여금액 보유시에는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전액 면제)
- **(훈련대상자 선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전문계, 이공계 친화적 제조업 중심의 훈련이고, 3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참여자의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참고 : 고교·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에 대한 계좌발급 가능 여부

- ⇒ 고3 재학생은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비진학 예정으로 소속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 일반고 특화과정은 계좌한도에 상관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되,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과정 참여 시에는 한도 내 지원 가능
- ⇒ 대학(전문대학 포함) 최종학년 재학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예시> ▲'16.4월말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17.2월 졸업예정자, ▲'16.4월말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인 자로서 '16년 하반기 중 최종학기 수료 후 '17.2월 졸업예정인 경우, ▲'16.10월말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17.2월 졸업예정자 등
- ⇒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졸업예정에 필요한 총 학점을 이수하고, 방학·휴학중에 있는 대학생에 한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직종계좌적합훈련 대상에 포함(다만, 대학원 진학예정자는 제외)

- **(훈련참여 기간)** 단일 훈련과정의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기간까지 참여 허용(원칙 1개 과정)
 - 훈련과정이 짧아 2개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인정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수강 중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자치단체훈련 참여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패키지 담당자(민간위탁 참여자는 센터 위탁기관 담당자 또는 직업훈련 담당자)는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개설일자, 모집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적합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포함)
- **(유의 사항)** 계좌사용 중지 및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부지급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계좌발급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유의사항’ 참조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 **(개 념)**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로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훈련대상자 선정)**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 선정
 - 카드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IAP 수립 직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카드 발급절차,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 훈련비 등의 지급·정산을 위해 계좌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 필요
- 계좌카드는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 다만, 농협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만 등록 가능하고, 신한 체크카드는 제휴된 4개 금융기관(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의 계좌에 한하여 연계 가능
- 카드사로 전송된 정보 및 카드발급 신청 사실 여부를 카드사에서 유선으로 대상자 본인에게 확인(카드사, TM 실시)
- 카드발급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카드발급 의뢰에서 수령까지 2주 정도 소요
- 계좌카드 발급 후 6개월간 훈련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좌사용이 중지됨을 반드시 한해(「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2조에 따른 계좌발급 횟수에 포함)
 - * 계좌중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재발급 시 계좌 지원한도의 50%만 부여
- 180일 이상 취·창업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①'05.7월 전까지 실업자훈련 3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회를 모두 수강하였거나 ②'05.7월~'14.12월까지의 ▲ 실업자훈련 실시횟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횟수, ▲ 계좌 발급횟수 및 '15.1월 이후의 통합계좌 발급횟수가 총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좌 재발급 불가

- 계좌카드 발급 의뢰 전에 훈련대상자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등 연락처, 주소를 구직자에게 재확인*

* 연락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이 지연되어 훈련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

- 훈련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및 훈련계획 수립 전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hrd.go.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본인 아이디로 접속(로그인)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토록 안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 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 (카드 한도) 패키지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 차등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3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200만원

- **(자비부담)** 패키지 I 에 한하여 자비부담 면제, 패키지Ⅱ는 직종별로 10~30% 자비부담
 - *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한 후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참조
- **(훈련참여 기간)**
 - 패키지 I·Ⅱ : 최장 6개월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간까지 허용(최초 훈련 1개 과정에 한함)
 - 최장 허용 훈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좌(한도 200만원, 자부담 적용)로 전환한 후 가능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과정 수 제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수는 3개로 제한하되 단,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하여 1회 추가 참여 가능
 - * 일반훈련 2회 + 인터넷 원격훈련 2회, 일반훈련 3회 + 인터넷 원격훈련 1회, 인터넷 원격훈련만 4회 참여 가능
 - 성실하게 훈련을 수강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거친 경우 훈련 1회 추가 수강 가능(인터넷 원격훈련은 제외)
 -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훈련과정 수 증가시 과정수 제한 미적용
- **(직업훈련과정 변경)** 훈련과정 변경은 2회에 한하여 가능
 - ※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8호, 2015. 11.2 개정)(부록 13) 제5조제6항 및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인적자원개발과-310, '16. 1.16)(부록 16) 참조

<훈련과정 변경횟수 제외사유>

- ①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모집인원 부족 등 훈련기관 사정으로 해당과정이 폐강(또는 일정 연기)되어 훈련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② 모집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및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③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기간을 달리하여 그 내용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실시규정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 중 제적사유 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④ 실시규정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좌 유효기간 정지 결정 시 해당기간 종료 후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훈련과정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⑤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훈련과정 변경횟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가능한 경우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수강 중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및 자치단체훈련 수강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훈련과정 만족도와 훈련내용 이해 등 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을 요청하여 과정변경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카드발급 관련 조치사항)** 카드사에 전산상으로 「계좌카드 발급의뢰」 조치
 - 계좌카드 발급의뢰일 기준 10일 전후로 대상자에 대한 TM 실시 여부 등 카드발급 상황을 카드사에 확인
 - 카드 미 발급 사유 해당 여부와 보완 필요사항 등을 확인·조치



참고 : 금융거래제한으로 예금계좌 사용 또는 신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거래제한조치 등으로 ▲HRD-Net에 예금계좌 등록이 되지 않거나 ▲직업능력개발계좌(체크카드) 발급과정에서 제휴금융기관(농협,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등 조치(다만, 동 확인서는 농협·신한은행에서만 유효)

* 「금융거래제한자 등에 대한 계좌발급 등 업무처리지침(인적자원개발과-1688, '15.7.22.)」 참조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조치 개관 >



- **(유의 사항)** 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반드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부록 13) 및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부록 14)」 참조

- i) **(계좌사용 중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중지 및 계좌잔액 소멸로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에 유의

☞ 다만, 계좌사용 중지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횟수 3회 범위에서 계좌 재발급 및 지원하되 계좌한도를 감액(50%)하여 부여할 수 있음

-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 여부 확인 후 해제



참고 : 계좌중지사유(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1조 제1항)

- ①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 ② 2회 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하였거나 중도탈락한 자
 - ☞ 다만, 계좌중지기간에 대하여 취·창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계좌를 당초 유효기간 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하여 훈련대상으로 인정하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한 훈련생

- ii) (수강신청 제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불가

☞ 전화상담을 통해 구직신청 후 이미 발급받은 계좌를 유효기간 내 사용가능토록 조치

- iii) (동일과정 재수강 합리적 제한) 훈련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과정 재수강 제한

- 출산, 상병, 학습능력부족 등의 사유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가능(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 제출 및 훈련상담 필요)

- iv) (수강평 입력)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4일 이내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식비, 교통비)이 부지급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수강평 미입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v) (기타) 내일배움카드 취득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이 기재된 개인훈련계획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안내

※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참조(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요령 】

① 이미 일반 직업능력개발계좌(200만원 한도, 자부담 30~50%)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좌 전환 가능*

* HRD-Net에서 처리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HRD-Net 실업자훈련 행정지원시스템 담당) 공문 조치 요청

- 이 경우 기 발급된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1년) 내에서 패키지 I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한도(300만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용 가능

※ (예시) 먼저 일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한 A가 패키지 I에 참여시 잔여 8개월간 250만원 사용 가능

- 다만, 이미 발급된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만료 후 패키지 I에 참여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한도는 신규 참여자와 동일하게 지급(300만원)하나, 패키지 I 참여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훈련 수강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 중인 과정을 종료(중도탈락 포함)한 이후 전환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

○ 일반계좌 발급받은 자

① 계좌 유효기간 내 패키지 I 참여시 3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패키지 I 계좌 발급받은 자

- 계좌 유효기간 내 일반계좌로 사용하려는 경우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 >

○ 일반계좌 발급받은 사람

- 계좌 유효기간 내 패키지 II 참여 시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패키지 II 계좌 발급받은 사람

- 계좌 유효기간 내 일반계좌로 사용하려는 경우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②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상담을 통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참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③ 패키지 사업 대상자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중단,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처리 되었으나 취·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계좌발급일로부터 1년)내 계좌잔액의 범위로서 계속 지원 가능(단, 일반실업자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적용됨에 유의)

2.3. 폴리텍대학 훈련

- **(개 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능사과정, 베이비부머훈련, 경력단절여성훈련 등을 말함
 - **(훈련대상자 선정 및 모집)**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중심 2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 한국폴리텍대학 훈련과정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폴리텍대학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 1단계 참여에 필요한 1개월을 감안하여 참여자 모집
 - ▶ 기능사과정 입학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으로 학력제한 없음
 - ▶ 베이비부머훈련 입학자격 : 만 45세 이상~62세 이하의 중장년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 * 저소득층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중장년층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 경력단절여성훈련 입학자격 :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의지가 높은 여성 등
- ※ 상기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모집계획에 따라 별도의 자체 전형이 있음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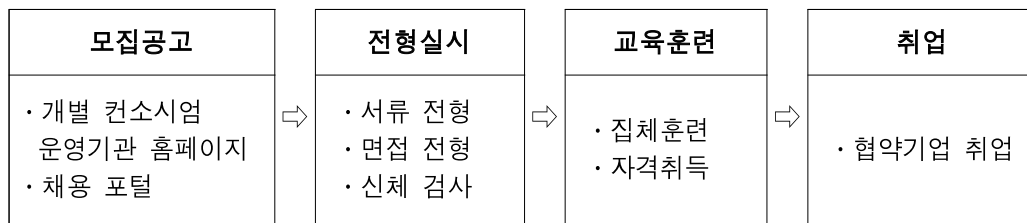
< 폴리텍대학 양성훈련 종류 >

구분	대상	비고
기능사 훈련	만 15세 이상 구직자	3~12개월
베이비부머 훈련	만 45세 이상~62세 이하의 중장년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2개월 이상
경력단절여성 훈련	경력단절여성	2개월 이상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개정 2013.7.1.)

- **(개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훈련실시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컨소시엄 협약기업 채용예정인 자
- **(훈련방법·훈련과정정보)**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을 실시하며, 개별 훈련 과정정보는 해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또는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 방법 >



- **(훈련생 지원내용)** 훈련생의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사업주(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공동훈련센터)에 월 20만원까지 지원
-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는 1일 11,04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월 276,000원)까지 지원

2.5. 청년취업아카데미

- **(개요)**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와 일반고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 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이하 "창직과정"이라고 함)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

-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위탁기관
- (훈련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자로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 (훈련시간 등) 장기과정의 경우 600시간 내외, 일반과정은 300시간 내외

2.6.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적극 안내

- 실직자 등이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안내(세부내용은 부록 6 참조)

- ▶ (지원조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4주(28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간소득3,000만원 미만), 전직 실업자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중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
- ▶ (지원내용) ▲1천만원 한도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대부금액 결정,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대부금리(연이율 1%)

3. 청년·장년인턴 등 연계

3.1. 청년취업 인턴제

-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 참여자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

*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

☞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참조

3.2. 청년 창직인턴제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참여자가 「청년 창직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
 - * “창직”이라 함은 개인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스로 직업을 개발 또는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 “창업”이라 함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준용

☞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 지침」 참조

3.3. 장년 취업 인턴제

- 50세 이상 장년층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장년 취업 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

☞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장년 취업인턴제 사업시행 지침」 참조

3.4.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K-Move 스쿨, 해외인턴 및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계
 - * 해외취업 참여자가 K-Move 스쿨의 훈련을 받을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 해외취업자(인턴 포함)가 해외 구인처에 취업한 경우 출국시 취업으로 인정

☞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해외취업 사업 지침」 참조

4. (일반) 창업 지원 연계

4.1. 개 요

- 참여대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운영(지자체, 타 부처 지원 창업과정 포함)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 제공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6개 지역본부, 58개 지역센터) ☎ 1588-5302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홈페이지(<http://www.sbiz.or.kr>)를 방문하여 확인 후 안내

< '16년 소상공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명	지원대상	시간	인원	교육내용
소상공인 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분야 예비창업자	이론(150시간), 점포체험(16주), 개인별 멘토링	450명	유망 아이템 분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 자를 선발하여 전문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신사업 사업화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과정당 60시간 이론·실습 교육	1,500명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모두 교육생 자부담 없음

4.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유관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 창업교육 일정 등에 따라 운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서식 21) 2부를 출력하여 1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창업교육 관련 유관기관에 송부
-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후, 해당자의 창업지원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
- 창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
 -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내지 자치단체 등의 창업 자금 지원제도(참고자료) 안내

4.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를 유관기관에 팩스로 송부한 후, 추천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추천자의 창업교육 불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통보 협조를 요청

5.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5.1.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의미

- **(개 념)**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직업훈련 참여 중 생계부담 완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오랫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직업역량 개발을 촉진
- **(성실한 직업훈련 참여 유인)** 성실한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제

5.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 ①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여자
- ② 창업교육 참여자
-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
 -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자 수당지급 처리요령】

-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 ▶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 * 30일 미만 단기 훈련과정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훈련과정 등록 가능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 ⑤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 ⑥ K-Move 스쿨 훈련 참여자

□ 부지급 대상자

- ① (취업자)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자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 ※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수당 지급



참고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판단

⇒ 초기상담일부터 기산하여 주3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연속해서 2회가 되거나 또는 (연속해서가 아니더라도) 4주간 2회 이상 있을 경우

- ② (생계급여수급자 등)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수급자(단,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③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416천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 다만, 특정 요건(3회 이상 참여 등)에 해당되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
- ④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 참여자)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월 20~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개정 2013.7.1.)
- 단,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과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 서울강서 캠퍼스의 실내디자인, 봉제, 전자출판, 전통조리, 김제 캠퍼스의 수자원관리 과정 등은 지급
- 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은 기관에 따라 20~30만원 수당을 지급하므로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개정 2013.7.1.)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도 부지급
- ⑥ (양성훈련 참여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및 숙식비(월 최대 212,500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지급(개정 2012.4.2.)
-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각 훈련과정마다 5~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⑧ (한국폴리텍대학 비예산 직업훈련) 각 훈련과정마다 5~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⑨ 타 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 참여자

5.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단,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월 최대금액 200,000원, '16. 3. 1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 '16. 3. 1, 최종학년이 되는 고교·(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16. 1. 1부터 패키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18,000원을 지급, 월 최대 금액은 284,000원

5.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 수당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지원 유예 처리된 경우, 6개월 기간 산정시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5.5.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1조 등)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 지각, 조퇴는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

※ 1일 소정 훈련시간 중 지각·조퇴로 당해 과정 훈련시간 50% 이상을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 훈련수강 포기 후 미출석일은 결석일로 처리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출석일수 인정기준(부록 9)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출석을 산정)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

- 지각, 조퇴는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횟수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을 산정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않음

5.6.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 지각, 조퇴는 수당지급일수 산정시 수당지급일로 처리
-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한 날의 지급인정일수 산정시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되, 1개 과정 이상 참석(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간주)한 경우 수당지급일로 인정
-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을 모두 출석하였더라도 수당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수강포기한 과정의 포기일 이후의 미출석일은 결석으로 처리하되, 훈련참여지원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 출석일수에는 수강 포기한 과정의 소정 출석일수 제외
- 즉, 다수의 과정 중복 수강 중 1개 과정을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과정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정에 대해 지급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 수강시 지급인정 여부 판단 예시】

* 당일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시 판단 예시임

①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에 참여한 경우

A과정	출석	출석	결석	결석	지각	지각	출석	지각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결석	조퇴	결석	지각	지각	조퇴	결석
지급여부	○	○	○	×	○	○	○	○	○	×

② 각기 날을 달리하여 수강한 경우

A과정	출석		결석		지각		출석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지각		출석
지급여부	○	○	×	×	○	○	○	○	○	○

5.7.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

- (최초 수당)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2회차 이후 수당)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
 - 다만,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은 최초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해당 훈련과정의 총 훈련일수에 따라 구분 조치
- (최종 회차 수당)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 종료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 포함)를 방문하여 취업상담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중·장기 과정>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을 연속적으로 산정·판단
-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근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을 산정·판단

<훈련과정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과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새로운 훈련과정 참여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례】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 허용
-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취업성공수당' 수급 기준 준용

○ 월별 일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취지(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동 수당은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절차

- 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대비 참여 실적은 HRD-Net에서 확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아닌 훈련 또는 창업교육 등은 출석부를 제출받아 확인)
- ※ [서식 2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참조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확인순서】 ❶ 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❷ 직업훈련일수 등 참여대상자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청·장년층(패키지Ⅱ 유형)에 대해서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고, 향후 취업시 환급함을 안내

5.8.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Hrd-Net을 통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중 대상자의 참여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외 대상자의 참여 실적, 미수료 횟수 등 확인
- 아울러, 참여대상자가 참여한 훈련과정 운영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존부를 확인 하여 미비된 경우 보완 조치
- 특히,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후,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관련 기산시점에 유의

□ 여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조건부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일 준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신청시점 등 관련 사항 안내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시점 등을 정확히 안내
- 참여대상자의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당시 훈련과정 참여여부를 감안하여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판단기준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HRD-Net에서 출결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 지급
- 단, 내일배움카드제가 아닌 타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부 사본을 제출받아 수당 지급

6.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6.1. 2015년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지침 적용

- 2015년도에 초기상담한 자가 2016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5년도 지침을 적용
- * 2016년 초기상담자부터 2016년 지침 적용

6.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6.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자 등에 대한 관리

- 사업 참여 문의 및 1단계 과정 운용단계에서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단위기간 산정원칙을 정확히 안내·설명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자(직업훈련 참여자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고용센터 지원인력을 적극 활용)
 - 최초 훈련과정 참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경과 시,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빠른 시일내 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소멸시효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산정

6.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 환수 조치

Ⅲ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1. 3단계 연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 집중 취업알선이란 취업성공패키지의 1~2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3개월간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1단계 종료 이후,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취업알선과는 차이가 있음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 (취업지원의 마지막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늠자로서의 의미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평가기준) 집중 취업알선의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 과정의 중요성 존재
- (IAP의 타당성 평가과정) 집중 취업알선은 개인별 취업경로인 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존재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실시 결과, 2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발굴·알선
- (동행면접 실시) 일반적인 취업알선과의 개념적 차이를 감안하여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에 대한 희망의사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행면접 실시

*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제공 횟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월 2회 이상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월 1회 이상 취업알선 필수 제공

* 모의면접, 이력서 컨설팅, 구직기술 제공 등

- (취업알선 실시기간) 집중 취업알선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성공패키지의 전체적인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탄력적 운용

i) IAP 수립 시, 1단계 후 바로 3단계 과정 참여자로 설정된 자

⇒ 취업알선을 위한 3단계 최초 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을 종료

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실시하되, 취업알선 기간이 6개월 초과 시에는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 종료

i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 (원칙)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지원 종료

⇒ (예외) 참여자가 9개월 이상 훈련(간호조무사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3개월간 실시한 후 지원 종료

*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업지원 가능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간 개관】



- (취업알선 실시기간 특례)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및 청년층(I,Ⅱ유형 모두 해당, 만 34세 이하)에 한하여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 지원 가능
- 또한, 참여당시 재학생의 경우 1단계 초기상담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3단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가능
- * 취업알선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1.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 (1단계 완료자) 1단계 종료자 중 취업역량 등이 우수한 참여자로 2단계 없이 3단계로 경로설정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종료 후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2단계 완료자) IAP에 따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정 종료 이후에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다만, 2단계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실시
- * 집중 취업알선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집중 취업알선 실시
- (2단계 재 실시자) 3단계 진행 중 2단계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2단계 과정 종료 후 다시 집중 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2단계로의 과정 운용 】

- (원칙) 3단계 중 2단계 참여자에 대한 3단계 운용은 전체 취업지원 기간의 원칙적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허용
 - ⇒ ① 1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② 1단계 → 2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 전산 시스템 : IAP 변경 조치 및 상담내역 입력 조치
- (예외) 대상자의 취업의지나 프로그램 참여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이 초과되더라도 단계별 과정의 탄력적 운용 허용
 - 이 경우에도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내로 한정되나,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이상도 가능

1.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단계 또는 2단계를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1단계를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IAP 수립 당일, 관련 직업정보와 집중 취업알선 실시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별도 상담일을 지정하여 실시
 - 2단계 과정 참여자는 종료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실시를 위한 초기상담일을 지정·통지한 후 초기상담 실시
- ※ 초기상담은 해당과정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초기상담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 동안의 개략적인 진행절차와 실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취업알선을 받고자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직업선호도, 직업적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취업알선 전략을 수립·공유

□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 집중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희망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적극 탐색
 - 워크넷 상의 구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구인정보 제공 시에는 사전에 직접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인여부'를 최종 확인·조치
- 구인정보 제공과 동시에 대상자의 면접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동행면접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동행면접 적극 실시
 - 가급적 면접에 임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기법 등을 다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
 -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면접일시를 정하고, 면접일 전에 면접당일 준비사항 안내 및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모의면담을 실시

□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동안 4주 단위로 참여자의 구직활동 사실 확인 및 애로 사항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방향 등을 보완 내지 재설정하고, 참여자와 이를 공유(4주 단위로 확인)
 - ※ 확인의 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병행하되, 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월 1회 이상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하도록 유도
- 참여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 추진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1.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 집중 취업알선은 취업성공패키지의 결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공유될 필요

□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중 적정 구인처 알선을 통한 취업이라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취업을 향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노력임
 - 형식적인 구인정보 제공보다는 본인의 취업성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늘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 집중 취업알선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참여자 스스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가능성 증대
 - 따라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등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
 -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지정·실시

1.7. 취업알선 기간 중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급

- 고용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 대해 실비(월 1회, 2만원) 지급

* 지급한도 : 최대 3회(총 6만원 한도)

* 지급방법 :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 지급(지급 횟수 1회)

* I, II 유형 참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1.8.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IAP수립)를 이수한 참여자가 취업희망폴에 등록되고 등록된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고용기간 경과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알선에 도움이 되므로 안내

※ I 유형(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현행 유지하되, II 유형에 대해서는 장기 훈련 이수자 및 취약성 요건, 심사제 운영 등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 추진 중(추후 개정지침 시달 예정)

- 참여자의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계속 유지할 필요

1.9. 청년·장년인턴 제도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IAP수립) 및 2단계를 이수한 참여자가 3단계(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청년 및 장년인턴제에 참여할 경우 정규직 전환시 취업으로 종료

2.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2.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 **(취업유인기제)** 취업성공패키지 I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으로서 이들의 취업의욕 제고는 취업성공과 직결되는 기본 전제조건인 바, 취업성공수당은 이들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 **(근속유도기제)**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방식 설계에 따라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근속유도기제로서도 기능

2.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패키지 I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

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3·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을 3·6·12개월 단위로 전환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개편 추진 (예산당국과 협의 후 별도 지침 시달 예정이며, 아래 내용은 '15년 기준임)

□ 취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 **(근로조건)** 주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속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장애인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유형 및 등급>

등급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유형		1	2	3	4	5	6	7
장애 인 복 지 법 상 분 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국가유공장애인								

※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 장애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 장애인 3급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팔(어깨 또는 손 포함)에 장애가 있는 지체 3급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10.1.1부터 호흡기, 간질(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중증인정 범위 확대

※ '11.8.21부터 안면장애 5급(확대)

※ '14.6.30부터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지방보훈지청장 등이 발급하는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3. 중증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체장애 3급에 한함)
 - ☞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중증으로 인정

- 또한,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❶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부록 17)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 다만, 일모아시스템에 실시간 등록되지 않는 점에 유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자로서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라 함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❷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근로 등(개별 사례 판단 필요)

❸ 직계 준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❹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❺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❻ 공무원

○ (근속기간)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다만, 참여자가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으나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유관기준 ① : 이직 前 직장 취업 】

- (기본원칙)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예외적 제외기준)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이직』은 최후 이직
 - * 최후 이직 이전의 직장에서의 취업은 일반적인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 적용
 - ②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직장』은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장
 - * 동일 기업(사업)내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봄
 - ③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취업시점』이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취업
- (확인방법) 참여자 본인,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체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
 - ① (참여자에게 확인) 참여자로부터 취업사실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참여자에게 당해 사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유무 및 근무기간 등을 확인
 - ②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당해 사업체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인지 여부 및 근무기간 확인
 - ③ (사업체 관계자에게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체 관계자에게 참여자의 당해 사업체 근무 여부 및 근무기간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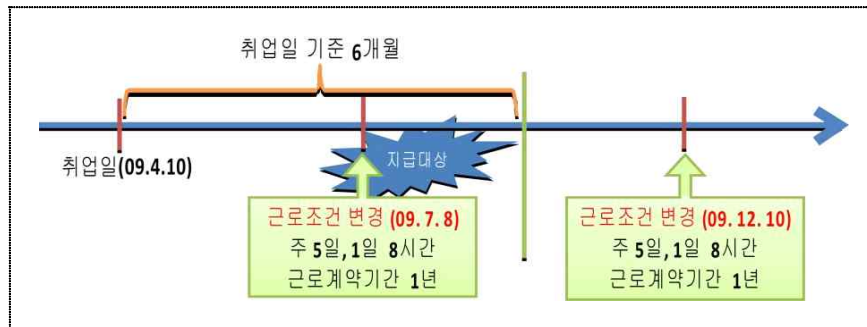
👁 『이직 前 직장 취업』 관련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09.6.2) 참조

【유관기준 ② :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 (기본원칙)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제한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 이때, 취업은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최초 취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직도 포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근속기간 기산점)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근속기간 산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후속조치) 근로조건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서식 33)」를 제출하도록 함

☞ 동일 사업장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관련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09.7.24) 참조

②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①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②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간만료일 등)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
 -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 * IAP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날인 경우, IAP 수립 이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유관기준 ①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

- (기본원칙)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으로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
- (인정기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직에 의한 취업(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전제)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① 이직시기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이직
 - ② 이직횟수 : 첫 번째 이직
- (인정기준 준용)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로서 퇴사일(이직일) 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상기 원칙 준용
 - * 퇴사와 동시에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 * 이직일 이후 재취업 전 「재개신청서(서식 27)」 또는 「이직통지서(서식 34)」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 재개처리가 불가한 사후관리기간에는 동 규정 적용 제외

 이직 관련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추가('09.7.6) 참조

③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음

④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 취업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 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⑤ 지급요건 5 : 피보험자격 취득

- 고용보험시스템 상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시 함께 제출받아 피보험자격취득 업무처리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여도 무방함

-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에라도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근속기간에 따라 1·3·6개월에 20·30·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3·6개월 후에 확인된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 4개월에 확인된 경우 20만원+30만원=50만원을 일괄지급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라도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 창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업종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 관련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①확인가능성 및 ②제도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추가 지정 시 별도 통보)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

①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 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②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부록 10 참조)

-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같이 건물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자산을 투자하여 구입한 차량을 활용한 경우에도 점포로 인정

②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은 참여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영세자영업자 참여자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소 분류간 추가·전환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③ 지급요건 3 : 사업장 시설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

④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행한 자에 한하여 지급

⑤ 지급요건 5 : 창업시점은 취업한 자의 취업시점 준용

※ 부록 [10] 「인터넷·무점포 창업」 참조

※ 부록 [11] 「1인 창조기업」 개관」 참조



창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1> 1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2> 2차·3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신청서, ② 사업을 계속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1종만 제출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2.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수당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 절차 등을 준용

○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1회차 20만원, 2회차 30만원, 3회차 50만원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근속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지급시기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7개월째	9개월째
취업	20만원		30만원		50만원	

※ 창업의 경우 취업일 대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2~3회차는 1회차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24)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확인 방법

- ① (취업 및 근속사실)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확인
- ② (최저임금 여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고용보험전산망의 월 보수총액 등을 통하여 확인
- ③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내용 등을 통해 확인
- ④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1차 지급시 확인된 사항은 2·3차 지급시 별도 서류 징구 금지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 ❶ 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❷ 취(창)업시점 및 취업경로 등 요건 충족 여부
→ 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확인

※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1> 1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1개월 근속여부는 반드시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확인
 - 다만, 최저임금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만(고용보험전산망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된 경우 등)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 ※ 재직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2> 2차·3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속기간,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급

2.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취업장려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회차 20만원, 2회차 30만원까지만 지원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종료되었거나, 취업장려금 모두를 기 수령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3회차까지 지급 가능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내용 문의 :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또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청년취업인턴 취업지원금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
- 따라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청년창직인턴제 창직지원금

-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100~300만원이 지급되므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2.6. 경영약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 임신·출산, 부상·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이 경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해당 대상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 경영약화로 인한 휴업 등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취업성공수당 대상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 당해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등

○ 한편,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 합산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2.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특히, 취업일부터 3(6)개월 근속을 전제로 지급하는 2~3회차 취업성공수당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근속' 사실 여부 확인에 유의

○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서 제출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3. 3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3.1.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상담,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제반 지원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취업으로 종료되는 경우 패키지 전산망 외 워크넷 채용마감도 함께 종료 처리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구직신청 마감처리 시 워크넷의 팝업문구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입니다. 패키지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서 먼저 마감 후 취업알선 시스템에서 마감처리 해야 합니다. 마감처리하시겠습니까?

3.2. 이월 참여자에 대한 적용

- 2015년 초기상담한 자로서 2016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5년도 지침을 적용
 - * 2016년 초기상담자부터 2016년 지침 적용

3.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 취(창)업 시 취(창)업 통지서를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사업참여기간 중 수시로 안내
 - 특히, 집중 취업알선기간 중에는 참여자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시 관련 사실을 재차 안내
- 아울러, 취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가급적 기한내 제출하도록 재차 안내
 - 만일, 1회 및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한 5일전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유선연락을 취하여 신청서 제출시한을 재 안내
 - * 신청서 제출 관련 사실을 안내받은 바 없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각별히 유의

3.4.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3.5.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적응 지원
 -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동안은 1~2주 간격으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장 생활 적응상황 등을 확인하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정하여 개별 면담 시행

-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6개월 동안은 최소 월 1회 간격으로 유선연락을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나머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만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취업 성공패키지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존속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아울러, 각종 경영기법 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 취업성공수당 지급 소멸시효
 - 취업성공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 부터 산정

3.6. 취업성공수당 환수

-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전액 환수 조치

IV 제4단계 :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1. 사후관리의 개념

- 사후관리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 취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업일, 미취업자의 경우 사업참여 종료일

1.2. 사후관리의 의의

- (취업자의 취업지속 관리)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자의 직장적응 및 장기 근속 유도 기제
- (미취업자 취업의지 고취)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2. 사후관리의 제공

- (정기적 관리)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
- (취업지원 재개) 취업자로 종료된 참여자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1단계 IAP 수립전 취업 종료자 포함)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재참여 가능
 - 사업 재참여 희망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지원 재개신청서 제출
 -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재개 신청서(서식 27) 참조
 - * 다만, 재개처리는 전체 취업지원기간(12개월, 최대 15개월) 내에서만 가능

- 재개 후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온·오프라인 종합적 정보제공) 미취업자의 경우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

1. 취업지원 종료

1.1. 취업지원 종료의 의의

- 취업지원 종료란 일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취업지원의 물리적 시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동안 제공되므로 취업지원 시한 완료시 서비스가 종료됨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기산점) 취업지원 종료는 참여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1.2. 취업지원 종료사유

- 다음 2가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
 - i)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재정지원 일자리 포함)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
 - ii)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
 - * 다만, 단일과정의 훈련기간이 9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참여기간 중 취업지원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성실한 기초수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간연장 가능

1.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 취업지원기간 만료자의 경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을 기점으로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종료사유 및 종료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서식 26)를 배부
- 취업지원 종료 통보 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즉시 서면 통지토록 조치
 - *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안내
 - 아울러, 일정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도 안내

□ 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취·창업일부터 1개월 이내)하도록 사전 조치
- 참여자의 취(창)업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취업 또는 창업일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하여 참여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종료 통보서」를 배부
 - 취(창)업 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참여자 본인을 통해 취(창)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적시하여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종료사실을 통보(통보서 배부)
 - * 이 경우 취(창)업 통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봄

1.4. 취업지원 종료의 효과

□ IAP상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취·창업에 의한 종료시

-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은 물론, 종료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참여횟수별 참여 유예기간 설정

- 기초수급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신청회차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	9월	6월	3월
3회	1년6월	1년	9월	6월
4회 이상	2년	1년6월	1년	9월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기초수급자 외 일반 참여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신청회차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6월	1년	9월	6월
3회	2년	1년6월	1년	9월
4회 이상	2년6월	2년	1년6월	1년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에 한하며, 취업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으로 산정, 퇴사일은 사업 참여를 통한 최초 취·창업의 이직일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경우 기간만료자로 간주하며 산정기준일은 취업성공 패키지 종료일
- * 폐업일은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확인

□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 *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함

1.5.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 예외적 특례 적용

- 사업 참여기간 중 ①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가 재개신청한 경우로서 ②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사업자등록 폐지)한 상태에서 ③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지원을 지속할 수 있음

* 재개신청은 취업지원기간(사업 참여 기간) 내에서만 가능, 사후관리기간 중 신청 불가

□ 특례 적용요건

- (취업·창업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창업으로 한정함

⇒ 따라서, 다음의 취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❶ 최장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취업

❷ 초기상담일 이후 이루어진 최초 취업 이후의 취업*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이직한 경우의 새로운 취업,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 퇴사하여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아 새로이 취업한 경우의 취업 등

- (퇴사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기간 중 이루어진 최초 취업 이후 1개월 미만에 퇴사한 경우로 한정

⇒ 따라서,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취업 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 (계속적인 취업지원 희망의사 피력)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업 및 퇴사요건 충족을 전제로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업성공패키지 재개신청서(서식 27)」 또는 「이직통지서(서식 34)」를 제출

□ 특례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 (적용효과) 취업지원 종료의 일반적 효과 미적용 및 취업지원 재개
- (유의사항) 취업으로 인한 취업지원 종료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재개가 가능함을 안내

2. 취업지원 중단

2.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 취업지원 중단이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기간 만료 내지는 참여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이유로 한 취업지원 종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
 - ※ 다만, 재참여 전까지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취업지원 종료와 중단 모두 동일

2.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 (성실한 과정참여 담보기제) 취업성공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참여자의 성실한 사업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참여자의 성실한 과정 참여를 담보하는 기제로서 의미
- (프로그램 재참여 관련 기산점)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취업지원 종료와 같이 당해 참여대상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존재

2.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 ①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자가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②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 ⇒ 정확한 직업적성 및 선호도 파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직업심리검사에 임하는 경우

- * 일반적인 직업심리검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③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 ⇒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응답 내지 엉뚱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 ⇒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및 훈련, 고용디딤돌 등 2단계 연계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거나, 중도탈락 한 경우

-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1개 과정에서 5일 이상 계속하여 불참한 경우
 - * 직업훈련이 (월·수·금) 격일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훈련일수 (월·수·금·월·수)를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도 해당
 - * 아울러, 훈련개시일 이후 7일째 되는 날까지 등록 가능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불출석일자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훈련 등록일 이후 실제훈련 참여일부터 해당
 - * 단, 질병, 본인입원으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단사유에서 제외함
 - * 단위기간 내 2개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한 자가 1개 이상의 과정에 대해 중단사유 없이 참여한 경우 계속 참여 조치
- ⇒ 기타 각각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탈락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탈락자(중도포기자)로 결정된 경우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11조 및 31조의2에 의해 계좌사용이 중지되거나, 훈련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훈련참여자의 수강포기(1회)를 취업성공패키지 중단사유로 해석한 기존 질의회시 폐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중단사유 관련 질의회시」(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4, '15. 6.30)

- 다만, 직업 훈련(국기 및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등) 이외의 취업아카데미, 고용 디딤돌 등 2단계 연계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된 경우는 계속 참여 허용

- ⑤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취업역량 및 직업선호도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직업훈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임을 이유로 한 취업알선 거부는 제외

- ⑥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지원 중단 조치 전에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⑨ 재정지원 일자리(직접 일자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우리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단, 사업주 지원 훈련의 경우 3단계에서 참여 가능

- ⑩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고용센터장이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 취업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유 및 중단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중단 통보서(서식28)」를 즉시 배부

* 취업지원 중단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기

- 취업지원 중단 대상이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지

※ 취업지원 중단사실 통지 시, 당해 대상자는 취업지원 중단일로부터 1년간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뢰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2.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 IAP 상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 참여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서비스 참여 제한은 물론 중단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또한 종료

※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업종료 전 자치단체에 재심사 의뢰

※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패키지 계좌(자부담 면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유효 기간내에는 일반 계좌(자부담 존재)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

-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중단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 취업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3. 취업지원 유예

3.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 취업지원 유예란 참여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서비스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참여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

📁 조건부수급자의 유예

- (조건제시 유예자의 개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함
-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
- (조건제시기준) 2016년 자활사업 안내 책자 참조
- (자활사업 참여 결과 관리) 고용센터는 분기별(분기 첫월의 5일 이내)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이행여부 통지

3.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 참여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을 유예
 - ①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준용
 - ④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패키지 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⑤ 기타 고용센터장이 일정기간 동안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사업 대상자가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유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유예승인이 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도 유예 조치(가급적 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조치)
 - 자치단체의 유예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단 조치

3.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8개월까지 허용

3.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 취업지원을 유예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서식 29)」를 작성·제출토록 조치
 - * 취업지원 유예는 취업지원 단계에 관계없이 유예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 서면통지(서식 30)
 - * 취업지원 유예 허용 시, 유예기간을 병기하여 통지
- 취업지원 유예 신청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먼저 자치단체에 유예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유예가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예 처리

3.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 IAP 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지
 -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 중지와 함께 유예 기간 동안 당초 수립된 취업활동계획(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중지
-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간만큼 참여기간 연장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지원 재참여 시까지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 취업지원 유예기간 중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4. 취업지원 이관

※ 민간위탁기관 간 이관에 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 참조

4.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 취업지원 이관이란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을 사유로 새로운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의미

4.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 취업지원 이관은 참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고용센터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각 과정 참여의 지속화 기제로서 기능

4.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 (이관은 허용, 새로운 시작은 제한) 참여자 본인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이관하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
-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이관 대상임에도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며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 이 경우,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하고,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

4.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자는 거주지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31)를 작성·제출
- 「이관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통보서」 송부

- 「이관 통보서」(서식 32)를 접수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통보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면담일시를 지정·통지 후, 면담 실시
 -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된 참여대상자가 이관되는 경우 이관받은 고용센터에서는 동 참여 대상자를 다시 관할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의뢰

4.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의 자격 유지 및 기존 IAP 상의 취업지원 지속
 - * 다만, 2단계 서비스 중 '직업훈련'을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은 당해 센터 관할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한 조정 필요(IAP 변경 조치)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과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관 전 센터에서 진행된 제반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후속절차 진행
 - * 필요한 경우 이관 전 센터 담당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참여대상자의 특성 등을 상세히 파악
- 『직업능력 증진』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이미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내용을 가급적 유지하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변경
 - ※ 이관 전의 훈련과정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IAP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취업활동계획의 주요 취업지원경로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참여가능한 유관 프로그램을 확인·조치
 - 기존 IAP 상 취업지원경로에 따른 유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 취업지원경로 변경·추진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상 취업알선 기간을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5. 행정사항

-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이관과 관련한 처리내용을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
-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IAP 수립시·세부프로그램 참여시 등)에 기준을 안내하고, 중단 사유 해당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 조치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V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1.1. 부정수급의 개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1.2. 부정수급 유형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중인 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사업장에 이미 채용이 확정(예정)된 자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훈련수강시 대리출석 또는 허위출석부 작성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조치

2.1. 부정수급액 반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 동 제한 규정은 '16년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부터 적용됨(참여연도 불문)

2.3.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반환 청구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반환청구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1항 및 제 31조(보조금의 반환)제 1항에 의한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도 5693판결 등)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운영지침



I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개요

1. 추진배경

- 정년연장 시행, 세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서 청년층을 분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하고 청년층에 대해 보다 집중적,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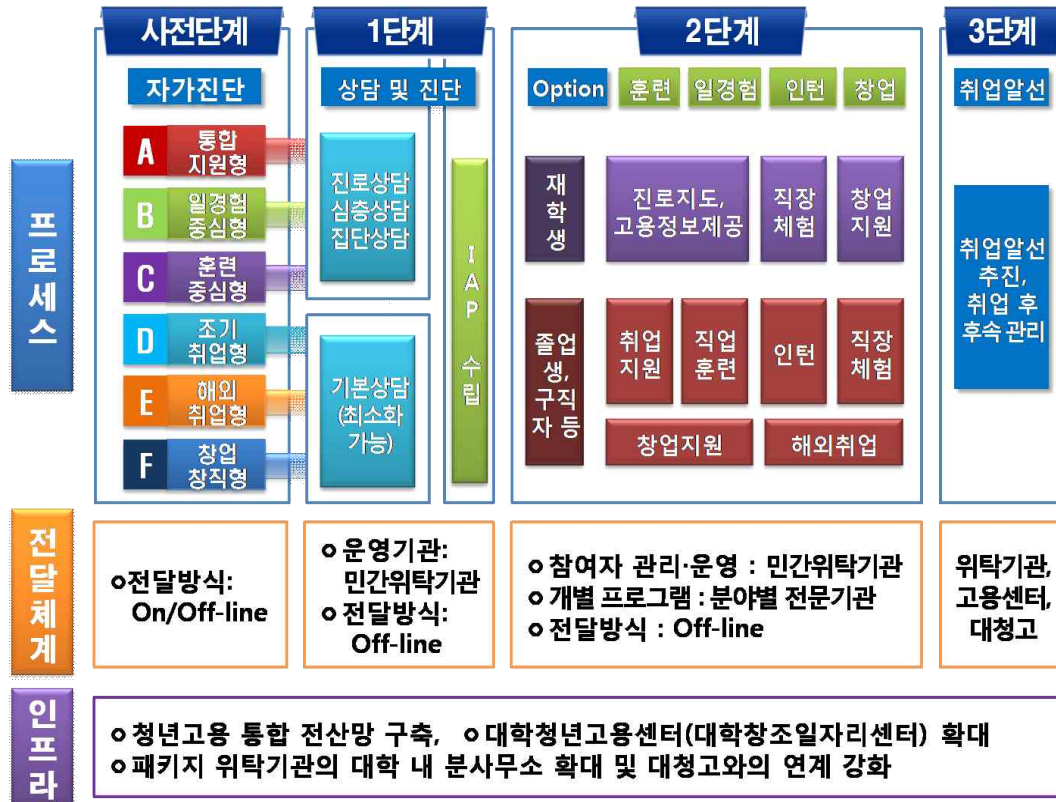
2.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청년)의 참여대상,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운영방식을 유지 하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의 니즈를 파악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자가진단을 신설
 - 훈련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턴 등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제3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제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를 준용

3. 참여대상 : '15년 추경 이후 II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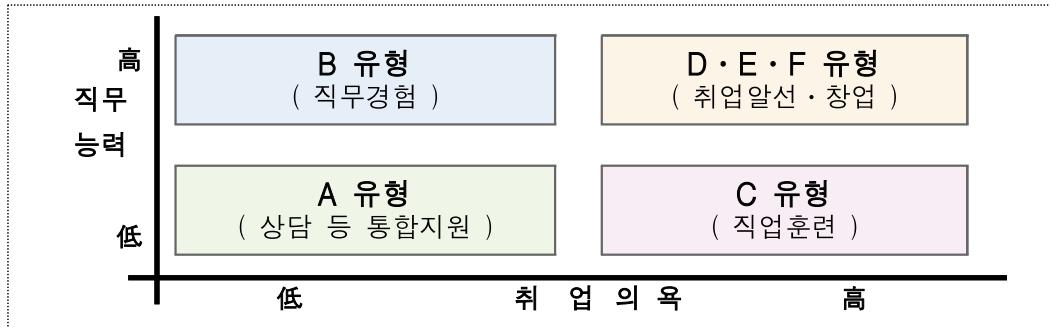
- 만 18세~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고졸이하 비진학, 대졸이상 졸업자), 영세자영업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단, 만35세 이상인 경우 미대상)
- 맞춤형 특기병의 경우 육·해·공군으로 확대(現 육군만 대상)

Ⅱ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1> 사전단계

- Off-line(고용센터, 대청고), 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회원 가입,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 참여
 - * On-line, 모바일은 청년고용통합전산망 1단계 구축 후 시행('16.3월~)
- 로그인 후 참여자가 스스로 취업지원 유형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실시]
-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참고 1)



- * ① **A유형(통합지원형)**: 1단계(직업의욕고취)→ 2단계(훈련, 일 경험)→ 3단계(집중 취업알선),
- ② **B유형(일경험중심형)**: 1단계→ 2단계(인턴, 일경험)→ 3단계
- ③ **C유형(훈련중심형)**: 1단계→ 2단계(직업훈련)→ 3단계,
- ④ **D유형(조기취업형)**: 1단계 상담 후 바로 3단계로 연계,
- ⑤ **E유형(해외취업형)**: 1단계 상담 후 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지원 기관으로 연계
- ⑥ **F유형(창업창직형)**: 1단계 상담 후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

- 참여자의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참여유형(①on-line·모바일 접속,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③위탁기관 방문)에 따라 사전단계 프로세스 진행(참여방식에 따른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흐름도, 참고 2)

- ①on-line·모바일 접속의 경우 자가진단 실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며,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시 센터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③위탁기관 방문 시 위탁기관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위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송부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 대학청년고용센터로 방문시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는 우선 대학내 위탁기관 분사무소로 연계한 후 사전단계 진행

<2> 1단계(상담·진단)

- '패키지 위탁기관'에서 프로파일링 결과 및 상담·진단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별 IAP 수립
-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이 모두 높은 D·E·F 유형의 경우 1단계를 상담을 최소화 (1주 2회 이상 상담)하고 취업알선, 해외취업지원(인력공단), 창업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 가능
- 취업중심형 프로세스* 운영여부는 참여자 특성을 고려, 상담원이 결정
 - * 1단계 상담 → 1.5단계 알선(2주, 상담원 재량사항) → 2단계 훈련 → 3단계 알선

<3> 2단계(직무능력향상, 일경험, 인턴, 창업)

- 참여자의 IAP를 고려하여 '패키지 전담 위탁기관'에서 '2단계 분야별 운영기관'에 훈련¹⁾, 일경험²⁾, 인턴³⁾, 창업지원⁴⁾을 연계
 - 1)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각 부처별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 2) 청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중소, 강소, 중견기업), 청년 창직인턴 등
 - 4)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 해외취업형의 경우 K-move 스쿨 등 프로그램과 연계
- 패키지 전담기관과 패키지 2단계 각종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2단계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 * ▲패키지 위탁기관 : 참여자 관리, 패키지 진행 총괄, ▲2단계 분야별 운영기관 : 훈련, 인턴, 일경험, 창업지원 등 분야별 프로그램 진행

<4> 3단계(취업알선)

- 패키지 위탁기관, 고용센터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되, 기관에 방문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1회 2만원) 지급

<취업알선 실비 지급 방식>

- * 대상 : 16년 신규참여자(Ⅰ, Ⅱ유형)
- * 지급방법 : 마지막 회차 방문시 참여자 신청에 의거 일괄 지급
- * 지급금액 : 1회 2만원
- * 지급한도 : 최대 3회 6만원(월 1회까지만 인정)

- 취업알선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최대 6개월)
- * 인문계 및 예체능계열 졸업자 취업의 경우 평가시 가중치 부여
- * 참여당시 재학생의 경우 2단계 미참여시 초기상담일 기준 12개월간 취업지원 가능

<5> 사후관리

- 취업자에 대해서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 지속 제공
(패키지 전담 위탁기관, 고용센터, 대청고 등)
-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인정보 매주 제공, 고용센터와 함께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참여 유도

참고 1 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 「청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연구」(’15.12. 한고원) 발체

가. 통합지원형

○ 개념

- 장기구직, 공무원시험준비, 최종학교 중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목표 및 의지가 부족하여 취업 목표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 특징

- 취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식 부재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절차 및 방법, 구체적 취업목표 부재
- 장기구직, 공무원 시험 및 고급 자격증시험 등을 장기간 준비했으나 실패로 인해 직업목표 및 구직의지 부족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취업사관학교: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훈련비용 및 자립수당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HI, 성취, 올라, 청년취업역량 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별 고졸 청년층, 취약청년층(NEET족), 19~34세 청년구직자 등 대상.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생애설계, 비전수립, 역량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종합지원

나. 훈련중심형

○ 개념

- 전공과 다른 분야의 취업 희망, 전직, 능력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가지며 취업에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및 희망 직종 설정완료
- 전공과 다른 취업, 이전 직장과 다른 분야 취업을 위하여 새로운 직무능력 요구

-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제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대상. 훈련 참여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청년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자 대상. 기업주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15세 이상 실업자, 고3 비진학자, 대졸 예정자 대상. 국가전략직종 중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

다. 일 경험 중심형

○ 개념

- 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으로, 취업을 위해 희망 직무에 대한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및 희망직종 설정 완료
- 취업을 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등)이 갖추어졌으나 일 경험 및 직무경험 부족
- 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취업실패 경험
- 과거 일 경험이 희망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일 경험을 통한 직무경험 축적 이후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15~34세 미취업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인턴ships을 통해 직무경험 제고 지원. 인턴십 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
-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시행 인턴 사업

라. 조기취업형

○ 개념

- 취업 목표설정, 직무경험, 어학능력 등 취업에 필요한 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직무경험, 직무능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 취업요건 모두 갖추어 곧바로 취업 가능한 상태
-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에 대한 능력 다소 부족
- 구직활동 도움을 통해 곧바로 취업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CAP+ (고용노동부): 15~29세 청년구직자 대상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강화, 기업탐색, 구직서류 준비, 면접준비, 모의면접 등을 통한 청년층 취업지원
- 성취 집단상담 (고용노동부): 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능력 강화,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실습 등을 위한 실제 구직과정 준비 지원

마. 해외취업형

○ 개념

- 해외 장기체류 경험 등을 통해 해외생활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이 낮고, 언어의 애로가 없으며 해외취업 및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층

○ 특징

- 국내취업보다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해외취업에 거부감 및 두려움 낮음
- 본인 혹은 부모, 형제 자매가 장기간(6개월 이상) 현지체류 경험이 있어 현지생활에 두려움 낮음
- 현지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갖추
- 해외취업을 통한 장기체류 및 이민 고려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월드잡(해외통합정보망): <http://www.worldjob.or.kr>
- K-MOVE 스쿨 (고용노동부): 15~34세 미취업자 대상. 직무교육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 ODA 청년인턴 (외교부): 18세 이상 미취업자 대상. 해외 ODA수행기관의 현지 사무소 인턴십 지원

바. 창업·창직형

○ 개념

- 창업 및 창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

○ 특징

- 창업 및 창직활동 수행경험 보유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경험 보유
- 창업, 창직을 위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 보유
- 창업 및 창직관련 법률 및 제도 등 관련지식 보유
-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창업인턴제 (중소기업청): 졸업 후 1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을 통해 설립된 기업 인턴십을 통해 창업 노하우, 기업경영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대상. 창업공간, 창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교육, 창업코칭 제공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 후 1년 미만인 자 대상. 실전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가 양성

참고 2 참여방식에 따른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흐름도

① 모바일-PC기반 접속 시

1. 워크넷 시스템 접속

2.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클릭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에 대한 정보 제공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로그인
 - 로그인 단계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3. 자가진단

- 직무능력, 취업의지를 기준으로 취업지원 유형 분류
- 자가진단 후에는 참여자가 본인의 진단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마이 페이지 구축
 - * 자가진단 결과는 패키지 상담사에게 제공하여 상담시 활용

4.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참여 신청

5. 향후 서비스 및 고용센터 방문 안내

- 사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 안내
- 참여자가 지역 및 방문희망 고용센터를 선택 후 방문

6.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방문 시 참여적격여부 판단

- 향후 패키지 절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위탁기관으로 배정

7. 위탁기관에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진행(현재 패키지 II와 동일)

- * 상담시 참여자의 자가진단 결과를 최대한 활용

② 고용센터 직접 방문시

1. 고용센터 방문
2. 고용센터 상담사는 참여자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참여 희망할 경우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일
 - <Case 1> Off-line 진단지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 * 진단 결과는 상담사가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
 - <Case 2> 센터 내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On-line 자가진단 등을 실시토록 유도
3. 진단결과 등을 참고하고 참여 적격여부 판단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4. 이하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과 동일

③ 위탁기관 또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직접 방문시(위탁기관 모집 포함)

1. 위탁기관 방문
2. 위탁기관 상담사는 참여자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참여 희망할 경우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일
 - <Case 1> Off-line 진단지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 * 진단 결과는 상담사가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
 - <Case 2> 위탁기관 내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On-line 자가진단 등을 실시토록 유도
3. 위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송부
4. 고용센터에서는 참여 적격여부 판단 후 참여요건 충족시 참여자에게 출석 통보 → 향후 유의사항 안내
5. 고용센터에서는 모집한 위탁기관으로 참여자 배정
6.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하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II와 동일)

Ⅲ 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

<1> 일정협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현황)** 현재도 인턴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나 패키지-인턴 위탁기관간 실적인정, 위탁사업비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연계 건수 저조

* '14년 패키지 2단계 참여자 12만명 중 청년인턴 참여자는 77명에 불과

- **(연계방안)** 패키지 참여자가 인턴 연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패키지 위탁기관과 인턴 위탁기관 **모두 취업실적으로 인정**

* 인턴 연계시 패키지 각 단계별 '취업실적' 처리방안

패키지 단계	현 재		개 선
1(IAP수립 후) · 3 단계	패키지 중단 후 인턴 연계	⇒	인턴기간(3개월)간은 패키지 3단계에서 연계 가능, 정규직 전환 시 취업인정
2 단계	패키지 진행, 정규직 전환시 취업인정	⇒	현행과 동일

- 위탁사업비는 패키지와 인턴을 동일 기관이 위탁받을 경우와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받았을 때를 구분하여 지급

* 패키지와 인턴 위탁기관 별 사업비 지급방안

구 분	사업비 지급방식
동일 기관이 위탁	인턴사업 정규직전환(5만원), 6개월근속 인센티브(5만원)는 미지급, 나머지 위탁사업비는 지급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	각 사업에 따라 책정된 위탁사업비 지급

* <참고> 패키지, 인턴 사업별 위탁사업비 구성 현황(단위:만원)

구 분	기본금	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	40	나은일자리 30, 3개월근속 20, 6개월근속 30
청년취업 인턴	25	강소기업 5, 정규직 전환 5, 6개월근속 5

<2> 일경험 :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현황) 취업성공패키지와 미 연계
- (연계방안) 위탁기관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 및 프로그램 진행
 -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
 - * 강소기업 탐방 위탁비 : 1일 1인당 8만원(5시간 미만의 경우 미지급)

<3> 해외취업 : K-Move 스쿨, 해외인턴, 해외취업알선

- (현황) 취업성공패키지와 미 연계
- (연계방안) 산업인력공단 World Job 사이트를 통해 신청·연계
 - * Work-net과 World-Job의 연계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위탁기관 담당자가 소정의 신청 양식에 의거 인력공단 본부에 수기로 연계(시스템 연계시 별도 공지 예정)
 -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2단계 K-move 스쿨, 해외인턴, 3단계 해외취업 알선으로 구분하여 인정
 - 취업처리는 참여자가 해외구인처에 취업한 후 출국 시 인정
 - * 해외취업 시에는 기관평가시 2배로 인정
 - 위탁사업비는 패키지와 해외취업을 동일 기관이 위탁받을 경우와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받았을 때를 구분하여 지급
 - * 패키지와 해외취업 위탁기관 별 사업비 지급방안

구 분	사업비 지급방식
동일 기관이 위탁	패키지 기본금만 지급하고 패키지 성과금은 미지급 해외취업에 따른 위탁기관사업비는 지급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	각 사업에 따라 책정된 위탁사업비 지급

* <참고> 해외취업 위탁기관 지원금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 계약금액의 70%는 선지급 30%는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

- (참여자 지원) 해외취업 참여자가 K-move 스쿨의 훈련을 받을 경우 2단계 훈련 참여수당(월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4>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등

- **(현황)** 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대부분이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특히, 내일배움 카드제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큼(훈련참여자의 약 80%)
 - 취업률이 높고 과정 품질이 보다 우수한 국기훈련 등 다른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필요
- **(다양화 방안)** 2단계 훈련 연계시 우선 국기훈련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인적 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디딤돌*등으로 유도
 -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연계시 훈련·인턴 기간은 패키지 2단계로 간주
 - 수강 가능한 집체 훈련과정 수 제한 완화
 - * 現 최대 3개 과정 → 改 최대 4개 과정(인터넷원격 훈련 시 1회 추가가능)
 - 상담원이 각종 훈련과정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청년고용통합전산망)을 개발 하고 훈련제도·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 **(훈련참여수당)**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국기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
 - * 현재는 실업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국기훈련 30만원, 내일배움카드 28.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과다한 금액이라는 지적

<5> 고용디딤돌

- **(현황)** 현재도 고용디딤돌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나, '15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2단계 훈련가능기간(8개월) 이후까지 진행되는 경우 패키지사업에서 중단 처리되는 문제로 인해 연계 건수 저조
- **(연계방안)** 2단계 운영기간의 특례를 인정('<7>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 참고) 하는 한편,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홍보 및 취·창업 등 지원
 - *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소 운영 중

<6> 창업 :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등

- **(현황)** 참여자 희망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 * '14년 청년 창업자 1,188명(창업교육 연계 실적은 시스템 미비로 산출불가)
- **(다양화 방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도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창업기업으로 취업알선 등 추진
 - *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소 운영 중

<7>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만 34세 이하의 I,II유형 모두 적용)

- 2단계 기간 중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추가 프로그램 참여 시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초과 되는 경우,
 -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2단계 기간 특례 운영)
 - 다만, 2단계 기간 특례운영이 가능한 마지막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중기청 및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등)은 제외됨에 유의
- * 예시: ①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5개월 훈련을 받은 참여자가 고용디딤돌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마지막 프로그램 '고용디딤돌'은 2단계 최대 기간(8개월)을 초과해서 참여 가능
 - ②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6개월 훈련후 3단계 진입 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2단계로 전환하여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인턴기간(3개월) 중 최초 2개월은 2단계 훈련기간으로, 남은 1개월은 2단계 기간 특례 적용으로 참여 가능
 - ③다만,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경과된 이후 추가로 국기훈련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중단됨에 유의
 - ④2단계 8개월 경과 후 인턴참여 시, 인턴 참여기간(3개월)은 3단계 인정 가능.
-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취업으로 마감 처리할 수 있음.
- * '15년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적용 (초기상담을 '15년도에 한 경우)

4부

민간위탁 매뉴얼



I 민간위탁사업 기본운영 지침

1. 2016년 민간위탁사업 개관

【 기본 방 향 】

- ◆ 패키지 I 은 고용센터 전담, 패키지 II는 전량 민간위탁 원칙
- ◆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경쟁 및 성과중심형 지향
- ◆ 민간위탁기관과 자치단체·대학 등의 협업에 기반한 사업 광역화 지속

1.1. 민간위탁 추진 규모 및 유형

- 2016년 패키지 사업 규모가 36만에서 30만명으로 감소되고, 민간위탁 사업규모도 18만에서 17만명으로 감소
- 패키지 I 유형은 전부 고용센터가 직영하고, 패키지 II유형은 전량 민간위탁하는 형태로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1.2. 위탁기관 추가 선정 규모

- 사업규모의 감소(18만 → 17만명), 기존 위탁기관(309개소) 중 성과부진에 따른 약정해지 기관 수(1개소)를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은 불필요해 보이나
- 다만, 고용센터내 위탁기관의 신청에 따른 약정해지나, 인접 민간위탁기관과의 접근성이 낮아 추가 선정 필요시, 위탁기관이 전무한 경우 등에는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지방관서별 공모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

1.3. 추가 선정 원칙

- 자치단체 또는 대학 등이 민간기관과 연계한 협업형 위탁사업 원칙으로 하되, 기존 기관의 경우 단독 참여 가능
- (신규형) 신규 민간위탁기관 + 자치단체(광역, 기초)·대학 등

- (확장형) 기존 단독 참여 중인 민간위탁기관 + 자치단체·대학 등
- * 신규·확장형 모두 유관기관(예 : 지역내 비영리단체 등) 추가 참여 가능

1.4. 협업형 위탁기관에 대한 특례

- (사업 광역화) 광역형(광역자치단체-민간기관 협업형) 위탁기관은 약정체결 고용센터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당해 시·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가능
- (분사무소 설치 허용) 별도의 추가 약정없이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자는 사전에 분사무소 관할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광역형은 관할 고용센터를 벗어나 당해 시·도 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 * 약정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와 체결하되, 분사무소 설치 승인, 분사무소별 참여자 배정, 위탁비 지급,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분사무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장
- 일반형(기초단체, 대학·고교 협업형)은 관할 고용센터 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 (분사무소 설치 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민간위탁사업자가 새로이 분사무소 설치시,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요건*을 구비하여 변경등록을 하되
 - '15.12.31기준, 이미 운영 중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 6. 30까지 분사무소의 요건 구비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함
 - * ▲ 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다만 대표자가 전담자 자격 구비시 겸직 가능)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
 - 다만, 대학 또는 자치단체 건물내 분사무소의 경우 종전대로 직업상담 내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하면 설치 가능(협업기관의 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1.5. 위탁사업 실시 지역 및 장소 변경

- 위탁사업 실시 지역은 약정서 체결 당사자인 고용센터 관할 지역임

- 관할지역 내에서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이전
- 광역형의 경우에는 약정체결한 고용센터의 관할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일 시·도내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 허용
- 광역자치단체 협업형 기관이 고용센터 관할지역을 벗어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예: 서울남부 관할 여의도 소재 → 서울북부 관할 성북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이전
- ※ 관할 고용센터 내 이전시 약정서(소재지) 변경, 고용센터를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약정 체결 필요

1.6.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 기존 단독형 위탁기관이 협업형으로 위탁형태 변경 시, 협약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전환 가능(연중 가능)하되,
 -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 설치시 직업안정법상의 사업소 요건 구비 후 관할고용센터장의 사전승인 및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함
 - ※ 약정서(안): 일반형(서식 36 참조), 광역형(서식 37참조)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자체 채용 시 위탁비(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단가는 타 참여자와 동일하게 지급(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15년 이전 참여자 중 '16년으로 이월된 경우에는 종전 위탁기관이 종료시까지 서비스 제공

1.7. 이월된 위탁자에 대한 지침 적용

- '15년 이전 참여자 중 위탁기관에 의뢰되어 이월된 경우에는 초기상담일이 진행된 시점의 지침을 적용

2. 위탁대상자 및 지원금

2.1. 참여자 모집

- 협업형 기관은 물론 기존 참여기관인 단독형 기관의 경우에도 자체 모집 허용

2.2. 참여자 배정 원칙 및 절차

- 위탁기관 자체 모집자: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송부 →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 (고용센터)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 통보 → (고용센터)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모집한 민간위탁기관에 배정 →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모집자 :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통보,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민간위탁기관 선택 안내 및 배정 →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교·대학(원)생 최종학년 재학생 등 청년이면서 I 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유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44)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모집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에게 위탁기관 명단과 위탁기관별 성과정보 등을 제공하면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만, 지역여건 및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배정 물량 조정 가능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타 위탁기관으로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조치를 허용
 - (IAP 수립전) 기존 위탁기관 기본금 미지급, 참여자가 이관된 기관에 기본금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내) 기존 위탁기관이 수령한 기본금 중 20만원을 반환받아 이관기관에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경과 후) 이관 기관에 기본금은 미지급하나 참여자 취업시 취업인센티브(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지급

2.3. 고용센터 역할

○ 민간위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고용센터의 Gateway 기능 강화

① 오리엔테이션 : 자격요건 확인,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위탁기관 배정

* 내일배움카드제는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 필요성, 훈련시 취업가능성 제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 결정

② 수요자 선택형 민간위탁: 수요자가 민간위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성과 및 정보 제공 → 성과 중심형 민간위탁

* 기관 위치, 전년도 참여자 수 및 취업률

③ 훈련심사 :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역량평가 결과, IAP 내용 검토 및 훈련의 필요성, 적절성 검토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원칙

○ 장기 훈련참여가 곤란하거나 국기훈련과정이 없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 불가)

○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쿼터제) 운영(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인원은 별도지침 시달)

* '16년 예산편성시, 취업성과 높은 국기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국기훈련 예산은 증액된 반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예산은 축소됨

□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교 3학년생에 대한 훈련상담

○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 3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도록 훈련기관 등에 안내 필요

※ 고 3에 대해서는 국기훈련 훈련장려금 추가금을 월 20만원, 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일원화('16. 3. 1.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 비진학 고 3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사실상 고3이 되는 시점

- 고 2 수료 후 다음해 1. 1. 이후(방학 중)인 경우에도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지침」 (부록 15) 참조

2.4.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 설정

- 필수서비스는 폐지하고 서비스 내용은 민간위탁기관의 자율 존중
 - 다만,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은 설정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필수서비스가 아닌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기간 및 주기·횟수 준수 필요
 - ※ 취업성공패 I 유형(고용센터 및 '15년도 추경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필수서비스 제공이 원칙
- 단계별 서비스 기간 : 1단계(3~4주) → 1.5단계*(2~4주) → 2단계(8개월 내 6월간) → 3단계(3개월) → 사후관리(3개월)
 - *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략 가능

2.5. 위탁사업비

- 지원금은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분류·지급하되,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근속 인센티브는 취업 소요기간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참여자의 조기 취업지원 유도

< 위탁비 지급 단가 >

구분	계(만원)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초기상담일 기준 6월이내 취업	140	40	100	30	30	40
12월이내 취업	120	40	80	30	20	30
15월이내 취업	100	40	60	30	10	20

* '15년 기준이며, '16년 위탁사업비 세부내용은 기재부 협의 후 개정사항 별도안내 예정

□ 기본금

- (지급액) 1인당 40만원
 - (지급 요건) 1단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IAP를 수립한 경우 소정의 기본금 확정 지급

- 다만, IAP 수립 후 2개월(월력기준) 이내에 중도 탈락하거나 약정해지로 인해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조치
-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 제외) 운영시, 기본금 10만원 추가 지급
 - ※ 위탁사업 참여요건 미충족 사실이 기본금 지급 후(IAP수립 직후로써 미지급 포함) 확인된 경우에도 중도탈락에 준하여 처리

□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 참여자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피보험 자격취득시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30만원 지급**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
 - ② 취업 후 1개월 경과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 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③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④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자리
- 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제한이 되지 않는 취업

□ 근속 인센티브

- ‘근속인센티브’는 위탁기관의 알선취업, 참여자 본인취업 구분 없이 같은 직장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되, 취업 소요기간별로 차등 지급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
 - ② 취업일로부터 3(6)개월 근속시
-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참여자를 자체 채용하여 근속성공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지급(사회적기업 등 예외)

☞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급 대상

【 자체 채용 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 위탁기관의 자체 채용 판단기준

- 자체 채용이란 함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민간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참여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말함
 - ① 당해 민간위탁업체
 - ② 당해 민간위탁업체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③ 당해 민간 위탁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④ 당해 민간위탁업체 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체

□ 자체 채용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민간위탁기관 자체 채용 시에는 취업 인센티브는 부지급함이 원칙
- 다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인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를 자체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인센티브 지급

□ 창업자에 대한 특례

- 창업자에 대해서는 근속인센티브만 제공하고 나온 일자리 인센티브는 부지급

2.6. 지원금 신청

□ 기본금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에 대해 IAP를 수립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39)」 및 「지원금 지급 총괄표(서식 40)」를 작성, 고용센터에 제출
 - 위탁인원 중 IAP 수립 이후 중도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일의 다음 달 지원금 지급 신청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서식 41)」 및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서식 42)」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 지원금 지급 신청 월의 전(前)월에 발생한 중도탈락자는 모두 총괄표에 기재(IAP 수립 2월 초과자도 기재)
- * IAP 수립 직후 중도탈락이 발생되어 기본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금 지급 신청과 동시에 기본금 반환 대상 신고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39)」가 제출 되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한국고용정보원)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DB상 취업 인센티브 수급요건을 갖춘 참여자 정보를 고용센터와 수탁기관에 제공
 - * 고용보험 DB상 개인별 보수총액, 소정근로시간, 자격취득일, 계약 종료일 등
- (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매월 20일까지 고용센터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식 39)
- (고용센터) 수탁기관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2.7. 지원금 반환 및 회수

- (부정·부당수급)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위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한하여 지급된 지원금전액 반환 조치
- (중도탈락) 기본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시까지 위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기관에 지급한 것이므로 IAP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참여자가 중도탈락하는 경우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약정해지) 약정해지로 인해 IAP 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 되는 경우에는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 반환금은 별도로 전산망에 입력
- 약정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 실시

2.8.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원칙적으로 위탁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 수당, 지원금 등은 일반 민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자체 채용시에도 기본금과 취업인센티브를 지급
- 자체 채용한 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영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음

II 위탁업무 처리절차

1. 위탁절차 개요

- (고용센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를 수탁기관에 의뢰
- (위탁기관) 고용센터로부터 전산으로 의뢰받은 경우 위탁대상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유선 통화 조치
 - 참여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위탁사실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1주일 이내) 내 초기 상담일자를 협의·결정
 - 위탁대상자와의 초기 상담일시가 결정된 경우, 전산으로 초기상담일을 기재하여 출석통지 발송(1일전 SMS 발송 병행)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전적으로 위탁기관 책임 하에 운용·관리
-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은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 조치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 (취업지원) 위탁배정이 완료되면 1차 상담 실시 등 자율적인 취업지원 실시
 -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 * 위탁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상자와의 유선연락 등을 통해 1차 상담일을 협의·결정 조치(1차 상담 불참 시, 2차 초기상담일 기준 5일 내 2차 통보 → 2차 통보 불응 시, 취업지원 중단/신청 취소)

- (전산입력)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은 3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자료 수정은 3일 이내 완료
 - 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 시 전산에 입력된 시기 및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3.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은 위탁기관 담당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위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관리는 위탁기관의 책임하에 실시
- ※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지침」(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104호, 16. 1. 11.) 숙지 후 안내(부록 15 참조)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 참여수당이나 취미형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을 줄이고 취업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불요불급한 훈련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

< 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 >

구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별 지원			
	취업률 70~100%	취업률 69~50%	취업률 49~35%	취업률 35%미만
일반실업자	80%	70%	60%	50%
패키지Ⅱ	90%	85%	80%	70%
패키지Ⅰ	100%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 (선 취업지원) 위탁기관은 훈련 추천 이전에 참여자에게 2회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필수 제공
- (훈련추천) 위탁기관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상담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용센터에 추천서 송부
 - * 훈련상담 내용,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한 센터 방문예정 일시 등
- (훈련상담일시 통보) 추천을 받은 고용센터 상담원은 참여자와 유선으로 상담일시를 협의하여 확정
- (훈련상담 실시) 고용센터 상담원은 참여자와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기록
 - * HRD-Net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을 검색, 대상자에게 적절한 훈련과정 제시(필요 시 훈련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 파악·안내)
- (계좌 카드 발급) 고용센터 상담원은 훈련상담결과를 토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계좌카드 발급
 - * 훈련 참여 주의사항 등을 참여자에게 필히 고지
- (훈련참여 과정 관리) 위탁기관 전담자는 계좌카드 발급 이후 위탁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관리를 실시하고, 관리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입력
 - * 위탁대상자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현황에도 관리 상황 내용 포함

참고

Ⅱ 유형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는 1단계 종료 후 2~4주간에 걸쳐 집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실시 후 2단계 진행(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가능)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중 6개월 미만 단기과정 참여자에 한하여 적용

□ 목적

- (조기취업 유도) 취업의지나 역량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취업을 유도
-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제한) 취미형 훈련,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 예방
- (적극적 취업활동 의무 부과) 참여자가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인정보 제공, 훈련탐색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의무 부과

□ 운영 원칙

- IAP 수립 후 2~4주간 최소 2번의 방문상담(유선상담 가능)을 통한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
 - ※ 취업알선 2번, 취업상담 2번, 취업알선 1번과 취업상담 1번 가능
 - 취업상담에는 구인정보 제공, 훈련탐색, 구직활동 등 포함
 - * 구인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및 상담내역을 워크넷에 기록
 - 훈련탐색 및 구직활동시 훈련탐색표, 구직활동내역서 제출 의무 부과
 - ※ 훈련과정탐색표(서식 14 활용), 구직활동내역서(서식 15 활용)
 - 창업하려는 자는 취업알선에 갈음하여 자영업활동내역서 제출 의무 부과 (자영업활동내역서 서식 16 활용)
- 1단계 완료 후 최장 4주(28일) 동안 진행
- 1단계 이후 바로 Ⅲ단계(취업알선)로 진입한 자가 다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2~4주간 2번의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 후 이동 가능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역량평가 실시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최소 2회의 상담을 실시한 이후 IAP 수립 상담 전까지 전담자가 직접 취업역량평가 실시
 - 취업역량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A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우대 제공
 - ▲ B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우대 제공
 - ▲ C·D 등급 : 가급적 직업훈련 참여는 제한하고 조기 재취업 지원

5. 참여자 수당 지급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급 관련 신청서는 위탁기관이 1차 확인하고 일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각종 수당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자의 계좌로 지급 조치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직접지급이 원칙**으로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지급 금지

6. 취업지원 종료·이관·중단 등

6.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지원상황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되, 취업지원 **중단은 고용센터에서 조치**

※ '16년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 편 준용

6.2.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 위탁대상자별 지원현황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해당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즉시 조치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등 통지**
 - 위탁대상자 중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해당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종료(유예)를 통보(서식 26, 29)
 - * 취(창)업자 경우 1개월 내 퇴사(폐업) 시, 동 사실 통보(서식 34)를 전제로 패키지 사업 참여를 재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재개신청서(서식 27) 접수 시 5일 이내 취업지원 재개를 위한 상담 실시 ☞ 유예자에게도 준용(유예기간 종료일 전 재개 가능)
-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 입력**
 - 취업지원 종료(유예) 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시스템에 조치 사항을 입력
 - * 취업지원 유예의 경우, 대상자 명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함께 제출

6.3. 취업지원 이관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위탁기관에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 허용
 - (IAP 수립전) 기존 위탁기관 기본금 미지급, 참여자가 이관된 기관에 기본금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내) 기존 위탁기관이 수령한 기본금 중 20만원을 반환받아 이관기관에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경과 후) 이관 기관에 기본금은 미지급하나 참여자 취업시 취업인센티브(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지급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가 타 기관 이관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31)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로부터 이관 조치 통보를 받는대로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관을 받는 기관은 위탁대상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담일정 등 협의

- (고용센터) 이관 요청서 접수 시 요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종전 위탁 기관, 신규로 이관받을 기관 및 위탁대상자(서식 32)에게 이관을 통보
 - (참여자가 배정당시 위탁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소지 이전 시 한정적으로 이관 허용
 - (고용센터의 배정 등 참여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실한 경우 등 위탁기관 변경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관사유를 넓게 인정
-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및 이관 통보서(서식 31, 32)

6.4. 취업지원 중단

-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서식 38)」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전산시스템에 조치사항을 입력
- ※ 중단사유 및 기준은 '16년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편 내용 준용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청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서식 28)
 - 아울러,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당일 중으로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7.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7.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위탁기관이 전담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로서 당해 기관에 전담자에게 OJT를 실시할 경험있는 전담자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OJT 실시
- 그 밖의 교육·훈련 필요사항은 본부, 컨설팅 담당기관 등에서 실시

7.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위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 ⇒ 위탁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담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해 (지)청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강화

7.3. 위탁사업 추진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고용센터는 반기 1회 이상 위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 특히, 상반기 중에는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실적 부진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

III

민간위탁기관 관리

1. 위탁기관(사업자) 기본 요건

1.1. 자격요건

- (참여대상 기관) 공모신청일 현재 위탁사업 희망 고용센터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 1)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
- 2)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관련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① '1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 약정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② '1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 ③ '1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 기관의 약정해지 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되어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3)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1.2. 시설요건

-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이 가능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
면 적	6.6평방미터 이상 (약 2평 이상)	16.5평방미터 이상 (약 5평 이상)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
구조 및 시설	· 오픈되지 않은 공간 · 독립된 별도 공간	· 단체 프로그램 운용 위한 기본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 시설 등	· 오픈된 공간 가능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구비
비 고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민간위탁사업자가 새로이 분사무소 설치시,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요건*을 구비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되

- '15.12.31기준, 이미 운영 중인 분사무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 6. 30까지 분사무소의 요건 구비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함

* ▲ 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다만 대표자가 전담자 자격 구비시 겸직 가능)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

- 다만, 대학 또는 자치단체 건물내 분사무소의 경우 종전대로 직업상담 내지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하면 가능(협업기관의 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1.3. 인적요건

- 민간위탁 사업자는 최소 2명 이상(업무 전담자 1명, 업무 지원자 1명)의 업무담당자를 지정·운용해야 함

□ 업무전담자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업무 전담자가 존재할 것
 - * 전담자라 함은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 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① **(자격 및 경력)** 전담자는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또는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업무지원자 경력*** 6개월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 자격증으로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없음) 수행 경력

*** 업무지원자 경력은 1일 8시간 전일제 근무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정

- ② **(전담자수)** 업무전담자는 1인당 참여자 상시 관리인원 120명씩 배정·운영

- * 2016년 참여자만 관리하는 경우 1인당 120명
- * 2015년 참여자와 2016년 참여자를 동시 관리하는 경우만 관리하는 경우 1인당 150명까지 가능(2016.6.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 2015년 1유형 참여자와 2016년 (II 유형)참여자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2015년 1유형 참여자는 1.5명으로 계산

- ③ **(고용형태)** 위탁기관의 전담자는 당해 기관의 정규직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프리랜서, 비상근직, 계약직, 비정규직은 불인정)

□ 업무지원자

- 업무지원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
- 업무지원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음
- 업무지원자는 자격증, 경력, 채용인원 등에 제한이 없으나, 4대 보험 가입요함

1.4. 프로그램 요건

- 위탁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구직의욕 증진 등을 위한 개별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1.5.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

- 신규 분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위탁기관은 분사무소 설치 희망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기관은 분사무소 설치(예정) 장소(위치), 참여자 모집방안,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선 계획 등이 포함된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설치예정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승인요청
 - * 고용센터에서 분사무소 설치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시설요건 및 인적요건 구비
 - 고용센터는 관할지역 내 위탁기관 운영상황, 위탁기관이 제출한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 통보

2.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2.1. 추진상황 모니터링

- **(참여자 관리)** 위탁기관(사업자)은 참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제공

- 본부 및 고용센터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상황 및 적정성 등 확인
 - * 위반시 조치 기준은 <부록 12> 참조(위탁약정서 등 위반시 조치기준) 참조
- 고용센터는 성과관리시스템(<http://espms.work.go.kr/>)을 통해 위탁기관별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통보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등 징구 지양

2.2. 위탁약정 해지

- 위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 ①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위탁기관(사업자)의 사업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관할 지역내 타 위탁기관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이 떨어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개선계획서,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
 - ④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 ⑤ 기타 위탁약정서의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탁기관 점검 조치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참여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이상 확인된 경우
 - ⑦ 지원금의 횡령(또는 유용), 부당인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⑧ 단계별 서비스 제공주기 및 횟수 미이행으로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⑨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위탁약정 해지 시,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던 참여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인근 위탁기관에 이관하여 취업지원 계속 제공
 - 관할 고용센터내에 다른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위탁기관 중 인근 기관으로 이관

IV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1. 추진 개요

- 민간위탁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질 높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동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 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됨
 - 필수서비스를 폐지하고 위탁기관이 참여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되, 아래와 같이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에 대한 최소 요건 설정 후 엄격하게 모니터링
- 단계별 서비스 기간 : 1단계(3~4주) → 1.5(2~4주)* → 2단계(8개월 내 6월간) → 3단계(3개월)** → 사후관리(3개월)
 - *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단계 생략 가능
 - ** 청년층의 경우,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청년층으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이상인 자는 1단계를 1주이상으로 단축운영 가능하되,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취업역량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참여자와 협의 후 위탁기관 담당자의 판단하에 1단계 기간 단축(1주 2회이상 대면상담) 가능
 -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 자격,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의지, 역량과 관계없이 역량평가 점수가 낮은 상황을 고려
- 단계별 서비스 주기(횟수)
 - 1단계 : 최소 3회 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다만 1주 이상 단축운영시 2회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제공
 - 1.5단계 운영시 : 최소 2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단계 : 월 1회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3단계 : 월 1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간 : 월 1회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2. 점검 추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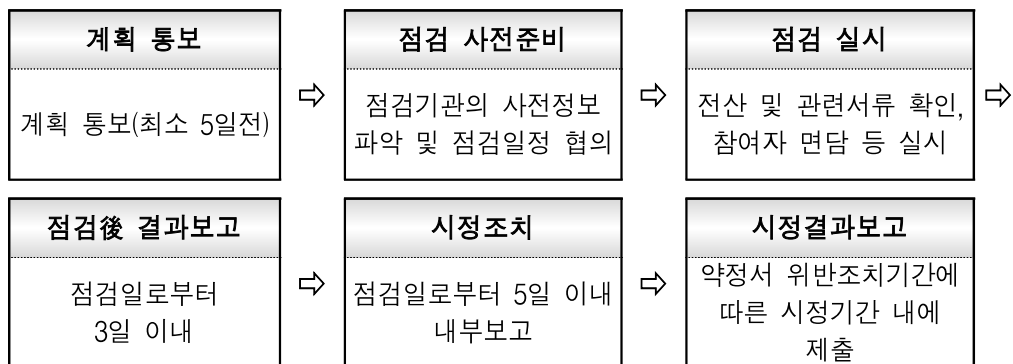
2.1. 점검 주기

- 정기 지도점검은 반기별 1회(년 2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점검 실시
- 각 고용센터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2. 점검방법

- 점검은 위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사전계획 수립 후 실시하되 2인 1조로 실시
- 점검은 위탁대상자의 일부(5% 내외 무작위 표본 추출)를 선정하여 Spot Check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되
- 전산시스템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르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확대 점검 실시

2.3. 점검 절차(정기점검)



3. 중점 점검 사항

-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 준수 여부
 - 전산상 입력된 서비스의 허위 기록 여부 등 확인
 - 집단상담프로그램 적정 운영 여부
 - 출결관리 적정 여부, 프로그램 운영요건 준수여부 등 확인
 - 민간위탁사업자 요건 확인
 - 자격요건, 인적요건, 시설요건, 프로그램 요건 등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서식 35>의 민간위탁기관 점검표 활용

4. 점검결과 조치 및 기준

- (조치기준)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부록 12)에 따라 조치하되, 점검 결과는 전산 입력(본부 보고 생략)
-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에 대한 조치 기준
 - i) 점검결과 부정수급액 및 부당인출액이 200만원 이상 이면 즉시 약정해지
 - ii) 점검결과 부정수급액 및 부당인출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 ❶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액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
 - ❷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액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경고
 - iii)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 전액 반환 조치(i) 또는 (ii)와 병행 조치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환수 대상 부정수급·부당인출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인출한 경우 부정수급·부당인출에 해당

구분	환수 대상 부정수급·부당인출
개별 상담 관련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산에 기재 ▪ 1단계 대면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면상담한 것으로 허위 기재 ▪ 상담자격이 없는 업무지원자 등이 담당자 휴가, 교육 중 대체 상담 실시
집단 상담 관련	▪ 집단상담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지원금 수령 ▪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석부 등 허위 작성 ▪ 집단상담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수료기준인 80% 미만으로 참여한 사람을 수료한 것으로 관리 ▪ 실시기관에서 집단상담을 운영하면서 계획된 운영시간보다 단축 운영 (수료기준 80%와 관계 없음) ▪ 전담자가 아닌 업무지원자 등 비전문가가 집단상담 실시
기타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경우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V 민간위탁사업 평가

1. '16년 평가계획(안)

1.1 평가대상 기간

- ('16년 이전 선정 위탁기관) '15.11.16 ~ '16.11.15까지의 추진실적 평가
- ('16 신규선정 위탁기관) 계약체결일 ~ '16.11.15까지의 실적을 평가
- ※ '16년 신규기관은 평가는 실시하되, 약정해지 등 조치대상에서는 제외

1.2 평가그룹

- 모든 기관을 “동일그룹”으로 평가('15년부터 시행 중)

2. 평가지표

2.1 정량평가(80점)

- 정량평가는 취업률(40), 고용유지율(20), 나은 일자리 취업률(20), 핵심 3대 지표로 평가(고용보험 가입자로 평가)
 - 취업률은 서비스 종료자 기준 취업률로 평가
 - 고용유지율 평가
 -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을 위해 월 15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자 비중 반영
- 아울러, 정량평가 점수 중 최소성과 수준 설정

2.2 정성평가(20점)

- 정성평가는 고객만족도(15), 센터연계 및 협조(5) 2대 지표로 평가

* 고용센터 연계 및 협조(5점): 지도 점검결과(3)** 및 고용센터 재량점수(2)

** 주의 0.5점, 경고·시정명령은 1점 각 감점하되, 평가대상기간(2년) 중 중복 반영 금지

2.3 가점지표: 모집률(5점)

- 기관평가 그룹*별 평균 자체모집인원(모수) 대비 해당 기관의 모집인원으로 산정하되, 일정기준에 따라 기관별 점수 차등화

* 청그룹/지청 A, B, C그룹

3. 기타사항

- (협업형 위탁기관) 정량평가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실적 합산 후 정량평가 하되, 정성평가 지표 중 감점반영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감점 합산 후 평균 점수 반영
- (가점부여 기준) ▲위탁기관 정량평가 대상 취업률 산정시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 졸업자(고졸, 대졸포함)의 취업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 부여 ▲알선 취업자에 대해 가중치 부여

4.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지표는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로 구성하여 각 지표별 실적의 합으로 평가 하되, 정량평가 최소성과 수준 미달시 약정해지 조치

※ '16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계획은 추후 별도 지침 시달

서 식



<서식> 목차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301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07
<서식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308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309
<서식 5> 이의신청서	310
<서식 6>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311
<서식 7>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312
<서식 8> 상담일정 통보서	313
<서식 9> 내일을 위한 약속	314
<서식 10>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315
<서식 11> 복지서비스 의뢰신청서	316
<서식 12>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318
<서식 1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공통)	319
<서식 14> 훈련과정 탐색표	321
<서식 15> 구직 활동 내역서	323
<서식 16> 자영업 활동 내역서	325
<서식 17> 청년취업 인턴제 참가대상자 신청서	327
<서식 18> 청년 창직 인턴 신청서	329
<서식 19> 창직·창업 계획서	331
<서식 20> 중견인력 인턴신청서	333
<서식 21>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335
<서식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	336
<서식 2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340
<서식 24>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341
<서식 25>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342
<서식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343
<서식 27> 취업성공패키지 재개 신청서	344
<서식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345
<서식 29>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	346
<서식 30>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347
<서식 31>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	348
<서식 32>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통보서	349
<서식 33>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350
<서식 34> 이직 통지서	351
<서식 35> 민간위탁기관 점검 서식	352
<서식 36>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	355
<서식 37>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광역형)	361
<서식 3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	367
<서식 39>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	368
<서식 40> 지원금 지급 총괄표	369
<서식 41>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370
<서식 42>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371
<서식 4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372
<서식 44>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청년층)의 II 유형 변경 참여동의서	373
<서식 45>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	374
<서식 46> 3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375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면 · 앞면)

【 20 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참 가 신 청 서

< 신청서 작성 안내 >

1.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3면에 기재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주요정책정보 → 고용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조건부수급자	☐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청년	☐
	비의외수급자	☐		대졸이상 미취업자	☐
	법정 차상위	☐		니트족	☐
	차차상위이하자	☐		영세자영업자	☐
	노숙인(부랑인) 등 비주택거주자	☐		맞춤특기병	☐
	북한이탈주민	☐	중장년층	고용촉진특별구역 이직자	☐
	여성가장	☐		실업급여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
	결혼이민자	☐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
	신용회복지원자	☐		영세자영업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이직자	☐
	위기청소년	☐			
	FTA피해근로자	☐			
	건설일용직	☐			
	영세자영업자	☐			
	장애인	☐			
	FTA피해실직자	☐			
	국가유공자	☐			
	맞춤특기병	☐			
	미혼모 · 한부모	☐			

(1면-뒷면)

<구비서류>

공통서류 (일부 참여자 제외)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3. 신청일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법정 차상위 증명자료 ※ 공통서류 제출제외	<table><tr><th>사업명</th><th>소관부처 (집행기관)</th><th>적용대상</th><th>지원내용</th></tr><tr><td>의료급여패키지</td><td>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td><td>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td><td>● 의료급여 1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td></tr><tr><td>장애(아동)수당 패키지</td><td>보건복지부 (자치단체)</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td><td><차상위계층 경우> ● 장애수당: 4만원 · 장애연금: 4~22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15만) · 경증(10만)</td></tr><tr><td>한부모가족 패키지</td><td>여성가족부 (자치단체)</td><td>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td><td>● 아동양육비(7만) · 고교생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td></tr><tr><td>방과 후 보육료</td><td>보건복지부 (자치단체)</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td><td>●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19만7천원</td></tr><tr><td>고교생 학비 지원</td><td>교육부 (교육청)</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td><td>● 고교생 학비 지원</td></tr><tr><td>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td><td>교육부 (교육청)</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td><td>● 학교 급식비 지원</td></tr><tr><td>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td><td>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td><td>● 연탄보조 쿠폰 지급</td></tr><tr><td>심야전력 요금 할인</td><td>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td><td>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td><td>●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8%</td></tr></table>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	● 의료급여 1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 장애수당: 4만원 · 장애연금: 4~22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15만) · 경증(10만)	한부모가족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7만) · 고교생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19만7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8%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	● 의료급여 1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 장애수당: 4만원 · 장애연금: 4~22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15만) · 경증(10만)																																		
한부모가족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7만) · 고교생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19만7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8%																																		
결혼이민자 ※ 공통서류 제출제외	1. 외국인등록증(*) (F-2, F-5로 참여하는 경우) 2.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3. 혼인관계서류(*) (필요시)																																				
부랑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 공통서류 제출제외	<table><tr><th>참여대상자</th><th>관련기관명</th><th>비 고</th></tr><tr><td>부랑인·노숙인</td><td>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td><td>●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td></tr><tr><td>북한이탈주민</td><td>거주보호담당관</td><td>●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td></tr><tr><td>위기청소년</td><td>보호관찰소</td><td>●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td></tr><tr><td>신용회복지원자</td><td>신용회복위원회</td><td>●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td></tr><tr><td>장애인</td><td>장애인공단</td><td>● 장애인공단확인(추천)서</td></tr><tr><td>비주택거주자</td><td>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td><td>● 비주택거주자확인(추천)서</td></tr><tr><td>국가유공자</td><td>국가보훈처</td><td>●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td></tr></table>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부랑인·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	거주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장애인	장애인공단	● 장애인공단확인(추천)서	비주택거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	● 비주택거주자확인(추천)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부랑인·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	거주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장애인	장애인공단	● 장애인공단확인(추천)서																																			
비주택거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	● 비주택거주자확인(추천)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여성가장 ※ 공통서류 제출제외	<table><tr><th>배우자가 없는 여성</th><th colspan="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th></tr><tr><td rowspan="5">배우자가 있는 여성</td><td>가출 · 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중 1</td><td>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td></tr><tr><td>질병</td><td>의사의 진단서</td><td>이혼소송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 확인서</td></tr><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d></td><td></td></tr></table>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중 1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질병	의사의 진단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 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중 1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질병	의사의 진단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 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영세자영업자 ※ 공통서류 제출제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자)																																				

(2면-앞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⑤ 군필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자 ☐ 녀 ☐ 기타 ()		세대주 성명		
	⑦ 장애인 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 () 장애 () 급				
	⑧ 여성가장 여부	☐ 예 ☐ 아니오				
	⑨ 현재 근로(창업)증인지 여부 *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포함	☐ 해당 없음 ☐ 사업자등록 소지 ☐ 근로하고 있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고용형태 ☐ 상용직 ☐ 계약직 ☐ 시간제 -근로계약기간 ()개월 ☐ 무기계약 -주당 근로시간 ()시간				
	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1회 (년) ☐ 2회 (20 년, 20 년)				
	⑪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참여경력 있음: ()년 ()월 ~ ()월				
	⑫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여부	☐ 해당 없음 ☐ 참여 (고용노동부, 타 부처, 세일센터, 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⑬ 실업급여 수급여부	☐ 예	최종 수급기간: ~ 최종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 아니오						
신청인 가 구	⑭ 가구원수	()명				
	⑮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아니오				
⑯ 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혜 여부	☐ 해당 없음 ☐ 자활급여 사업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사업 ☐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 기타()			

(2면-뒷면)

신청인 가 구	국민 건강 보험 가입 현황	⑰ 가구원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 ☐ 지역건강보험 가입 ☐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 명, 지역: 명) ☐ 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 (직장1: 명, 직장2: 명)					
		⑱ 신청인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⑲ 건강 보험료 납부총액	3개월 평균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원	()원	()원	()원			
		차차상위 이하여부	☐ 예	☐ 아니오	☐ 미제출 대상			
(*) 표시 서류 :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이용센터(또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세대주 포함)의 정보이용에 (동의, 부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손해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이 세대주의 건강보험납부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처 리	참여 대상자 선정 여부	☐ 조건부수급자 ☐ 비의뢰수급자(일반, 시설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 ☐ 차차상위 ☐ 노숙인(부랑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신용회복지원자 ☐ 고용촉진지역이직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위기청소년, NEET ☐ FTA피해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 여성가장 ☐ 영세자영업자 ☐ 장애인 ☐ 청년층(고졸, 대졸, 재학생, 영세자영업자) ☐ 중장년층(250% 이하, 영세자영업자) ☐ 맞춤특기병 ☐ 한부모·미혼모	
	미선정 사유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3면-앞면)

신 청 서 작 성 방 법	⑤ 군필여부: I 유형 중 위기청소년, II 유형(청년)에 참여자에 한하여 군필 여부를 체크 ⑧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예’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 ⇒ 구비서류 ‘여성가장 확인서류’ 내용 참조(1면뒷쪽) ⑨ 현재 근로종인지 여부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근로하고 있음’에 체크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또는 직접 기재 - 고용형태: 상용직인지, 계약직인지 또는 시간제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시 정한 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에 체크 - 주당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기재 * 1일 근로시간만을 정한 경우에는 1주 근로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 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경력 ☞ 과거 동 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과거 ‘참여횟수’에 체크하고, 사업 참여연도를 괄호안에 직접 기재 ⑪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경력 ☞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참여경력 있음’에 체크하고, 참여기간을 ‘월’단위로 기재 ⑫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여부 ☞ 고용노동부, 타 부처 내지 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하고 있음’에 체크하고, 참여기간을 ‘연월일’ 단위로 기재 ⑬ 실업급여 수급여부 ☞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에 체크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최종 이직 사업장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정확히 기재
---------------------------------	--



(3면-뒷면)

신청서 작성 방법	⑭ 가구원 수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인원을 중심으로 산정 하되, 다음 각각의 포함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 ☞ 다만, 신청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구성원을 합산 ⑮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에,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조건부」에 체크 ⑯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체크하거나 '기타'에 직접 기입 ⇒구비서류 '법정 차상위 증명자료' 내용 참조(1면뒷쪽) ⑰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구원 모두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각각 체크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 가구원 모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서 서로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각각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⑱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신청인 본인이 '직장'건강보험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체크 ☞ 아울러, 신청인 본인이 다른 가구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체크 ⑲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 가구단위의 '월 건강보험료' 총액을 기재하되, 가구 내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가구내에 2명 이상의 '직장'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	---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로 인한 손해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병무(역) * 관련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맞춤형기병 지원자에 한함)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명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추천기관 담당자	추천기관명 성명		과명 연락처		
추 천 자 명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추천이유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02-1234-1234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상기인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명단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장 인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추천기관 담당자	추천기관명 성명		과명 연락처		
추천 자 명 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참여여부	초기상담일 /미참여사유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참여 /미참여	2010.11.11
귀 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추천한 상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명단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연 락 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6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주 소 지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처리 연장사유			
처리 예정 기한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 예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7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이 의 신 청 결 과 통 보 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8 상담일정 통보서

()회차 상담일정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 ()차 상담일정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 무 실		
			전자우편 주소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기 통보해 드린 상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셨는 바, 위와 같이 상담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자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로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9 내일을 위한 약속

내일을 위한 약속

참여자 ()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담자와 함께 ‘취업지원계획’ 내용을 수립하고,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지원계획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또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일

참여자 (인)

상담자 ()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 10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기관명				
	②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연락처				
	⑥주 소				
	⑦회 망 참여방법	☐ 상담기관 직접방문 ☐ 상담사의 센터방문 ☐ 상담기관 직접방문 및 상담사의 센터방문 병행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⑧ 기 관 명				
	⑨ 회 망 기 간	()월 () ~ ()월 ()			
1. 상기인을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탁업무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뢰기관 - ②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대상자가 ⑦ 희망참여방법에 ‘상담사의 센터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경우에는 센터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가능여부를 「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빠른 시일내 통지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 「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서식 11 복지서비스 의뢰신청서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집) HP)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원하는 지원	☐ 생계비	☐ 교육비	☐ 의료비	☐ 양육비	☐ 재무상담
	☐ 급식지원	☐ 후원금지원	☐ 임대주택	☐ 집수리	☐ 쉼터/시설입소
	☐ 진로지도	☐ 상담치료	☐ 법률지원	☐ 학습지원	☐ 돌봄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건강 및 보건상담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해당기관명)(업무의 수탁 기관 포함)이 서비스의뢰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행정정보로부터 관련 정보 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원하는 지원 상세 설명	○ (생계비)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소비지출과 관계된 비용 관련 서비스 (연금, 수당, 융자지원, 공공요금감면·세제혜택 등) ○ (임대주택)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관련 서비스 ○ (집수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돕는 서비스 ○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 지원 서비스 ○ (교육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관련 서비스 ○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관련 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관련 서비스(창업지원 등) ○ (진로지도)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서비스 ○ (재무상담) 자활이 가능한 젊은층의 신용회복을 돕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돌봄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에게 각종 도우미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초등돌봄, 방과후돌봄 등) ○ (쉼터/시설입소) 고령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 입소 관련 경제적, 인도적 지원 서비스 ○ (상담치료)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급식지원)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또는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서비스 ○ (건강 및 보건 상담) 건강 또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등)의 교육관련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인권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서식 12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⑤ 1단계 참여기간	초기 상담일		20 년 월 일		
		집단상담 참여기간		~		
		단기집단·취업특강 참여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IAP 수립일		20 년 월 일		
	⑥ '1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관련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집단상담 이수증(수료증), 단기집단·취업특강 참여 확인서(출석부)						수수료
						없 음
※ 접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1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재	담당		과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13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성공수당)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에게 지급될 '참여수당'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에게 전해 줄 것을 약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약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훈련과정 탐색표

훈련과정 탐색표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참여 희망 훈련분야			
훈련기관명 (소재지 및 연락처)			
훈련과정명			
주요 교과목 및 내용			
훈련기간 (훈련일수/시간)		~ (일/ 시간)	훈련비 (수강료) 원
훈련성과 (취업률, 수강평 결과 등)			
수료 후 관련 직업	직업명		
	요구되는 특성 (능력, 지식, 성격, 학력 등)		
	주요 업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시행기관)		
	자격증 개요		
	시험과목, 시험일 등 취득 방법		

○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참여 희망 훈련직종	본인이 향후 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직종을 기재한다.
2	훈련기관명(소재지 및 연락처)	훈련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	훈련직종명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명을 기재한다.
4	주요 교과목 및 내용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재한다.
5	훈련기간(훈련일수/시간)	훈련시작일과 종료일, 훈련일수와 전체 교육시간을 기재한다.
6	훈련비(수강료)	훈련비용을 기재한다.
7	훈련성과	훈련을 받은 수강생들의 취업률과 수강평 등을 기재한다.
8	직업명	훈련 수료후에 취업하고 싶은 직업명을 기재한다.
9	요구되는 특성	취업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능력, 지식, 성격, 학력 등을 기재한다.
10	주요업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을 기재한다.
11	자격증명	희망 직업분야와 관련있는 자격증 명칭을 기재한다.
12	자격증 개요	관련 자격증 성격에 대해 요약하여 기재한다.
13	시험과목, 시험일 등 취득 방법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해야 할 시험과목, 시험일, 취득 기준등의 정보를 간략히 기재한다.



유의사항

- 훈련직종 탐색은 취업에 대비하여 어떤 직업훈련을 선택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므로, 활동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 훈련직종탐색결과표를 토대로 활동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탐색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적절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식 15 구직 활동 내역서

구직 활동 내역서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	채용담당자 이름 (또는) 직위	구직활동일
구인정보				
모집직종		고용형태		
직무내용		채용가능연령		
경력구분	☐ 신입사원	☐ 경력사원	학력	
채용우대사항				
자격면허		기타		
근무조건				
급여		4대 보험		
근무시간 대		주 5일제 여부		
아래사항에 체크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 이상 √ 표시)				
	체크사항		준비사항	
① 채용정보 알게 된 경로	☐ 온라인 채용사이트 ☐ 지면 ☐ 지인소개			
② 상담방법	☐ 전화 ☐ 직접방문 ☐ 이메일			
※ 면담결과에 대해 기재				
③ 이력서 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이력서 미제출 사유 (해당사항 대상자만)				
④ 접수 마감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연 락 처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회사명	본인이 취업을 의뢰했던 회사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2	회사주소	회사가 위치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3	회사연락처	회사 채용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4	채용담당자 이름 / 직위	회사 채용담당자의 이름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5	구직활동일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기간을 기입한다.
6	모집직종	모집직종을 기입한다.
7	고용형태	고용형태를 기록한다.
8	직무내용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9	채용가능연령	나이 제한 기준을 기록한다.
10	경력구분	채용대상이 '신입'일 경우, 신입사원에, '경력사원'에 v 표시한다.
11	학력	최종학력 제한 기준을 기록한다.
12	자격면허	우대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사항을 기록한다.
13	기타	그 밖에 채용우대사항을 기록한다.
14	급여	급여조건을 기록한다.
15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기록한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16	근무시간 대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한다.
17	주 5일제 여부	주 5일제 적용 사업장 여부를 기록한다.
18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아래 3개 항목 중 해당사항에 v표시한다. (☐ 온라인 채용사이트, ☐ 지면, ☐ 지인소개)
19	면담방법	아래 3개 항목 중 해당사항에 v표시한다. (☐ 전화, ☐ 직접방문, ☐ 이메일)
20	면담결과에 대해 기재	채용면담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21	이력서 제출 여부	제출했을 경우 '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에 v표시한다.
22	이력서 미제출 사유	이력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다.
23	접수마감일	채용공고의 마감일을 기재한다.
24	재취업 활동내역서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 본인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다.	

서식 16 자영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을 목적으로 계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래의 『자영업활동내역』에 대해 1항(시장조사)은 필수이며 그 외 1개 항목 이상 자영업준비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내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개시 예정일			예상근로자수	
사업내용	업종			
	자본금액, 조달방법			
	구체적 추진일정			

1. 시장조사 관련 방문 사업장 내역

방문일자	사업장명	사업주(서명)	소재지	전화번호	방문내용(자본, 매출)

2.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내역

일자	부동산중개업체관련사항		예상점포소재지	활동내용
	명칭	전화번호		

3. 구인관련 내역(근로자채용관련)

구인일자	인원	직종(업무)	구인경로(방법)	채용결정여부

4. 구매관련 내역(기자재 등)

구매일자	구매처	위치(소재지)	전화번호	구매내역 (영수증 등 첨부)

○ 항목별 기재 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성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생년월일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4	전화	신청인의 직통(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한다.
5	사업개시예정일	사업을 개시할 예정 날짜를 기재한다.
6	예상근로자수	예상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7	업종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기재한다.
8	자본금액, 조달방법	필요한 자본금 액수와 조달방법을 기재한다.
9	구체적 추진일정	회사 창업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을 기재한다.
10	방문일자	벤치마킹 할 회사에 방문했던 날짜를 기재한다.
11	사업장명	벤치마킹 대상 회사명을 기재한다.
12	사업주(서명)	방문했던 회사에서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다.
13	소재지	방문 회사의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14	전화번호	방문 회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5	방문내용 (자본, 매출)	방문했던 회사의 개요를 기재한다. 인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16	일자	건물 임차나 기존 점포물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체를 방문한 날짜를 기재한다.
17	명칭	상담을 받았던 부동산중개업체 명칭을 기재한다.
18	전화번호	상담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9	예상점포소재지	향후 점포를 임대하고 싶은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20	활동내용	임차나 점포물색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21	구인일자	종업원 채용을 위해 구인광고를 게재한 날짜를 기재한다.
22	인원	채용공고에 게재한 채용인원을 기재한다.
23	직종(업무)	구인할 인원의 업무성격을 기재한다.
24	구인경로(방법)	구인을 위해 활용할 매체, 방법 등을 기재한다.
25	채용결정여부	채용결정여부를 기재한다.
26	구매일자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한 날짜를 기재한다.
27	구매처	기자재를 구매한 곳의 이름을 기재한다.
28	위치(소재지)	기자재 구매처의 주소를 기재한다.
29	전화번호	구매처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0	구매내역(영수증 등 첨부)	구매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31	기타 자영업 활동 내역	자영업허가 관련하여 관공서방문/대출 관련한 금융기관 방문일 경우 방문일자, 기관명, 방문내역을 기재한다.

서식 17 청년취업 인턴제 참가대상자 신청서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기관 - 2015 - 0000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휴대통신 - -
주소	

최종학력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휴학 ☐ 졸업예정자 ☐

구직정보 공개	※ 귀하의 취업지원을 위해 신청기관 이외 타 기관의 취업알선을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한다(공개) ☐ 희망하지 않는다(비공개)
------------	---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최종학교 졸업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	☐ 있다	☐ 없다
②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학기 재학중 제외)	☐ 있다	☐ 없다
③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 있다	☐ 없다
④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 있다	☐ 없다
⑤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있다	☐ 없다
⑥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 있다	☐ 없다
⑦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	☐ 있다	☐ 없다
⑧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 있다	☐ 없다
⑨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 취업	☐ 미취업
⑩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여부	☐ 여	☐ 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졸업직전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등 입증서류
2. 만 29세 이상은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3. 구직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미동의시 위 증빙서제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취업인턴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 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 귀하

서식 18 청년 창직 인턴 신청서

창직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2015-	구분	☐ 창직분야 ☐ 농수산분야
------	-------	----	--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자격조건	☐ 창직·창업분야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창직분야 전공 (학교명 : , 전공분야 :) ☐ 창직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명 : , 발급기관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번호 :) ☐ 창업경진대회 입상 (입상구분 : , 개최기관 :) ☐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록번호 :) ☐ 창업동아리 경력보유 (활동기간 : , 동아리명 :) ☐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입상구분 : , 대회명 :) ☐ 창직교육+창직·창업계획서 제출자 ☐ 농수산업 분야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재학 ☐ 졸업 ☐ 수료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희망사항	희망분야 (업종, 작목)		희망직종 (작 목)	
	희망임금		희망직무내용	
	희망지역		숙식필요여부	

보유 자격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주요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① 인턴 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	☐ 예	☐ 부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예	☐ 부
③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예	☐ 부
④ 인턴 신청일 이전 연수예정기업에서 연수생, 취업자인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예	☐ 부
⑤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예	☐ 부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2. 창직·업계획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기타 증빙서류

서식 19 창직 · 창업 계획서

☐ 창직 ☐ 창업 계획서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신청동기	
창직 · 창업 아이템 및 비전	※ 구상 아이템 개략적 소개 등 ※ 아이템 선정 동기 및 배경
창직 · 창업 계획 및 목표	※ 계획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최종목표 등을 기재
사업분야	
추진계획	※ 창직 · 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기술
기타사항	



신청인:

(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 청년창직인턴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취업인턴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창직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청년창직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직인턴제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창직인턴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 귀하

서식 20 중견인력 인턴신청서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기관 -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주소			

학력사항

년도	초·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휴학 ☐ 졸업예정자 ☐
년도	대학원	학과 년	

우대대상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자
☐ 사회공헌일자리 종료자
☐ 가정부양책임자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타 재정지원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있다	☐ 없다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	☐ 있다	☐ 없다
③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 있다	☐ 없다
④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있다	☐ 없다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	☐ 있다	☐ 없다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 있다	☐ 없다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 여	☐ 부

위와 같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구직표,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신청자격 확인서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장년인턴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 귀하

서식 21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 기 관 명				
	②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의뢰대상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창업지원 프로그램	⑥ 운용기관				
	⑦ 주 소				
	⑧ 참여기간	()월 () ~ ()월 ()			
	⑨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1. 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서식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						
추천 및 통지기관	기 관 명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추천 및 통지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 택		
	희망직종					
추천과정	훈련과정명	훈련구분		훈련기관명	훈련기간	훈련 일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20 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 수행 관련 당 기관의 위탁대상자 중 상기인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ITP(개인별 훈련계획)> 년 월 일 ○○고용센터소장 귀하						

개인훈련계획서

(제1쪽)

①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훈련예정시기	년 월	취업예정시기	년 월
은행계좌번호	☐ 신한 ☐ 농협 ☐ 우리 ☐ SC ☐ 우체국 (계좌번호)		

② 주요이력

훈련종류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수료여부
훈련경력				

③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분야

구분	업종(직종)	업무분야
취업		
창업		

④ 훈련참여 과정

구분	훈련방법 (집체, 인터넷, 혼합 등)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최초			
1차 변경			
2차변경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권리사항>

- ①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200만원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훈련비는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② 훈련생은 상담원과 협의하여 취업분야를 결정하고 취업가능성,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1일 5시간 미만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 5,800원(월 116,000원 한도))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나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중요. 수강평 미입력시 마지막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은 월 2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월 12만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 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급. 단, 실업자훈련 합산하여 2회차인 경우는 동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3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④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2016년부터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또는 창업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 ① 상담원과 최초 합의된 훈련과정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 상담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취업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취·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수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고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니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잔액 소멸)되며 실업자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유인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재사용 가능
- ④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중 훈련직종에 따라 20% ~ 50%(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 ~ 30%)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및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잔여 유효기간 범위에서 계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⑥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해당 훈련과정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는 계좌사용이 중지되므로 새로 시작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⑩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⑦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 유효기간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실직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담을 거쳐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 ⑨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4일내(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14일 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⑩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 출석에 사용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신한, 우리, SC, 우체국, 농협) 계좌에 본인부담금 20% ~ 50%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⑫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⑬ 훈련생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숙련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되거나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적사유 :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총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 대리 출석체크 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을 부탁한 훈련생>

<기타 안내>

-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초년도에 한해서 연회비 3,000원이 부과됩니다.
-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위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 농협카드)에 제공·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취 득 자 (서명 또는 인)
 계좌사용 유효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Tel:) (서명 또는 인)

서식 2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현황	초기상담 실시일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⑥ ‘직업훈련 참여수당’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직업 훈련 참여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수당신청 훈련기간 (훈련일수)	수당신청 참여기간 (참여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위와 같이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결정액			
※ 결 제	담 당		과(팀)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24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⑤참여기간	시작일 (초기 상담일)			종료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⑥ ‘취업성공수당’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취업 현황	사업체명																											
	취업일		20 년 월 일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 입 (가입일:) ☐ 미가입																									
창업 현황	사업체명				업종																							
	사업자 등록일		20 년 월 일																									
	사업체 소재지																											
상기인은 20 . . 부터 20 . . 까지 재직하여 위와 같이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 접수</td> <td colspan="2">접수년월일</td> <td>접수번호</td> <td>처리부서</td> <td rowspan="2">※처리</td> <td rowspan="2">취업성공수당 () 회차 지급 결정액</td> <td rowspan="2"></td> </tr> <tr> <td colspan="2"></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결 제</td> <td rowspan="2">담 당</td> <td rowspan="2"></td> <td rowspan="2">과(팀)장</td> <td rowspan="2"></td> <td rowspan="2">청 (지청)장</td> <td rowspan="2"></td> <td>결제년월일</td> </tr> <tr> <td></td> </tr> </table>								※ 접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취업성공수당 () 회차 지급 결정액						※ 결 제	담 당		과(팀)장		청 (지청)장		결제년월일	
※ 접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취업성공수당 () 회차 지급 결정액																						
※ 결 제	담 당		과(팀)장		청 (지청)장		결제년월일																					

서식 25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주 소 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지			
	취 업 일	20 년 월 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			
	재 직 여 부	☐ 재직 ☐ 퇴 직		
	근 속 기 간	재직 시	~ 계속	
퇴직 시		~		

위와 같이 상기인의 취업 및 근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책 :

연 락 처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 업 지 원 종 료	종 료 사 유	☐ 취 업 ☐ 창 업 ☐ 취업지원 기간 만료		
	기 타 내 용			
	종료일	20 년 월 일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종료’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향후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27

344

서식 28

서
식

서식 29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 예 사 유		☐ 본인의 임신·출산 ☐ 본인의 질병·부상 ☐ 가구원의 질병·부상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 기타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참여가 곤란한 경우																																		
유 예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 수 료																															
					없 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접 수</th> <th>접수년월일</th> <th>접수번호</th> <th>처리부서</th> <th>※처리</th> <th>지원기간 유예기간</th> <th>유예 후 지원 기간 만료일</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 결 제</th> <th>담 당</th> <td></td> <th>팀장</th> <td></td> <th>과장</th> <td></td> <th>결재년월일</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지원기간 유예기간	유예 후 지원 기간 만료일								※ 결 제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지원기간 유예기간	유예 후 지원 기간 만료일																														
※ 결 제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0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 유예신청 결과		☐ 유 예 허 용		☐ 유 예 불 허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예불허사유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31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관 사 유		☐ 거주지 이전 ☐ 그 외 기타 (구체적 사유)																															
위탁기관 변경 희망의 경우 이관희망기관		사업체명																															
		소 재 지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 접 수</td> <td>접수년월일</td> <td>접수번호</td> <td>처리부서</td> <td rowspan="2">※처리</td> <td>이관 후 거주지 관할관서</td> <td>취업지원 이관 통보일</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결 제</td> <td>담 당</td> <td></td> <td>팀장</td> <td></td> <td>과장</td> <td></td> </tr> <tr> <td colspan="6"></td> <td>결재년월일</td> </tr> </table>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이관 후 거주지 관할관서	취업지원 이관 통보일						※ 결 제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이관 후 거주지 관할관서	취업지원 이관 통보일																											
※ 결 제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2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전 화 :)		
		변경 후	(전 화 :)		
	신청일			참 가 일	
관 할 관 서	변경 전	담당자			
		연락처			
	변경 후	담당자			
		연락처			
민 간 위 탁 기 관	변경 전	담당자			
		연락처			
	변경 후	담당자			
		연락처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관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이관 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3. 또한,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을 준용해 별도의 지원대상자 중단 통보 없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3

350

서식 34 이직 통지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직 통지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통 지 내 용	이직 전 사업장	사업체명							
		담 당 자			연락처				
		취 업 일	20 년 월 일						
		퇴 사 일	20 년 월 일						
	이직 후 사업장	사업체명							
		담 당 자			연락처				
		취 업 일	20 년 월 일			업 종			
		사업체 소재지							
위와 같이 본인의 ‘이직’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처리	참여자 이직 확인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5 민간위탁기관 점검 서식

1. 수탁기관 현황

위탁기관명			대 표 자	
자치단체(대학 등)명			대 표 자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주된사무소: (Fax :)			
	분사무소(또는 출장소):			
	분사무소(또는 출장소):			
담 당 자 현 황	성 명	자격증	상담경력	워크넷 아이디 현황

2. 사업운영 현황

○ 사업추진실적 총괄(점검일 현재)

(단위 : 명)

대상자	진행중						취업현황			중도 탈락	종료
의뢰 인원	소계	초기상담 미실시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계	취업	재정 일자리		

○ 위탁비 지급 현황(점검일 현재)

(단위 : 명, 천원)

위탁인원	위탁비 지급인원	위탁비 지급액	위탁비 지출액

3.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확인사항 (구체적 작성)
사업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 자격요건(유료직업소개업, 무료직업소개업)	
	• 시설요건(상담공간, 프로그램 공간, 구직정보탐색공간 등)	
	• 인적요건 – 전담자 및 지원자 지정여부 – 업무전담자의 타 업무 겸임 여부 – 업무전담자의 관리 인원(전산 및 실제 비교 확인)	
	• 프로그램요건 적정 여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의 관련 프로그램 수료여부	
참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1단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횟수)의 적정성 • 1단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적정성 – 대면상담 실시 여부 – 집단상담의 적정 실시 여부(상담매뉴얼, 시간표 비치 여부, 참여자의 출결상황 관리)	
	• 개인별 상담내역 전산입력(3일 이내) 여부 및 충실성	
	• 참여자 프로파일링 실시 및 적정 분류 여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참여자에게 적절한 훈련과정 등 안내 여부	
	• 2단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횟수)의 적정성	
	• 3~4단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횟수) 적정 여부	
	• 취업자의 취업종료 적정 여부 – 재정지원일자리를 일반취업으로 처리 여부 – 워크넷 취업알선 및 패키지 전산망 마감처리 여부	
	• 전산관리의 적정성 – 상담기록 무단 삭제 및 의뢰 취소 – 상담기록 적정 관리	
	• 사업 참여 중단자 적정 관리, 지원금 반환 적정 신고 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확인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지원금 관련 별도계좌 개설·운용 여부	
	•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여부 – 부정·부당수급 해당여부는 「민간위탁기관 부정·부당행위 유형 및 부정·부당수급 환수기준」을 참고	
기타	• 보안서약서 작성 및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여부 – 개인에게 부여된 전산망 아이디 적정 관리여부	

4. 건의사항

5. 종합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민간위탁기관

대표이사 성 명 (서 명)

서식 36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

위탁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위탁대상자	Ⅱ 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계약당사자	○○○○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	대 표	△ △ △ (인)

제1조(목적) ○○○○센터 취업지원과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규기관의 경우: 계약체결일 ~ ‘17.12.31))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을”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갑”이 연도 중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취업지원 내용) ① “을”이 제공하여야 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하되,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을”이 정한다.

1.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 수립
3.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4.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5.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 서비스
6. 위탁대상자의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② “을”은 위탁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등 훈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을”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내용 등을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 또는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탁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갑”은 “을”이 제1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을”에게 의뢰된 위탁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근속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소요 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단위: 만원)

구분	계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6월이내 취업	140	40	100	30	30	40
12월이내 취업	120	40	80	30	20	30
15월이내 취업	100	40	60	30	10	20

※ ‘15년 기준, ‘16년 위탁사업비 세부내용은 기재부 협의완료 후 개정사항 별도 안내 예정

③ “기본금”은 “을”이 1단계 서비스를 위탁대상자에게 제공하고 IAP를 수립한 경우 확정 지급하되,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④ 참여자의 중도탈락, 약정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이 반환하여야 하는 기본금 반환 기준은 「취업 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⑤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는 위탁 대상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시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한다.

⑥ “근속성공금”은 위탁대상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때 지급한다.

⑦ “을”은 매월 5일까지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을”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갑”은 고용보험시스템의 보수총액 신고 내용 및 근속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6조(지원금의 관리) “을”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각 단계별 서비스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단계(진단 · 의욕증진 · 경로설정): 3~4주 다만, 청년층으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_58점(C등급) 이상인 자는 1주이상 단축 운영 가능
2. 2단계(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3. 3단계(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8개월내 6월간
4. 4단계(집중 취업알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의 경우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5. 사후관리: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주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최소 3회이상 상담 서비스 제공(2주단위 모니터링), 다만 제7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취업 역량 평가가 58점(C등급)이상인 경우로서, 1주이상 단축 운영시 2회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제공
2. 2단계: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단계 운영시, 최소 2회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주단위 모니터링)
3. 3단계 및 4단계: 각각 월 1회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상담서비스 제공(월 단위 모니터링)
4. 사후관리: 월 1회의 상담서비스 제공(월 단위 모니터링)

제8조(사업담당자 변경) “을”은 약정서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등 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음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보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자명	연락처	생년월일	관련 자격증	주요경력

제9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월말 기준 위탁인원 대비 ‘중도탈락 인원’ 실적이 연속하여 2월 이상 15%를 초과하는 경우(신규 위탁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체결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도·점검 결과,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취업성공패키지 운용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을”이 약정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6.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7. 참여대상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8. 지원금의 횡령(또는 유용), 부당인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9. 제7조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주기 및 횟수 미이행으로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0.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타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의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위탁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을”로부터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소명을 받고 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에 대한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해지시 지원금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약정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간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제3항에 의한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9조’에 따라 위탁약정이 해지된 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참여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중단 등) “을”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약정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①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을”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 “갑”은 정기 점검시 또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을”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을”은 위탁약정을 체결한 고용센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약정을 체결한 고용센터 관할 지역내에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사무소의 설치)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안)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을) ○○○○○○	대 표	○ ○ ○	(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⁴⁾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⁵⁾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고용센터 분임계약관 ○○○ (인)

(을) ○○○ 대표 ○○○ (인)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서식 37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광역형)

위탁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위탁대상자	Ⅱ 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계약당사자	○○○○센터	분임 계약관	△△△ (인)
	○○○○○○○	대 표	△△△ (인)

제1조(목적) ○○○○센터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규기관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을”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갑”이 연도 중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갑”의 관할구역인 _____에 두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갑”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을”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새로이 분사무소 설치시 직업안정법상의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요건을 구비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또는 지자체 건물내에 설치된 경우는 '15년 기준에 따른다.
* ▲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 ● 전담자 1명 각 상주 ▲ 법인은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
④ '15.12.31 기준, 이미 운영 중인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6.30까지 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요건을 구비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_____로 한다.

제4조(취업지원 내용) ① “을”이 제공하여야 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되,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을”이 정한다.

1.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 수립
3.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4.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5.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 서비스
6. 위탁대상자의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 ② “을”은 위탁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등 훈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을”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내용 등을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 또는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탁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갑”은 “을”이 제1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을”에게 의뢰된 위탁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근속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소요 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단위: 만원)

구분	계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6월이내 취업	140	40	100	30	30	40
12월이내 취업	120	40	80	30	20	30
15월이내 취업	100	40	60	30	10	20

※ ‘15년 기준, ‘16년 위탁사업비 세부내용은 기재부 협의완료 후 개정사항 별도 안내 예정1

- ③ “기본금”은 “을”이 1단계 서비스를 위탁대상자에게 제공하고 IAP를 수립한 경우 확정 지급하되,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④ 참여자의 중도탈락, 약정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이 반환하여야 하는 기본금 반환기준은 「취업 성공패키지 운용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 ⑤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는 위탁대상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시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한다.

- ⑥ “근속성공금”은 위탁대상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때 지급한다.

- ⑦ “을”은 매월 5일까지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 ⑧ “갑”은 제7항에 따라 “을”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시스템의 보수총액 신고내용 및 근속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을”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각 단계별 서비스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단계(진단 · 의욕증진 · 경로설정): 3~4주 다만, 청년층으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이상인 자는 1주이상 단축 운영 가능
2. 2단계(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3. 3단계(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8개월내 6월간
4. 4단계(집중 취업알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의 경우 3개월 추가연장 가능
5. 사후관리: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주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최소 3회이상 상담 서비스 제공(2주단위 모니터링) 다만 제8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취업역량 평가가 58점(C등급)이상인 경우로서, 1주이상 단축 운영시 2회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제공
2. 2단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단계 운영시, 최소 2회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주단위 모니터링)
3. 3단계 및 4단계: 각각 월 1회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상담서비스 제공(월 단위 모니터링)
4. 사후관리: 월 1회의 상담서비스 제공(월 단위 모니터링)

제9조(사업담당자 변경) “을”은 위탁약정서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등 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음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보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자명	연락처	생년월일	관련 자격증	주요경력

제10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월말 기준 위탁인원 대비 ‘중도탈락 인원’ 실적이 연속하여 2월 이상 15%를 초과하는 경우(신규 위탁약정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체결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도 · 점검 결과,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취업성공패키지 운용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을”이 약정서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6.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7. 참여대상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정당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8. 지원금의 횡령(또는 유용), 부당인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9. 제8조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주기 및 횟수 미이행으로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0.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타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의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위탁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을”로부터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소명을 받고, “을”과의 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에 대한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해지시 지원금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약정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간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제3항에 의한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위탁약정이 해지된 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참여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중단 등) “을”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약정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①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을”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 ① “갑”은 정기 점검시 또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을”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을”은 약정을 체결한 고용센터 관할 지역을 벗어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내에서 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한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을) ○○○○○○ 대 표 ○ ○ ○ (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⁶⁾

1.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7)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0고용센터 분임계약관 000 (인)

(을) 000 대표 000 (인)

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서식 3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



서식 39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기본금 ☐ 더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 근속성공금)						처리기한 14일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① 입금 통장 사본(입금 통장은 타 사업과 별도 계좌 개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자에 한함)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처 리		지원금 지급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민간위탁사업 「□기본금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성공금」 신청 대상자 총괄표

위탁기관명:

연번	신청자명	주민번호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취(창)업			제직 여부	지원금 신청		비고
					구분	일자	사업장명		구분	신청금액	
1											
2											
3											
4											
5											
6											
7											
8											

* 취(창)업 구분 : 취업/창업 * 재직여부 : 재직 / 퇴직

* 지원금 신청 구분 : ①, ②, ③, ④로 구분 기재(①기본금, ②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③3월 근속 인센티브, ④6월 근속 인센티브)

서식 41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처리기한 14일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반환인원			반환신고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지원금(기본금) 반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처 리	반환신고 금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장		결재연월일

서식 42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수탁기관명: _____

연번	대상자명	주민번호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중도 탈락일	IAP수립 후 2월 이내 중도탈락 여부 (Y,N)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중도탈락일 : 약정해지로 인한 서비스 종료인 경우에는 약정해지일

서식 4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6.29>

민원24(www.minwon.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직 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45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미소금융재단 소액생활자금대출신청용)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⑥ 취업일자 및 취업사업 장명				
위의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업성공패키지과(팀)장 _____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성명			
	연락처			

서식 46 3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⑤ 3단계 참여기간	초기 상담일		20 년 월 일		
		IAP 수립일		20 년 월 일		
		3단계 참여기간		~		
		방문상담일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⑥ '3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관련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3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제	담 당		과 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부 록



<부록> 목차

<부록 1>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79
<부록 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391
<부록 3>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393
<부록 4> 가구원수 변동 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관	399
<부록 5>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400
<부록 6>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01
<부록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403
<부록 8> 서 약 서	405
<부록 9> 출석인정일수	406
<부록 10> 인터넷·무점포 창업	407
<부록 11> ‘1인 창조기업’ 개관	408
<부록 12> 위탁약정서 및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409
<부록 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411
<부록 14>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인적자원개발과,	478
<부록 15>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 지침	502
<부록 16>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	504
<부록 17> 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506
<부록 18> 2016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 지침	511

부록 1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1. 기본원칙

① 가구원수

-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 등재인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미혼’ 자녀(만 30세 미만)는 포함하되 ‘기혼’ 자녀 세대는 각각 산정

② 건강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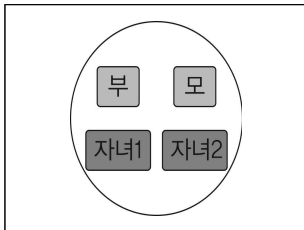
-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포함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 ‘기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반대 경우 포함)에는 ‘기혼’ 자녀(또는 부·모) 세대에는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2. 유형별 산정기준 (4인 표준가구 전제, 자녀 기준)

유형 1 주민등록(세대)을 같이 하는 경우

【유형 1-1】 자녀가 모두 ‘미혼’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부(모) 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부(모)’와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별도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 ① ‘부(모)’ 외 나머지 세대원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② ‘부·모’와 ‘자녀1(2)’이 ‘자녀2(1)’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③ ‘부(모)’가 각각 직장가입자로 자녀1,2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④ ‘자녀1(2)’이 다른 가구원과 별개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 자녀1(2)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① 내지 ③번 사례 중 하나

⑤ 모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②는 예외적인 경우(자녀의 부양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독립된 건강보험 가입자녀 외 다른 자녀는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됨

* ⑤ 경우 ‘지역’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 (가구원수) 주민등록상 ‘부·모·자녀1·2’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가구원수는 이들 모두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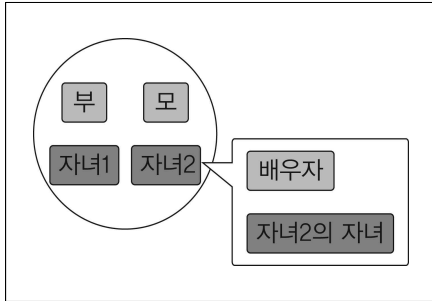
⇒ ‘가구원수’는 4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합산대상이 달라짐

사 례		건강보험료
①	‘부(모)’ 외 나머지 세대원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②	‘부·모’와 ‘자녀1(2)’이 ‘자녀2(1)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2(1)의 직장건강보험료
③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1·2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④	【4-1】 ‘자녀1(2)’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2)의 직장건강보험료 +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4-2】 자녀1(2)가 각각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자녀1(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건강보험료
	【4-3】 ‘자녀1(2)’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자녀1(2)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은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녀1(2)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4-4】 ‘자녀1(2)’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이고 자녀2(1)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녀1(2)의 직장건강보험료 +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⑤	모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유형 1-2】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부(모) 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부(모)’와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별도 직장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



- ❶ ‘부(모)’ 외 나머지 세대원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❷ ‘부·모’와 ‘자녀1’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❸ ‘부(모)’가 각각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녀 1·2(배우자 등)가 ‘부(모)’의 직장 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❹ ‘자녀1’이 다른 가구원과 별개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 자녀1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❶ 내지 ❸번 사례 내지는 자녀2(배우자) 또한 별도의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중 하나

❺ 모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 ❶은 예외적인 경우로 ‘자녀2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임

- 원칙적으로 기혼자녀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됨

* ❷는 ‘부·모·자녀1’이 소득이 없는 경우로 이들 모두가 자녀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자녀2의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자녀2와 자녀2의 배우자가 각각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부·모·자녀1’은 ‘자녀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자녀2의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일 수 없음

- (가구원수) 주민등록상 ‘부·모·자녀1’과 ‘자녀2’와 ‘자녀2의 배우자·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가구원수는 이들 모두를 포함

⇒ ‘가구원수’는 6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단위는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합산대상이 달라짐

사 례		건강보험료
❶	‘부(모)’ 외 나머지 세대원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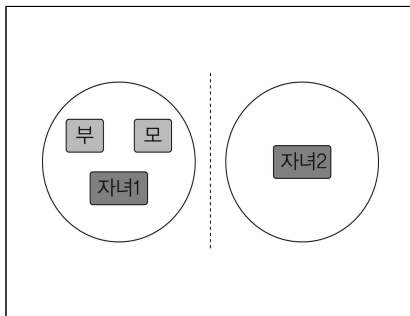
사 례		건강보험료
②	【2-1】 '자녀2(배우자)'와 모든 세대원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2(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2-2】 '부·모'와 '자녀1'이 '자녀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자녀2의 자녀'는 '자녀2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2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③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1·2(배우자 등)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④	【4-1】 '자녀1'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4-2】 '자녀1'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자녀2(배우자)와 다른 가구원은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4-3】 '자녀1'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는 '모(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고, '자녀2'와 '자녀2의 자녀'는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4-4】 '자녀1'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이고 '자녀2'와 '자녀2의 배우자' 및 '자녀2의 자녀'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4-5】 '자녀1'이 별개의 직장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이고 '자녀2'와 '자녀2의 자녀'는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⑤	모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유형 2 주민등록(세대)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유형2-1】 자녀가 ‘미혼’(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부(모)’와 같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또는 ‘부(모) 등’과 달리 별도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구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가구원으로 판단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직장(지역)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판단



‘자녀 2’가

- ①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로 ‘부(모)’와 다른 세대원도 모두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② ‘부·모’와 같이 자녀1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③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1과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④ ‘자녀2’가 ‘부·모’ 거주 세대와는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 자녀2를 제외한 ‘부·모’거주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① ~ ③번 내지는 모두 지역가입자이거나 ‘자녀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 ③의 경우로 ‘자녀2’가 ‘부(모)’와 같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됨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세대 단위 지역가입자 가능)
- * ④의 경우로 ‘부·모’ 거주 세대원이 ‘자녀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모’와 ‘자녀1’이 소득이 없는 경우임

- (가구원수) ‘자녀2’가 ‘부·모·자녀1’과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미혼인 ‘자녀2’의 직장(지역)건강보험에 별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자녀2’를 포함

⇒ ‘가구원수’는 4인

- ㉠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관계를 간과하게 된다는 점
 - ㉡ 고소득 ‘부모’ 내지 ‘자녀’를 둔 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
 - ㉢ 건강보험 가입관계 기준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 * 외견상 동일함에도 「①~③」과 「④」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결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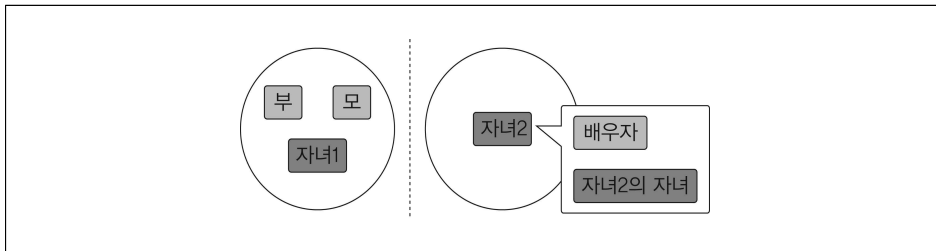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단위는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합산대상이 달라짐

사 례		건강보험료
①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로 ‘부(모)’와 다른 세대원도 모두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②	‘부모’와 같이 자녀1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③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1과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④	【4-1】 ‘자녀2’가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로 ‘부(모)’와 다른 가구원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지역)건강보험료
	【4-2】 ‘자녀2’가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로 ‘부·모’는 자녀1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지역)건강보험료
	【4-3】 ‘자녀2’가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로 ‘부·모’와 ‘자녀1’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거주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지역)건강보험료
	【4-4】 ‘자녀2’가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이고 ‘자녀1’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내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부모거주 세대단위 지역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지역)건강보험료
	【4-5】 ‘자녀2’가 별개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로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이고 ‘자녀1’도 별개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부모거주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의 직장건강보험료

【유형2-2】 자녀가 ‘기혼’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또는 ‘부(모) 등’과 달리 별도의 직장(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기혼’자녀(배우자 등 포함) 경우 ‘부모’거주 세대 단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배우자에게 1차적인 부양의무 존재)



‘자녀 2’의 세대원 모두가

- ① ‘부(모)’ 거주 세대원 모두와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②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고, ‘자녀1’이 별개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 ③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1과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④ ‘부(모)’ 거주 세대원과 별개의 직장(지역)가입자 내지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거주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① ~ ③번 내지는 모두 지역가입자

‘부모’ 거주 세대원 모두가

- ⑤ ‘자녀2’ 세대원 모두와 같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⑥ ‘자녀2(배우자)’가 각각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자녀2의 자녀’와 같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수) ‘자녀2’세대가 ‘부·모·자녀1’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거주 세대원과 건강보험 가입관계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구원수는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함

⇒ ‘가구원수’는 3인

- ① ‘미혼’자녀와 달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기혼’자녀 세대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가구단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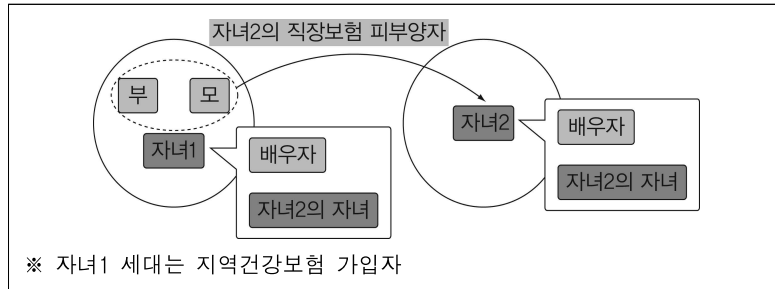
- ㉠ 가구원 수 산정의 1차적인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등재인원’이라 할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단위’는 부가적인 참고사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 ㉡ 건강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관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 * 외견상 동일함에도 「**①**·**②**·**③**」을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결과 초래
 - ☞ **①**의 경우: 6인, **②**의 경우: 5인 **③**의 경우: 5인
- ㉢ 건강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청인’이 어느 세대인지 여부와 건강보험 가입관계에 따라 가구원수 산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 * **③**의 경우로 자녀1이 ‘부’와 같이 지역가입자이고, 자녀2의 모든 세대원이 ‘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1’이 신청할 경우 가구원수는 2인, ‘자녀2’가 신청할 경우 가구원수는 4인으로 산정됨
- (건강보험료) ‘자녀2세대’가 ‘부·모’세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 다른 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당연 선정)**
 - * ‘자녀2세대’가 ‘부·모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부·모’세대가 ‘자녀2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 세대원이 모두 다른 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관련한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무소득)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그 자체로 저소득층 세대로 볼 수 있다는 점
 - ㉡ 다른 세대원이 가입자인 직장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 등재된 세대의 건강보험료로 간주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된 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 다른 세대원의 직장건강보험료가 높은 수준일 경우 이로 인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세대의 사업 참여가 불합리하게 제한될 가능성 존재
 - ㉢ 저소득 재산가구를 선별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이는 시범사업으로 ‘차선의 기준’으로서 ‘건강보험료’ 요건을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동 사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

사 례		건강보험료	
①	‘자녀 2’의 세대원 모두가 ‘부(모)’ 거주 세대원 모두와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세대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자녀2 세대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②	‘자녀 2’의 세대원 모두가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이고, ‘자녀1’이 별개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세대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자녀2 세대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③	‘부(모)’가 각각 직장파 지역가입자로 ‘자녀 2’의 세대원 모두가 자녀1과 같이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세대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자녀2 세대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④	‘자녀 2’ 세대가 ‘부·모’ 거주 세대와 별개의 직장(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모 세대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or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or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or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or 부(모)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 자녀1의 직장건강보험료 or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자녀2 세대	자녀2의 직장건강보험료 or 자녀2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or 자녀2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 or 자녀2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 자녀2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 or 자녀2(배우자, 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or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⑤	‘부·모’ 거주 세대원 모두가 ‘자녀2’ 세대원 모두와 같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자녀2 세대	자녀2(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
⑥	‘자녀2(배우자)’가 각각 직장파 지역가입자로 ‘부·모’의 세대원 모두가 ‘자녀2의 자녀’와 같이 ‘자녀2(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요건 미적용
		자녀2 세대	자녀2(배우자) 직장건강보험료 + 당해 세대 단위 지역건강보험료

유형 3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세대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부모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기혼자녀 1의 세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세대를 달리하는 또 다른 기혼자녀 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형3-1】 자녀 1의 세대(부모 포함)원이 신청하는 경우

- (가구원수) 『취업성공패키지』의 가구원수 산정원칙(주민등록표상 등재인원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 산정
 ⇨ 상기사례 경우 가구원수는 5인

- (건강보험료) 자녀 1의 세대의 건강보험료 수준 적용

* 세대를 달리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가 없는 바,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상황을 이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할 것은 아님

【유형3-2】 자녀 2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가구원수) 『취업성공패키지』의 가구원수 산정원칙(주민등록표상 등재인원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 산정

⇨ 상기사례 경우 가구원수는 3인*

* 「3-1. 자녀 1의 세대(부모 포함)원이 신청하는 경우」의 논리 준용

- (건강보험료) 자녀 2의 세대의 건강보험료 수준 적용

【 유형 3 관련 참고사항 】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기혼자녀 2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임을 이유로 가구원수 산정 시 부모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치 않음

❶ 건강보험 적용상황은 건강보험 수혜대상 여부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으로 가구원 수 산정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점

* 가구원수 산정 시 세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를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나 가구원수 산정 시 실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가구원수 산정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음

❷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상 가구원수는 지역건강보험료에만 부분적으로 반영 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상황을 가구원수 산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다는 점

* 직장건강보험료 부과세대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외 다른 세대원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적용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산정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등재인원’이라는 가구원수 산정의 기본원칙 자체를 훼손 하는 결과 초래

❸ 『취업성공패키지』에 있어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 산정을 전제로, 이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선의 기준으로써 그 ‘수준’이 문제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상황’에 따라 가구원수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는 점

※ (참고)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 세대의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 (예시)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A가구(신청인가구): 어머니, 큰 언니, 신청인, 조카

B가구: 형부, 작은 언니, 조카

신청인의 건강보험은 B가구 작은언니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

→ 이 경우 A가구의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유형 4 이혼 가정의 미혼자녀가 참여하는 경우

○ 저소득층 판단의 대원칙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①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로 판단

②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있는 경우

-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로 판단

*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

- 30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합산하여야 하나 이혼가정의 특수성 (상당기간 부·모와 연락두절)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

* 해당 자녀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

부록 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1.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이하 “친생 부모”라 한다)	○부양인정 ○부양인정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10. 형제·자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사람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나. 20세 미만인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사람으로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나. 20세 미만인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 확인받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록 3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1. 배 경

- 자활대상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대상자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됨
 - 이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액)'은 '참가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치를 산정하여 판단
- 이러한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액)' 산정기준은 동일기간 중 '가구원수'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 필요

2. 고려사항

- (건강보험 형태별 보험료 산정체계)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경우 가구원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에 차이* 발생
 - * 「직장」가입자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피부양자수 무관)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 경우 '가구원의 성·연령 등'이 고려됨
- (보험료 부과시점)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수' 변화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시점은 '가구원수' 변동 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
 - * 가구원수 변동시점이 1일인 경우 가구원수 변동상황이 당월 보험료에 반영되나 가구원수 변동시점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익월 보험료에 반영됨
- (건강보험 형태 전환여부 및 전환시점) 건강보험 형태의 전환에 따라 보험료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환시점에 따라 전환상황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시점 또한 차이 발생

3. 기본원칙 및 유형별 산정방법

3-1. 기본원칙

- 「가구원수」는 참가 신청서 제출시점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형태의 전환여부 및 전환시점과 가구원수의 변동시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 가구원수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변동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를 산정대상으로 함(최근 3개월을 기초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산정기간은 3개월 미만이 될 수도 있음)

3-2. 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유형 1】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1 유형1-①: 「직장」 건강보험 유지

- ‘직장’ 건강보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수’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 변동시점과 상관없이**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합계의 평균치로 함
- 신청서 제출 당시 당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를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보험료부터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산정대상으로 함

신청서 제출월-3월	신청서 제출월-2월	신청서 제출월-1월	신청서 제출월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부과 시: $(①+②+③)/3$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미 부과시: $(②+③+④)/3$			

<사례예시> 직장건강보험료 3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으로 신청서 제출월 또는 당월 기준 1(2·3)달 이내에 가구원이 4인에서 3인으로 감소한 경우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3만원 + 3만원 + 3만원^*) / 3 = 3만원$

* 건강보험료 수준에 변동이 있더라도 산정방식은 동일

② 유형1-②: 「지역」 건강보험 유지

- ‘지역’건강보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수’가 고려되므로 ‘가구원수’ 변동 시점을 감안하여 산정대상에 포함할 건강보험료 결정

a. 가구원수 변동이 「신청서 제출월 기준 -2월」에 발생한 경우

- 「신청서 제출월 기준 -2월」 2일 이후에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 보험료부터 반영되므로

⇒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 보험료부터 산정하되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

가구원수 변동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부과 시: $(①+②)/2$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미 부과시: ②

<사례예시> 「신청서 제출월 -2월」에 가구원이 4인에서 3인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건강 보험료로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4만원(-2월), 3만5천원(-1월)을 납부한 경우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미부과 상태>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35,000원*

* 신청서 제출월 기준 당월 보험료로 3만3천원이 부과된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35,000원 + 33,000원) / 2 = 34,000원”

b. 가구원수 변동이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에 발생한 경우

-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 '1일'에**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에 가구원수 변동 상황이 반영되므로

⇒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 보험료부터 산정하되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신청서 제출월 기준 -1월, '2일 이후'에**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에 부과되므로

⇒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월 보험료가 미부과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익월 보험료 수준을 확인하여 판단

가구원수 변동

< 가구원수 변동일이 '1일'인 경우 >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부과 시: $(①+②)/2$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미 부과시: ②

< 가구원수 변동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부과 시: ①
- 신청서 제출 당시 당월 보험료 미 부과시: 당월 보험료 확인·판단

<사례예시 1> 「신청서 제출월 -1월」 '1일'에 가구원이 4인에서 3인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료로 각각 4만원(-2월), 3만5천원(-1월)을 납부하고,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로 3만3천원이(을) 부과된(납부한) 경우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35,000\text{원} + 33,000\text{원}) / 2 = 34,000\text{원}$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35,000원

<사례예시 2> 상기 사례 중 가구원 감소시점이 「신청서 제출월 -1월」 '2일 이후'인 경우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33,000원

-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익월 건강보험료 확인·판단.
이 때는 익월 보험료 부과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

c. 가구원수 변동이 「신청서 제출월」에 발생한 경우

○ 「신청서 제출월」 '1일'에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에 가구원수 변동 상황이 반영되므로

⇒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보험료로 하되, 당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익월 보험료 수준을 확인하여 판단

○ 「신청서 제출월」 '2일 이후'에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익월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므로

⇒ 건강보험료는 「신청서 제출월」 기준 익월 보험료 수준을 확인하여 판단

가구원수 변동

< 가구원수 변동일이 '1일'인 경우 >

-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 부과 시: ①
- 신청서 제출 당시 당월 보험료 미 부과시: 당월 보험료 확인·판단

< 가구원수 변동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 익월 보험료 확인·판단

<사례예시 1> 「신청서 제출월」 '1일'에 가구원이 4인에서 3인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건강 보험료로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4만원(-2월), 3만5천원(-1월)을 납부하고, 신청서 제출월 당월 보험료로 3만3천원이(을) 부과(납부)한 경우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33,000원

* 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 · 판단

<사례예시 2> 상기 사례 중 가구원 감소시점이 「신청서 제출월」 '2일 이후'인 경우

⇒ 가구원수: 3인(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건강보험료 : 「신청서 제출월」 기준 익월 건강보험료 확인 · 판단

* 이 경우 익월 보험료 부과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

【유형 2】 건강보험 가입형태가 전환된 경우

① 유형2-①: 「직장」 → 「지역」 으로 전환된 경우

- 건강보험 가입형태의 전환시점*과 관계없이 '가구원수'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의미(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익월 발생)

⇒ 「유형1-②. a · b · c」 사례의 산정방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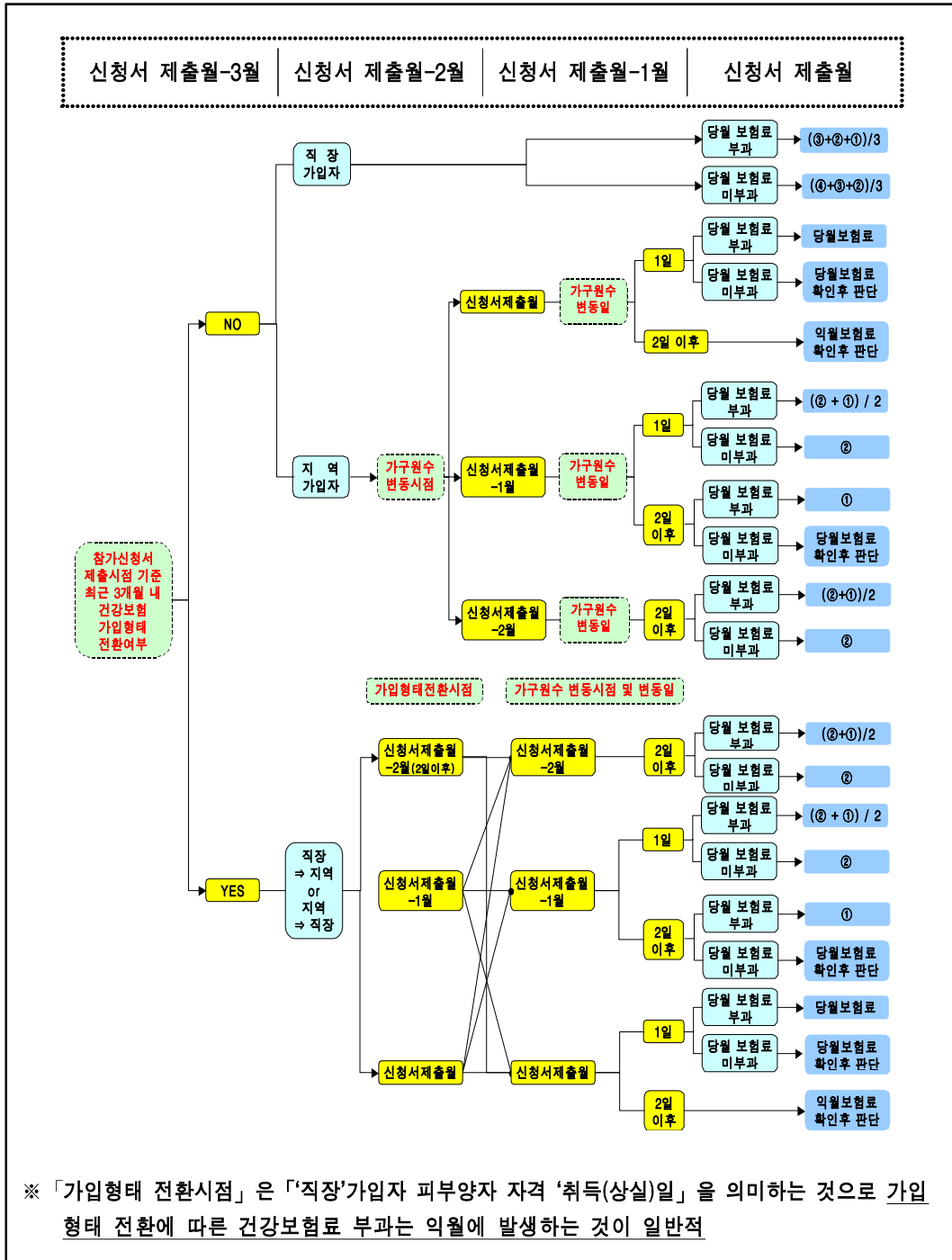
② 유형2-②: 「지역」 → 「직장」 으로 전환된 경우

- 건강보험 가입형태의 전환시점*과 관계없이 '가구원수'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의미(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익월 발생)

⇒ 「유형1-②. a · b · c」 사례의 산정방법 준용

부록 4 가구원수 변동 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관



부록 5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청년층』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

선별 지표 · 가중치	측정내용	배점	측정문항(측정 내용)	예	아니오
구직욕구 (11점)	• 일이나 취업을 원하는 정도 (5점 척도)	각 1점	1. 내가 아니면 가족 중에 돈 벌 사람이 없어 취업하겠다.		
			2.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3.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4. 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6.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7.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선 취업 하겠다		
			8. 나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다		
			9.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0. 나는 일자리만 있다면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11. 컴퓨터 오락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정신적 건강상태 (4점)		각 1점	13.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4. 최근 나는 나의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다		
			15. 최근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다		
			16. 최근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적인 편이라 생각한다.		
직업이력 (5점)	자격증소지 여부	2점	17.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취업희망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근로경험	2점	18. 최근(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자영업, 비정규직 포함)		
	직업훈련 이력	1점	19. 최근(2년이내) 직업훈련 이수 경험		
재량점수 (10점)		10점	• 상기검사에서 들어나지는 않지만 전담자의 재량으로 취업가능성을 판정 - 취업의지, 건강, 의사소통능력, 성격 등 부적응 문제, 직업기술 소유 여부 등		

※ 예 : 0점, 아니오 : 1점으로 산정, 20점 이상이면 니트로 판정
(전담자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부록 6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훈련기간 중 최대 1천만원(연 1%)까지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 연간소득 3,000만원 초과자 제외
전직실업자 (건설일용근로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자 ※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종인 자 제외

- ※ 신규실업자(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제외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4주(28일)이상의 훈련(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4주(32시간)이상) 훈련

※ 단, 훈련사(의)의 공백기간이 7월이내 훈련은 합산하여 총 기간이 4주(28일)이상인 훈련도 포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사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4주미만)의 훈련을 포함(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부여)

비정규직근로자 대부대상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 훈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

전직실업자 대부대상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지원훈련, 컨소시엄 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대상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세부 훈련과정 확인가능 인터넷 주소
-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훈련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직업훈련정보망(www.jobgohrd.or.kr)

구비서류

공통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전직실업자 (건설일용근로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대부한도액	1인당 1천만원 이내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대부금지급	훈련수강 기간동안 월별 1백만원 한도 분할대부 ※ 분할대부기간동안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등의 사유 발생시 분할대부 실행 중지	
대부금리	연 1.0% ※ 신용보증료 연 1.0%별도 부담, 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 ※ 대부 실행 일자가 화요일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신청및안내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서비스 신청 시(공인인증서필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능)
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보증서 발행 → 1회차 대출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실행 (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대출	중소기업은행(www.bk.co.kr) → 개인뱅킹 → 대출메뉴 → 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조회(보증서내역) → 대출신청(약정동의) ※ 기업은행이 없는 경우 은행방문 후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가입 필요

- ※ 대부실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 ※ 분할지급기간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부가 중단됩니다.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인터넷 신청방법

① 포털사이트에서 「근로복지서비스」 조회

http://welfare.kcomwel.or.kr 로 직접이동이 가능

③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 클릭

② 「근로복지서비스」 이동 및 로그인

④ 신청화면 내용 입력 후 “접수”

⑤ 신청결과확인에서 신청여부 확인 가능

⑥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대출실행 (대출실행화면에서 보증번호 확인 가능)

대부가 결정 후 보증번호가 등록된 휴대폰으로 전송됨

※ 기업은행 통장 및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 대부실행

- 1회차 : 대부결정 후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행
- 2회차이후는 매월 15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훈련수강여부, 대부신청자격변동여부 등을 확인 후 자동지급 (자동지급 해당월에 중소기업은행에 이자등이 미납된 경우 대부가 중단됩니다.)

부록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① 신청구분	☐ 비정규직근로자 ☐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									
② 신청인 (공 통)	성 명		주민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연간소득액	연간소득액 : 원								
② 훈련기관 개 요 (공 통)	1	훈련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장소	☐ 훈련시설 ☐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 원격훈련 ☐ 기타 ()				
		훈련기간	. . . ~ . . . (시간)							
	2	훈련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장소	☐ 훈련시설 ☐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 원격훈련 ☐ 기타 ()				
		훈련기간	. . . ~ . . . (시간)							
	3	훈련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장소	☐ 훈련시설 ☐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 원격훈련 ☐ 기타 ()				
		훈련기간	. . . ~ . . . (시간)							
	총 훈련기간		. . . ~ . . . (시간)							
③ 대부조건 (공 통)	신청개월수			대부신청액 (1만원미만 절사)		총 만원 월 만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2년거치 4년분할상환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본인은 잔여훈련기간 개월수 내에서 1회 신청 시 대부가능금액 만원까지 대부신청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의거 금회 신청은 월 만원을 신청합니다.									
④ 신규실업자 /전직실업 자	실업급여	☐ 수급 ☐ 비수급		수급기간		. . . ~ . . . (개월)				
	배우자 성명			배우자주민번호						
	배우자 연간소득액	연간소득액 : 원								
⑤ 비정규직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입사일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		대부대상제외사유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지사)장		결재 연월일			

(뒤쪽)

공 통	비정규직 근로자	신규/ 전직 실업자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 공 동 의 서 (별 지 제3호서식)	1. 근로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3.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상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원 포함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한 사업자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재 요령】

- 비정규직근로자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장에 비정규직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신규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전직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자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신청인 란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연간소득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② 훈련기관 개요 란에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서 훈련기간은 훈련 개시일 부터 훈련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총 훈련시간은 각 훈련기간의 합산일 일을 기재합니다.
 - ※ 개별 **훈련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만 각 훈련기간을 합산**한 총 훈련기간을 기록 합니다.
 - ※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훈련 :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인 훈련
- ③ 대부조건에서 신청개월수는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훈련기간 중 대부신청 개월 수를 기재하며, 총 대부금액은 신청개월 동안의 총 대부금액을 월별대부금은 총 대부금액 중 월별 지급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상환조건을 선택합니다.
 - ※ 상환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③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100만원 이내입니다.
 - ※ 월 최소 신청액은 50만원 이상을 기재하고, 1만원 미만은 버림
- ④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인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을 기재합니다.
- ⑤ 비정규직은 근로자는 소속사업장과 근무형태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부록 8 서 약 서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기관명 :

훈련기간 :

상기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로서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 훈련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 등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고 차기 대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405 -

부록 9 출석인정일수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 · 시험	예비군 ·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자격증 · 면허증 등) ·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한다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질 병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원한 경우 한함)	5일

부록 10 인터넷·무점포 창업

【 유관기준 ①: 인터넷·무점포 창업 】

■ (기본원칙)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터넷’ 내지 ‘무점포’ 창업은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창업’에 대한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일정기간의 **지속적인 영업행위**와 이에 대한 **확인 가능성**을 전제하나, 무점포 창업 등은 실질적 영업행위 여부 확인에 한계 상존
- ② 확인방안 마련 없이 ‘인터넷’ 내지 ‘무점포’ 창업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할 경우 **수당수급 목적의 형식적 창업** 등 악용소지 존재

■ (예외적 기준운용 필요성) 정보화 사회에서 ‘창업’의 ‘개념’이나 그 ‘형태’ 내지 ‘방법’ 등은 매우 다종다양한 것이 현실

- ①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
 - *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09.1.2)
- ② 정부차원의 ‘1인 창조기업’ 지원은 **지식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 (예외적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내지 ‘무점포’ 창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1인 창조기업’으로서의 ‘참여대상 업종(별첨)’에 해당하고, 사업체 규모가 ‘4인 이하’인 경우

■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내지 ‘무점포’ 창업 경우 ‘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 *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잠재적 기업으로 분류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는 미포함
- 아울러, ‘쇼핑몰’ 운영은 ‘1인 창조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바, 취업성공수당의 예외적 지급대상에서 제외

☞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인터넷·무점포 창업』에 대한 판단 기준(09.5.13) 참조

부록 11 '1인 창조기업'개관

'1인 창조기업'개관

□ **(개념)**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 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4인 이내의 기업(1인 창조기업 패키지 관리규정 2p, 중소기업청, '09.4)

□ **(기업규모)** 창의성 있는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1인 중심 기업'

* 제3자가 아닌 가족을 고용하는 '가족 기업', 스승과 제자관계로 운영되는 '도제 기업' 등을 포함

□ **(기업형태)** 영리를 주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적인 기업*

* 법적인 기업: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 **(대상업종)**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 일부업종)

□ **참여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주관기관
이행보증금 지원		e-서비스 거래물을 통해 아웃소싱을 수주하는 1인 창조기업	이행보증금 지원 * 이행보증기간 중복지원 불가	서울보증보험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e-서비스 거래물을 통해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중소기업	총 비용의 1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기업 당 연 3회 이내)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업력 1년 미만 또는 신규 1인 창조기업	집합교육	1인 창조기업협회
	골드카드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 평가 결과 우수 1인 창조기업	1인당 수업료의 50%,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부록 12 위탁약정서 및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 민간위탁기관(사업자)이 위탁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2” 개별 기준에 따라 조치 및 시정토록 하여야 함
 - 기타 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반 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

- Σ 관할 고용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조치외, 단계별 서비스 제공주기(횟수) 모니터링에 따른 주의·경고 등 조치도 “2” 개별기준 적용을 위한 조치건수에 포함하되
- 조치사항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출장소 포함) 관할 고용센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각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로 산정함이 타당
 - 다만, 주사무소가 약정해지되는 경우, 분사무소도 당연 약정해지

- 부정·부당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은 전액 환수
- 하나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조치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기준 적용

2. 개별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1. 사업계획서 및 위탁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탁사업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시정명령(2주간) 후 시정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위탁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❶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❷ 위탁기관(사업자)의 사업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❸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 약정해지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별 서비스 제공내용의 전산기록·관리 등을 해태한 경우	▪ 1회 주의 ▪ 주의 2회시 경고
	• 위탁된 참여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전산 기재 • 집단상담 출석부나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업무지원자 등 전담자가 아닌 자가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 계획된 집단상담 시간보다 줄여 운영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 경고
	•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참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약정해지 및 1년간 사업 참여제한
3.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업무관련자(대표자 포함)가 사업 참여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	▪ 약정해지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참여자와 공모 또는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부당인출한 경우	▪ 부정수급·부당인출 기준에 따름(약정해지 시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약정해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고
4. 서비스 제공 기준 (주기 및 횟수)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서비스 주기 및 횟수 위반	▪ 1회 주의 ▪ 주의 2회시 경고 ▪ 경고 3회이상시 약정해지
5. 기타	•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의
	• (동일건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 경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경고
	• 2년(최종 처분일기준)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동일건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약정해지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 모니터링에 따른 주의·경고 등 조치도 위 기준에 포함

부록 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8호

제정 2014.10.31.

개정 2015. 2. 5.

개정 2015.11. 2.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76조에 따라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자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8조 또는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실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이하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이라 한다)”과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직종”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직종을 말한다.
5.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을 웹(web)에서 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6. “계좌적합혼합훈련과정(이하 “혼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인터넷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7. “인터넷원격훈련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러닝훈련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나.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 중 인터넷원격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 또는 단체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0.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 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11.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과정의 훈련기간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출석일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수료한 것으로 본다.
13. “수강철회”란 훈련생 등록기간 이내에 훈련생이 훈련 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중도탈락”이란 훈련생 등록기간이 도과한 후 훈련생이 훈련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 수료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를 훈련수료자수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람은 취업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취업률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I 유형)', 또는 희망리본 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4)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대상자 중에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16.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이나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7.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한도, 사용 등

제3조(계좌발급 대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따라 연간 매출액 8,00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는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
5.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사람
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역예정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실업자등에게 계좌를 발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순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취업지원 및 계좌발급의 신청) ① 실업자등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지원을 통한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와 제5조에 따른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계좌발급을 신청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실업자등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취업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2. 실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I, II 유형)’, ‘희망리본 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취업지원으로 인정할만한 정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거친 실업자들은 계좌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계좌적합훈련과정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자들이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능력 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제5조(다양한 훈련과정 탐색 및 계좌의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들이 제4조에 따라 계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4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이하 “훈련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들이 계좌발급을 신청한 경우 취업지원 내용 또는 훈련상담 결과와 구인·구직 및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실업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좌를 발급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취업 또는 창업 희망분야를 결정하고, 실업자들의 취업가능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음)을 합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담 과정에서 실업자들의 직업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유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기간·전략직종 훈련과정,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연계형과정 등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중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HRD-Net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실업자들에게 대해 가장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팀장급 공무원, 담당자, 담당자 외 직업능력개발부서의 직원 등 3명 이상이 협의하여 계좌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1. 훈련상담 과정에서 훈련필요성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이를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훈련희망자와 담당자가 제3항에서 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과정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이 훈련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과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과정 변경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훈련과정을 변경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한 훈련과정이 제3항에서 정한 취업 또는 창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합의된 훈련과정보다 훈련성과 등이 미흡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과정 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훈련과정 변경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제2조제15호 각 목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이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훈련상담 신청서 제출·훈련상담 실시·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적합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의 발급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및 훈련상담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고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민간위탁기관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⑨ 삭제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상담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취업성고가 우수한 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훈련과정에 참여 희망하는 경우
3.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나. 6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이전 직장과 동일한 직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제6조(계좌발급 등에 대한 이의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상담 중에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 계좌 미발급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이의 신청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좌발급심의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추가상담을 받은 사람이 계좌미발급 이의심사를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계좌발급심의회는 고용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종사하는 내·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계좌발급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심사를 한 경우 심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좌발급심의회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좌카드의 발급) ① 계좌카드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된 실업자등에게 제휴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 ② 삭제

제9조(계좌 지원한도) ① 계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업자등: 200만원
2. 삭제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I 유형)' 참여자,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300만원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3개월(350시간) 이상 장기훈련과정 등을 수강하려는 경우 : 200만원
2. 훈련상담원이 심화과정 수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만원
3.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또는 채용약정형훈련과정 참여하는 경우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한다. 다만,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 한하여 건설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야 일용근로자로서 건설관련직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제10조(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 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이 중지되면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출산, 상병(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계좌의 유효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11조(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실업자훈련 1회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1. 계좌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 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 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경우
 - 다. 제31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3.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등록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시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화상담으로 계좌의 유효기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②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다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2.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 및 제3항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에는 실업자등 계좌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업자등으로서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에 재직자로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직자 계좌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재직자로서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실업자등으로서 계좌카드의 사용은 중지된다.
- ⑥ 삭제

제12조(계좌 재발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등 제3조에 따른 계좌발급 대상자인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계좌잔액 소멸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 3회 범위에서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③ 계좌발급 횟수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로 산정한다.

제12조의2(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훈련직종별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한다.

제13조(계좌발급 등의 중지)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의 사용을 정지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3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제1절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제14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 ① 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직종 중에서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350시간 이상일 것. 다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3개월 미만(훈련시간 35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일부 분야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가. 인터넷원격훈련과정: 1차시를 1시간 분량으로 구성하여 20차시 이상이어야 함
 - 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 혼합훈련과정: 인터넷원격훈련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방법 간 합산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함
3.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 중에서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편성 시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업자등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훈련기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훈련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숙련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6.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15조 삭제

제2절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등

제16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①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설

이나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주소 등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훈련내용·훈련시설 등 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또는 혼합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에는 이와 별도로 훈련과정 콘텐츠가 담긴 영상녹화물 [시디(CD), 디브이디(DVD)]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을 한 훈련기관의 전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 과정 수 및 개설 과정 수, 해당 훈련기관 취업률,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혼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주단체일 것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인터넷원격훈련 요건을 갖춘 것

제1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심사·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강사, 훈련내용,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1. 현장훈련이 포함된 훈련과정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훈련과정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4. 삭제
5.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가. 취업취약계층 특화과정

나. 훈련교사의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다. 훈련수료생 능력평가를 통해 훈련의 품질관리가 우수한 과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한다.

1.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훈련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항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보완 요구, 현장방문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가인력양성실무협의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가인력양성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전략직종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간·전략직종훈련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별 단체 대표·관련 분야 전문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간·전략직종훈련의 계획 수립 이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사업계획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전략직종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훈련대상 직종, 훈련의 실시 규모 등 주요한 사항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심사대행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
4.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제19조(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통지) ① 심사대행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를 신청한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원격계좌적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훈련과정의 목록을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HRD-Net에 공고함으로써 훈련기관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계좌적합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에 대해 불인정 통보를 받은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심사대행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하는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① 기간·전략직종훈련을 위탁할 기관 또는 시설로 선정된 것을 통보를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훈련과정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훈련기관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와 제1항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제2항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 계약서에 제1항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 ① 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위탁훈련기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변경신청에 관한 동의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일의 2일 전까지 HRD-Net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면 과정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훈련교사·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현재의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삭제

제22조(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 ① 훈련기관이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RD-Net을 통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 혼합훈련과정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인정 여부를 해당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일의 2일 전까지 HRD-Net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면 과정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23조(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해당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정보
-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에 변동이 없는 경우 훈련시간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그간의 훈련기관 평가등급, 해당 훈련과정의 모집률,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모집률, 취업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모집률 =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 등록한 실업자 등 - 중도탈락한 실업자 등)/(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원)]×100
 2. 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평균 모집률 = [(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 등록한 실업자 등의 합 - 중도탈락한 실업자 등의 합)/(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 정원의 합)]×100
 3.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취업률 =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의 합)/(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합)]×100. 이 경우 고용보험가입미가입사업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평균 취업률 = [(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의 합)/(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합)]×100. 이 경우 고용보험가입미가입사업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의 훈련기관의 기관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제2항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훈련과정의 모집률, 취업률 등이 전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직종별 평균 모집률, 취업률보다 높은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신청하면 자동 연장된다.
- ④ 삭제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훈련기관은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 최초 인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과정의 경우 해당 유효기간 내에 해당 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으면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훈련과정이 개설된 실적이 있더라도 재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
2.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성고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재인정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HRD-Net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우수훈련기관·과정 인정의 특례)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등급, 훈련실적 및 성과, 법령위반 사실 유무 등의 지표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훈련직종별(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또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우수훈련기관(이하 “우수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을 매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훈련과정에 대해 인력수급상황, 훈련직종별 훈련과정 개설현황, 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훈련과정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이 수시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우수훈련기관의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3항에 따라 수시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훈련교재, 훈련내용 변경 시 당초 인정된 과정의 숙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일부터 3일 이내 HRD-Net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면 과정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당초 인정된 총 훈련시간은 변경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의 훈련실적 및 성과 산정 시 훈련생이 훈련받은 훈련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의3(우수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의 성과를 3년째 되는 해에 평가하여 성과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4(채용약정형 훈련과정의 특례) ① 훈련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과 기업이 채용을 약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채용약정형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채용약정형 훈련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대하여 채용약정형 훈련과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채용약정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이 훈련과정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채용약정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훈련과정 종료 후 60일 이내에 채용을 약정한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3. 채용약정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 ③ 훈련기관은 채용약정을 한 사업장 등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훈련 또는 실습 중에 있는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훈련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재해위로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제3절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4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등

제1절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제29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강) ① 제8조에 따른 계좌카드를 수령한 실업자등은 개인훈련 계획서에서 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한 훈련과정을 종료한 사람 중 해당 훈련과정의 재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 상병, 학습능력부족 등의 사유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수강 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재수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수강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4일 까지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14일 까지 입력하여야 하고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최종 평가 응시 전에 훈련사이트를 통해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수강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실시) ① 훈련기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실시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훈련생의 명단을 포함하여 훈련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3. 삭제
4. 소정훈련일수 180일 또는 훈련기간 6개월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개시일 이후 14일 이내
5.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기관이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분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신고가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건설직종 훈련생이 수강 신청한 날에 HRD-Net에 훈련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직종 훈련생은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 이전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이 제1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훈련생이 본인인지 여부와 훈련 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집체훈련과정: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
2. 인터넷원격훈련 및 혼합훈련과정: 범용공인인증서 등 훈련생 신분 확인이 가능한 방법
-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훈련기관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⑥ 훈련기관은 실업자등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지문인식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운영(혼합훈련의 경우 인터넷원격훈련을 운영하는 부분)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훈련생의 출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출 것
2.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훈련과정을 등록·수강하도록 할 것
3. 훈련과정 개시일 4일전(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제외)까지 훈련생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4.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8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5.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6.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 대해 수료 처리할 것

가.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 성적이 평가방법 간 합산하여 6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일 것

8. 진도율, 평가점수, 수료 여부, 미수료 사유 등을 전산관리하고 해당자료를 주기적으로 HRD-Net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또는 혼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훈련생의 부정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훈련생 수강관리 및 평가 등) ①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훈련 목표 달성이 미흡한 훈련생에 대해 보충학습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련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2.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하여 훈련대상으로 인정하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4.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5.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한 훈련생
- ④ 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등록 시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회계 지도·점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받은 훈련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①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로 후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해당 훈련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훈련기관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 제33조(훈련생 취업상황 보고)** ① 훈련기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매월 훈련생 취업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HRD-Net에 입력하고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훈련생 취업상황을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HRD-Net에 입력하고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HRD-Net에 입력하여야 하는 훈련생 취업상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이 아닌 곳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제33조의2(훈련기관의 의무)** ① 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기관 및 3개월 이상 일반직종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시행
 2.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훈련개시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의 수준 및 내용, 훈련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2. 출석카드 또는 지문인식 등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장려금 등의 지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
4. 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훈련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6. 훈련생이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과정에 대하여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7. 안전·보건 및 재해위로금 등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훈련 운영 및 과정 진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의3(서류비치)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변경) 계획서: 3년
2. 훈련수료증 발급대장: 3년
3. 출석부: 3년. 다만, RF단말기 또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외
4.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자료: 3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3년

제2절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5장 훈련비 등 지원

제37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훈련비 인정범위는 별표 3 직종별지원기준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 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기준단가와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고(이 경우 승인된 훈련비가 기준단가보다 낮으면 낮게 승인된 금액과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정), 실비 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정부지원승인단가와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의 심의를 거쳐 기준단가의 1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를 양성하는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경우
 2. 제25조의4에 따른 채용약정형 훈련과정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조제15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인 경우
 4. 현장훈련이 포함된 훈련으로 인정받은 경우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6. 훈련과정이 3개월(350시간) 이상 12개월(1,400시간) 이하의 장기과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참여자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에 해당 훈련 참여자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훈련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훈련생에게 예외적으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기준단가 조정 및 고시) 별표 3 기준단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 조사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당연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계좌적합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등에게 제9조의 지원한도에서 취업성과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여 별표 4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I 유형)' 참여자
 3. 제3조제1항제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중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4.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라 한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의 비율은 별표 4의 취업성공패키지(II 유형) 참여자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38조의2(훈련생에 대한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수료하기 전 취업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 [이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으로 한다] 에 취업(수료하기 전 취업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으로 취업하고 취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비부담액 환급 대상 금액은 제39조에 따른 자비부담액과 훈련생의 계좌 지원한도가 초과되어 부담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가 제37조 제2항에 따른 훈련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8조의3(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 중 해당 연도에 실시한 훈련과정(회차)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요건이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훈련기관 인센티브 청구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고 HRD-Net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산정 시 훈련생이 훈련받은 훈련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삭제

제39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훈련비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자비부담액”이라 한다)을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가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훈련비를 초과하거나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훈련생이 부담한다.

제40조(훈련비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등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5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뺀 금액을 제37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집체훈련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 나.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 훈련생이 단위기간의 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제38조에 따른 훈련비에서 제39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평가에 응시하여 수료한 경우 추가적으로 20%를 지급한다.
 3. 혼합훈련의 경우 : 집체훈련부분과 인터넷원격훈련부분을 각각 정산하여 지급하되, 집체훈련 부분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하고 인터넷원격훈련 실시 부분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단위기간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이 포함된 경우 훈련생 등록일부터 출석률을 산정하여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훈련장려금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등에게 단위기간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
 2.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취업한 사람
 3. 훈련기관의 폐업 또는 훈련과정의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4. 훈련과정 수강 중 발생한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따른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훈련기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사람. 이 경우 치료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일수는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출석인정일로 보지 아니한다.
 5.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또는 혼합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총훈련 시간을 전체훈련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을 1일 훈련시간으로 본다.
1.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이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에게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훈련장려금 중 1일 3,300원(월 66,000원 한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훈련기관에 해당 훈련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전략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이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두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훈련생 1인당 1일 15,000원 한도(월 375,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9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다만,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받을 수 있다.
 3.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훈련생이 중도탈락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 ⑦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훈련장려금은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장려금의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서 정한 단위기간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이 포함된 경우 등록일 부터 출석률을 산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기간·전략직종훈련 훈련장려금의 추가지급) ① 기간·전략직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 월 20만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생: 월 10만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3.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생: 월 12만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월 30만원(최대 6개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훈련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의 2분의 1을 감액함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득활동을 한 경우: 소득활동을 한 날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6. 훈련개시일 이후 중간편입한 경우: 중간편입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42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등 지급)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단위기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훈련장려금은 신청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각각 지급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훈련생이 중도탈락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제43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4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2호, 2011.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22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4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처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 특례 등) ① 제38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훈련개시일이 전전년도 11월 1일부터 전년도 10월 31일까지인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한 총 훈련생 중 해당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다)의 훈련생이 100분의 5 이상인 훈련직종: 2012년 1월 1일부터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45, 2013년 1월 1일부터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50
2. 제1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한 훈련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25, 2013년 1월 1일부터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30

② 제1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제38조제2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수강 등록한 총 훈련생(수강포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제4조제3항제6호 각 목의 해당 직종 훈련을 수강 등록한 훈련생(수강포기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훈련장려금의 지원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29호, 20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추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을 적용에 관한 특례)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제1호의 훈련직종: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55
2. 제38조제1항제2호의 훈련직종: 제37조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75

제4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31일까지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생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훈련비 등을 자비 부담한다. 다만, 훈련비 지원수준이 인하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117호, 2012. 10.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추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 16호, 2013. 2.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과제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훈련상담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별도의 공고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인정 대상인 모든 계좌적합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시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석인정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시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 호, 2014. 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좌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2014년 1월 13일 이후 계좌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4년 1월 12일 이전에 계좌가 발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6호(2013.2.25.)’를 적용한다.

제3조(계좌발급 등에 대한 이의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2014년 1월 13일 이후 계좌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계좌 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은 2014년 2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은 2014년 1월 13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4조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동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조항은 2014년 계좌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수훈련기관·과정 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시행한다.

제9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2014년 1월 13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은 2014년 2월 1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하여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30조제3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II유형 참여를 신청하여 최종 선발되어 계좌가 발급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7 호, 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 우대는 2014.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훈련기관·과정 인정의 특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상반기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3호,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및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7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6호)는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시작한 계좌적합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자비부담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환급 기준(동일 또는 관련 직업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 유지. 단,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훈련과정 참여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 유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호, 2015. 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2010-16호)는 폐지한다.

제3조(우수훈련기관이 인정받은 제작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적용례)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에 인정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거리주파수통신 방식의 단말기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단거리주파수통신 방식의 단말기(RF단말기)로 출석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훈련기관 인센티브 적용례)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별표 5] 1. 가. ②에서 정한 일반 직종훈련의 취업률 성과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60 퍼센트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70 퍼센트 이상을 각각 적용하며, [별표 5] 2. 가. ③에서 정한 일반직종의 취업률 성과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7 퍼센트 포인트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10 퍼센트 포인트 이상을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자비부담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환급 기준은 이 고시 발령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한 훈련생부터 적용한다(자비부담 환급 기준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중분류 기준 동일직종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 유지하여야 함. 단,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훈련과정 참여자는 동일직종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 유지로 환급 가능).

제7조(훈련과정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 전에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집체훈련 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8호, 2015. 1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대분류	기간산업직종(54개)	전략산업직종(20개)	서비스산업직종(40개)
경영·회계·사무(3)			물류관리, 품질경영, 마케팅전략 기획(마케팅PD) (3)
교육·자연·사회과학(1)			기상학연구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8)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제작, 디지털디자인, 3D영상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5)			국제의료통역, 국제관광마케팅, 스포츠산업마케팅, 크루즈, 마리나 (5)
건설(16)	건축목공, 건축시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조경, 가스설비시공, 열냉동설비, 건축설비 설계·시공, 창호시공 (10)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4)	U-city(건설토목IT), BIM (2)
기계(32)	기계설계제작, 공유압, 생산기계, 치공구, 기계조립, 선체가공, 선체 의장, 선체조립, 항공기기체제작,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사출금형, 선반(CNC 선반),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기계, 섬유기계설치·정비, 공조냉동기계, 열기계, 시스템제어, 측정 (21)	의료기기제작,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세시정비 (4)	산업응용로봇제어, 기계장비설치정비,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생산정보시스템, 선박기관정비 (7)
재료(9)	주조, 레이저용접, 수중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파이프용접, 도금 (8)	반도체표면처리 (1)	
화학(1)		의약품제조 (1)	
섬유·의복(2)	염색가공 (1)		패션디자인 (1)
전기·전자(15)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반도체가공, 전자시스템제어, 전자부품개발, 전기시스템제어 (8)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LED장비및공정, 디스플레이, 반도체생산,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7)	
정보통신(9)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자통신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RFID-USN응용,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6)
인쇄·목재·가구·공예(5)	특수인쇄, 평판인쇄 (2)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6)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생산 (1)	생태복원·관리, 산업환경, 비파괴검사, 환경보건관리 (4)
농림, 수산(2)		종자생산·유통 (1)	말조련 (1)

[별표 2]

출석인정일수(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시험, 공민권	예비군·민방위훈련, 징병검사,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자격증·면허증 등, 「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평균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한다.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제37조제2항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사업관리	01.사업관리	01.프로젝트관리	5,579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7,404
		02.홍보·광고	7,080
		03.마케팅	6,684
	02.총무·인사	01.총무	6,982
		02.인사·조직	8,508
		03.일반사무	5,579
	03.재무·회계	01.재무	6,956
		02.회계	6,419
	04.생산·품질관리	01.생산관리	6,010
		02.품질관리	7,161
		03.유통관리	6,313
03.금융·보험	01.금융	01.금융영업	5,893
		02.금융상품개발	5,413
		03.신용분석	6,467
		04.자산운용	5,886
		05.금융영업지원	5,418
		06.증권·외환	6,620
	02.보험	01.보험상품개발	7,436
		02.보험영업·계약	6,913
		03.손해사정	6,258
04.교육·자연·사회과학	01.학교교육	01.학교교육	6,070
	02.평생교육	01.평생교육	6,083
		02.평생교육운영	6,427
	03.직업교육	01.직업교육	6,585
		02.이러닝	6,506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법률	01.법무	6,688
		02.지식재산관리	6,655
	02.소방방재	01.소방	6,136
		02.방재	6,15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4,009
		02.보건지원	5,543
		03.약무	4,009
	02.의료	01.임상의학	6,962
		02.간호	5,775
		03.기초의학	6,166
		04.임상지원	5,953
07.사회복지·종교	01.사회복지	01.사회복지정책	6,173
		02.사회복지서비스	6,618
		03.직업상담서비스	6,411
		04.보육	6,102
		05.청소년지도	6,419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01.문화·예술	01.문화예술경영	6,440
		02.실용예술	6,679
		03.공연예술	6,454
		04.문화재관리	6,190
	02.디자인	01.디자인	5,263
	03.문화콘텐츠	01.문화콘텐츠기획	6,997
		02.문화콘텐츠제작	6,181
		03.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29
		04.영상제작	5,421
09.운전·운송	01.자동차운전·운송	01.자동차운전·운송	8,144
	02.철도운전·운송	01.철도운전운영	6,403
		02.철도시설유지보수	6,385
	03.선박운전·운송	01.선박운항	8,147
		02.검수·검량	6,698
	04.항공운전·운송	01.항공기조종운송	7,117
		02.항공운항	7,117
10.영업판매	01.영업	01.일반·해외영업	7,389
	02.부동산	01.부동산컨설팅	6,959
		02.부동산관리	6,066
		03.부동산중개	5,796
		04.감정평가	6,462
	03.판매	01.e-비즈니스	6,904
		02.일반판매	6,76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1.경비·청소	01.경비	01.경비·경호	5,839
	02.청소·세탁	01.청소	6,433
		02.세탁	6,278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6,253
	02.결혼·장례	01.결혼서비스	6,440
		02.장례서비스	5,903
	03.관광·레저	01.여행서비스	6,302
		02.숙박서비스	7,882
		03.컨벤션	5,850
		04.관광레저서비스	5,850
	04.스포츠	01.스포츠용품	6,443
		02.스포츠시설	6,343
		03.스포츠경기·지도	6,299
		04.스포츠마케팅	6,358
		05.레크리에이션	6,420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01.음식조리	7,567
		02.식음료서비스	7,696
14.건설	01.건설공사관리	01.건설시공전관리	7,210
		02.건설시공관리	7,203
		03.건설시공후관리	7,346
	02.토목	01.토목설계·감리	7,529
		02.토목시공	7,587
		03.측량·지리정보개발	6,781
	03.건축	01.건축설계·감리	6,276
		02.건축시공	5,845
		03.건축설비설계·시공	5,821
	04.산업환경설비	01.산업·환경설비설계·감리	5,382
		02.산업·환경설비시공	5,087
	05.조경	01.조경	6,760
	06.도시·교통	01.국토·도시계획	6,381
		02.교통계획·설계	6,381
	07.건설기계운전·정비	01.토공기계운전	7,252
		02.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55
		03.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5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8.해양자원	04.적재기계 운전	7,155
		05.양중기계 운전	7,325
		06.건설기계 정비	7,330
		01.해양환경 조사	6,536
		02.해양환경 관리	6,536
		03.해양플랜트 설치·운용	6,536
		04.해양자원 개발·관리	7,321
15.기계	01.기계설계	01.설계기획	6,218
		02.기계설계	5,051
	02.기계가공	01.절삭가공	5,673
		02.특수가공	6,057
		03.금형	5,506
	03.기계조립·관리	01.기계조립	5,702
		02.기계생산관리	5,641
	04.기계품질관리	01.기계품질관리	5,850
	05.기계장치설치	01.기계장치설치·정비	6,874
		02.냉동공조설비	7,434
	06.자동차제조	01·자동차설계	4,471
		02.자동차제작	5,495
		03.자동차정비	5,002
		04.자동차정비관리	5,495
	07.철도차량제작	01.철도차량설계·제작	6,223
		02.철도차량유지보수	5,736
	08.조선	01.선박설계	4,846
		02.선체 건조	5,212
		03.선체의장생산	5,318
		04.선박품질 관리	4,685
		05.선박생산관리	4,618
		06.시운전	4,605
		07.선박정비	4,605
	09.항공기제작	01.항공기설계	7,231
		02.항공기제작	7,115
		03.항공기정비	6,560
		04.항공장비 관리	7,40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재료	01.금속재료	01.금속엔지니어링	5,788
		02.금속재료제조	5,788
		03.금속가공	5,788
		04.표면처리	6,544
		05.용접	7,097
	02.요업재료	01.파인세라믹제조	6,114
		02.전통세라믹제조	6,114
17.화학	01.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1.화학물질 관리	5,914
		02.화학공정관리	5,382
	02.석유·기초화학물제조	01.석유·천연가스제조	7,000
		02.기초유기화학물제조	5,784
		03.기초무기화학물제조	6,184
	03.정밀화학제품제조	01.생리활성화제품제조	6,752
		02.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7,000
		03.바이오의약품제조	7,000
		04.바이오화학제품제조	7,000
	04.플라스틱제품제조	01.플라스틱제품제조	7,000
18.섬유·의복	01.섬유제조	01.섬유생산	6,015
		02.섬유가공	6,024
		03.섬유생산관리	6,015
	02.패션	01.패션제품기획	6,335
		02.패션제품생산	5,765
		03.패션제품유통	6,492
		04.신발개발·생산	7,812
19.전기·전자	01.전기	01.발전설비설계	8,997
		02.발전설비운영	5,696
		03.송배전설비	8,966
		04.지능형전력망설비	5,540
		05.전기기기제작	5,004
		06.전기설비설계·감리	5,566
		07.전기공사	6,250
		08.전기자동제어	5,858
		09.전기철도	6,418
		10.철도신호제어	5,93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전기·전자	02.전자기기일반	01.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41
		02.전자부품기획·생산	5,194
		03.전자제품고객지원	7,298
	03.전자기기개발	01.가전기기개발	5,200
		02.산업용전자기기개발	4,334
		03.정보통신기기개발	4,463
		04.전자응용기기개발	5,635
		05.전자부품개발	5,715
		06.반도체개발	4,939
		07.디스플레이개발	5,768
		08.로봇개발	5,744
		09.의료장비제조	5,570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전략·계획	7,324
		02.정보기술개발	6,574
		03.정보기술운영	6,577
		04.정보기술관리	6,577
		05.정보기술영업	5,718
	02.통신기술	01.유선통신구축	5,888
		02.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포함)	5,590
		03.통신서비스	5,995
	03.방송기술	01.방송제작기술	5,421
		02.방송플랫폼기술	9,607
		03.방송서비스	6,383
21.식품가공	01.식품가공	01.식품가공	9,825
		02.식품저장	5,608
		03.식품유통	6,420
	02.제과·제빵	01.제과·제빵	6,609
22.인쇄·목재·가구·공예	01.인쇄·출판	01.출판	5,968
		02.인쇄	5,959
	02.공예	01.공예	7,971
		02.귀금속·보석	7,813
	01.산업환경	01.수질관리	8,497
		02.대기관리	8,758
		03.폐기물관리	8,78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기준단가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3.환경·에너지·안전		04.소음진동관리	8,960
		05.토양관리	8,971
	02.환경 보건	01.환경 보건 관리	9,123
	03.자연 환경	01.생태 복원·관리	7,385
	04.환경서비스	01.환경 경영	8,437
		02.환경 평가	8,472
	05.에너지·자원	01.광산조사·탐사	9,912
		02.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66
		03.광산환경 관리	6,176
		04.광산보안	5,644
		05.신재생에너지생산	6,832
	06.산업 안전	01.산업 안전 관리	4,900
		02.산업 보건 관리	7,889
		03.비파괴검사	5,277
24.농림어업	01.농업	01.작물재배	6,992
		02.종자생산·유통	7,676
		03.농촌개발	8,587
	02.축산	01.축산자원개발	5,464
		02.사육관리	5,891
	03.임업	01.산림자원 조성	7,100
		02.산림 관리	8,715
		03.임산물생산·가공	8,748
	04.수산	01.어업	6,222
		02.양식	5,022
		03.수산자원 관리	5,022
		04.어촌개발	8,255

[별표 4]

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			
		70~100%	69~50%	49~35%	35%미만
개인별 특성	일반실업자	80%	70%	60%	50%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	90%	85%	80%	70%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	100%			

* 산정기간 :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까지 종료된 과정

* 산정방식 : 취업인원/수료인원(수료전 취업인원 제외, 고용보험미가입자 포함, 순인원 기준)

[별표 5]

훈련기관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38조의3 관련)

구 분		지급 기준	지급 수준
1. 인센티브 우수상	가. 취업률 성과기준	① 제29조에 따라 계약직합훈련과정에 등록된 훈련생이 10명 이상 수료할 것(훈련도중 취업 한자를 포함한다) ② ①에 따라 등록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일반직종훈련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할 것 ③ 해당 직종 취업률이 전년도 직종별 평균 취업률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직종별 평균취업률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유지율 성과기준	이 별표 제1항(인센티브 우수상) 가목(취업률 성과기준) ①, ② ③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한 훈련생 중 180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의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고용유지율 60퍼센트를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인센티브 노력상	가. 취업률 성과기준	① 제29조에 따라 계약직합훈련과정에 등록된 훈련생이 10명 이상 수료할 것(훈련도중 취업한자를 포함한다) ②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훈련생의 취업률이 전년도 훈련직 종별 평균취업률 이상일 것 ③ 해당 직종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인트(일반직종훈련의 경우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직종별 평균 취업 률을 기준으로 1퍼센트 포 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
	나. 고용유지율 성과기준	이 별표 제2항(인센티브 노력상) 나목(취업률 성과기준)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한 훈련생 중 180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 인트 향상된 고용유지율을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초과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전년도 직종별 평균취업률 산정 : 전전년도 10월 1일부터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당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
- ※ 고용유지율 산정 기준일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역월상 9개월이 경과된 날
- ※ 훈련생이 훈련받은 훈련기관에 취업한 실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훈련과정이 인센티브 우수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노력상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각 추가지원금은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급함
- ※ 취업자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만 해당, 훈련도중 취업한 자 포함
- ※ 일반직종훈련 취업률 성과기준 산정 적용례(2017년까지 국기훈련과 동일기준) : 2015년 (우수상)60% 이상, (노력상)5%p이상, 2016년 (우수상)70%이상, (노력상)7%p이상, 2017년 (우수상)70% 이상, (노력상)10%p이상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규
☐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

□ 해당 대상 (* 두 가지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

- | | | | |
|-----------|----------------|-----------------|------------|
| ① 실업자 | ② 여성가장 | ③ 북한이탈주민 | ④ 결혼이민자 |
| ⑤ 자영업자 | ⑥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 ⑦ 고3학년 재학생 | ⑧ 조건부 수급자 |
| ⑨ 위기청소년 | ⑩ 건설일용근로자 | ⑪ 경력단절여성 | ⑫ 농어업인(가족) |
| ⑬ 초단시간근로자 | ⑭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 ⑮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 |

□ 희망 취업정보 (* 해당 대상에서 ①에서 ⑮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희망 취업분야	(직종)	희망임금수준	만원
		희망취업시기	
해당 직종으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	(희망 훈련과정) 희망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훈련기관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희망 훈련과정과 희망 취업분야와의 연관성)		
자격증 취득 계획	자격증 명칭		취득예정시기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희망 창업정보 (* 해당 대상에서 ①에서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희망 창업분야	(업종)	사업개시 예 정 일	20 . . .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고 싶은 이유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	(희망 훈련과정) (희망 훈련과정과 희망 창업분야와의 연관성)		
구체적 창업계획	(자본금) (자금조달 방안) (사업장소) (근로자수)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조건부수급자) 2.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여성가장) 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4. 혼인관계 증명서 등(결혼이민자)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자영업자) 6. 근로계약서(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7. 학교장 확인서(고3재학생), 재학증명서(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8. 보호관찰자 확인서(위기청소년)	수수료 없음
------	---	--------

신청자격 확인란 (* 해당 대상에서 ①에서 ⑧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 ① 수감 또는 지원·용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②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하고 180일 이상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④ 취업지원을 받았는데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하였습니까? (해당자만 답변)
☐ 예 ☐ 아니오
- ⑤ 계좌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훈련상당을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기타
- ⑥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까?
☐ 예 ☐ 아니오
- ⑦ 현재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최종학년 재학중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자격확인란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지원·용자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명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훈련계획서

(제1쪽)

①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
훈련예정시기	년 월	취업예정시기	년 월
은행계좌번호	☐ 신한 ☐ 농협 ☐ 우리 ☐ SC ☐ 우체국 (계좌번호)		

② 주요이력

훈련경력	훈련종류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수료여부

③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분야

구분	업종(직종)	업무분야
취업		
창업		

④ 훈련참여 과정

구분	훈련방법 (집체, 인터넷, 혼합 등)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최초			
1차 변경			
2차 변경			

210mm×297mm(백상지 80g/㎡)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권리사항>

- ①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200만원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훈련비는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② 훈련생은 상담원과 협의하여 취업분야를 결정하고 취업가능성,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1일 5시간 미만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 5,800원(월 116,000원 한도))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나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중요. 수강평 미입력시 마지막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은 월 2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월 12만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자는 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급. 단, 실업자훈련 합산하여 2회차인 경우는 동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3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④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16년부터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또는 창업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 ① 상담원과 최초 합의된 훈련과정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 상담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취업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취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수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고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니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잔액 소멸)되며 실업자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유인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재사용 가능
- ④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중 훈련직종에 따라 20% ~ 50%(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 ~ 30%)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및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잔여 유효기간 범위에서 계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쪽)

- ⑥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해당 훈련과정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는 계좌사용이 중지되므로 새로 시작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⑩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⑦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 유효기간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실직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담을 거쳐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 ⑨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4일내(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14일 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⑩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 출석에 사용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신한, 우리, SC, 우체국, 농협) 계좌에 본인부담금 20% ~ 50%(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⑫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⑬ 훈련생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숙련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 되거나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적사유 :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 대리 출석체크 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을 부탁한 훈련생>

<기타 안내>

-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초년도에 한해서 연회비 3,000원이 부과됩니다.
- 후원생 자비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위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 농협카드)에 제공·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계좌 취 득 자 (서명 또는 인)

계좌사용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Tel:) (서명 또는 인)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계좌적합훈련과정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

☐ 변경 신청 내용

현재 훈련과정		변경 신청 훈련과정	
------------	--	---------------	--

☐ 변경 신청 사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변경 신청한 훈련과정이 현재의 취업 또는 창업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합의된 훈련과정보다 훈련성도가 미흡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에 해당될 경우 훈련과정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변경 신청은 계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회에 한정되오니 신중하게 변경 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계좌적합훈련과정 변경 부적합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한 글) (영 문)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 변경 신청 내용

현재 훈련과정		변경 신청 훈련과정	
------------	--	---------------	--

□ 변경 부적합 사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
과정 변경 부적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

- ☐ 미발급
☐ 훈련과정 변경 부적합
☐ 동일과정 재수강 부적합

추가상담 신청서

☐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

☐ 추가상담 신청 사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7항,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계좌적합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훈련예정시기	년 월	취업예정시기	년 월

훈련참여직종

구분	훈련참여직종 1	훈련참여직종 2
최초 결정		
1차 변경		
2차 변경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8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8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 폰)	이메일	@
미발급 사유			

귀하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에 대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이의신청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가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9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의 미발급 사유

☐ 이의 신청 사유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에 대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계좌발급심의회 결정통지서

□ 신청인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 결정 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결정

□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결정(*)

□ 미발급 결정 사유(*)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발급심의회의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계좌발급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요청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장관리 번호						
	소재지						
	대표자						
	기관주소지						
위탁 대상 훈련과정							
훈련과정명	정원 (총원)	직능 수준	회수	훈련기간	훈련시간 (현장훈련 기간)	훈련 방법	계약기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훈련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급수					
훈련회수					
훈련개시·종료일자					
훈련교사·강사					
교실(컴퓨터실)					
실습실					
기타사항					
※ 변 경 사 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변경 신청에 관한
동의서(부동의서)

훈련기관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급수			
훈련회수			
훈련개시·종료일자			
훈련교사·강사			
교실(컴퓨터실)			
강의실			
기타사항			
※ 불 가 사 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을 ☐ 동 의 ☐ 통지합니다.

☐ 부동의 ☐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 신청 내용

재수강 희망 계좌적합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	--	-------	--

□ 신청 사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재수강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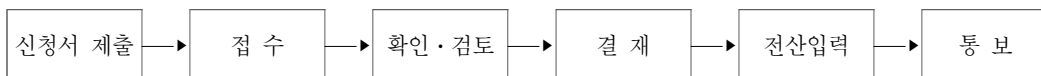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은 출산, 상병, 학습능력부족 또는 훈련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한 훈련중지·부실훈련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강의 필요가 있다고 훈련상담을 거쳐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부적합 통지서

□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

□ 부적합 사유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에 대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부적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

1.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생 개인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훈련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 · 수정하거나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지문, 휴대전화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출석입력요청대장

(앞쪽)

(0000훈련기관)

①훈련과정명		②훈 련 기 간	
③훈 련 시 간		④대장관리자	

⑤일련 번호	⑥발생일	⑦신청일	⑧훈련생 성 명	⑨사 유	⑩입실시간 (외출시간)	⑪퇴실시간 (귀원시간)	⑫훈련생 서 명	⑬관리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요령

1.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
 - 1) ⑥란의 발생일자는 직권입력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
 -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
 - 3) ⑨란의 사유는 '카드 분실·훼손', '정전', '단말기 고장', '카드발급 지연' 등 직권입력 사유를 기재
교대근무자에 대해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한 경우, 변경한 훈련과정명 및 수강일·수강시간도 함께 기재
 - 4) ⑩란의 입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
 - 5) ⑪란의 퇴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
 -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로 기재
 -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
2. 출석입력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훈 련 과 정:

훈 련 직 종:

훈 련 기 간: ~ (월)

위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00조에 따라 위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의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처리기한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 ☐ 창업)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수강이력 (수료현황)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정부지원승인훈련비 범위 내에서 부담한 자비부담액을 환급하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실제훈련비)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 제출) <공통>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 서류 <취업> 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 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비부담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20호서식]

훈련기관 인센티브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
					10일
훈련 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전화 :)			
지급 신청 내역	④훈련과정				
	⑤훈련기간				
	⑥ 훈련생수	취 업 자		6개월이상 계속취업자	
		⑦취업자수	⑧취업률	⑨고용유지자수	⑩고용유지율
	명	명	%	명	%
	⑪훈련비총액	원			
	⑫신청금액	원			
계좌 번호	()은행 (예금주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관 인센티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취업자 명단 1부(6개월 이상 계속취업자 별도표시)	수수료
※ 취업자 수에 해당 훈련과정을 훈련받은 훈련생은 포함하지 않음	없음

◆ 작성 시 유의사항

- ⑧취업률 : 훈련생(⑥) 중 훈련도중 취업자를 포함하여 훈련수료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취업자(⑦)의 비율
- ⑩고용유지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자(⑦) 중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고용유지자(⑨)의 비율
- ⑪훈련비총액 : 규정 제30조에 따라 산출된 기지급 훈련비 총액

부록 14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인적자원개발과, '15.10.21.)

I 개정목적 및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목적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14.4.4, 인적자원개발과-964)을 개정
- 그 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관련 제도 변경내용* 반영
 - * '15년부터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개정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통합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적용대상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계좌적합훈련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과정,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계좌 발급기간 명확화	• ①자기탐색활동(4주이상) → ②계좌 발급신청·발급*(10일) * 자기탐색활동 적정성 평가 등 계좌발급여부 검토기간 포함	• 초기상담부터 계좌 발급까지 4주*로 단축 * 자기탐색 지원 및 계좌발급 여부 검토기간 포함
자기탐색활동 면제요건 등 명확화	• (면제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과정 등 취업성과 우수과정 • (과제 일부제외) 계좌제훈련과정 중 생산직과정 관련 직종 또는 6개월이상 장기과정 참여 희망자	• (면제) ①타부처 인력양성사업(국기훈련), ②특화과정, ③장기훈련과정(1,400시간 이상 과정) • (2주 단축) ①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 훈련과정, ②중기훈련과정(6개월 이상 & 700시간 이상), ③실시규정 제5조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이상(합산), 6개월 이상 동일직종 근로경력자
기 타	• 자기탐색활동 판단이 곤란한 경우 3인 합의제 등 활용 • 적합훈련과정(최대 5개) 등록	• 3인 합의제를 협의제로 변경 • 적합훈련과정 선택범위 확대 * 통합과정으로 승인받은 재직자과정이나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중에서도 선택·지원 가능

II 훈련 참여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

1.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시)」 제4조~5조

2. 목적

- 지방관서에서 수행하는 자기탐색활동 지원 및 훈련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 훈련상담 서비스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및 취업률 등 실업자 훈련 성과 제고
- * (유의사항) 예산 범위에서의 계좌발급 제한은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쿼터)제에 따른 것으로 훈련상담 목적과는 다름

3. 총괄설명(요약)

□ 초기상담 및 유형분류(직업능력개발부서, 이하 '직능부서')

- 훈련참여 희망자(이하 '훈련희망자')가 직능부서를 방문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초기상담** 결과에 따라 훈련희망자의 유형을 분류
- 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일경험이나 자격, 경력단절기간, 취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훈련희망자가 취업성공패키지부서(이하 '패키지부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에는 '**패키지 부서**'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사업안내 및 취성패 참여요건 확인 후 취성패 참여를 희망하지 않거나 사업대상이 아닌 경우 '**직능부서**'로 안내(다만,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취업지원부서'로 직접 안내)

☐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지정(직능부서 담당)

구직자 유형	분류방향(예시)	담당부서
취약계층 등 취성패 참여 대상	취성패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패키지부서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취업희망직종 취업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등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부서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	취업희망직종과 관련된 취업경험, 자격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경력단절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 등	직능부서

* 위 표는 유형분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 구직자유형은 '설문지 및 진단지'를 통해 분류

☐ 담당부서는 유형별 훈련희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상담 또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적극 지원

4. 유형분류

☐ 초기상담(직능부서)

- 취미,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스펙쌓기 등 비취업 목적으로 훈련과정 수강만 희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자훈련의 목적이 취업'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상담종료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우선 검토하여 훈련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요건 및 미충족 사유, 제도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상담종료
 - * ▲훈련참여 가능 연령인지 여부, ▲학생 여부, ▲근로 여부, ▲정부지원 훈련 또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나 타부처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참여 중인지 여부, ▲수강제한 여부, ▲실업자훈련 등 수강이력 및 계좌발급횟수, ▲자영업자일 경우 매출액 등 확인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충족 시 지원혜택 등 안내 후 '패키지부서'로 연계하고 상담종료
 - * 훈련상담 담당자가 취성패 참여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소장 책임 하에 업무교육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훈련희망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 ①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 또는 ②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 유형을 분류
 - 취업패 참여 대상이 취업패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훈련희망자에 준하여 유형을 분류**
- 일반 훈련희망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형분류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 구직자의 특성·상황 등 정확히 확인 후 담당부서 안내

□ 유형 분류

- **(1단계)** 훈련희망자에게 ‘구직의욕(취업의지), 건강상태, 구직기술’ 항목이 포함된 설문지(붙임 1*)를 작성하도록 안내
- **(2단계)** 채점방법(붙임 2), 배점표(붙임 3)를 활용하여 훈련희망자의 특성을 점수화
 - 배점표상 ‘1번’ 항목은 훈련희망자가 작성한 내용을 평가
 - 배점표상 ‘2~8번’은 고용보험 전산망, 워크넷 구인구직현황, 바로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
 - * 연령대, 학력수준, 취업희망직종 관련 일경험·자격증, 직업훈련 경험, 경력단절기간, 지역 내 일자리수(워크넷 유효구인정보 등)
 - * 객관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항목은 상담결과 등을 토대로 훈련상담담당자가 평가
 - 배점표상 ‘9번’(훈련상담담당자 재량항목)은 취업의지의 신뢰성, 지역일자리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 * 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분류의 적정성 문제는 상담원 재량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

- (3단계)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가 55점 미만인 경우에는 ①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 55점 이상인 경우 ②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

종합점수	훈련희망자 유형	담당부서
55점 이상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부서 (실업급여부서)
55점 미만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	직능부서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분류가 가능한 범위 내 불임1·2의 문항수(23개→15개 내외) 및 불임3의 배점표 수정·활용 가능

□ 담당부서 지정

- 직능부서는 유형분류 결과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등 절차를 거쳐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 취업지원부서 또는 실업급여부서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워크넷에 유효한 구직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구직 (재)신청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해당부서에서 4주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창업 하지 못하여 해당부서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직능부서에 계좌발급 신청 시 자기탐색활동 면제 가능

<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안내문(예시) >

- 취업경험이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선생님은 현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훈련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우선 구직활동을 해 보시고 일정기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구직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이력 등을 토대로 다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좌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신청 시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에 있는 취업지원과(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워크넷에는 고용센터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민간취업포털 등의 일자리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회원 가입 후 적극 이용해 보신다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탐색활동을 위한 과제 부여

5. 훈련희망자 유형별 지원방안

□ ‘훈련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람’(취업지원 및 실업급여부서)

-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부서에서 취업알선, (재)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 훈련희망자에 대해 취업지원 또는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지와 향후 진행사항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민원 예방
- 구체적인 취업지원 방법 및 훈련필요성 판단 등은 취성패 지원사업 운영방식 등과 지방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처리
- 상담 내역 워크넷 입력 철저
 -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부서는 직능부서에서 훈련필요성 판단 시 활용토록 상담 내용을 워크넷에 구체적으로 입력
-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부서의 훈련추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부서와 협의 필요)가 없는 한 별도의 자기탐색활동 관련 과제를 부여하지 않음
 - * 다만, 취업지원 또는 일자리 알선 등 구직활동 또는 취업지원 등 내역이 적정한 경우라도 훈련과정 탐색 관련 과제 부여는 가능
-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부서 훈련 추천자에 대한 훈련 지원
 - 국기훈련,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훈련과정,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 채용연계형 훈련과정 등 취업률이 우수한 훈련과정 우선 안내
 - *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 채용연계형 훈련과정 추천 시 “HRD-net(통합상담>훈련상담관리>타훈련과정 추천”에 등록
- 계좌제 훈련과정의 경우 배정된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 범위에서 계좌발급 가능

□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직능부서)

-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이내 ‘자기탐색활동 과제수행’,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결정’ 등 제반업무 완료
 - * 자기탐색활동 과제수행 기간 중 직업훈련 필요성 판단 동시진행

- ①타부처 인력양성사업, ②특화훈련과정, ③1,40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자기 탐색활동 과제수행 등 훈련상담 절차 없이 즉시 계좌발급

- ①우수훈련기관의 우수직종 훈련과정, ②6개월 이상이고 700시간 이상 과정인 경우에는 초기상담일로부터 2주 이내 계좌발급

* 실시규정 제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등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와 6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이전 직장과 동일한 직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초기상담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좌발급

○ 자기탐색활동을 위한 과제 부여

- 사전진단 결과 및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훈련희망자가 취업희망 직종 일자리 현황, 취업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과제 부여 안내
- * 자기탐색활동기간은 전체 소요기간(2주 또는 4주) 중 훈련희망자의 개인특성, 희망훈련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취업률이 우수한 훈련과정 중심으로 적극 안내 >

- 상담시점에서 개설예정인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 채용예정자과정을 HRD-Net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 하고 우선적으로 적극 안내

- 과제부여는 아래 과제 부여방법(예시)을 참고하여 지방관서 여건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 가능

* 과제부여 방법으로 예시된 사항중 항목 1, 2는 세부 항목 중 2개 이상을 수행하도록 하고, 항목 3은 2개 모두 수행하도록 과제 부여. 다만, 최근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과제 부여 생략 가능

- 자기탐색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여 그간 부여된 과제 이행 상황 확인 및 지도

* 예를 들면, 과제부여 방법(예시) 중 항목 1, 2에 대한 과제수행 후 1차 상담, 훈련과정 탐색활동 후 2차 상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자기탐색 결과 확인을 위한 센터방문 시 계좌발급 신청을 받는 등 훈련희망자가 불필요 하게 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과제 부여방법(예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도 폭넓게 인정가능

< 자기탐색활동 과제 부여 방법 예시 >

구 분	과제 부여방법(예시)
1. 자기탐색	① (직업심리검사) 성격, 흥미, 생활사를 알아보는 직업선호도검사(L형, 60분),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 직업적성검사(90분) 실시 및 상담 후 결과표 등을 제출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무료로 실시 가능한 직업심리검사 목록 등은 <붙임4> 참조 ② (단기취업특강 등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기술·대인관계능력·의사결정능력 향상 등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단기취업특강 또는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이나 변화된 모습 등을 기술하여 제출 ③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실직 등으로 인한 충격 및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토록 지원, 훈련희망자에게는 상담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토록 안내
2. 직업탐색	① (직업정보 검색) 워크넷을 활용하여 하는일, 임금/직업만족도/전망, 능력/지식/환경, 성격/흥미/가치관 등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작성 ②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찾기) 워크넷을 활용, ▲자신의 지식, ▲업무수행능력, ▲흥미나 선호하는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적합한 직업을 검색해 본 후 하는 일, 임금/직업만족도/전망, 능력/지식/환경, 성격/흥미/가치관 등을 확인, 결과 작성 제출 ③ (일자리정보 검색) 지역 고용동향을 이해하여 스스로 취업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활용하여 희망근무지를 중심으로 취업희망직종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기업의 제시임금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직접 검색하고 그 결과를 기록
3. 적합훈련 과정 탐색	① 자기탐색결과 및 수집한 직업정보를 토대로 직무적합성, 필요한 핵심역량 보유 정도를 확인한 후 부족한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을 스스로 탐색(HRD-net 활용)하고 그 결과를 작성 제출 ② 우수 훈련기관을 방문, 훈련과정의 주요내용 및 참여 시 장·단점을 분석해 본 후 그 결과를 작성 제출

○ 자기탐색활동 적정성 평가 및 훈련지원(공무원 담당)

- 자기탐색활동 등 과제이행 결과 및 상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훈련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직업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추가과제 부여
 - * 추가과제 거부 또는 불성실한 사람의 경우 훈련필요성을 불인정하고,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시하고 종결처리
-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희망취(창)업 분야와 취업가능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 적합훈련과정(최대 5개*)을 훈련생과 합의하여 HRD-net에 등록

- * NCS 중분류(4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동일분야 판단
- * 실업자훈련 중 적합한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과정으로 승인받은 재직자과정이나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중에서도 선택·지원 가능
-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훈련과정, 국기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과정 등 취업률 우수 훈련과정 적극 안내
- 계좌제 훈련과정의 경우 지방관서별로 배정된 쿼터 범위에서 계좌발급 결정
- 자기탐색활동 판단이 곤란한 경우 처리(**공무원 담당**)
 - 자기탐색활동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경우 3인 협의제 (팀장급공무원, 담당자, 담당자의 직업능력개발부서 직원) 또는 계좌발급심의회 등을 통해 발급여부 결정

6. 훈련생 및 미취업자 사후관리 등

□ 훈련생 및 수료후 미취업자 관리 강화

- 수강중 훈련생 관리 강화(직능부서)
 - 계좌발급자 중 훈련 미참여자 수강 독려 및 우수과정 안내
- 수료 후 미취업자 관리(직능부서, 취업지원부서 연계)
 - 수료(예정)인 훈련생 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지원
 - 훈련직종별 지역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현황 확인 및 관련 정보 입력·관리
- 훈련기관과의 연계 강화(훈련기관, 직능부서, 취업지원부서 연계)
 - 훈련생의 출결관리 강화, 이해도가 낮은 훈련생 보충학습 실시, 불성한 훈련생에 대한 유급, 수료중 미발급 등 강화
 - 취업지원담당자 교육 등 훈련기관의 취업지원역량 강화 지원, 수료(예정)자 대상 훈련기관의 적극적 취업알선 독려

- 수료(예정)자 중 미취업자(의욕이 높은 자 우선)를 훈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취업 지원부서에 알선 등 적극 의뢰
- 상설채용관 운영정보 등을 훈련기관과 공유, 수료(예정)자 추천·참여 독려 등

III 행정사항

□ 동 지침은 '15.10.21.자로 시행함

※ 현재 훈련상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동 지침 적용가능

- '14.4.4. 시달한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은 폐지하고 동 지침으로 대체
- '15.7.1. 시달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상담 및 위탁계약 체결 관련 지침」 중 훈련상담 부분은 동 지침으로 대체

□ 구직자 및 훈련기관에 대해 제도변경 사항 안내

- (지방관서) 구직자 및 훈련기관 대상으로 변경내용 안내
- (고용정보원) 훈련상담 기간 적용 대상 훈련과정*을 지방관서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후 HRD-Net 공지

*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훈련, 타부처 인력양성사업, 특화과정

<붙임 1>

구직욕구 자가진단 설문지

성명		생년월일	19 . . .	연락처	
----	--	------	----------	-----	--

번호	설문내용	답변	
		①예	②아니오
1	나는 최근 1주일 동안 워크넷이나 민간취업포털(사람인, 인쿠르트, 리쿠르트 등)에 접속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관련 일자리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나는 최근 1주일 동안 생활정보지(교차로, 벼룩시장 등)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관련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본 적이 있다.		
3	나는 최근 3개월 동안 고용센터나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거나 특강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4	나는 최근 6개월 동안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5	나는 희망하는 일자리가 나와도 이전에 작성해 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새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6	나는 다른 사람이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물으면 그 이유를 금방 답할 수 있다.		
7	나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어떤 기업(사업장명, 업종, 규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이미 취업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8	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9	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해 볼만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10	원하는 기업이나 직업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없다.		
11	나는 회사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알고 있다.		

번호	설 문 내 용	답 변	
		①예	②아니오
12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3	나는 면접을 볼 때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다섯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14	면접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해 본 경험이 있다.		
15	나는 인터넷으로 워크넷, 민간취업포털 등에 접속하여 스스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16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3일 이상 만취한 적이 있다.		
17	나는 갑자기 울거나 울고 싶은 때가 있다.		
18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일주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19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효과적인 조언을 해 줄만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 등이 있다.		
20	나는 15Kg 이상의 물건은 들어서 나를 수 없다.		
21	나는 아파트나 일반건물의 3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보통 걸음으로 어렵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다.		
22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한 편이다.		
23	나는 일의 강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피곤을 느끼는 편이다.		

<붙임 2>

구직욕구 자가진단 설문지 내용 및 채점방법 등(상담원용)

번호	목적	설문내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1	구 직 욕 구 진 단	●나는 최근 1주일 동안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포털(사람인, 인쿠르트, 리쿠르트 등)에 접속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관련 일자리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 인터넷, 생활정보지, 취업지원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
2		●나는 최근 1주일 동안 생활정보지(교차로, 벼룩시장 등)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관련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본 적이 있다.	●추가 확인사항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검색해 본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사업장명, 업종, 주요 직무내용, 임금수준 등을 질문 → 답변내용을 듣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점 부여
3		●나는 최근 3개월 동안 고용센터나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거나 특강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검색해 보지 않은 이유를 질문, 답변내용을 상담원 재량점수 부여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4		●나는 최근 6개월 동안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5		●나는 희망하는 일자리가 나와도 이전에 작성해 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새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취업준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지 등 질문 가능

번호	목적	설 문 내 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6		나는 다른 사람이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냐는 것을 물으면 그 이유를 금방 답할 수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의 신뢰성 판단 시 활용
7		나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어떤 기업(사업장명, 업종, 규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이미 취업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직무 내용 등 취업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상담원 재량점수 부여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 답변내용을 듣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직업정보 탐색 시 워크넷을 통해 해당 직업 및 일자리정보를 검색해 보도록 과제 부여
8		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희망직종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일자리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는지, 취업목표가 명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0점 부여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관련있는 과정 참여를 과제로 부여 가능
9		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해 볼만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번호	목적	설 문 내 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10		원하는 기업이나 직업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없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워크넷을 통해 해당 직업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도록 과제 부여
11	구 직 기 술 보 유 정 도 진 단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12		나는 회사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알고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0점 부여
13		나는 면접을 볼 때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다섯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관련있는 과정 참여를 과제로 부여 가능
14		면접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해 본 경험이 있다.	
15		나는 인터넷으로 워크넷, 민간취업포털 등에 접속하여 스스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워크넷 활용방법 안내
16	취 업 이 가 능 한 신 체 적 ·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3일 이상 만취한 적이 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업에 걸림돌이 될 정도인지 여부 확인 - 알콜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단증상 관련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심장 박동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번호	목적	설 문 내 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 손이 떨리는 경우 -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는 경우 - 자주 초조해지거나 신경질이 나는 경우 - 막연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 - 이상한 환각 증상이 있는 경우 등 ● 알콜중독이 의심되거나 안 좋은 습관이 취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의 연계 검토
17	정서적 건강상태	● 나는 갑자기 울거나 울고 싶은 때가 있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나 심각한 질병 등이 취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18	확인	●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병원진료를 받았거나 일주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여 취업 가능성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의 연계 검토 ● 우울증 증상의 예 - 우울한 기분이 들고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짐 -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늘 찡그리게 되거나 잘 웃지 않음 -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잠이 깨면 더 이상 잠을 자기 어려움 -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 살이 빠짐(반대로 살이 찌 수도 있음) -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만사가

번호	목적	설 문 내 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귀찮아짐 - 금방 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짐 - 무슨 일이든 결정을 못해 질질 끌게 됨 -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음
19		●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효과적인 조언을 해 줄만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 등이 있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정서 상태에 따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판단 후 과제 부여 여부 결정
20		● 나는 15Kg 이상의 물건은 들어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없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 ● 희망직종이 제과·제빵원(밀가루 등)이나 생산·기능직일 경우에는 20Kg 이상의 물건을 운반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희망직종에 따라 취업가능성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21		● 나는 아파트나 일반건물의 3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보통 걸음으로 어렵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취업 후 적응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 - 중장년층 등은 무릎이나 허리

번호	목적	설 문 내 용	채점방법 및 추가 확인사항
22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한 편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 확인 후 취업가능성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23		나는 일의 강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피곤을 느끼거나 잘 붓는 편이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 -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경우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 확인 후 취업가능성 재량점수 부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3>

유형분류를 위한 진단지 및 항목별 배점표

연번	구분	세부기준	배점	배점 평정 및 기준 설명
총 합			100	
1	구직욕구 (취업의지)	설문지	10	• 취업을 위한 적극성 확인
	건강상태	설문지	8	• 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상태인지 여부 확인
	구직기술	설문지	5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요령 습득 여부
2	연 령 대	15세 이상~18세 미만	1	• 연령대가 취업에 용이한 지 여부를 평정
		18세 이상~50세 미만	6	
		50세 이상	3	
3	학력수준	고졸 미만	1	• 취업 용이 학력수준 평정 • 희망직종이 전문직 등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초대졸 초과' 시에 5점 부여 가능
		고졸 이상~초대졸 이하	7	
		초대졸 초과	4	
4	희망직종 관 련 경 험	없음~1년 미만	1	• 진단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희망직종 관련 취(창)업 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5	
		5년 이상	10	
5	희망직종 관 련 자 격 증	없음	1	• 국가(기술)자격, 국제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희망직종 관련 자격 보유 여부
		2개 이하	4	
		3개 이상	7	
6	희망직종 관 련 직업훈련 경 험	없음	1	• 희망직종 분야 관련 최근 2년 내 직업훈련경험 여부 • 중도탈락 여부 및 훈련참여기간 무관
		1개 과정 참여	5	
		2개 과정 이상 참여	10	
7	경 력 단절기간	6개월 미만	10	•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1년 간의 미취업 기간 산정(자영업 포함)
		6개월 이상~1년 미만	5	
		1년 이상	1	
8	일자리수	10개 미만	1	• 워크넷으로 최근 2주 간의 유효구인 정보(희망근무지, 희망직종 설정)를 검색하여 해당점수 부여(구인신청건수 기준)
		10개 이상~20개 미만	4	
		20개 이상	7	
9	상 담 원 재 량	취업의지 신뢰성	신뢰할 수 없음	• 훈련상담원이 1~8까지의 점수와 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취업가능성은 구직자의 상황 및 지역 일자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취업의지 있음	
			취업의지 높음	
		취업 가능성	가능성 낮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높음	

<붙임 4>

고용노동부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연번	검사명	검사대상	주요내용	검사실시요령
		검사시간		
1	직업적성검사	만 18세 이상	• 직업선택 시 중요한 직업 능력(적성)을 토대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업분야 제시	• 직업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검사로써 시간제한 있음
		약 90분		
2	직업선호도검사 (S형)	만 18세 이상	•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직업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제공	• 시간제한이 없으며, 자기 보고식 응답을 함 •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각 문항을 읽은 후 자신에게 적합한 특성에 표시
		약 25분		
3	직업선호도검사 (L형)	만 18세 이상	• 개인의 흥미유형 및 성격, 생활사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직업 추천	• 시간제한이 없으며, 자기 보고식 응답을 함 •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각 문항을 읽은 후 자신에게 적합한 특성에 표시
		약 60분		
4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50대~80대	• (준)고령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움	• (준)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지 디자인 및 짧은 검사시간 • 72개 문항으로 구성, 흥미에 따른 고령자 적합 직업을 제시 • 검사 결과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센터
		약 20분		
5	구직준비도검사	성인구직자 (고졸예정자 포함)	• 성공적인 취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시간제한 없음 •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
		약 20분		

연번	검사명	검사대상	주요내용	검사실시요령
		검사시간		
6	창업적성검사	만 18세 이상 (창업희망자)	• 창업소질이 있는지 진단 후 적합한 창업업종을 추천	• 시간제한 없음 •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
		약 20분		
7	직업전환검사	만 18세 이상 (신규구직자제외)	•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에게 가장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파악·추천	• 시간제한 없음 •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
		약 20분		
8	직업가치관검사	만 18세 이상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여 자신의 직업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분야 안내	• 시간제한 없음 •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
		약 20분		
9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만 18세 이상	• 영업직무수행 관련 역량을 인성과 적성 측면으로 측정하여 구직자의 영업직무 적합도를 확인	• 영업직 진출을 희망하는 성인구직자에 대하여 실시 • 시간 제한이 있고, 능력 검사문항 포함
		약 50분		
10	IT직무 기본역량검사	만 18세 이상	• IT직무수행과 관련한 역량을 적성과 인성의 측면으로 측정하여 IT직무에 대한 구직자의 역량 적합도를 확인	• IT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성인구직자에 대하여 실시 • 시간 제한이 있고, 능력 검사문항 포함
		95분		
11	대 학생 진로준비도검사	대 학생 또는 취업준비중인 청년층구직자	• 청년층 구직자의 진로발달 수준과 취업준비행동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로 및 취업 선택을 지원하고자 개발	• 시간제한 없음 • 1부와 2부로 구성 •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
		약 20분		

<붙임5>

워크넷 상담내용 입력방법

- ① 워크넷 내부망에 접속하여 ①'취업알선>상용구직>구직신청' 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③검색 버튼을 클릭

- ②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수정하고,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인적/이력사항, ▲구직신청, ▲자기소개서 항목 등을 등록한 후 ②▲구직신청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상담”란에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③수정 버튼을 클릭

- 그리고, 이미 다른 상담자 등이 입력한 상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④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생성되는 “구직신청상담”란에 상담내용 입력 후 수정버튼 클릭

<붙임6>

워크넷 상담내용 조회방법

<방법1> 워크넷 내부망에 접속하여 ①'취업알선>구직공통>구직상담내역조회' 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③검색 버튼을 클릭

<방법1> 워크넷 내부망에 접속하여 ①'취업알선>상용구직>구직신청' 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③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정보가 검색되면, ④구직신청 화면으로 이동한 후 맨 하단에 있는 ⑤상담내역보기 클릭

부록 15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 지침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04, '16. 1. 11 >

□ 실업자훈련 예산(16년) 및 훈련인원(15년) 현황

- '16년 내일배움카드제 예산은 축소, 국기훈련 예산은 확대
 - '15년 대비 '16년 예산편성은 신규실업자 △31.5%, 전직실업자 △49.1%, 국기훈련 ↑102%
- '15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인원중 84%, 국기훈련 훈련인원중 34%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지침

① 국기훈련으로 적극 유도

- '16년에는 취업성과 높은 국기훈련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기훈련 예산은 증액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예산은 축소
- **취성패 II유형**은 '국기훈련' 참여 원칙으로 하되,
 - 장기훈련참여가 곤란하거나 참여가능한 국기훈련 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
 - * (참고)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은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불가
-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쿼터제) 준수 철저
 - 지방관서별 계좌발급인원(쿼터)은 1월중순 시달예정

②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에 대한 훈련상담 등

-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훈련에 참여토록 훈련기관 등에 적극안내

- 일반훈련생과 **훈련장려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안내가 없으면 민원발생 우려

* 국기훈련: 훈련장려금추가지급금 차이(일반 10만원, 취성패 30만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급

** 고3에 대해서는 국기훈련훈련장려금추가지급금은 월 2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월 최대 20만원 선으로 개선할 계획('16.3월~)

○ 비진학 고3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사실상 고3이 되는 시점

- 고 2를 수료하고 다음해 1.1이후(방학 중)인 경우에도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 행정사항

○ (직업능력 담당부서)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 학생들이 취성패를 경유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토록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16.1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여부는 고3 훈련예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훈련기관이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부서) **취성패 위탁기관**에 동 내용을 전파

- 취성패 위탁기관에서 훈련기관 및 훈련참여예정인 고3에게 취성패 참여절차(단계별 참여절차)등을 사전에 정확히 안내하여 훈련생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부록16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인적자원개발과, '16.1.21.(목)>

1. 목 적

- 훈련이 꼭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 지원 혜택 부여 및 계좌발급대상자의 책임성 강화(무분별한 훈련참여 제한) 등을 위하여 개인훈련계획서 상의 **훈련과정 변경을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 폐강, 정원초과 등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 시에도 이를 변경횟수에 포함, 지원을 제한하여 관련민원 등 지속 제기
- ⇒ 내실있는 취업지원 및 훈련상담이 가능토록 훈련과정 변경 범위 및 횟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

2. 관련근거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8호, '15.11.2.) 제5조 제6항

❖ 제5조(다양한 훈련과정 탐색 및 계좌의 발급 등) —중략— ⑥ 제3항에 따른 개인훈련 계획서에서 정한 훈련과정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훈련 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과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과정 변경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훈련과정을 변경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한 훈련과정이 제3항에서 정한 취업 또는 창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합의된 훈련과정보다 훈련성과 등이 미흡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과정 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훈련과정 변경 범위 및 회수 산정 지침

- 당초 HRD-Net(개인훈련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변경·입력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변경횟수 산정**
 - * <예시> '16.1.15. 개인훈련계획서 2회 변경·입력 → 변경횟수 1회
 - * 다만, 계좌 유효기간 내에서 계좌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 변경 및 지원이 가능
- 다음과 같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변경이력에서 제외하여 횟수 산정**
 - ①과 ②의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유선상담·확인 후 변경 처리 가능(개인 훈련계획서 상 계좌취득자 서명 생략)**
 - 취·창업 희망직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계좌발급 시와 같이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과정 변경여부 결정(실시규정 제4조·제5조)

<훈련과정 변경횟수 제외사유>

- ①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모집인원 부족 등 훈련기관 사정으로 해당과정이 폐강(또는 일정 연기)되어 훈련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② 모집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및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③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기간을 달리하여 그 내용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실시규정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 중 제적사유 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④ 실시규정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좌 유효기간 정지 결정 시 해당기간 종료 후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훈련과정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⑤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훈련과정 변경횟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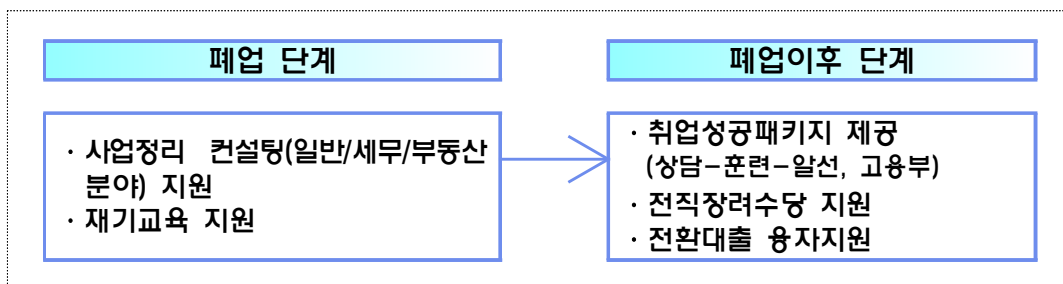
4. 행정사항

- 시행일자: '16.1.21.(목)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해설집」('13.3.) 및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인적자원개발과-2748, '15.10.21.)에 따름

부록17 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16.2월 >

- **관련**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관계부처 합동, '14.9.24)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채무조정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 추천서 발급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64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분류하여 추천
- **세부 운영체계**



1. 폐업 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 * 지원대상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로써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15년 폐업하고 '16.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와 '16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의 경우 세무분야 컨설팅 신청 가능
 -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재기교육)**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1회, 10시간)
 - * 지원대상 : 만 18~64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11.1.1. 이후 폐업자) 소상공인으로서 기존 (폐업장)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 재기교육 수료자(오프라인 교육시간 80%이상 수강)에 대해서 실비지급(3만원/1인)

2. 폐업이후 단계 ①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의 추천서(별지 1)로 연매출을 확인하고, 별도의 참여자격 요건 심사 생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홍보(리플릿 등 제공) 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 ▲(직업훈련비) 참여유형(Ⅰ,Ⅱ)에 따라 200~300만원 ▲(자기부담) 연매출액 0.8억원 미만은 무료 / 연매출액 0.8~1.5억원 사이는 훈련비 10~30% 자부담
 - ▲(취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한해 1인당 100만원 지급(1개월후 20만원, 3개월후 30만원, 6개월후 50만원) ▲(고용주) 고용촉진지원금 1인당 최대 연 90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가 전직장려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지급)을 받기 위해 1단계 수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라 확인서 발급
 - * 취업성공패키지에 먼저 참여 중인 경우에도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참여 가능
 - **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서도 취성패 1단계 수료 확인서 발급 가능

3. 폐업이후 단계 ② : 전직장려수당, 전환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직장려수당)** ①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②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전직장려수당(최대 75만원)을 분할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예정자	사업장 폐업신고 완료 또는 폐업신고 완료+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60%	450,000	576,910
	취업성공 시	40%	300,000	384,610
	계	100%	750,000	961,520
기폐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60%	450,000	576,910
	취업성공 시	40%	300,000	384,610
	계	100%	750,000	961,520

* '취업활동'의 의미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한 경우 또는 자구 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다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이 신청일 이전이어도 인정

**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동시 지원 가능

*** 취업성공 판단(두가지 모두 증빙필요) : ① 고용보험 가입 ②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전환대출 용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2년 거치·3년 상환)하는 전환대출 용자와 연계

*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자로써 신용등급 관계없이 DTI 60%이하(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 제한없음),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

** (용자규모) 1,000억원 / (지원한도 및 금리) 업체당 최대 7천만원, 5% 고정

□ 홈페이지(hope.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

<별지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추천기관 담당자	추천기관명 성명		센터명 연락처		
추 천 자 명 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추천이유
	홍길동	70.1.21	과천시 중앙동 1	02-123-1234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 8천~1.5억원 미만
상기인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명단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2016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					

<별지 2>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확인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⑥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				
⑦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현황		☐ 참여 중(단계) ☐ 종료		
위의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1단계)를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고용센터장 (직인)				
담당 상담원	성명			
	연락처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2015. 12.

I 배경

□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연계 등 **사업성과는 여전히 낮은 편**

○ **‘10년 이후** 매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등 **정부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

*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주요내용: 수요자 입장에서 유사·중복 사업 통합,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제고, 반복 참여 제한 등 참여자 관리 강화, 자치단체 사업 포함 관리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마련, 일모아시스템 개편 추진 등

○ 그러나,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의 **민간 노동시장 이행률이 낮고**, 반복 참여 등 **참여자 관리도 부실**

[그간의 평가]

- ▶ 관계기관 간 협조 미흡 등으로 유사·중복 사업 추진, 소득보전 기능 치중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효과 미비** (* 국무총리실 「2011년 정부업무평가」)
- ▶ 직접일자리 사업 분석 결과, 사업 종료 후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참여하는 비율이 51.3%**에 이르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8%에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2015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평가」)
- ▶ 합동지침의 **반복참여 제한 관련 내용이 각 기관의 사업지침에 일부 미반영**,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달성이 현저히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필요 (* 감사원 201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

□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 성과 및 국민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개정 추진**

○ 기능이 대폭 향상된 **일모아시스템을 일선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활용방법·절차 등 구체화**

Ⅱ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방향

1. '16년도 일자리예산 규모(자치단체 예산 제외)

○ '16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15조 7,796억원 규모(12.9% 증)

*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큰 직업훈련(10.2% 증) 및 고용서비스(13.1% 증) 분야와 고용안정망과 직결되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22.7% 증) 분야 중점 확대

☞ 불확실한 고용·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

○ '16년도 청년일자리 사업(14개 부처·청, 57개) 예산은 2조, 113억원, 15년 대비 3,564억원 증액(20.3%증)

* 고용부 : 청년 인턴 등 15개 사업 1조3,985억원(15년대비 46.1%증)

☞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15.7.27)」 핵심 과제를 중점 반영하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뒷받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단위: 억원)】

구분	'15년(본예산)		'16년(안)		증 감(%)	
		청년		청년		청년
총 계	139,766	17,549	157,796	21,113	12.9	20.3
• 직접일자리	24,634	3,241	26,342	3,686	6.9	13.8
• 직업훈련	17,899	6,664	19,716	9,338	10.2	40.1
• 고용서비스	6,102	1,450	6,904	2,103	13.1	45.0
• 고용장려금	25,961	1,742	28,208	2,581	8.7	48.1
• 창업지원	18,339	4,453	19,148	3,405	4.4	△23.5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6,832	-	57,478	-	22.7	-

* '16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9%)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3%)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2. 운영 방향

- (취업취약계층 중심 지원) 사업별 취업취약계층의 최소참여목표비율 준수 철저
- (장년 적합 일자리 지정) 민간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 퇴직자 보호를 위해 장년 참여 적합 일자리 사업을 지정하고 장년 참여 목표비율 관리
- (직접 일자리와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디딤돌 일자리'로서의 역할 강화
- (일모아시스템 활용) 일모아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업무 담당자 업무부담 절감

[일모아시스템 기대효과]

(1) 국민 불편 해소(신청자 연 88만여명)

- (참여자)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여성가장관련 증명서 등 5~12종의 서류 제출

* 대상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연 29만명) x 경쟁률(약 3 대 1) = 88만명

(2) 행정 낭비 및 비효율 제거(담당인원 1,700여명)

- (담당자)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고용보험상실확인서·재산세납입증명서 등 확인하여 소득·재산·실업기간 등을 수작업으로 입력

<일모아 시스템 주요 기능>

- ▶ (선발) 이름, 주민번호 등 최소정보만 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재산 등 참여자 적격성 여부를 자동 확인해주는 온라인 선발 기능 제공
- ▶ (참여) 출결, 중도이탈, 중복참여 등 참여자 관리 서비스 제공
- ▶ (급여지출) 출결 정보와 급여 정보를 연계하여 참여자별 월 급여 자동 계산, 월 급여를 회계 시스템에 연동하여 인건비 자동 지출 처리

(3) 취약계층 우선선발 지원

- (이전) '14.8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고액재산가·공적연금수령자 확인 곤란 → (향후) 일모아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선발 체계적 지원

II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자치단체 ‘고유’사업도 포함

(⇒ 『직접 일자리』 유형 사업은 ‘중앙부처 직접수행’,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모두 포함)

1. 참여자 모집

【1-1】 온라인 모집공고 및 온라인 신청 기능 적극 활용

□ 대상 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내용

-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모집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모아시스템의 온라인 모집공고 기능 적극 활용
 - * 일모아시스템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워크넷으로 자동 연계되어 누구나 일자리 사업 모집정보를 한 곳에서(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확인 가능
-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가 온라인상(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모아시스템의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 적극 활용
 - * 일반 국민은 일모아시스템 개편에 따라 워크넷(정부지원일자리)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가능
 - *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허용 중

【1-2】 ‘공동모집·선발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사업

- (매칭사업*)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 *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앙-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예산 부담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내용

- **(중앙부처)** 대상 사업별로 지침 마련 시 사전 협의 하에 **모집시기를 통일***하고, 공동모집·선발하는 내용 추가

* 상반기 모집시기 1.26~30, 하반기 모집시기 5.25~29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단체)** 3개 사업에 대하여 '**공동모집·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선발의 효율화 추진**

* 각 사업별 실무담당자 등이 참여(위원회 구성의 형식 제한 없음)

2. 중복·반복 참여 등 부적격자 참여제한

【2-1】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 일자리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내용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시간제·간헐적 사업)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간 중복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여부

- ◆ 정부-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후순위 조치 등 시행 가능

□ 제한에 따른 조치사항

- (모집공고시) 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시 중복 참여 제한 명시
- (대상자 선발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발
 - * 해당사업의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예정인 경우 선발 제한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지 않고 참여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의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의 중복참여 해당 여부 확인
- (자체전산망 有*)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
 -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연계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자의 일자리 사업 참여이력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웹서비스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산망 보완 필요

【2-2】반복참여 제한 * 상세 내용 <붙임 6> 참조

① 동일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사업유형 관련 정보는 <붙임 1> 참조

- 반복참여 제한 대상 사업은 사업수행기관과 무관하게 동일 유형 모든 사업으로 함

* 동일 유형의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간, 자치단체 고유사업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제한내용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산정방법

-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예시) '16.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5.5.15~'16.5.14(1차년도), '14.5.15~'15.5.14(2차년도), '13.5.15~'14.5.14(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연도의 동일 유형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의 1년 참여자로 간주

-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 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등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인적속성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복 참여 허용**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장년적합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만55세 이상 고령자로 민간일자리 이동이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 포함

- 만60세 이상~만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 명시된 사업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진흥지원, 사회공헌일자리, 월드프렌즈코리아,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2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	- 자활근로
3	격오지 등 거주자 대상 일자리	- 어업협정이행,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환경지킴이 (주민감시원)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항공전문인력양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예술강사, 업종별 재해예방(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 산림 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5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장애학생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노인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 기간제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계

- ◆ 직접 일자리사업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 ◆ 동 지침에 따라 반복참여의 예외가 허용되더라도 ‘직접 일자리의 계속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되는 기간제법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지 않고 참여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의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 여부 확인

○ (자체전산망 有*)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

-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으로 연계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자의 일자리 사업 참여이력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 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웹서비스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산망 보완 필요

②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횟수 제한)

□ 대상사업

- (중앙부처 직접수행) 환경부 ‘환경지킴이’(5대강환경지킴이)
-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보조)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제한내용

○ 모집·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선발 제외(최근 3년 기준)**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재공고,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조건으로 선발)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산정방법**

◆ '16.5.15일이 참여시작예정일인 경우 '15.5.15~'16.5.14(1차년도), '14.5.15~'15.5.14(2차년도), '13.5.15~'14.5.14(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연도 중 1일 이상 참여한 경우 1회 참여로 산정

- 1차년도(공공근로) → 2차년도(지역공동체) → 3차년도(미참여) => 참여제한
- 1차년도(미참여) → 2차년도(지역공동체) → 3차년도(미참여) => 참여가능
- 1차년도(지역공동체) → 2차년도(노인일자리) → 3차년도(공공근로) => 참여제한
- 1차년도(지역공동체) → 2차년도(노인일자리) → 3차년도(문화관광해설사) => 참여가능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지 않고 참여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의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 여부 확인

- (자체전산망 有*)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
 -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연계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자의 일자리 사업 참여이력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 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웹서비스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산망 보완 필요

③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중앙부처 직접수행) 환경부 '환경지킴이'(5대강환경지킴이)
-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보조)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제한내용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상기 대상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 간 상기 대상 사업 참여 제한
- 즉, 대상자가 상기 대상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 180일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가능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 ◆ 상기 대상사업 이외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선발 요건으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상기 대상사업 중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참여 이력이 있는 자를 후순위 조치 (⇒ 최초 참여자 우선선발)

* (예시) '16.5.15일이 참여 시작 예정일인 경우, '13.5.15~'16.5.14의 기간 중 신청자가 상기 대상 사업에 참여한 횟수를 산정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지 않고 참여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의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 여부 확인

○ (자체전산망 有*)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연계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자의 일자리 사업 참여이력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반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웹서비스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산망 보완 필요

【2-3】 고액재산 보유자 및 공적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대상 사업

- (중앙부처 직접수행) 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원, 5대강환경지킴이)'
-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복지부 '노인일자리'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제한내용

○ 참여배제: 1.35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자

- *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자는 당사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 단,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도달하는 못하는 경우, 수 차례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 참여 허용 가능

○ 참여 배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 수령자 해당여부 확인 후 선발

□ 확인 방법

○ 신청자의 고액재산 보유여부, 공적연금 수급여부는 반드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상기 정보는 개인 민감정보로서 일모아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고 자체전산망에서 웹 서비스 형태로는 조회 불가

3.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및 선발 확대

【3-1】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대상 사업

-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유형에 해당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선발 목표인원을 사전확정하여 적용·사후 관리

□ 조치 사항

- 일자리사업별 업무지침 및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에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 바우처사업 등 민간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시 명시
 - * 취업취약계층 선발 실적 등은 지속적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 (고용부)
- 특히, 「직접일자리」 유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전에 취업취약계층 선발 목표 인원을 정하여 **사업관리 철저**
 - * 신청자의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를 일모아시스템에서 사전 확인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취업취약계층 참여 실적**을 일모아시스템 월간 실적 관리 화면에서 **매월 입력 등 관리**
- **자치단체**는 광역별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중 **70%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
 -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채용 목표비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 관리

□ 확인방법

- 신청자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면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 자동분석 및 제공***
 - *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총 13개 취업취약계층 유형 중 전체 취약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5개 유형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 분석·제공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계 입력
- 현재,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는 자체적으로 증빙서류 수집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또는 연계 입력

- * ① 북한이탈주민, ② 여성가장, ③ 위기청소년, ④ 결혼이주여성, ⑤ 노숙인, ⑥ 성매매 피해자, ⑦ 갱생보호대상자, ⑧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중앙부처>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치

- ① 취업취약계층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 81~100%
- ②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내지 유관자격증 보유 등을 요하는 사업: 5~20%
- ③ ①~②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21~80%

<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치

- ① 자치단체도 '13년부터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70% 목표설정
- ②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은 일모아 시스템 입력 실적만을 인정

【3-2】 장년층 우선 선발

대상 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 중 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 장년 적합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 목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년(만 55세이상 고령자)에 특화된 목표비율 적용

조치 사항

- 일자리사업별 업무지침 및 모집·공고문에 '만 55세 이상자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시에 만 55세 이상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 바우처사업 등 민간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시 명시
 - * 장년층 선발 실적 등은 지속적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 (고용부)
- 각 부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사업별 장년층 참여실적을 일모아시스템 월간실적 관리화면에서 매월 입력 등 관리

확인방법

- 신청자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경우 장년층으로 자동 분류

【 표1 : 중앙부처 취업취약계층/장년층 참여목표비율 】

연번	부처명	사업명	취약계층	장년층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	100%
2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40%	-
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55%	-
4	고용부	업종별 재해예방	-	100%
5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지원	-	100%
6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10%	-
7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	-
8	미래부	기초기술연구회 운영	10%	-
9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10%	-
10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10%	-
11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10%	-
12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10%	-
13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	50%
14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20%	-
15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20%	-
16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20%	-
17	농진청	선도농가 경영육성	-	50%
18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10%	-
19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	-
20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클ubs배치지원	10%	-
21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10%	-
22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0%	-
23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65%
24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0%	-
25	문화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0%	-
26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0%	-
27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	100%
28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	90%
29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	60%
30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	90%
31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	30%
32	복지부	자활사업	100%	-
33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20%	-
34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	100%
35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0%	-

연번	부처명	사업명	취약계층	장년층
36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20%	-
37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5%	-
38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00%	-
39	교육부	배움터지킴이	-	100%
40	복지부	방과후돌봄 서비스	20%	-
41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0%	-
42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	75%
43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	70%
44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	75%
45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	60%
46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	50%
47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10%	-
48	여가부	아동양육지원	20%	-
49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50%	-
50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10%	-
51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20%	-
52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0%	-
53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00%	-
54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	10%	-
55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10%	-
56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10%	-
57	미래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10%	-
58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	90%
59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10%	-
60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30%	-
61	행자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20%	-
62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60%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	60%	-
		환경지킴이(주민감시원)	60%	-
		환경지킴이(5대강환경지킴이)	-	70%
63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상류하천 수거인력에만 해당	-	80%
64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100%
65	보훈처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	30%

4. 중복 참여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내용

- (사업 추진 중)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 일자리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시 일모아시스템에서 매일 1회 SMS, email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
- (사후 관리) 중복참여 의심자가 통보된 경우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에 사후 등록한 사업 수행기관에서 각 의심자에 대한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수행

📁 사업 추진 중 「중복참여자 확인·배제」 절차

① (중복참여 제한대상 사업여부 판단)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사업 해당여부 확인



② (중복참여 사실관계 확인)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 참여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확인)



③ (계속참여 희망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 중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④ (중복참여 관련 조치) 대상자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는 계속 참여토록 하는 대신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업 참여는 중단 조치
* 중단대상 사업이 다른 기관 소관 사업인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 참여자관리-중복참여관리 화면에서 확인 및 결과 처리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처리 (중복참여자 확인 및 배제)
- (시간제·간헐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및 “정당 참여”로 처리
- (자체전산망 有) 중복참여 의심자 조회 관련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현황 모니터링
 - 중복참여 확인 및 결과처리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

5. 일자리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 「직접일자리」 유형 사업은 참여자의 선발, 관리, 취업알선 및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필수
 -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관주기, 제공기관 및 제공목적, 관련 전산망 (구체적인 전산망 명칭 명시)과의 연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센터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를 자체전산망에서 관리하고 일모아시스템으로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시

- ▷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여부 등 일모아를 통해 검증
- ▷ 고액재산 보유자 배제를 위해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 정보 확인
 -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1.35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1.35억원에 미달할 경우 채무 등 입증서류를 직접제출시 반영
- ▷ 신청자의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를 일모아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받음.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순위, 가산점 등 혜택 부여 제외)
 -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그 외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였으나 미동의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시

- ▷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여부 등 일모아를 통해 검증
- ▷ 재산 정보 파악이 불가함에 따라 고액재산 보유자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고액재산 보유자로 배제 처리하며, 재산 수준에 따른 가점 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경우 최저점(감점인 경우 최고 감점) 처리
-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받음.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순위·가산점 등 혜택 부여 제외)

6. 사업 운영

【6-1】 농촌 일손돕기 참여

□ 대상 사업: (자치단체) ‘공공근로’

□ 조치사항

- 농번기*에 농촌 일손 돕기를 최대한 포함하도록 조치(제 44차 물가관계장관회의, '12.8.21)

* 파종기(3~4월), 수확기(9~10월)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공근로 참여자의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인 자부담 추가 방안 검토·추진*

* 농촌 일손돕기 참여기간 동안 임금 = 공공근로 급여 + 농어업인 자부담 → 단, 세부 방안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정함

□ 산재보험 적용 관련 안내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보험 관계가 성립

-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

【6-2】 안정적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 대상 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업

* 자원봉사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인턴 일자리 제외

□ 주요내용

-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사업종료시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사업으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상담을 통해 적합 분야를 안내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20시간 이내)
 -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 참여자도 동일 기준 적용
- **(취업알선)**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이전에 맞춰 직업상담·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1회 이상)
 - 특히,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 (3회 이상)
 - *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 일자리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참여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직접일자리)** 직접일자리 탈락자 중 참여 신청시 일모아시스템의 탈락자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지역 내 직접일자리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시 SMS 등으로 안내 실시

📁 우수사례: 서울시

-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상담 실시,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희망자에게 고용부 직업훈련과 연계
- 상담, 박람회, 훈련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 (예) 오전 훈련수강자는 오후 4시간 근로(14:00~18:00), 오후 훈련 수강자는 오전 4시간 근로(09:00~14:00)
- 근무능력 우수한 참여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우수참여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취업알선 제공

7. 근로조건 개선

※ 문의: 고객센터 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7-1】 최저임금법 준수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업

- * 정부·자치단체 및 직접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한함

□ 조치사항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 '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 일급 기준(8시간) 48,240원, 월급 기준(주40시간) 1,260,270원
-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참조
-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함
 - * 직접일자리사업 점검 결과 일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적발 → 향후 점검 확대 및 즉시 시정명령 추진

【7-2】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확대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업

- * 정부·자치단체 및 직접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한함

□ 조치사항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법상 적용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적용대상임,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외국인 근로자 ** 단, 적용대상도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참조)

○ '16년에도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16년 상반기 → '17년 예산안에 반영)

8. 사업 종료시 고용서비스 안내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업

☐ 조치사항

○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토록 안내

IV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1. 사전 협의·조정 강화

□ 중앙부처

- '13년부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협의·조정**, 유사·중복 및 사업간 연계 등 효율화 지원
-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시행하여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 지속 발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2. 평가시스템 구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센터(한국고용정보원)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상시 평가 체계 구축
-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를 분리하여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사전협의제 신설, 일자리 성과 평가 의무화 등 추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16)

[참고]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

< 일자리 사전협의제 도입 >

□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사전협의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부처·지자체가 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 **일자리 사전협의제 개요**

- ❖ (목적)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사업간 연계·조정**을 도모, **일자리 예산의 재정 효율성 제고**
- ❖ (협의 대상) **신설 또는 변경 일자리 사업**
- ❖ (협의 절차)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 → 협의의 진행 → 고용정책심의회 조정 → 이행 점검

< 일자리 성과평가 의무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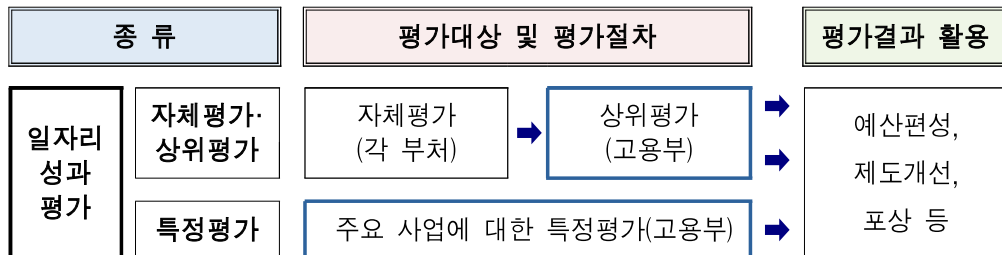
□ 일자리 사업 대상 '일자리' 관점의 **종합 성과평가 법제화**

* 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부 주관으로 평가 수행

- (중앙부처) 매년 전체 일자리 사업의 1/3씩 각 부처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고용부 확인·점검(상위평가)**, 대규모 사업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직접평가(특정평가)**

- (자치단체) 매년 전체 일자리 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고용부 확인·점검(상위평가)**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를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상위평가로 단계적 개편



V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신규 인력양성 사업 지원 활용

- 각 부처별 산업 정책에 따른 신규 인력양성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신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부처는 고용부에 수요 제출(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 * '16년 2월까지 수요제출 → 심사·확정 → '17년 예산 반영
 - * 긴급 수요는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조사 협조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
 - NCS 기반 훈련과정 개편 유도 및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효율화** 추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 중심 인사관리(채용·승진·임금 등)를 유도하는 기준

□ 범정부 『국가인력양성 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정례적으로 각 부처에서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전체 인력양성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견 수렴의 통로로 활용

VI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16년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 선정은 별도 진행('16.3월)

- ❶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월별 집행 실적(사업의 지원금, 지원인원 등)을 관리하고
- ❷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개별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 정보를 입력 관리

1. 모집·선정 단계

- 인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정확히 입력

- * 입력내용: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정보, 취업취약계층 중 일부 유형 해당 정보
- * 일모아 시스템 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일모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별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자 및 참여자 자동 입력 조치

📁 일모아시스템 취업취약계층 입력방법

-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를 등록하면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자동분석·제공
 -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현재, 일모아시스템에서 분석·제공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신청자 정보 입력 시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계 입력
 - * ① 북한이탈주민, ② 여성가장, ③ 위기청소년, ④ 결혼이주여성, ⑤ 노숙인, ⑥ 성매매피해자, ⑦ 갱생보호대상자, ⑧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참여자 선발시** 일모아시스템 참여 이력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중복 및 반복참여 배제 처리**
 - 일모아시스템 중복의심자 현황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상시적 중복참여 관리**
- 모집·선발·참여자 관리·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등 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반드시 수령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2. 사업추진 단계

(1) 사업 추진 기관

- (입력) ❶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의 **월간 실적**과 ❷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 **참여자 정보 및 지원금 정보**를 입력
 - ❶ (월간 실적) 중도탈락·종료 등 사업별 참여자 관련 상황과 예산집행상황을 매월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 *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누적실적을 바탕으로 월간 실적을 작성
 - 지원내용의 성격 및 지원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추진 상황 관련 세부내역 구분

● **‘일정기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직접일자리, 직업훈련 등)

⇒ 종료·중도탈락 등 **참여자별 참여상황**을 입력

* 참여자별 상황변화 내역은 상황변화가 이루어진 「달」에 반드시 입력

● **‘일회성’ 조치 성격 사업**(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 지원금 지급 등 **지원상황**을 입력

☞ ‘고용서비스’ 및 ‘창업지원’은 「일정기간 단위 사업」과 「일회성 조치 성격 사업」이 혼재하는 바, 세부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기 구분 준용

② (참여자 정보)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원금 지급 정보를 **시스템에 실시간입력**

*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산정 후 시스템 연계(E호조시스템)를 통해 회계 지출 처리

○ (입력 미비사항 확인: 월간실적) 매월 말 기준 ‘일모아 시스템’상 입력내용과 실제 추진상황*을 비교하여 입력 미비사항은 익월 10일 이내 보완 조치

* 소관부처 담당자는 월말까지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입력부진 자치단체 독려

(2) 고용노동부: 추진현황 분석·보고 등

○ ‘16년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일모아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시행

* ‘16년 교육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매월 말일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상황과 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파악

- 사업별 지원인원(취업취약계층 참여상황 등)과 예산집행 현황 및 정상추진 여부 등을 중점 분석

* 국회, 감사원 등 자료 요구시 일모아 시스템 입력자료 제공

○ 분기 내지 반기단위로 기관별·사업별 추진현황 및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관회의체*에 보고

* 고용정책심의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VII 행정 사항

□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에 반영

- 각 부처 및 자치단체는 동 합동지침의 세부내용이 사업계획 및 지침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그 계획 및 지침을 고용노동부에 송부('16.1.31 까지 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마련 및 개별 사업 지침 반영 (☞<붙임8> 표준서식 참고)

□ 사업기관 일모아 시스템 등록 및 전산망 연계 철저

- '16년도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16.1월 중)
- 또는 자체 시스템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자체전산망과 일모아시스템 간의 연계 조치를 시행
- 일자리사업별로 참여자 선발요건(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업별 우대 지원/배제 사항) 등 선발 업무 관련 사항을 '16.1월 중 고용부로 송부

□ '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 보고

- 중앙·자치단체는 '16년도 일자리사업별 계획 및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16.1월 중 고용부로 송부
-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 등을 함께 파악하여 송부
- * 자치단체 '16년도 일자리사업 목록 고용노동부에 제출('16.1월) → 최종 확정 예산을 포함한 전체 현황 파악('16.2월)

□ 일자리사업 운영요원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 *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의 운영인력(훈련생, 구직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 가능
- **(조치사항)**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라,
 - 사업별로 자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적용을 운영 요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붙임 1>

2016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1. 직접 일자리(세부사업 기준 65) * 광특사업은 별도로 산정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부	배움터 지킴이	
8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9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10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11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12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13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14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15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6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글로벌농업인재양성
17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19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예술키터지원
21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2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3	문화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및배치
24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현장활동 및 신규양성
25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6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27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28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9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0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보훈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31	보훈처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32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33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34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35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36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37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38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39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지원
40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정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1	기재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42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4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보조포함)
44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45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46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47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48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49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50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51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52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53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54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55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해외봉사단
56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57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58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59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60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61	행자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62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
63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64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5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원 5대강환경지킴이

2. 직업능력개발훈련(54)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2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4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5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6	고용부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융자)	
7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9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10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11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2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13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4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15	고용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6	고용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17	고용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18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자자체 지원사업
19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20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1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22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3	국토부	U-City 인력양성	석박사과정 취업자과정 지원
24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5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26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27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28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29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30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업계맞춤형교육프로그램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31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1.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아카데미 4.관광통역안내사교육 5.카지노아카데미 6.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관광학계협력사업등
32	문화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콘텐츠핵심인력양성 사이버인력양성 창의인재동반성장 양성과 통합
33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34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35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36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37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38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9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40	법무부	직업훈련	
41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42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43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44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45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4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
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48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4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50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51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52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53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54	산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3. 고용서비스(30)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3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5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6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7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9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0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1	고용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2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제외한 금액
13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5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6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7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18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19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2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21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22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2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전직교육원
24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25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26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27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8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29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30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4. 고용장려금(21)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2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3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4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6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음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채불근로자생계비대부
8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9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연장지원금
10	고용부	장년고용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 인턴지원금
11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12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3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14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5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6	고용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7	미래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18	산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기술혁신운영중견, 중소기업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9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20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가젤형기업지원)	
2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5. 창업지원(17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2	고용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채류형창업지원센터
4	미래부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 선도모델육성(신규)
5	산자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6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 활성화
7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8	중기청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창업교육
9	중기청	채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10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1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12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3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융자)	
14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15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6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1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11)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5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8	고용부	채당금지급	
9	고용부	채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10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11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붙임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6년)																																																																																																													
	<table><tr><th rowspan="2">가구원 수</th><th rowspan="2">소득 기준</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h rowspan="2">노인장기 보험료</th></tr><tr><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h>혼합</th></tr><tr><td rowspan="2">1인</td><td rowspan="2">975,000</td><td>30,590</td><td>7,688</td><td>30,600</td><td>미포함</td></tr><tr><td>32,594</td><td>8,170</td><td>32,604</td><td>포함</td></tr><tr><td rowspan="2">2인</td><td rowspan="2">1,660,000</td><td>51,189</td><td>30,611</td><td>51,846</td><td>미포함</td></tr><tr><td>54,542</td><td>32,616</td><td>55,242</td><td>포함</td></tr><tr><td rowspan="2">3인</td><td rowspan="2">2,147,000</td><td>65,705</td><td>54,190</td><td>66,479</td><td>미포함</td></tr><tr><td>70,009</td><td>57,739</td><td>70,833</td><td>포함</td></tr><tr><td rowspan="2">4인</td><td rowspan="2">2,635,000</td><td>81,149</td><td>80,277</td><td>82,114</td><td>미포함</td></tr><tr><td>86,464</td><td>85,535</td><td>87,492</td><td>포함</td></tr><tr><td rowspan="2">5인</td><td rowspan="2">3,122,000</td><td>95,782</td><td>101,257</td><td>96,971</td><td>미포함</td></tr><tr><td>102,056</td><td>107,889</td><td>103,323</td><td>포함</td></tr><tr><td rowspan="2">6인</td><td rowspan="2">3,610,000</td><td>111,270</td><td>123,024</td><td>112,669</td><td>미포함</td></tr><tr><td>118,558</td><td>131,082</td><td>120,081</td><td>포함</td></tr><tr><td rowspan="2">7인</td><td rowspan="2">4,097,000</td><td>126,118</td><td>141,839</td><td>127,956</td><td>미포함</td></tr><tr><td>134,379</td><td>151,129</td><td>136,337</td><td>포함</td></tr><tr><td rowspan="2">8인</td><td rowspan="2">4,585,000</td><td>141,452</td><td>158,148</td><td>143,510</td><td>미포함</td></tr><tr><td>150,717</td><td>168,507</td><td>152,910</td><td>포함</td></tr><tr><td rowspan="2">9인</td><td rowspan="2">5,072,000</td><td>156,154</td><td>174,528</td><td>158,610</td><td>미포함</td></tr><tr><td>166,382</td><td>185,960</td><td>168,999</td><td>포함</td></tr><tr><td rowspan="2">10인</td><td rowspan="2">5,560,000</td><td>172,491</td><td>191,252</td><td>175,489</td><td>미포함</td></tr><tr><td>183,789</td><td>203,779</td><td>186,984</td><td>포함</td></tr></table>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88	30,600	미포함	32,594	8,170	32,604	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미포함	54,542	32,616	55,242	포함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미포함	70,009	57,739	70,833	포함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미포함	86,464	85,535	87,492	포함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미포함	102,056	107,889	103,323	포함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69	미포함	118,558	131,082	120,081	포함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미포함	134,379	151,129	136,337	포함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미포함	150,717	168,507	152,910	포함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미포함	166,382	185,960	168,999	포함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미포함	183,789	203,779	186,984	포함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88	30,600	미포함																																																																																																								
			32,594	8,170	32,604	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미포함																																																																																																								
			54,542	32,616	55,242	포함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미포함																																																																																																								
			70,009	57,739	70,833	포함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미포함																																																																																																								
			86,464	85,535	87,492	포함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미포함																																																																																																								
			102,056	107,889	103,323	포함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69	미포함																																																																																																								
			118,558	131,082	120,081	포함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미포함																																																																																																									
		134,379	151,129	136,337	포함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미포함																																																																																																									
		150,717	168,507	152,910	포함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미포함																																																																																																									
		166,382	185,960	168,999	포함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미포함																																																																																																									
		183,789	203,779	186,984	포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table><tr><th>구 분</th><th colspan="2">첨 부 서 류</th></tr><tr><td rowspan="2">배우자 無</td><td colspan="2">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td></tr><tr><td rowspan="9">배우자 有</td><td>가출·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tr><td>질병</td><td>의사의 진단서</td></tr><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table>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No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심	상대사업			중복		처리대상	처리상태
			사업명	기관명	참여기간	중복일	중복대상		
1		09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2015-07-01 ~ 2015-11-30	40 일	대상	대상	미처리
2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2015-07-01 ~ 2015-11-20	81 일	대상	대상	미처리
3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15-07-01 ~ 2015-11-30	146 일	대상	대상	길부처리
4		30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015-07-15 ~ 2015-11-30	132 일	대상	대상	미처리
5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15-08-17 ~ 2015-11-30	99 일	대상	대상	미처리
6		30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015-07-01 ~ 2015-11-30	30 일	대상	대상	미처리
7		27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2015-07-27 ~ 2015-11-30	1 일	대상	대상	미처리

No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심	상대사업			중복		처리대상	처리상태
			사업명	기관명	참여기간	중복일	중복대상		
1		09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2015-07-01 ~ 2015-11-30	40 일	대상	대상	미처리
2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2015-07-01 ~ 2015-11-20	81 일	대상	대상	미처리
3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15-07-01 ~ 2015-11-30	146 일	대상	대상	길부처리
4		30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015-07-15 ~ 2015-11-30	132 일	대상	대상	미처리
5		31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15-08-17 ~ 2015-11-30	99 일	대상	대상	미처리
6		30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015-07-01 ~ 2015-11-30	30 일	대상	대상	미처리
7		27	(지자체)공공근로사업통합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2015-07-27 ~ 2015-11-30	1 일	대상	대상	미처리

a. 각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중복참여의심건 검색(①)

■ 검색항목

- 사업명 : 중복참여를 조회할 사업을 선택, 담당사업이 자동으로 설정
- 기관명 : 현재 자신의 소속기관이 자동으로 설정, “하위기관포함” 체크시 설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하위기관까지 검색
- 중복일 : 중복이 되는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
- 처리상태: 결과처리 상태별로 검색 가능

b. 검색조건 더보기를 통해 처리대상,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으로 상세 검색 가능(②)

■ 검색항목

- 처리대상 : ‘대상’은 중복참여로 의심되는 건으로 결과 처리를 해야하는 의심건, ‘비대상’은 중복참여의심 건에서 해소된 건(삭제가능- 선택삭제버튼 이용)

c. 검색 결과 목록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③)

- d.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과 중복 참여가 발생한 상대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④)
- e. 중복참여가 발생한 일자와 중복참여결과처리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해당 건에 대한 대상자정보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을 조회(⑤)
- 처리대상자를 클릭시 중복참여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

중복참여관리

HOME > 참여자관리 > 중복참여관리

중복처리

중복의심사업 참여자 등록 정보

사업명: (상남)차로전소일거리사업

참여기간: 경기도 상남시

중복기간: 2014-11-01 ~ 2014-12-31

중복자 등록일시: 2014-11-05 09:49:00

상대사업 참여자 등록 정보

사업명: 노인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지원)

참여기간: 상남시(물다목적댐지역)

중복기간: 2014-10-01 ~ 2014-11-30

중복자 등록일시: 2014-10-24 09:39:07

사업담당자

부서	성명	연락처
상남시청 노인복지과	김주남	
일거리종합과	고남영	031-729-3853

중복처리

중복일	처리결과	처리사유	처리기간	이력
2014-11-01	미확인			보기
2014-11-02	미확인			보기
2014-11-03	미확인			보기
2014-11-04	미확인			보기
2014-11-05	미확인			보기

이관현황

이관일	성명	이관요청사유	이관처리결과	이관처리기간	이관처리사유
-----	----	--------	--------	--------	--------

- » 중복참여자의 중복처리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
- » 참여자 등록정보와 상대사업의 참여 정보 및 담당자 확인 가능
- » 중복일에 대한 일괄등록 처리가 가능

- 처리대상 : '대상'은 중복참여로 의심되는 건으로 결과 처리를 해야하는 의심건, '비대상'은 중복참여의심 건에서 해소된 건(삭제가능- 선택삭제버튼 이용)
- f. 중복참여의심자에 대한 상대사업과의 참여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중복처리 유형과 처리사유를 입력(⑥)한 후 중복일을 체크하고 일괄저장(⑦)
- 이력 [보기]버튼 : 중복참여 결과 처리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 화면 출력

1. 미확인: 결과처리전 중복참여의심건
2. 정당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실제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거나 시간제 · 간헐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P.16 참고)
3. 처리이양: 중복참여관리를 상대사업으로 이관 요청하는 경우
4. 중복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실제 중복이 되는 경우(P.16 참고)
5. 부정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참여일 혹은 시간이 중복되고 지원금 또한 부정 수혜된 경우

중복참여관리

HOME > 참여자관리 > 중복참여관리

도움말

목록

중복의심사업 참여자 등록 정보

중복의심사업	
사업명	(성남)어르신소일거리사업
참여기관	경기도 성남시청
참여기간	2014-11-01 ~ 2014-12-31
참여자 등록일시	2014-11-05 20:43:00

상대사업 참여자 등록 정보

상대사업	
사업명	노인일자리운영(노인일자리지원)
참여기관	상대원1동다목적복지회관
참여기간	2014-10-01 ~ 2014-11-28
참여자 등록일시	2014-10-24 05:33:07

사업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김주남	
일자리창출과	고남정	031-729-2853

상대사업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중복처리

☒	중복일	처리결과	처리	처리기관	이력
☒	2014-11-28	미확인			보기
☒	2014-11-27	미확인			보기
☒	2014-11-26	미확인			보기
☒	2014-11-25	미확인			보기
☒	2014-11-24	미확인			보기

- 선택-
- 선택-
 - 미확인
 - 정당참여
 - 처리이양
 - 중복참여
 - 부정참여

중복참여관리

HOME > 참여자관리 > 중복참여관리

도움말

목록

사업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김주남	
일자리창출과	고남정	031-729-2853

상대사업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고남정	031-729-2853

중복처리

☐	중복일	처리결과	처리사유	처리기관	이력
☐	2014-03-29	미확인			보기
☐	2014-03-28	미확인			보기
☐	2014-03-27	미확인			보기
☐	2014-03-26	미확인			보기
☐	2014-03-25	미확인			보기

이관현황

☐	중복일	상태	이관요청사유	이관처리일	이관처리기관	이관처리사유
☐	2014-03-31	이관요청	처리이양		경기도 성남시청	
☐	2014-03-30	이관요청	처리이양		경기도 성남시청	

g. 결과처리를 상대사업 기관으로 처리이양한 경우 이관 현황 확인(⑧)

- [이관접수]버튼 : 이관 요청한 중복참여건을 접수처리하며 접수한 경우 중복참여 건에 대한 결과처리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반려]버튼 : 이관 요청한 기관으로 반려
- [이관회수]버튼 : 이관 요청을 한 기관에서 상대기관이 접수 혹은 반려하기전 이관 요청건을 회수

2. 중복참여의심자조회

- 직접일자리 유형의 사업이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중복참여의심자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시작일을 기준으로 조회 가능

<붙임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

1. 의 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10.7월 범 부처 차원의 1차 효율화 방안을 통해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 기준을 토대로 **6개 유형**으로 분류
 - * '10년까지는 총리실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관리('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변경 현황

2010년 이전 기준		2011년 이후 기준
• 직접일자리 창출	➡	• 직접일자리창출
•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촉진	➡	• 고용서비스
• 교육 및 훈련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2. 세부유형별 범주

① 직접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 *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사회공헌형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①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②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등

③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④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⑤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 ○○○○축제, ○○박람회 개최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①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 지원 사업**

- *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등

②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 * 군민정보화 교육, KCDF 아카데미, 농기계훈련사업 등

③ 고용서비스

-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
 -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 박람회 개최 등 포함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

<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④ 고용장려금

-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하는 사업

⑤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붙임 5>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3 ~ 제13조의4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장애등급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10. 출입국정보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제2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 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이력

⑤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6>

직접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 적용대상

- (개념) 반복참여란 과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 같은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중복참여」와 다른 개념임
- <붙임 1>의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및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의 신규 참여 신청자로서,
 - 동일 사업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수행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적용방법

- 참여시작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 * 참여자가 기존에 참여한 사업이 1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사업 참여 기간의 합계가 180일 초과인 경우 1년으로 간주
- 특히,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환경부 '환경지킴이(5대강 환경지킴이)',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 상기사업 참여시작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도 반복 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 * 참여자의 참여시작예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서 1일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또한, 상기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자, 만60세~만64세인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 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각 일자리사업에서 인정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 장년적합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만55세 이상 고령자로 민간일자리 이동이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 포함
 - *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사업 특성 등에 상관없이 본문 규정에 따라 불허용
-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및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동일사업 또는 타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허용
 - * 아동안전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진흥지원, 사회공헌일자리, 월드프렌즈코리아,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 ** 자활근로
- 「격오지 등 거주자 대상 일자리*」는 동일 사업에 반복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를 허용하되,
 - * 어업협정이행,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환경지킴이(주민감시원)
 -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적용하여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참여 제한
- 「미성년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해당 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는,
 - * 장애학생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노인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 항공전문인력양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예술강사, 업종별 재해예방(건설현장 안전 지킴이),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 지킴이),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참여자가 동일사업에 반복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허용
-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를 허용하되,
 - 이 경우 다음 모집시에는 예산·모집인원 등을 재조정하여 미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붙임 7>

장년·취업취약계층 참여율 판단기준 및 계산식

□ 적용대상

- (정의)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 만으로는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려운 자들로서,
 - 붙임 2와 같이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55세 이상 고령자 임
- (우선채용비율 적용)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장년층) 목표 채용비율* 이상 취약계층(장년층)을 우선 선발해야함

* 중앙부처 취업취약계층/장년층 참여목표비율(p.18~p.19) 참조

□ 계산식 (장년적합일자리의 장년참여비율 역시 동일하게 계산)

- (일반적인 경우) 매월말일 기준으로 참여자 수를 모수로하고 취약계층 참여자 수를 분자로 하여 월별 실적 관리
 - 다만 중도이탈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 참여일수를 분자로 하고 그 달의 일수로 모수로 하여 일할계산
 - * 11월 1일 현재 참여자 5명 중 두 명이 취약계층이지만 그중 한명이 15일까지 근무하고 중도이탈한 경우 11월 30일 현재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0%
- (두 가지 이상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 모수·분자 모두에 1명으로 간주
 - * 4명을 선발한 사업의 참여자 중 1명이 저소득층인 동시에 장기실업자이고 다른 세명은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25%

<붙임 8>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앞 면)

붙임 2

_____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여부	①취업 ②실업 ③취업경험 없음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① 본 신청서는 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치·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000기관장 귀하

<붙임 9>

'15년 직접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1. 그간의 경과

- '09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일자리 사업 효율화 지속 추진 ('10~)

〔 그간의 효율화 경과 〕

- ▶ **1차 효율화('10.7월):** 일자리사업 분류체계를 OECD 기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정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합·단순화(202개 사업→134개)
- ▶ **2차 효율화('11.8월):** 중앙부처 누락사업 추가 발굴 및 자치단체 사업 통합관리, 직접일자리 개념 명확화 및 취약계층 참여비율(70%) 설정
- ▶ **3차 효율화('12.9월):**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연계 제공,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구축 및 사업성과 종합평가·환류 절차 도입
- ▶ **4차 효율화('14.8월):** 직접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경기탄력적 운영,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구직등록 의무화

- 그러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비중 과도, 경기와 무관한 사업 유지·존속, 유사·중복 사업 상존 등 **미해결 과제**도 산재

VIP 말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그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철저한 내실화임. 관제 부처는 기존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5.13. 재정전략회의>

-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 **종합 성과평가** 추진

그간의 경과

- ❖ 전체 일자리사업 근로조건 조사('13.5), 주요사업 현장 실태점검('13.7~8월)
-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주요사업 대상 시범 성과평가('13.12)
- ❖ 주요사업 이외 나머지 전체 사업 대상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14.11)

2.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평가대상) '15년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총 66개)

* '15년 신설사업인 독거, 복합질환참전유공자 복지지원(보훈처)은 평가 제외

□ (평가체계)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정효율성, 고용효과성 및 전달체계 세 가지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 (재정효율성) 투입예산 대비 고용인원,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등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
- (고용효과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부문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효과를 평가
- (전달체계) 사업계획 수립-집행-환류 단계별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 효율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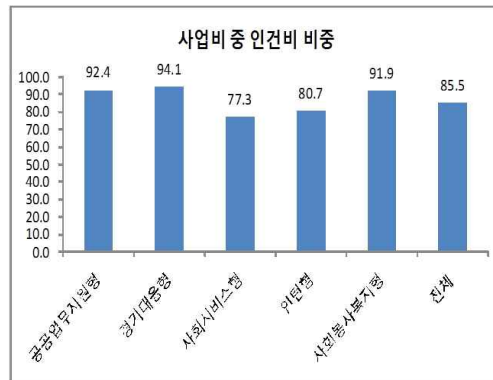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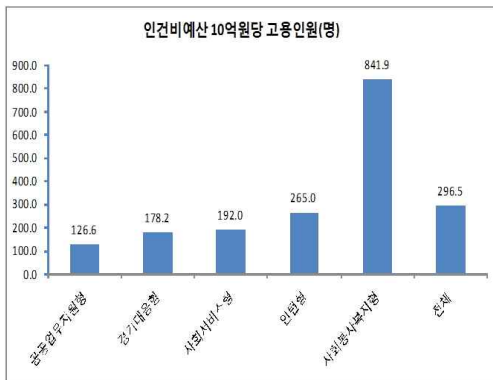
평가방법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중치(%)
정량평가 (60%)	재정효율성 (30)	재정효과	투입 예산 대비 고용인원 인건비 예산 비율	100 100
		사업목표달성 도	모집총족 비율 취약계층참여총족 비율	150 200
	고용효과성 (30)	취업성과	비경제활동인구 참가 비율	200
			민간부문 취업률	300
			평균 취업소요기간	100
		고용유지	고용유지율	200
			고용유지기간	100
		임금복지	최저임금 대체 비율	100
			사회보험 적용 여부 참여기간	100 100
정성평가 (40%)	종합평가 (40%)	사업계획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150
			반복 참여 비율	200
			사업시기 및 일정의 적절성	100
		집행과정 효율성	일모아시스템 활용 수준	50
			모니터링 평점	300
		환류체계	평가체제 존재 및 개선 실적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100 300

3. 평가결과

1) 재정효율성

① 재정효과

- 인건비 예산 10억원당 고용인원은 사회봉사·복지형이 841.9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업무지원형은 126.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전체 예산중 인건비 비중은 경기대응형이 94.1%로 가장 높으며 사회서비스형은 77.3%로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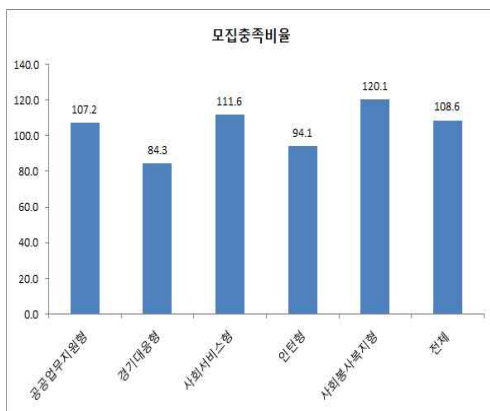
■ 재정효과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사회서비스형) 참가자 중 고학력 청년층 비중 및 1인당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입예산 대비 고용창출력이 낮은 편
- (경기대응형)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는데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실직자를 구제한다는 사업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
- (인턴형) 투입예산 대비 고용인원은 높은 편이나 일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체재비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은 낮아 전체 재정효과는 평균 수준
- (사회봉사·복지형)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퇴직자로서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입예산 대비 고용창출력은 가장 높음

② 사업목표 달성도

-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모집충족비율 평균은 108.6%**로 실제 참여인원이 계획된 목표인원을 8.6% 초과
 - 사회·봉사 복지형, 사회서비스형, 공공업무지원형은 목표인원을 달성하였으나 **경기 대응형 및 인턴형 사업은 목표인원에 미달***
 - * 참여인원이 많은 자활사업, 산불방지대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실적 저조
- **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은 취약계층 참여현황이 파악되는 65개 사업 중 19개 사업에서 미달**
 - **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이 미달된 사업은 공공업무지원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순으로 많이 발견
 - * 경기대응형 및 사회봉사·복지형은 모든 사업에서 목표 달성

〈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충족비율 현황〉



〈일자리사업 유형별 취약계층참여달성수준 현황〉

(단위: 개, %)

	미달	달성	초과달성	계
공공업무지원형	10 (52.6)	3 (15.8)	6 (31.6)	19 (100.0)
경기대응형	0 (0.0)	5 (41.7)	7 (58.3)	12 (100.0)
사회서비스형	2 (20.0)	1 (10.0)	7 (70.0)	10 (100.0)
인턴형	7 (38.9)	5 (27.8)	6 (33.3)	18 (100.0)
사회봉사복지형	0 (0.0)	2 (33.3)	4 (66.7)	6 (100.0)
전체	19 (29.2)	16 (24.6)	30 (46.2)	65 (100.0)

■ 사업목표달성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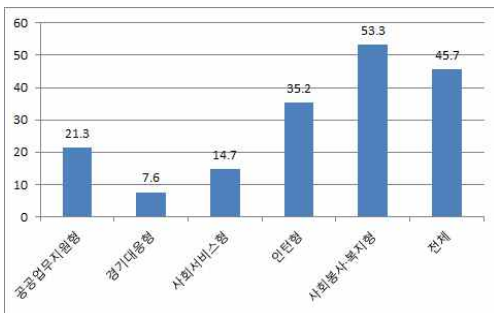
- **(공공업무지원형)** 모집충족비율과 취약계층참여충족비율 모두 직접일자리사업 전체 평균을 하회
- **(경기대응형)** 자활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산불방지대책 등 일부 사업은 목표인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축소 등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상당수 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충족률이 100%를 하회하고 있어 취약계층참여 참여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사회봉사·복지형)** 모집충족비율 및 취업취약계층 참여충족률 모두 양호

2) 고용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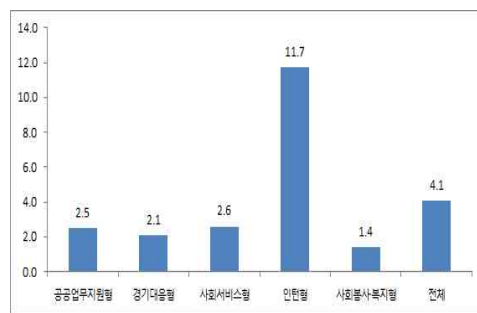
① 취업성과

- 전체 참여 인원 중 비경제활동인구 출신 비중은 평균 45.7%
 - 사회봉사·복지형이 53.3%로 최고 수준이며 경기대응형은 7.6%로 최저 수준
-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부문 취업률은 4.1%이며 인턴형 사업이 11.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유형은 1~3%사이로 평균 미만
 - * 참고로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포함한 전체 취업률은 22.6%로 민간부문 취업률을 훨씬 상회하며 특히 경기대응형(50.8%), 공공업무지원형(30.8%), 사회서비스형(29.4%)에서 높게 나타남
-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71일이며 사회봉사·복지형과 사회서비스형이 67일로 가장 짧고 인턴형이 83일로 가장 오래 소요
 - * 공공업무지원형은 평균 70일, 경기대응형은 평균 68일 소요

〈비경제활동인구 참여율〉



〈민간 일자리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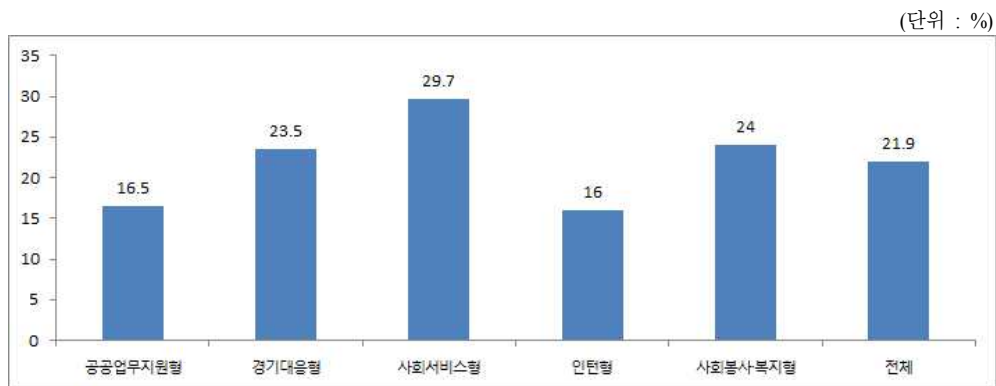
■ 취업성과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이 정부 고유업무의 주변화된 업무로서의 성격이 강해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취업률이 낮은 편
- (경기대응형) 비경제활동인구 참여비율 및 민간 부문 취업률 모두 저조하며 일자리 사업 참여 자체가 일자리 사업 의존 경향을 강화하는 악순환 발생
- (사회서비스형) 노인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의 경우 관련 민간일자리가 저기능·저임금 일자리로 민간부문 취업률 상승에 어려움
- (인턴형) 항공전문인력양성,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과 같이 정책대상이 명확하고 전문 분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일수록 민간부문 취업률이 높음
- (사회봉사·복지형) 비경제활동인구 참가 비율이 가장 높지만 민간부문 취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취업성과는 중간 수준

② 고용유지

- 사업 종료 이후 취업인원 중 6개월 이상 취업유지 인원 비중인 고용유지율의 전체 평균은 21.9%
- 사회서비스형이 29.7%로 가장 높고 사회봉사·복지형이 24% 경기대응형이 23.5%로 평균 이상, 공공업무지원형과 인턴형은 각각 16.5%, 16%로 낮음
- 평균 고용유지기간은 경기대응형(158일), 인턴형 및 사회봉사·복지형(144일) 사회서비스형(143일), 공공업무지원형(111일) 순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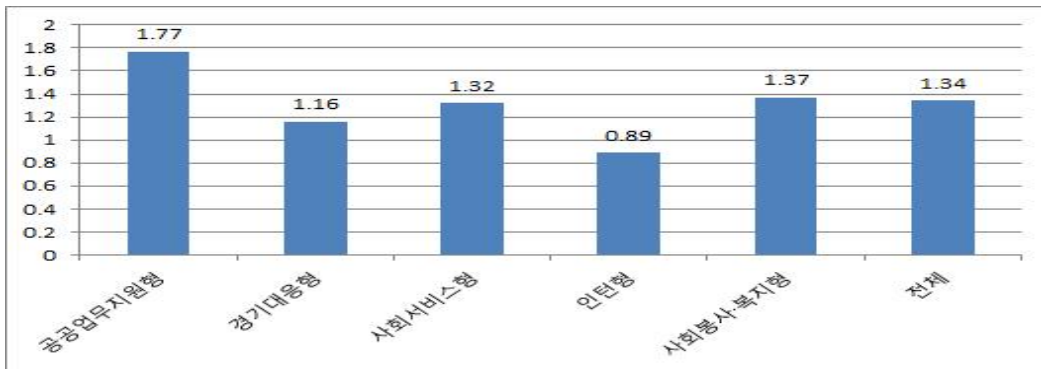
■ 고용유지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부족한 사업이 많아 고용유지율 및 고용유지기간 모두 저조
- **(경기대응형)** 취업성과는 가장 낮지만 한번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고용유지비율과 고용유지기간 모두 높게 나타남
- **(인턴형)** 고용유지율은 가장 낮지만 고용유지기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이는 박물관진흥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 높은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
- **(사회봉사·복지형)** 경기대응형과 유사하게 고용유지비율 및 고용유지기간이 모두 양호, 취업 후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수준
- **(사회서비스형)**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높고 고용유지기간도 상대적으로 양호, 취업 후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수준

③ 임금복지

-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1.34배이며 공공업무지원형이 1.77로 가장 높고 인턴형이 0.89로 가장 낮은 수준
- 경기대응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4대보험 모두 적용
 - 공공업무지원형 및 사회봉사·복지형의 일부 사업의 경우 4대보험 미적용 또는 부분적용
 - *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등
- 일자리 사업 평균 참여일수는 225일이며 사회서비스형(275일), 공공업무지원형(268일), 사회봉사·복지형(238일)이 평균을 상회
 - 경기대응형(201일), 인턴형(168일)은 평균을 하회

〈최저임금 대체비율〉



■ 임금복지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최저임금대체비율이 1.77로 직접일자리사업 중 가장 높고 참여일수도 평균을 상회, 일자리 질 양호
- (경기대응형) 최저임금대체비율은 1.16으로 평균이하이며 참여일수도 짧은만큼 일자리의 질은 낮은 수준
- (사회서비스형) 최저임금대체비율은 1.32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평균참여일수는 가장 긴 특성을 보임
- (인턴형) 최저임금대체 비율이 0.89로 직접일자리사업 중 가장 낮고 평균 참여일수도 가장 짧은 만큼 일자리 질은 가장 낮은 수준
- (사회봉사·복지형) 최저임금대체 비율이 1.37로 평균 이상이며 참여일수 도 평균을 상회, 일자리 질은 양호한 수준

3) 전달체계

① 사업계획 타당성

- 유사·중복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대응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에서 더 많이 발견**
 - 공공업무지원형이나 사회봉사·복지형에서는 일부 사업들에서만 유사·중복성이 나타남
- 사업 참여자 중 동일사업 기준 1회 이상 **반복 참여자 비중은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사업에서 높게 나타남**
 - * (공공업무지원형)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5.4%, 국가기록물정리 85.3% 등
 - * (경기대응형) 궁능방재시스템구축 79.0%, 하천하구스레기정화 64.9% 등
-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만 반복 참여자 비중이 높음**
- **사업시기 및 일정의 적절성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보통 이상 수준**

■ 사업계획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국가기록물관리 등 사업에서 반복참여 비율이 특히 높음 (60~80%)
- **(경기대응형)** 사업간 유사·중복성이 높고 다수 사업에 있어 반복참여 비율도 높음 (50~60%)
- **(사회서비스형, 사회봉사·복지형)** 방과후돌봄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 등 일부 사업에서 유사·중복성 및 반복참여 비율이 높음
- **(인턴형)** 반복참여 비율은 대체로 낮지만 인턴형 사업의 속성상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일부 발견됨

② 집행과정 효율성

- **일모아시스템 활용도는 경기대응형과 사회봉사·복지형에서 높고 공공업무지원형과 인턴형에서는 낮음**
 - * (경기대응형) 궁능방재시스템 100%, (사회봉사·복지형) 노인일자리 97.6%,
 - * (공공업무지원형) 장애인생활체육지원 0%, (인턴형)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0%
- 특히 **가축위생방역본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등 일모아시스템에서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도 일부 존재**

-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가 질적으로 평가한 집행과정 효율성은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형은 10개 사업중 8개 우수, 공공업무지원형은 20개 사업중 3개 우수, 경기 대응형 사업들은 모두 보통 수준, 사회봉사·복지형은 6개 사업 중 3개 우수

■ 집행과정 효율성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공무원관련성이 높거나 취업취약계층 참여가 높은 사업의 특성상 일모아시스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양호
- (사회 서비스형) 특정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별도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등에 따라 일모아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편
- (인턴형) 사회적기업육성,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등 일부 사업에서 일모아시스템 활용도 저조
- (사회봉사·복지형) 전문수탁기관의 사업관리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은 양호하지만 해외 봉사단 등 일부 사업에서 일모아시스템 활용도 저조

③ 환류체계

- 대부분의 사업에서 자체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경기대응형 및 공공업무지원형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식적 평가체계가 부재, 자치단체·수행기관의 단순 실적보고 수준
- * 지역공동체일자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상수원관리지역쓰레기수거 등
- 대부분의 사업에서 참여자들의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는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해외봉사단, 자활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자체 노력이 일부 발견

■ 환류체계 특성

- (공공업무지원형) 배움터지킴이, 산림병해충방제 등 일부사업에서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도가 낮음
- (경기대응형) 전반적으로 평가체계가 취약하고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도도 낮아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일자리 이동을 저해하고 반복참여를 유인하는 계기
- (사회봉사·복지형) 노인일자리운영,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에서 평가체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

별첨 1

세부 지표 및 지표 산식

I. 재정효율성

1. 재정효과

가. 투입 예산 대비 고용인원(지표 번호: A-1)

- 비용효과성 지표로서 투입 예산 대비 고용인원은 (연간) 일자리사업 예산 10억원당 직접 일자리창출 규모로 정의

$$\text{지표 산식} : \frac{(\text{재정지원에 의해 직접 창출된}) \text{고용인원}}{\text{연간투입예산중 인건비 총액(10억)}}$$

- 활용 자료 : 소관부처 사업계획서 및 실적자료

나. 인건비 예산 비율(지표번호: A-2)

- 인건비 예산 비율은 전체 사업비 예산 가운데 직접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여 해당 일자리사업의 직·간접성을 평가

$$\text{지표 산식} : \frac{\text{연간투입예산중 인건비 총액}}{\text{연간사업전체예산}} \times 100$$

- 활용 자료 : 소관부처 사업계획서 및 실적자료

2. 사업목적 달성도

가. 모집충족비율(지표번호: A-3)

- 모집충족비율은 해당 일자리사업의 목표 참여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의 비율로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text{지표 산식} : \frac{\text{연간 사업참여인원}}{\text{연간 사업계획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 소관부처 사업계획서와 실적자료, 일모아시스템 원시자료

나. 취약계층참여충족비율(지표번호: A-4)

- 취약계층참여충족비율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지원 목적 실현 수준을 파악하는 성과지표

$$\text{지표 산식} : \frac{\text{연간 취약계층 참여비율}}{\text{연간 취약계층목표참여비율}} \times 100$$

$$\text{※ (세부산식) 연간취약계층참여비율} : \frac{\text{연간취약계층참여인원}}{\text{연간 사업참여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 소관부처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일모아시스템 원시자료

II. 고용효과성**1. 취업성과****가. 비경제활동인구참여비율(지표번호: B-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보험DB 이력조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실업자나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

$$\text{지표 산식} : \frac{\text{비경제활동인구출신 참여인원}}{\text{사업참여 전체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일모아DB와 고용보험DB의 연계 원시자료

나. 민간부문 취업률(지표번호: B-2)

- 민간부문 취업률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동 또는 이행 규모를 파악하는 평가지표

$$\text{지표 산식} : \frac{\text{일자리사업 참여종료후 6개월 이내 취업인원}}{\text{일자리사업참여 종료 고용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일모아시스템DB와 고용보험DB의 연계 원시자료

다. 평균 취업소요기간(지표번호: B-3)

-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참여자가 민간부문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
- 지표 산식 : 일자리사업 종료후 민간부문 일자리로 취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일 단위로 표시
- 활용자료 : 일모아시스템DB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연계를 이용

2. 고용유지

가. 고용유지율(지표번호: B-4)

- 고용유지율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민간부문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인원 비율로서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성과지표
- 지표 산식 :
$$\frac{\text{사업참여 종료후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유지인원}}{\text{사업참여 종료후 취업인원}} \times 100$$
- 활용자료: 일모아시스템DB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계 자료 활용

나. 고용유지기간(지표번호: B-5)

-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부문 일자리의 고용유지기간은 고용안정성의 보조 지표로서 고용의 질을 보여줌.
- 지표산식 :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부문 취업기간으로서 일 단위로 표시
- 활용 자료: 일모아시스템DB와 고용보험DB의 연계 자료 활용

3. 임금복지

가. 최저임금 대체 비율(지표번호: B-6)

- 최저임금 대체 비율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임금차원에서 일자리 질(job quality)을 나타내는 지표

- 사업계획서에서 설정된 근로자 1인당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최저시급 기준)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지표 산식 : $\frac{\text{일자리사업의 시간단 임금 지급 기준}}{\text{최저시급임금}} \times 100$

- 활용 자료: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일모아시스템DB

나. 사회보험 적용 여부(지표번호: B-7)

-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의해 보장되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

- 지표 산식: 4대 사회보험 중 지원되는 보험 개수

다. 참여기간(지표번호: B-8)

- 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지표 산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으로서 참여에서 종료시점까지 기간을 참여자 단위당 평균을 일단위로 구함

- 활용자료: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일모아시스템DB 또는 고용보험DB

III. 전달체계

1. 사업계획 타당성

가. 유사·중복여부(지표번호: C-1)

- 사업목적, 참여자 등에 있어 유사·중복 사업 존재여부
- 지표산식: 목표, 주체와 대상 등 핵심어의 중복 여부를 텍스트 데이터로 구축하고 사업 성격을 질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유사·중복 사업평가
- 활용자료: 소관부처 사업계획서 등

나. 반복 참여비율(지표번호: C-2)

- 반복 참여비율은 재정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일자리 기회의 균등한 제공 기준을 설정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지표 산식 :
$$\frac{\text{동일 직접 일자리사업 1회 이상 참여자}}{\text{연간사업 참여 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일모아시스템DB

다. 사업시기 및 일정의 적절성(지표번호: C-3)

- 해당 사업이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요, 지역별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기 및 일정이 수립·조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지표산식 : 사업계획서의 사업시기 및 기간, 실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파악

- 활용자료: 소관부처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등 인터뷰

2. 집행과정 효율성

가. 일모아시스템 활용 수준(지표번호: C-4)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은 모든 일자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의 실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월별 집행실적(사업의 지원금과 지원인원 등)을 관리할 것을 권장하므로 일모아시스템 활용수준을 평가

- 지표 산식 :
$$\frac{\text{연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중복인원제거)}}{\text{연간사업참여계획인원}} \times 100$$

- 활용 자료: 일모아시스템DB

나. 모니터링 평점(지표번호: C-5)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통계와 예산자료에서 해명하기 어려운 참여자 및 운영 기관의 애로사항 평가

- 지표산식: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에 의한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 활용자료: 운영기관,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

3. 환류체계

가. 평가체제 존재(지표번호: C-6)

- 소관부처가 해당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지표산식: 해당 일자리 사업이 자체 평가시스템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확인

나.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실적(지표번호: C-7)

- 해당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판단
- 지표산식: 해당 일자리 사업의 평가결과가 개선방안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조사

다.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지표번호: C-8)

-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사업 참여자의 민간부문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운영 및 활용 수준
- 지표산식: 해당 일자리사업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활용하는 수준도 정성적으로 평가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발행일 2016년 1월

■ 발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 편 집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권진호

기술서기관 박종일

서기관 김영심

사무관 김동환

사무관 양도식

주무관 강현경

주무관(과견) 김상태(보건복지부)

■ 전 화 (044)202-7379

■ 인 쇄 문중기획 (044)858-8580
